

[표-208] 사업방식의 비교표

구분	1. 제안에 의한 방식	2. 공모에 의한 방식	비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타당성 검토 이행 시(市)가 사업대상자 선정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후 공원시설 기부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市)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시에서 타당성 검토 이행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좌동 ~ ~ 좌동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짐 사업 사전준비과정 기간 단축 가능 토지소유자 참여 기회가 많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측면에서 다소 우월할 수 있음 사업 인가 기간 단축 가능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음 다양한 사업제안 비교 선정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제안자 이외에 후순위 제안 희망자의 사업 참여 기회 제약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사업 인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다양한 제안 및 아이디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진 시 사업을 주도한 시(市)의 책임 비중이 커짐 공모 심사 기준의 객관성 확보 곤란 토지소유자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추진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시: 공원 1개소(MOU) 청주시: 공원 4개소 (사업예정자 지정) 인천시: 공원 1개소(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부시: 공원 2개소 (실시계획인가) ※ 공모심사 탈락자 소송 제기 (심사 기준에 대한 객관성 시비) 	

□ 사업방식의 특징

-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 특례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시설 및 공원시설의 계획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협상을 함.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공고 등의 절차로 진행함
-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 사업공모에 대한 목적과 방향설정 후 사업공모를 시행함. 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계획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는 같음

□ 사업추진 시 쟁점사안

- 제안방식이나 공모방식 모두 사업자 지정경위에 대한 의혹제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사업자 지정의 대한 공정성 확보가 필요
- 공원전체가 단일 토지가 아니고 다수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단속시행이 곤란하고 조합결성이 쉽지않아 토지소유자 참여에 제약이 있으며 2020년 공원 실효 이후 지가상승 및 개발기대로 사업참여 기피
- 민간사업은 불확정 상태를 전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진행 불가시 책임성 문제 발생
- 특례방식 중 공모방식(공공)과 제안방식(민간)의 선호도가 달라 특례방식 결정에 대한 문제 발생

사.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 ‘제안방식’ 사업대상자 선정

- 특례사업 대상지 및 제안 접수 안내 공고 - 언론 매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발송(→토지소유자)
- 공고 후 4개월 내 제안서 접수가 1건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정함. 단, 제안서 접수 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단독 시행방식(토지의 2/3 확보 및 소유자의 1/2 동의)
 - 2순위: 공동(민·관) 시행방식(부지매입비의 4/5 예치)
- ※ ‘동일 지정요건(순위)’ 의 복수 제안 건은 공모방식으로 심사 선정
- 제안자가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 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사업대상자로 정함

□ ‘공모방식’ 사업대상자 선정

- 타당성 검토 -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市)
- 특례사업 공모 - 언론 매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발송(→토지소유자)
-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사업대상자 선정

[표-209] 특례사업(제안/공모)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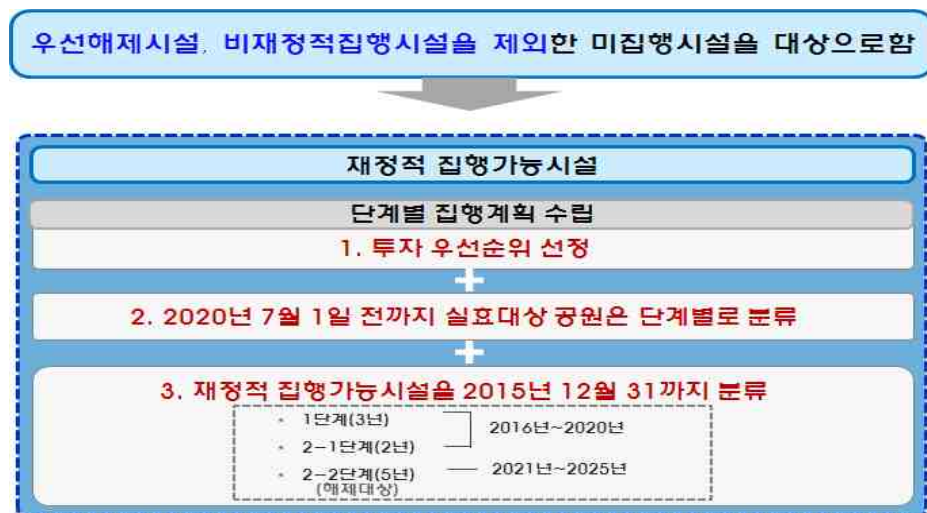
아. 특례사업의 관리 및 운영

- 사업이행의 보증
 -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
 - 협약에 정한 사유발생 시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시
- 협약의 변경
 - 사업기간의 변경, 공원시설,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 시장·군수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부채납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절차를 이행

6) 재정적집행시설

가. 재정적집행시설 절차

- 인천광역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우선해제시설, 비재정적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을 시·군·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위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81점 이상은 1단계 (3년), 76~80점은 2-1단계(2년), 70~75점은 2-2단계(5년)로 분류



[그림-308] 재정적집행시설 절차도

나. 단계별 공원 조성계획

- 장기미집행 공원 129개소 중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공원 39개소와 비재정적집행시설 12개소를 제외한 공원 78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2020년 실효대상 시설은 2-2단계에 분류될 경우 실효되어 집행이 불가 할 수 있어 우선적 시행이 필요하고, 2-2단계 총액은 1단계, 2-1단계 총액의 1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음
- 인천광역시의 단계별 공원 조성계획은 1단계 공원 15개소, 2-1단계 공원 10개소, 2-2단계 공원 53개소로 총 78개소 11,338,260.1㎡로 계획

[표-210] 단계별 공원조성계획-1

구분		개소	면적(㎡)	비고
재정적 집행 시설	2016년~2020년	1단계(3년)	15	4,450,625.1
		2-1단계(2년)	10	265,533.0
	소계		25	4,716,158.1
	2021년~2025년	2-2단계(5년)	53	6,622,102.0
	소계		53	6,622,102.0
합계		78	11,338,260.1	

[표-211] 단계별 공원조성계획-2

구분	합계		1 단계		2-1단계		2-2 단계	
			2016-2018		2019-2020		2021-2025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78	11,338,260.1	15	4,450,625.1	10	265,533.0	53	6,622,102.0
소공원	19	15,040.0	1	517.0	1	4,178.0	17	10,345.0
어린이공원	13	58,463.3	2	5,568.0	3	33,208.0	8	19,687.3
근린공원	39	9,637,101.8	8	3,486,109.1	5	205,650.0	26	5,945,341.7
묘지공원	1	627,000.0	-	-	-	-	1	627,000.0
체육공원	1	22,497.0	-	-	1	22,497.0	-	-
역사공원	2	23,992.0	1	4,264.0	-	-	1	19,728.0
산림휴양	1	338,798.0	1	338,798.0	-	-	-	-
도시생태	2	615,369.0	2	615,369.0	-	-	-	-

[표-212] 단계별 집행 대상(시 집행)

자치구	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고시일	면적(㎡)	시설종류	분류결과
78개소		합계			11,370,604.9		
연수구	1	장미공원	연수동 산61-1일원	고시13 (44.1.8)	102,443.0	근린공원	1단계
연수구	2	청량공원	청학동 산55-34일원	고시13 (44.1.8)	338,798.0	산림휴양공원	1단계
서구	3	연희공원	연희동 산127	-	1,032,185.0	근린공원	1단계
남동구	4	도룡농공원	만수동 6-2일원	건고2701 (66.8.31)	407,880.0	도시생태공원	1단계
남동구	5	소래습지생태 공원	논현동 1-1일원	인고193 (00.10.31)	1,561,248.0	근린공원	1단계
부평구	6	함봉공원	십정동 산2-2	고시13 (44.1.8)	151,089.3	근린공원	1단계
계양구	7	계양공원	계산동 산52-1	인고267 (44.1.8)	351,321.8	근린공원	1단계
중구	8	월미공원	북성동1가월미산	건고344 (70.7.20)	590,614.0	근린공원	2-2단계
남구	9	문학공원	학익동 산68-2일원	고시13 (44.1.8)	218,813.0	근린공원	2-2단계
연수구	10	농원공원	동춘동 산9-4일원	고시13 (44.1.8)	46,291.0	근린공원	2-2단계
연수구	11	학나래공원	선학동 325-5일원	고시13 (44.1.8)	47,681.0	근린공원	2-2단계
연수구	12	청능공원	동춘동 산2일원	고시13 (44.1.8)	21,753.0	근린공원	2-2단계
연수구	13	청술공원	청학동 22-1일원	고시13 (44.1.8)	30,436.0	근린공원	2-2단계
연수구	14	사모지공원	연수동 산56-5일원	고시13 (44.1.8)	62,760.0	근린공원	2-2단계
연수구	15	동곡공원	동춘동 56일원	고시13 (44.1.8)	6,247.0	어린이공원	2-2단계
남동구	16	석촌공원	간석동 산15-1일원	건고2701 (66.8.31)	53,577.0	근린공원	2-2단계
남동구	17	인천대공원	장수동 산78일원	건고344 (70.7.20)	2,665,463.9	근린공원	2-2단계
남동구	18	산밭말공원	만수동 산1-2일원	건고2701 (66.8.31)	29,545.0	근린공원	2-2단계
남동구	19	새말공원	간석동 산36-7일원	건고2701 (66.8.31)	4,144.0	소공원	2-2단계
부평구	20	원적산공원	청천동 71-12	고시13 (44.1.8)	226,692.0	근린공원	2-2단계
부평구	21	신촌공원	산곡동 산20	건고427(86.9.29)	428,985.0	근린공원	2-2단계
계양구	22	아나지공원	효성동 산89	인고267 (44.1.8)	24,684.0	근린공원	2-2단계
계양구	23	새벌공원	효성동 산74-1	인고267 (44.1.8)	121,633.0	근린공원	2-2단계
강화군	24	북산공원	관청리 산39일원	건고380(72.8.23)	19,728.0	역사공원	2-2단계
서구	25	장고개공원	가좌동 산150-3	건고344 (70.7.20)	25,399.8	근린공원	2-2단계
서구	26	돌록골공원	가정동 산21-1	고시13(44.1.8)	83,419.0	근린공원	2-2단계
서구	27	검단묘지공원	당하동 산178-1	인고191 (04.10.25)	627,000.0	묘지공원	2-2단계

6장 부문별 계획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표-212 계속] 단계별 집행 대상(구·군 집행)

자치구	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고시일	면적(㎡)	시설종류	분류결과
남동구	28	박촌공원	만수동 810-3	인고244 (98.12.30)	3,468.0	어린이공원	1단계
남동구	29	운연공원	운연동 144-6	인고249 (10.8.30)	2,100.0	어린이공원	1단계
남동구	30	만의골지구	장수동 45-10	인고286 (12.11.26)	517.0	소공원	1단계
남동구	31	고잔공원	고잔동 산3-1일원	건고2701 (66.8.31)	202,824.0	근린공원	1단계
남동구	32	장도포대	논현동111-13일원	인고225 (11.09.14)	4,264	역사공원	1단계
부평구	33	갈산공원	갈산동 130-1	고시13 (44.1.8)	51,300.0	근린공원	1단계
부평구	34	맑은내공원	청천동 68-17	고시13 (44.1.8)	207,489.0	도시생태공원	1단계
계양구	35	갈개공원	작정동 산2	건고219(85.5.16)	33,698.0	근린공원	1단계
남동구	36	경신지구	수산동 72-8일원	인고98 (06.6.5)	1,500.0	어린이공원	2-1단계
남동구	37	도림1지구	도림동 104일원	인고98 (06.6.5)	1,500.0	어린이공원	2-1단계
남동구	38	소래	논현동 66-18일원	인고225 (11.09.14)	4,178	소공원	2-1단계
부평구	39	백운공원	십정동 186-419	건고427(86.9.29)	61,582.0	근린공원	2-1단계
계양구	40	굴현공원	굴현동 산1-10	인고267 (08.11.24)	33,003.0	근린공원	2-1단계
서구	41	능내공원	마전동 산144	인고218 (95.11.17)	77,340.0	근린공원	2-1단계
서구	42	현무공원	마전동 686-130	인고4 (96.1.10)	22,497.0	체육공원	2-1단계
중구	43	소월미공원	북성동	건고344 (70.7.20)	4,154.0	근린공원	2-1단계
남구	44	★용현공원	용현동 450일원	건고45 (71.1.29)	29,571.0	근린공원	2-1단계
연수구	45	선학공원	선학동 237-1일원	건고2701 (66.8.31)	30,208.0	어린이공원	2-1단계
부평구	46	십정공원	십정동 산50	건고75 (75.5.16)	233,253.0	근린공원	2-2단계
부평구	47	십정동집단 취락지구	십정동 64-3	인고116 (06.7.18)	13,965.0	근린공원	2-2단계
부평구	48	경찰종합학교 근린공원	부평동 산11-4	인고206 (09.6.29)	10,937.0	근린공원	2-2단계
부평구	49	십정동집단 취락지구	십정동 산90	인고116 (06.7.18)	1,600.0	어린이공원	2-2단계
부평구	50	한울공원	부평동 406-5	인고49 (04.11.15)	3,840.0	어린이공원	2-2단계
계양구	51	이촌공원	효성동 산87	건고427 (86.9.24)	487,000.0	근린공원	2-2단계
계양구	52	이촌공원	효성동 산18	인고267 (44.1.8)	125,529.0	근린공원	2-2단계
계양구	53	가현공원	작전동 765	계양01(09.1.12))	11,220.0	근린공원	2-2단계
계양구	54	이화지구	이화동 산29-1	인고116(06.7.18)	1,500.0	어린이공원	2-2단계

※남구 용현공원은 국가보훈 인천병원의 건립으로 해제(2015.12.28)

[표-212 계속] 단계별 집행 대상(구·군 집행)

자치구	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고시일	면적(㎡)	시설종류	분류결과
계양구	55	선주지지구	선주지동 200	인고98(06.6.5)	2,000.0	어린이공원	2-2단계
계양구	56	상야지구1	하야동 64-49	인고116(06.7.18)	1,500.0	어린이공원	2-2단계
계양구	57	상야지구2	상야동 12-12	인고116(06.7.18)	1,500.0	어린이공원	2-2단계
계양구	58	상야지구3	상야동 526-5	인고286(12.11.26)	1,500.0	어린이공원	2-2단계
계양구	59	소공원5	독실동 116-4	인고78 (10.3.22)	156.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0	소공원6	오류동 119-1	인고78 (10.3.22)	354.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1	소공원7	오류동 81-7	인고78 (10.3.22)	176.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2	소공원8	오류동 113-7	인고78 (10.3.22)	380.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3	소공원9	오류동 113-12	인고78 (10.3.22)	189.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4	소공원10	이화동 122-35	인고78 (10.3.22)	826.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5	소공원11	목상동 101	인고78 (10.3.22)	190.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6	소공원12	다남동 68-2	인고78 (10.3.22)	300.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7	소공원13	다남동 112-14	인고78 (10.3.22)	329.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8	소공원14	다남동 101-7	인고78 (10.3.22)	547.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69	소공원15	하야동 64-29	인고78 (10.3.22)	358.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70	소공원16	방축동 54	인고78 (10.3.22)	230.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71	소공원17	박촌동 225-2	인고78 (10.3.22)	320.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72	소공원18	박촌동 287-36	인고78 (10.3.22)	137.0	소공원	2-2단계
계양구	73	소공원19	이화동 23-19	인고78 (10.3.22)	351.0	소공원	2-2단계
서구	74	원신공원	신현동 산34-1	건고2701 (66.8.31)	178,531.0	근린공원	2-2단계
서구	75	금산공원	경서동 200-1	건고2701 (66.8.31)	80,660.0	근린공원	2-2단계
서구	76	금곡공원	금곡동 산194	경고463 (93.12.31)	30,000.0	근린공원	2-2단계
서구	77	검단15호공원	왕길동 산27-1	인고118 (98.6.12)	96,500.0	근린공원	2-2단계
서구	78	다락방지구소공원	석남동 322-32	인고286 (12.11.26)	1,358.0	소공원	2-2단계

7) 장기미집행공원정비 종합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천광역시 전체 지정된 공원 1,119개소 중 조성 완료된 공원 605개소, 우선해제공원 41개소, 재정적집행공원 78개소, 비재정적집행공원 중 타법사업 383개소(도시개발사업)과 민간특례사업 12개소를 포함하여 분류

[표-213] 공원 정비계획 변경 물량표

구분	총계	조성 완료	우선 해제시설	재정적 집행시설	비재정적 집행시설		비고
공원	1,119	605	41	78	395	타법 사업 : 383 민간특례사업 : 12	

8)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공원변경

가. 동춘공원

- 연수구에서 미래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2011 도시기본계획’상 공원부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지로 배수지 남측부지(군부대포함)를 편입을 요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연수구의 미래과학관 건립사업 취소로 당초 공원부지로 환원
- 송도배수지는 동춘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공원으로 존치
- 배수지 남측부지는 주변에 군부대 입지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 상실 및 도시기본계획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공원부지에서 제척
- 또한 동춘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추후 사업 추진 시 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에 대해 공원부지에서 제척

[표-214] 동춘공원변경 내역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춘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동춘동 산59-1	542,734	감)120,700	422,034	-미래과학관 폐지부지 편입 -송도배수지 공원으로 존치 -배수지남측부지(군부대일원)제척

※ 추후 민간공원 사업 추진 시 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 공원부지에서 제척



[그림-309] 동춘공원 변경도

나. 민간공원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 제척

- 비재정적집행시설 분류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12개소의 공원 선정
- 추후 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의 구성에 따라 기존의 공원구역에서 제척 필요. 남은 잔여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이 공원조성
- 12개소의 공원부지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 제척 예정 면적은 전체 548,900㎡임

[표-215]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 내역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검단중앙공원	근린공원	서구 왕길동 산14-1	605,733	감)179,000	426,733	비공원 시설 (시가화 예정지) 제척
무주골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선학동 산21-4	120,897	감)36,000	84,897	
연희공원	근린공원	서구 연희동 산127	1,032,185	감)54,000	978,185	
관교공원	근린공원	남구 관교동 산102	490,513	감)22,000	468,513	
동춘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동춘동 산59-1	422,034	감)54,000	368,034	
십정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십정동 산50	233,253	감)43,600	189,653	
검단16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산15	137,800	감)30,000	107,800	
마전공원	근린공원	서구 마전동 산107-14	113,000	감)33,900	79,100	
송도2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옥련동 산22-1	60,000	감)18,000	42,000	
희망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부평동 산34-16	73,926	감)20,000	53,926	
검단17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산169	51,000	감)15,300	35,700	
전등공원	역사공원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산42	143,607	감)43,100	100,507	
합계			3,483,948	감)548,900	2,935,048	

다. 용현공원

- 기존의 용현공원 부지에 국가보훈 인천병원의 건립으로 인천 및 경기지역의 보훈대상자의 보훈통합 의료복지서비스를 수행, 그에 따라 용현공원(29,512㎡)을 해제

[표-216] 용현공원변경 내역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현 공원	근린 공원	남구 용현동 450-5 번지	29,512	감)29,512	-	-보훈병원 입지에 따른 공원해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69호, 2015.12.28)

3. 공원확충계획

1) 기본방향

- 시민 생활환경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공원 확충 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선집행이 우선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공원시설결정은 지양
-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
-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최대한 도시공원 면적 확보
- 상위계획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원 확충
- 인천지역 기업들의 기업공원 조성으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및 기업의 홍보, 지역 환경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 숲을 조성해 녹색도시 조성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공원 소외지역에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조사 분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배수지, 유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공원면적 확충
- 구도심의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여 녹의 확충
- 쉼터로 조성된 공간 중 · 장기적인 관리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도심의 작은 휴식공간을 장기적으로 지정 및 관리
- 인천광역시의 육지지역의 천연기념물, 인천시기념물, 큰 나무 등을 대상을 일정규모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의 쉼터 마련 및 보호수의 관리
-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하고 그에 따른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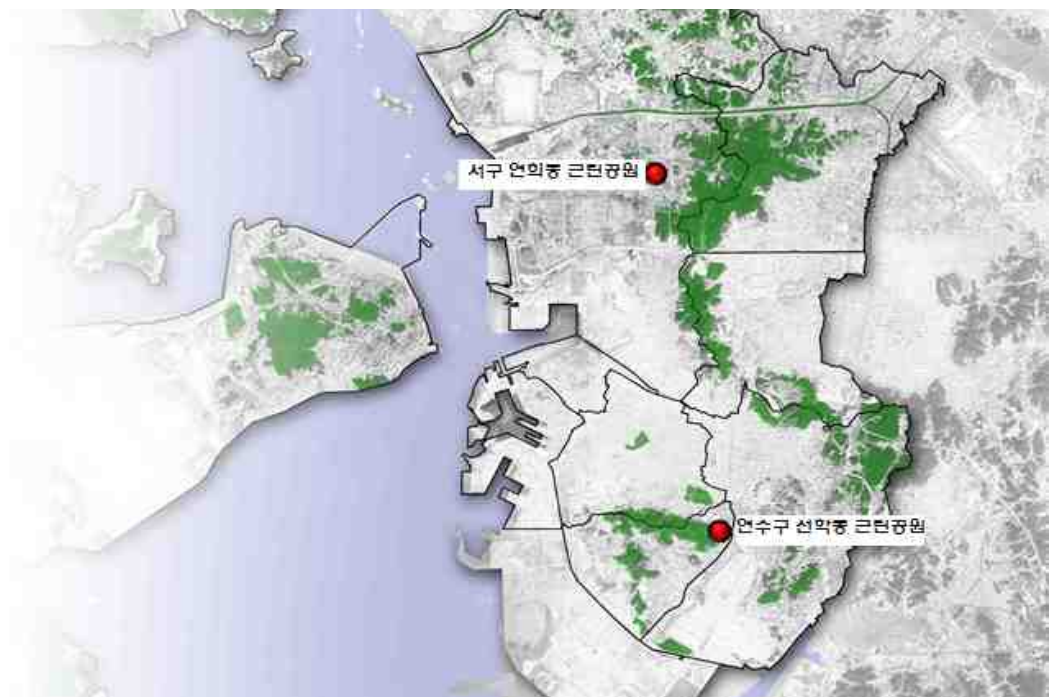
2)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 GB훼손지 공원 확충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훼손지 복구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훼손된 토지 복구 및 공원 확충
- 경명근린공원은 23,541㎡(47억원), 선학근린공원은 1단계18,074㎡(36억원), 2단계 32,283(70억원)으로 계획

[표-217]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 GB훼손지 공원 확충

구분	경명근린공원	선학근린공원	
위치	인천광역시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연구수 선학동 210번지 일원	
면적(㎡)	23,541	18,074(1단계)	50,357
		32,283(2단계)	
사업비	47억원	36억원(1단계)	106억원
		70억원(2단계)	
사업 대상지			

※ 사업비-토지보상비 제외



[그림-310]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 GB훼손지 공원 확충 위치도

3)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공원신설

가. 현황분석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표-218] 도시공원·녹지 확보규정

구분	근거규정	내용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제14조)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계획 6.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종합개발계획 8. 주거, 상업,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 조성하는 개발계획 9. 그 밖의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시행령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3.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5만㎡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 등 6.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1호에서 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19개소,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130개소가 진행 중임 (2015년 말 기준)

[표-219] 인천광역시 각종 개발사업

구분	사업수	규모(㎞ ²)	비고
합계	19	14.36	
신규 도시개발	소계	19	7.31
	도시개발	19	7.31
도시·주거환경정비	소계	130	7.05
	주거환경개선사업	7	0.65
	주택재개발사업	72	5.05
	주택재건축사업	25	0.59
	도시환경정비사업	11	0.37
주거환경관리사업	15	0.39	

나. 확충세부계획

- 진행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중 공원녹지로 계획되어진 면적은 1,014,245.4㎡으로 도시개발사업 661,741.1㎡, 주거환경개선사업 32,749.5㎡, 주택재개발사업 252,625.8㎡ 주택재건축사업 18,271.4㎡, 도시환경정비사업 18,271.4㎡, 주거환경관리사업 19,522.3㎡가 확보 됨

[표-220] 각종개발사업으로 도시공원 확보 면적

구 분		개소	사업면적(㎡)	공원녹지 확충면적(㎡)	비고
계		149	14,356,395.8	1,014,245.4	
도시개발사업	소 계	19	7,306,309.8	661,741.1	
	청학지구	1	25,226.8	1,261.3	
	동춘1구역	1	407,913.0	36,712.2	
	굴현구역	1	182,064.0	9,103.2	
	경서2구역	1	34,025.0	1,701.3	
	동춘2구역	1	234,235.0	11,711.8	
	송도대우자관	1	538,600.0	48,474.0	
	경서3구역	1	368,085.0	33,127.7	
	문학구역	1	81,250.0	4,062.5	
	용현·학익2-1블록	1	422,965.0	38,066.9	
	용현·학익1블럭	1	1561,799.0	187,415.9	
	송도역세권구역	1	288,126.0	14,406.3	
	검단3구역	1	524,562.0	47,210.6	
	방축구역	1	85,188.0	4,259.4	
	효성구역	1	434,989.0	39,149.0	
	한들구역	1	563,448.0	50,710.3	
	검단(중앙대)캠퍼스타운	1	995,781.0	89,620.3	
	검단5구역	1	421,148.0	37,903.3	
	계산종합의료단지	1	21,390.0	1,069.5	
	고잔2구역	1	115,515.0	5,775.8	
소 계	7	654,989.0	32,749.5		
주거환경개선사업	7	654,989	32,749.5		
소 계	72	5,052,516.0	252,625.8		
주택재개발사업	72	5,052,516.0	252,625.8		
소 계	25	586,708.0	29,335.4		
주택재건축사업	25	586,708.0	29,335.4		
소 계	11	365,427.0	18,271.4		
도시환경정비사업	11	365,427.0	18,271.4		
소 계	15	390,446.0	19,522.3		
주거환경관리사업	15	390,446.0	19,5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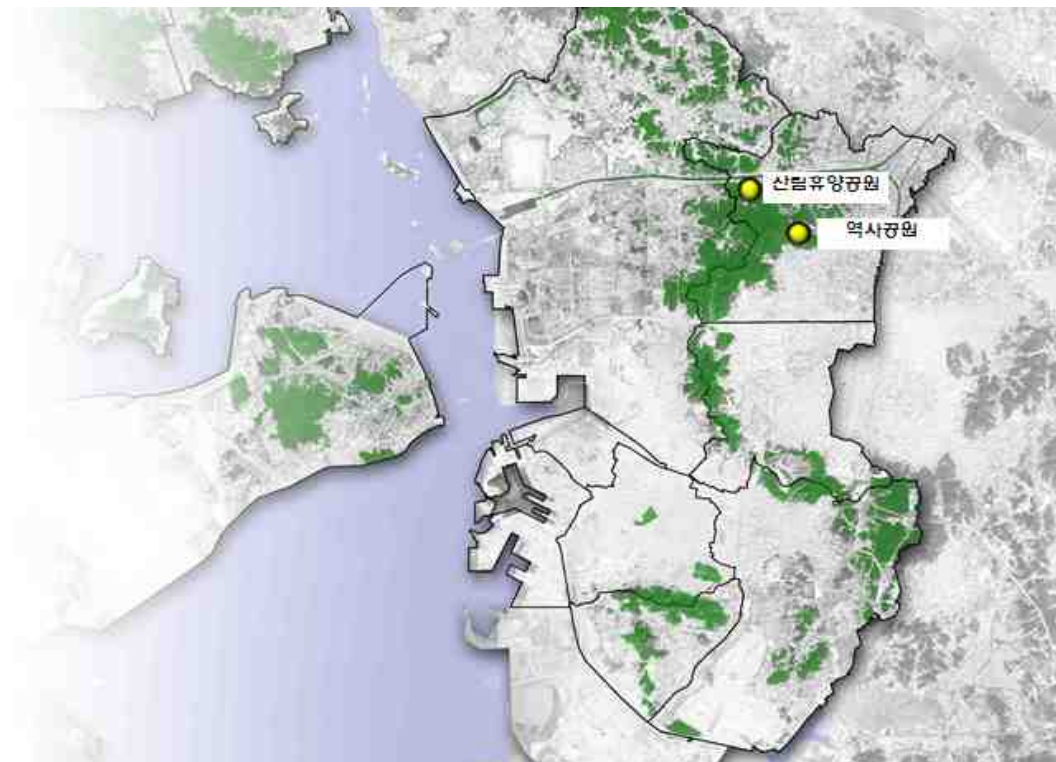
※공원녹지 확충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참조

4) 계양산 일원 공원확충

- 상위계획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원확충
-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폐지한 뒤 계양산에 산림휴양공원과 역사공원을 조성
- 산림휴양공원에는 생태보전 및 생태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시설을 짓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역사공원에는 계양산성 복원 이후 역사탐방로와 역사체험길, 역사체험교육장 등이 조성
-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은 315,000㎡(350억), 계양역사공원은 249,060㎡(550억원)로 계획

[표-221] 계양산 일원 공원확충

구분	산림휴양공원	역사공원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산41일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산48일원
면적(㎡)	315,000	249,060
사업비	350억원	550억원
사업 대상지		



[그림-311] 계양산 일원 공원확충 위치도

5) 민간기업, 기업공원 확충




가. 기본방향

- 공원조성 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기업들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울산 대공원의 경우 SK가 약1,0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후, 지역 내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되었으며, 대공원 내 SK광장을 조성하여 브랜드 네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에도 지역 기반의 기업이나 시와 관련 있는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나. 기업공원 조성사례

- 울산대공원은 1986년부터 대공원 조성을 추진해 오던 울산광역시와 SK주식회사가 1995년 상호간 협의를 통해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울산광역시는 556억원을 투자하여 364만여㎡의 부지를 매입 제공, SK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총 102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 함.
- 창원기업사랑공원은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사례로 총 27개의 기업이 각 기업체 별 특색 있는 조경과 조형물 설치로 기업홍보와 사회 환원, 시민 만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옴
- 광양기업공원은 시와 “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상지 발굴과 기업의 설득을 통해 현재까지 24개소의 중·소규모의 기업공원을 조성하였고 현재 진행형인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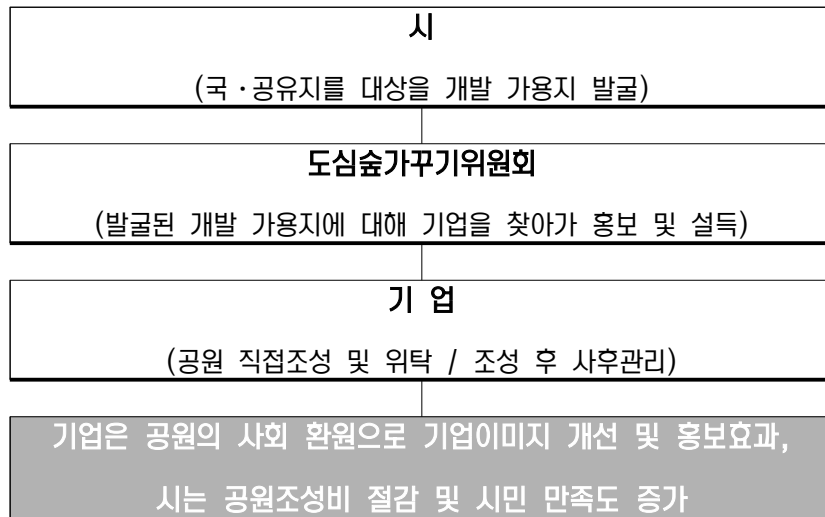
[표-222] 기업공원 조성사례

공원명	위 치	내 용	비 고
울산대공원	울산광역시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기획하던 SK기업이 10년 동안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조성 후 시에 기부한 대규모 공원	
창원기업사랑공원	창원시	1개의 기업공원 내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부분적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기업홍보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광양기업공원	광양시	광양시에는 24개소의 중·소규모의 기업공원이 있으며, 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가 기업공원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렇게 설립된 기업공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 성장의 시작점이 되었음

다. 기업공원 추진절차

- 광양시 기업공원의 추진사례로 기업공원의 추진절차를 제시
- 광양시의 “도심숲가꾸기위원회” 처럼 기업을 설득할 수가 있는 주체가 필요
- 광양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광역시도 기업공원에 대한 첫걸음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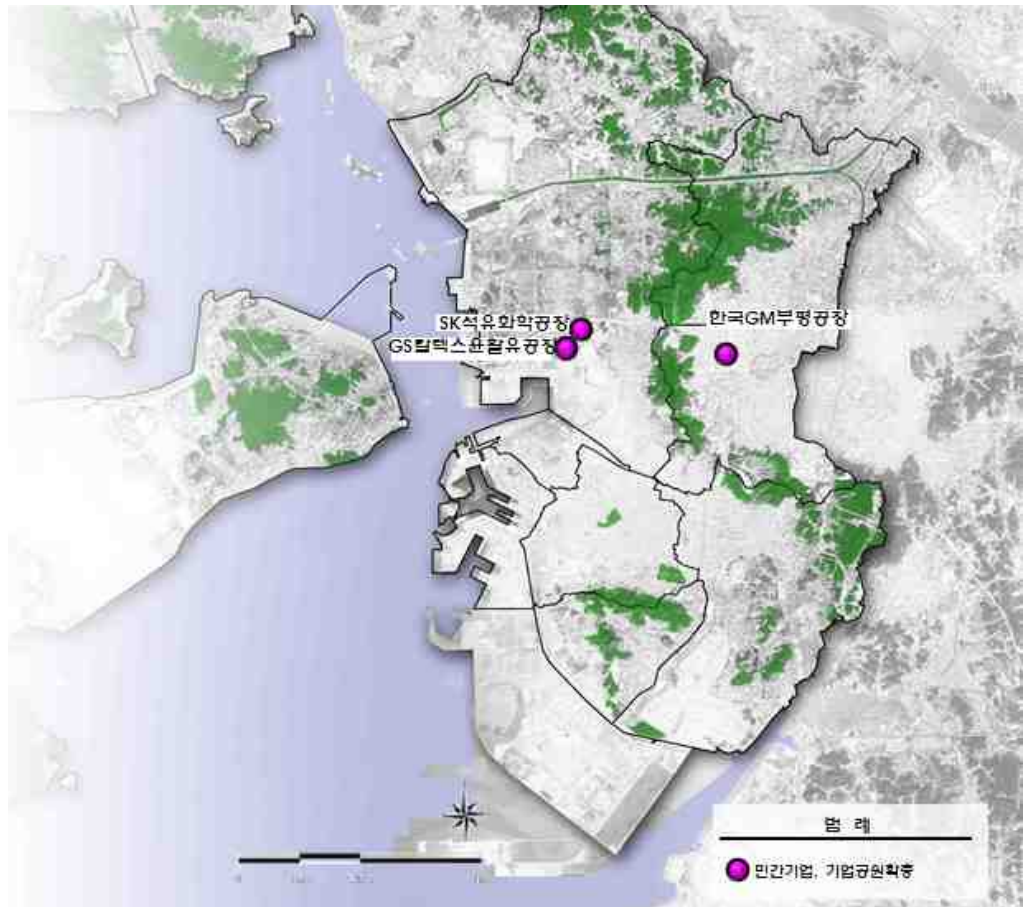
[그림-312] 광양시 기업공원 추진절차도

라. 인천시 주요기업 및 기업공원 확충

- 중·소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는 위의 절차를 이행하고 대규모의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인천 시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인천시에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는 SK석유화학공장, GS칼텍스윤활유공장, 한국GM부평공장 등이 해당됨
- 각각의 기업이 기업 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 작게는 1만㎡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 발점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표-223] 인천시 주요기업 및 기업공원 확충

구분	면적(천㎡)	내용	비고
합계	30	3개소	
SK석유화학공장	10	근린공원	서구 원창동 일원
GS칼텍스윤활유공장	10	근린공원	서구 원창동 일원
한국GM부평공장	10	근린공원	부평구 청천동 일원



[그림-313] 민간기업, 기업공원 확충계획도

6) 국가공원 확충(용산공원 사례검토)

가. 개요

- 대상 : 용산미군기지→용산공원
- 면적 : 243만㎡
 - 용산공원 정비구역 : 1,156만㎡,
 - 용산공원 조성지구 : 243만㎡, 복합시설 조성지구 : 18만㎡,
 - 공원주변지역 : 895만㎡
- 법적근거 :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2007.7제정 공포)
- 성격
 - 최초의 국가수립 도시공원으로 수도 서울의 생태·환경성을 강화하는 녹색성장계획
 - 용산 국가공원을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역사 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제공

나. 추진경위

○ 배경

- 2004년 한·미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타결로 118만평 반환 결정
- 용산 반환부지의 역사성, 상징성, 입지 중요성 및 조성재원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명소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표-224] 추진경위

일시	내용
'03.5	한·미정상 용산기지 이전합의
'04.2~' 05.7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 설치
'04.12	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타결('04.7) 및 국회 비준
'05.10~' 07.12	『용산민족·역사공원건설추진위원회』 설치
'05.12	『용산공원화를 위한 국내심포지엄』 개최
'06.8	『용산기지 국가공원화 선포식』 개최
'06.8	『용산공원 국민공모전(공원명칭, 구상)』 실시
'07.6	『용산공원 국제심포지엄 (용산공원 미래상)』 개최
'07.7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공포
'08.6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08.6~' 09.10	기초조사 및 아이디어공모
'11.2~9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 관계부처 협의
'11.5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221호)
'11.11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559호)
'11.11~' 12.4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12.10~현재	용산공원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착수

< 사업추진절차 >



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고시

용산공원 정비구역	면적(만평)
합계	1,156만㎡ (349.4)
용산공원 조성지구	243만㎡ (73)
복합시설 조성지구	18만㎡ (5.4)
공원 주변지역	895만㎡ (271)

[표-225] 토지이용계획면적표



[그림-314] 용산구역정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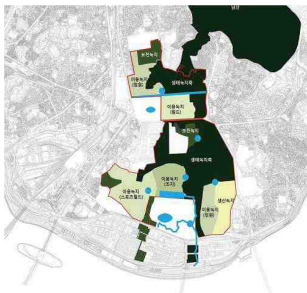
라. 용산공원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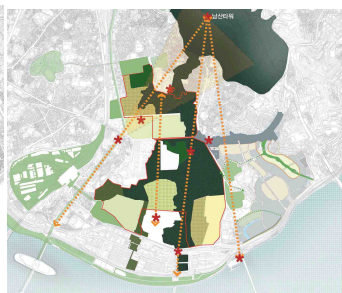
[그림-315] 용산공원 기본구상

마. 용산공원 계획

- 녹지와 수 체계 : 남산-용산공원 한강을 연결하는 구릉지 지형과 남북 녹지축을 복원, 공원의 녹지가 주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
- 경관 : 숲, 들, 호, 내, 습지로 이루어진 한국적인 대표 경관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의 특성을 회복하여 국가적 지형적 정체성을 재현
- 공간구조와 시설 : 여섯 개의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되 유기적으로 연계
- 교통과 동선체계 : 대중교통 및 보행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6개의 출입구 설정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으로 순환동선체계 구축



[그림-316] 녹지와 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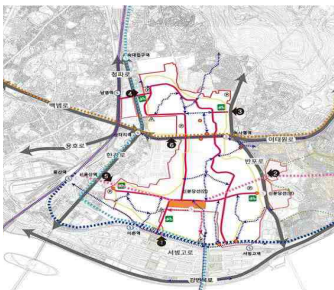
[그림-317] 경관



[그림-320] 용산공원 종합계획도



[그림-318] 공간구조와 시설



[그림-319] 교통과 동선체계

바. 인천광역시 국가공원 대상(제안)

(1) 대상지 개요 (신촌공원)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20번지 일원
- 면적 : 428,985㎡
- 현황 : 한국군부대 이전지(가칭 ‘부영공원’), 대부분은 부평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이며, 2014년12월 두 지역을 포함한 대상지를 공원조성계획(신촌근린공원)을 수립
- 현재 산림청부지 도시 숲 조성추진협약이 진행 중이며 향후 토양오염정화사업 및 공원조성이 추진될 계획임

[표-226] 현재 사업추진일정

구분	내용
2013.6.24	• 부평미군부대 국유재산관리, 처분을 위한 협약 체결
2014.12~2016.12	• 부영공원지역 오염토양 정화 시행(국방부) • 부평미군부대 조기이전 추진
2014.12	• 공원조성계획 수립
2015~	• 산림청부지 도시숲 조성 추진 협의(산림청)
2016 이후	• 부평미군부대 이전, 토양오염정화사업 본격 추진
2017 이후	• 신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국제공모)
2019 이후	• 공원조성 추진

(2) 대상지 현황



[그림-321] 대상지 현황



[그림-322] 대상지 전경

(3) 기본구상

- 현 부평미군부대(Camp Market)이전 계획에 따라 인천의 심장부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여가공간 제공
- 장소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으며 인천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조성(근린공원 → 문화공원으로 변경)
- 개발방향



- 개발방향에서 제시한 역사성, 지속성, 친환경성을 컨셉으로 공간구분 시 주제를 부여
- 도시숲지구, 수경관지구, 가족단위 휴양지구, 운동·레크레이션지구, 역사문화지구, 시민참여정원지구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세부 시설을 계획



[그림-323] 기본구상안

6장 부문별 계획

(4) 기본계획

기본계획

오랜시간 고집될 땅에서
시간의 흔적(역사)를 만나다

- 미군부대 역사적 가치로 남아 있는 땅과 건물 등을 활용하여 생태연못, 역사사료관으로 조성
- 조병창시설부터 이어진 부지내 땅가름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과 역사성을 담도록 계획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필수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도심속 숲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자연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녹지공간 제공

생태습지 주변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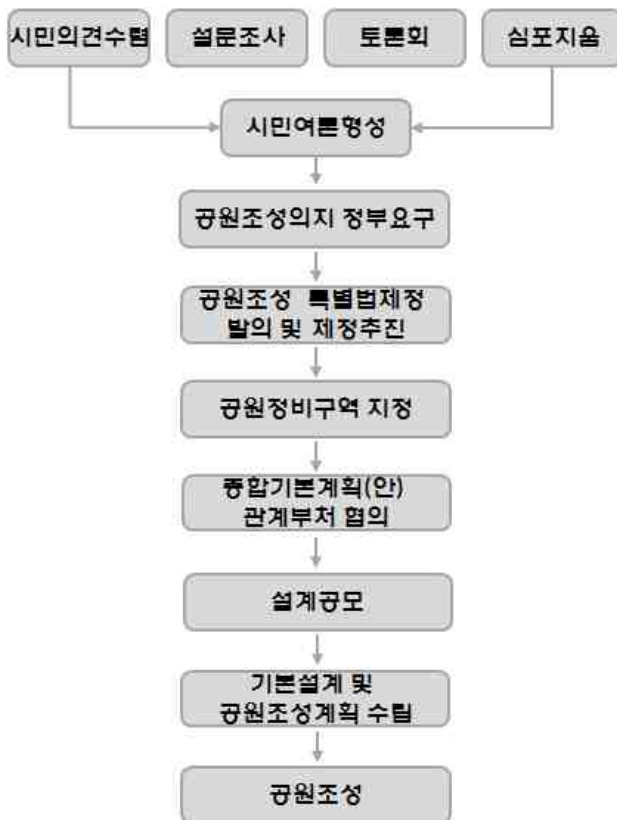


시민참여 정원



[그림-324] 기본계획안

(5) 국가공원화 추진 시 절차



⇒ 공공-민간 연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의견을 정부에 전달, 의지표명

⇒ 시의원 등 각층의 공원조성 발의 촉구

⇒ 공원조성 종합계획(안) 수립 및 협의

⇒ 관보 게재 및 홍보 활성화

⇒ 절차이행

⇒ 이용, 관리에 대한 향후방향 구상

<행정기관의 역할>

[그림-325] 인천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 추진을 위한 방안(제안)

7) 배수지, 우수지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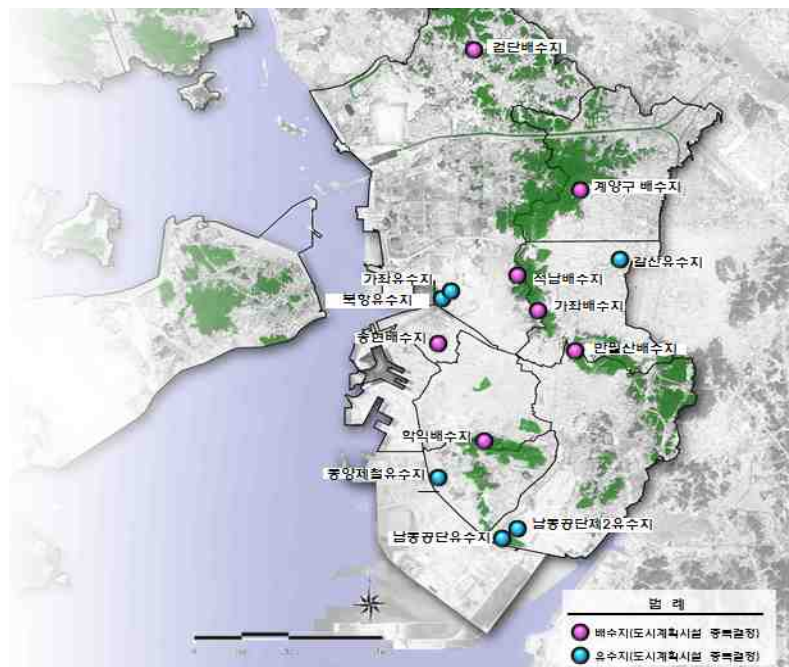
- 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배수지, 우수지 등을 도시공원으로 중복시설 결정
- 배수지는 상부에 조성되어있는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이용 체육공원 등으로 지정, 우수지는 생태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
- 시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부족한 도시의 1인당 공원녹지율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지정하여 관리
- 인천광역시의 주요 배수지 중 검단배수지, 계양구배수지, 석남배수지, 가좌배수지, 만월산배수지, 송현배수지, 학익 배수지 총7개소(76,000㎡)와 우수지는 가좌우수지, 북항 우수지, 갈산우수지, 동양체철우수지, 남동공단우수지, 남동공단제2우수지 6개소(1,512,000㎡)를 대상으로 검토

[표-227] 배수지, 우수지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구분	개소	면적(천㎡)	비고
합계	13	1,588	
배수지	7	76	
우수지	6	1,512	



[그림-326] 만월산배수지 [그림-327] 학익배수지 [그림-328] 남동공단우수지 [그림-329] 갈산우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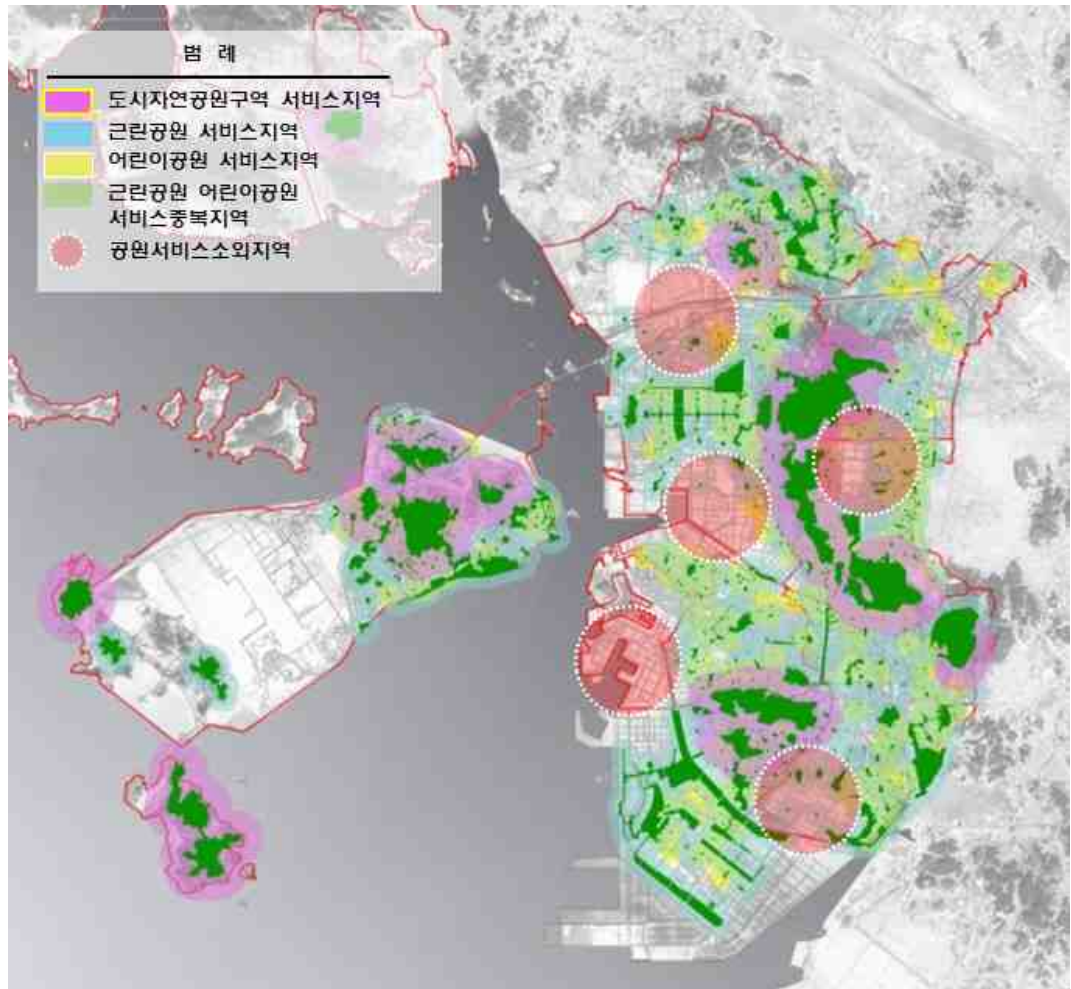


[그림-330] 배수지, 우수지 중복지정 대상지 위치도

8)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확충계획

가. 현황분석

- 기초조사에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서부일반 산업단지, 서구산업단지, 연안부두, 한국수출산업 제4차 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주변으로 분석
- 해당지역 중 일부를 중점녹화지구로 설정, 공장 이전지,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하여 5개소 99,000㎡로 계획하여 확충



[그림-331]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도

나. 계획방향

(1) 서부 일반산업단지

- 노후 된 산업단지 주변으로 경서2,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도 저하되어 있음
- 녹의 공간 확보로 지역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

(2) 서구 산업단지 일대

- 서구·동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공장밀집지역으로 도심 열섬화 및 녹지량 부족지역으로 파악됨
- 도시공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부분 사유지이므로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지역임. 서구 산업단지 중 일부를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공원 확충에 노력해야 함

(3) 중구 연안부두 일대

- 연안부두 일대는 연안부두길과 풍물의 거리, 여객터미널, 횡집센터 등이 위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지역임
- 해안변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이곳을 시점으로 연안부두 일대를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고 향후 공원 확충에 노력해야 함

(4) 한국수출산업 제4차 국가산업단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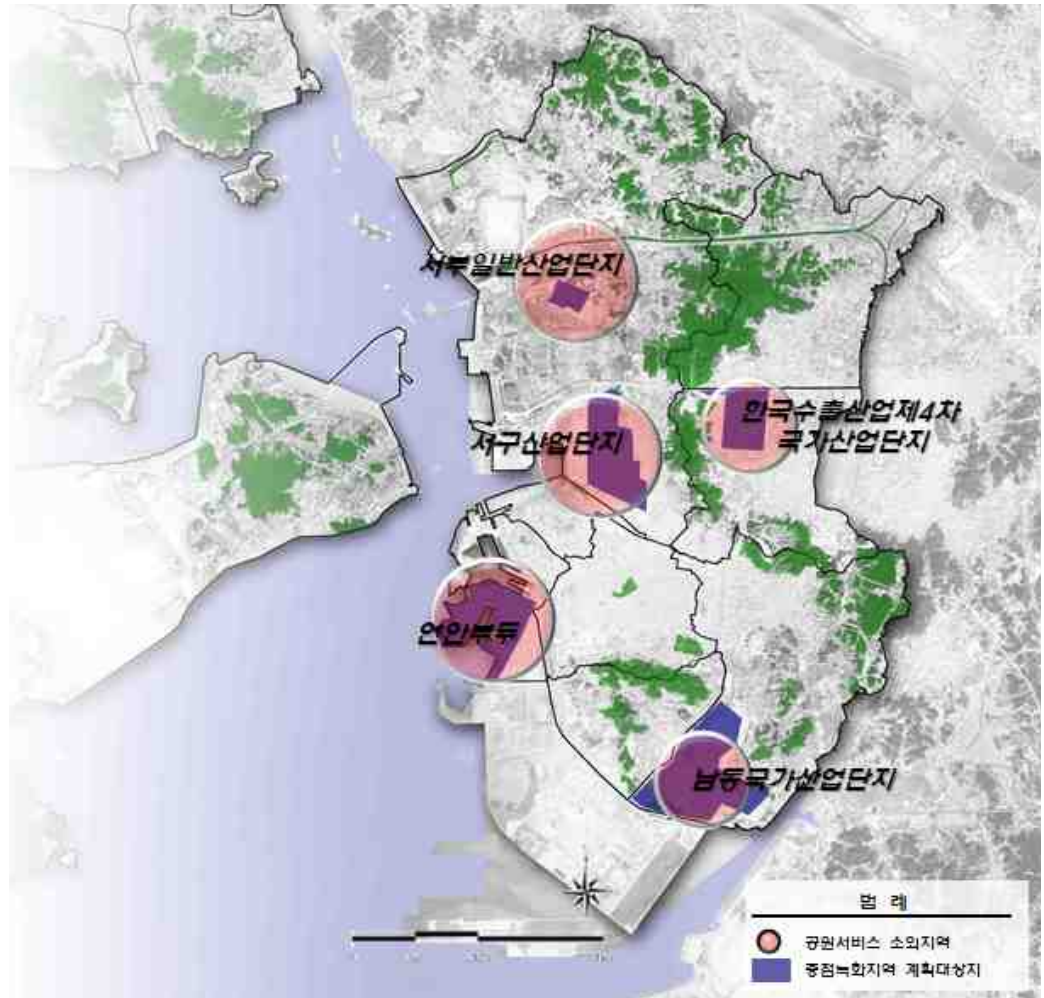
- 원적산 공원과 부평역 사이에 위치한 산업단지 지역으로 공원 확보 대상지가 없어 대우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추진하고 향후 도시공원 확충에 노력해야 함

(5)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

- 남동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입지한 공장의 수, 밀도가 높은 지역임
- 그에 반해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한 실정이나 그에 따른 공원을 확충해야 할 공간 없음. 자투리 가용지 및 공장이전지 대상을 찾아 곳곳에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 수립

[표-228] 중점녹화지구 공원확충계획표

구분	개소	면적(㎡)	비고
합계	5	99,000	
서부일반산업단지	1	19,800	
서구산업단지	1	19,800	
연안부두	1	19,800	
한국수출산업 제4차 국가산업단지	1	19,800	
남동국가산업단지	1	19,800	



[그림-332]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계획도

9) 쉽터,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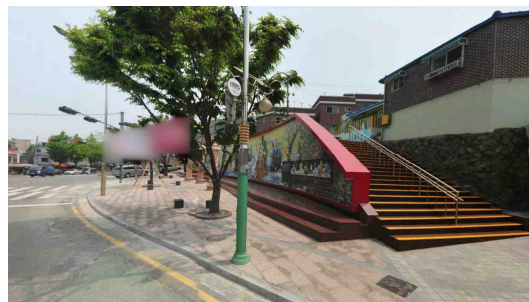
- 쉽터로 조성된 공간 중 · 장기적인 관리계획 차원의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 우선해제시설로 인해 감소된 1인당 공원지정면적 및 조성 면적을 쉽터를 소공원으로 지정하여 1인당 공원 지정면적, 조성면적의 증가
- 소공원은 별도의 면적제한이 없어 면적 설정을 인천시 조례 및 2009 조경설계 기준을 참조하여 유사한 시설의 설치면적 중 마을마당(250㎡)을 기준으로 선정, 250㎡ 이상인 쉽터를 대상으로 선정
- 인천광역시 전체 쉽터 420개소(215,656㎡)중 기준에 해당되는 195개소(191,476㎡)를 소공원 결정대상으로 분류

[표-229] 소공원 면적기준

구분		면적기준관련 내용	비고
인천시 건축조례 (제22조)	공개공지	공개공지 1개소 최소면적→45㎡	
2009 조정설계 기준	어귀마당	환경조형, 경관조명, 휴게시설 등 통합설계→ 30㎡	
	쌈지마당	휴게·체력단련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 50㎡	
	마을마당	휴게·놀이·운동 복합공간으로 설계 → 250㎡	소공원대상면적

[표-230] 쉼터, 소공원결정대상

기 관 별	연 도 별	쉼터현황		소공원 결정 대상		비 고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1997 ~ 2013	402	215,656	195	191,476	
중 구	1997 ~ 2013	38	19,684	15	12,149	
동 구	1997 ~ 2013	87	8,842	7	7,262	
남 구	1997 ~ 2012	80	36,260	35	30,866	
연 수 구	1997 ~ 2012	32	37,235	25	34,745	
남 동 구	1997 ~ 2012	29	16,086	20	14,854	
부 평 구	1997 ~ 2010	38	23,492	22	21,064	
계 양 구	1997 ~ 2012	31	18,010	23	16,547	
서 구	1997 ~ 2010	28	23,102	21	22,260	
강 화 군	1997 ~ 2012	39	32,945	27	31,729	



[그림-333] 만석고가 앞 쉼터



[그림-334] 쌍우물 쉼터



[그림-335] 옥련쉼터



[그림-336] 부평정수장 / 소방서 쉼터

10) 보호수 및 큰나무 소공원화

가. 보호수 및 큰나무 현황

- 인천광역시 육지지역의 보호수 및 큰나무는 천연기념물, 인천시기념물, 일반보호수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수와 흉고직경 50cm이상의 대경목을 포함하여 총 456주임
- 구별로는 중구 146주, 동구 47주, 남구 43주, 연수구 86주, 남동구 23주, 부평구 3주, 계양구 45주, 서구 55주임
- 천연기념물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제315호)고 인천시 기념물은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은행나무(인천시기념물 제11호)와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은행나무(인천시기념물 제12호) 임



[그림-337] 신현동 회화나무 [그림-338] 계산동 은행나무 [그림-339] 장수동 은행나무

나. 계획방향

- 인천광역시의 천연기념물, 인천시기념물, 큰나무 등 총 448개소(13,440㎡)를 대상으로 함
- 보호수의 위치상 주거 밀집지역이나 협소한 지역도 포함되므로 인천시 조례 및 2009 조경설계 기준을 참조하여 유사한 시설의 설치면적 중 최소기준인 어귀마당 30㎡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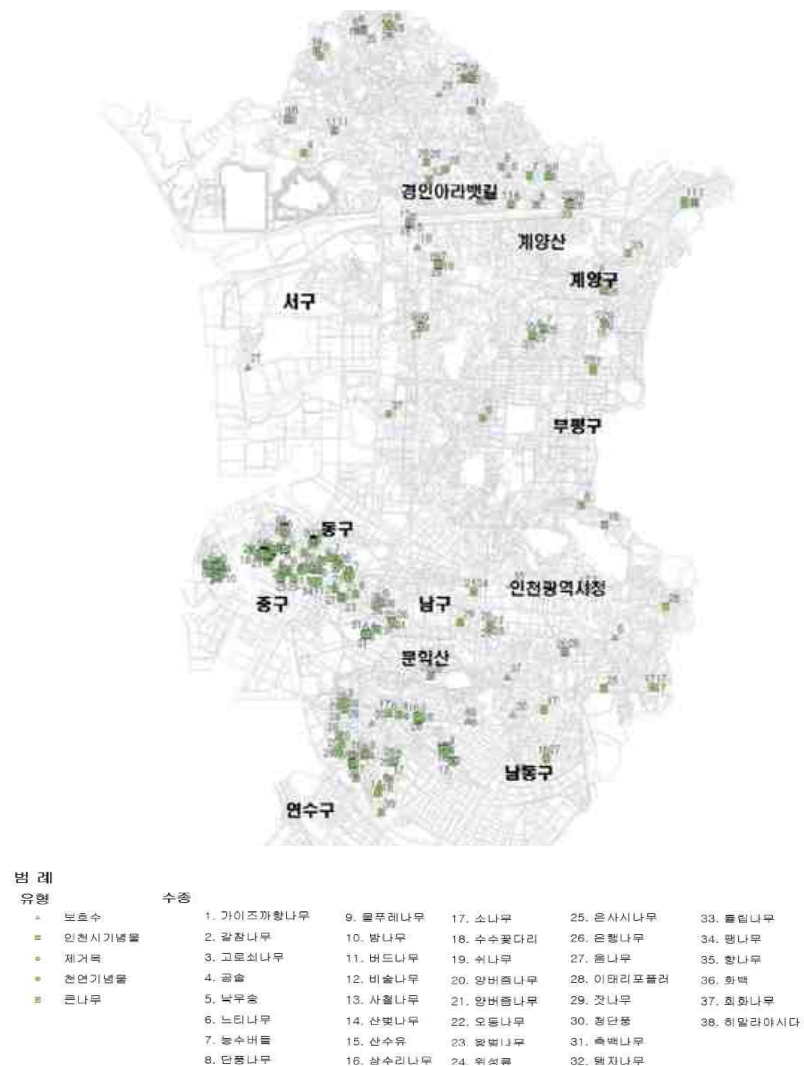
[표-231] 소공원 면적기준

구분		면적기준관련 내용	비고
인천시 건축조례 (제22조)	공개공지	공개공지 1개소 최소면적→45㎡	
2009 조경설계 기준	어귀마당	환경조형, 경관조명, 휴게시설 등 통합설계→ 30㎡	소공원대상면적
	쌈지마당	휴게·체력단련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 50㎡	
	마을마당	휴게·놀이·운동 복합공간으로 설계 → 250㎡	

[표-232] 보호수 및 큰나무 현황 및 대상

구분	합계		천연기념물		인천시기념물		보호수		큰 나무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전체	448	13,440	1	30	2	60	30	900	415	12,450
중구	146	4,380	-	-	-	-	-	-	146	4,380
동구	47	1,410	-	-	-	-	-	-	47	1,410
남구	43	1,290	-	-	-	-	1	30	42	1,260
연수구	86	2,580	-	-	-	-	8	240	78	2,340
남동구	23	690	-	-	1	30	5	150	17	510
부평구	3	90	-	-	-	-	-	-	3	90
계양구	45	1,350	-	-	1	30	2	60	42	1,260
서구	55	1,650	1	30	-	-	14	420	40	1,200

※ 참조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구축



[그림-340] 보호수 및 큰나무 분포현황도

11)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확보방안

가. 녹지활용계약의 정의

-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추진의 필요성

- 도심지 식생이 양호한 사유 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로 확보가능
- 활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 대한 혜택 및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권 제한 불만요인 해소
- 불특정의 시민들이 등산로로 무단훼손 이용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민원해결 가능

다. 추진대상

- 등산로,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이 설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산림 등
 - 시 전체 등산로 391개소 중 386개소 560km (조성공원 내 위치한 등산로 제외)
- 식생이나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

라. 주요내용

- 녹지활용계약 기간 : 5년 이상
- 토지소유자 지원방안 : 재산세 감면(100%)
- 토지매입 : 녹지활용계약을 10년이상 지속하는 경우 매입 추진

마.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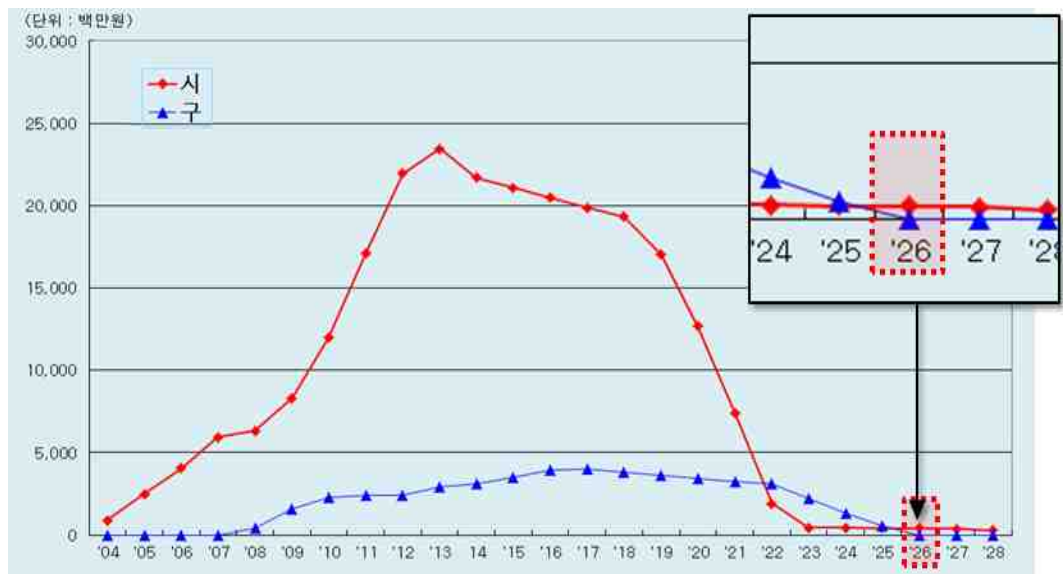
- 2016년 : 조례 정비(‘녹지활용계약’ 제도 명시)
- 2017년~ : 제도 홍보 및 소유자 신청시 검토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5년 이상
- 2026년~ : 토지매수(계약기간 10년 이상 지속시), 도시계획시설결정(산림휴양공원)

바. 소요자원(토지매입)

- 소요자원의 대상의 산림내 등산로 2m를 기준으로 등산로에 여유폭을 더하여 자원 산출
- 토지 매입단가는 대상 시 전체 등산로의 평균공시지가 m^2 당 27,000원으로 산정
- 도로법상 일반국도 접도구역 적용, 도로경계선 기준 좌·우 4m
 - 등산로 2m + 도로경계선 좌 4m + 도로경계선 우 4m = 총10m
- 소요자원 = 560km(인천시 등산로 길이) * 10m(등산로 확폭 면적)
 - = 5,600,000 m^2
 - = 5,600,000 m^2 * 27,000원/ m^2 = 약1,512억원
- 전체 소요자원은 약1,512억원으로 10년간 매입시 약150억원/년 확보

사. 제원확보방안

- 시 채무전망
 - 채무비율 :('15년) 36.2% →('19년) 27.6%→('21) 23.3%→('2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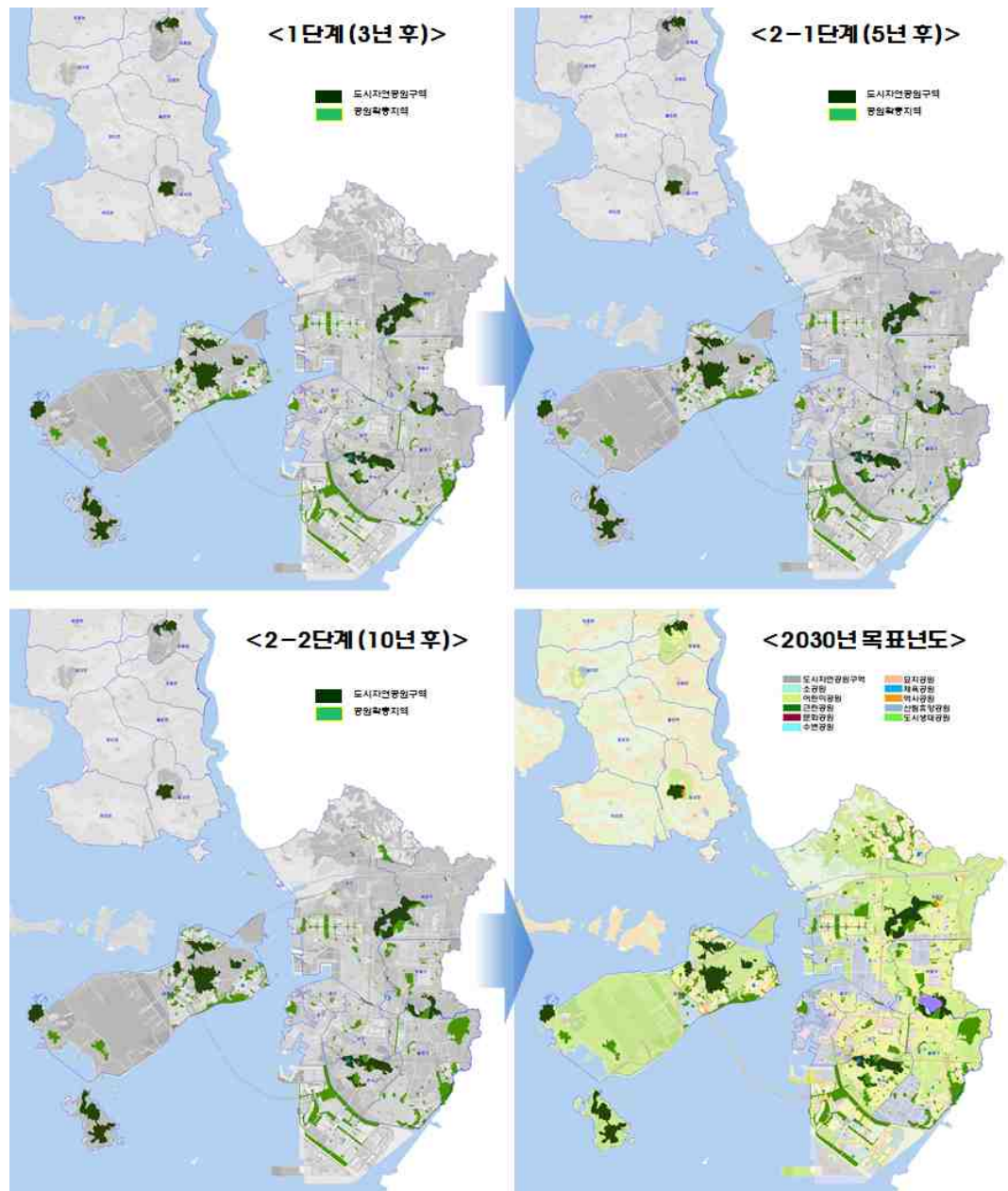


[그림-341] 공원녹지 지방채상환 그래프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한도초과로 지방채 발행 중단 (2015년~2018년)
- 2026년 녹지활용계약 토지 매수시기와 시 채무비율이 줄어들고 공원녹지분야 지방채 상환이 마무리 되는 시기와 일치
- 2026년부터 매년 약500억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단계별 매입 추진

4. 공원조성 계획

- 목표년도(2030년)까지 도시공원 정비 및 확충계획을 통해 공원체계를 확립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우선해제, 재정적집행, 비재정집행시설로의 구분을 통한 단계별 계획, 실현가능한 공원확충 계획 마련
- 구)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계획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목표년도(2030년)까지 공원조성면적 27,228천㎡를 확보



[그림-342] 도시공원 확충계획도

5. 공원배치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인 검단중앙공원은 민간공원 개발 후 근린공원으로 변경
- 2015년 공원 1,119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및 재정적집행시설 중 실효가능성이 높은 일부 공원에해제 2020년에 38개소(우선해제시설 41개소 중 3개소가 계획수립 과정 중 해제/도림3지구공원, 청원새싹공원, 용현공원)가 감소하여 1,081개소이고 2020년 이후 236개소를 확충하여 2030년에는 1,317개소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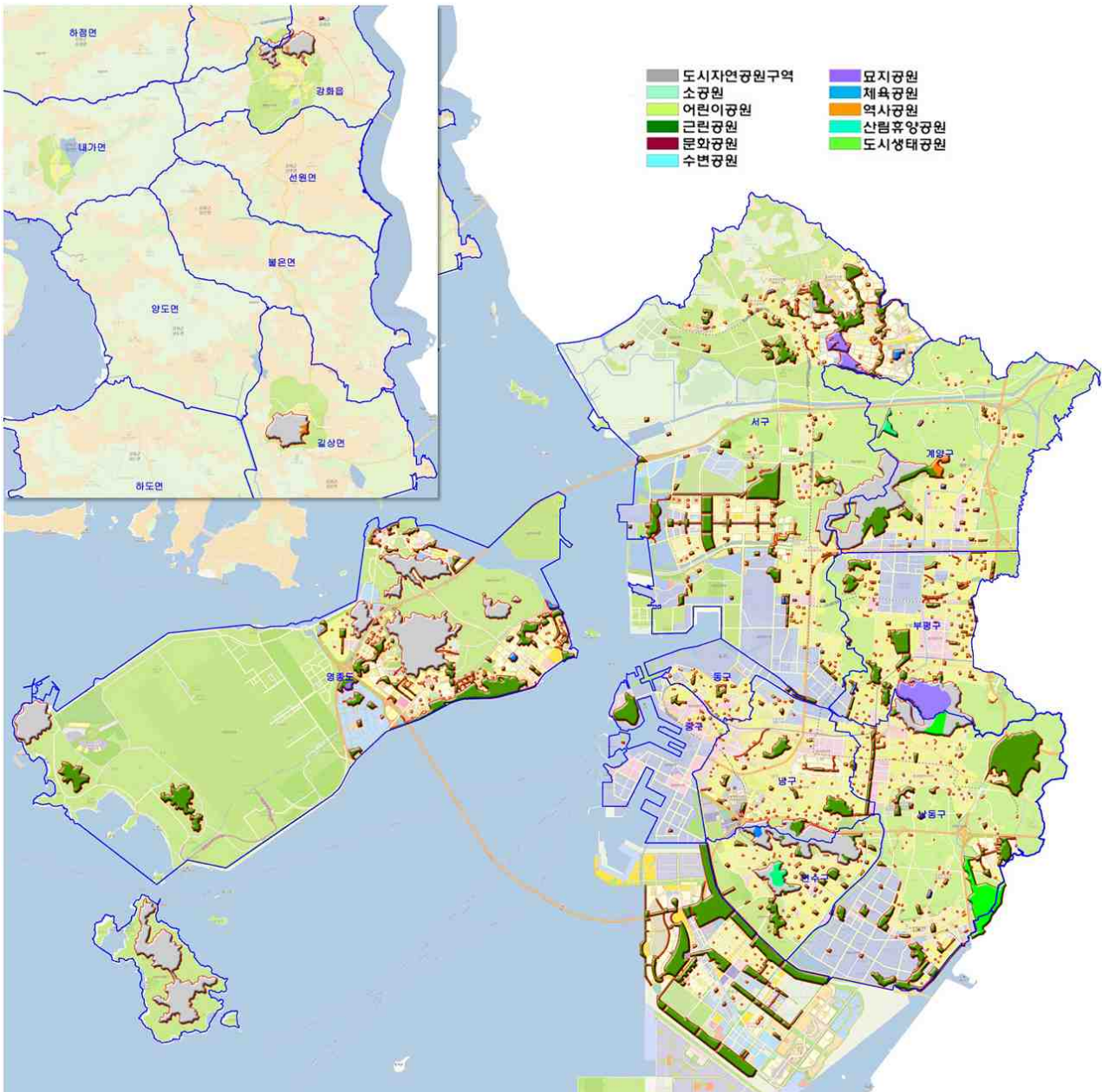
[표-233] 공원배치계획표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합 계	1,119	44,504,191	1,081	41,272,504	1,317	49,345,040		
도시공원	도시자연 공원	1	605,733	0	0	0	0	
	생활권 공원	소공원	156	275,407	146	268,888	341	460,364
		어린이 공원	581	1,837,614	576	1,816,792	576	1,816,792
		근린 공원	329	35,919,763	307	33,321,150	315	33,450,150
	주제 공원	문화 공원	10	670,054	10	670,054	10	670,054
		수변 공원	16	1,187,248	16	1,187,248	16	1,187,248
		묘지 공원	3	2,381,884	3	2,381,884	3	2,381,884
		체육 공원	15	477,519	15	477,519	22	553,519
		역사 공원	5	218,072	5	218,072	6	467,132
		산림 휴양	1	338,798	1	338,798	20	6,253,798
		도시 생태	2	592,100	2	592,100	8	2,104,100

※ 녹지활용계약 확충면적 5,600,000㎡는 2030년 산림휴양공원에 포함

※ 무의, 양산 도시자연공원 2개소는 금화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6장 부문별 계획



[그림-343] 목표년도(2030) 도시공원 계획도



(예) 송도센터럴파크



(예) 중앙공원

2] 녹지기본계획(시설녹지+일반녹지)

1. 기본방향

-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녹을 육성”, “인천광역시가 지닌 녹의 골격형성”에 기여하는 녹지 보전과 복원, 확충 계획
- 주요 산림자원인 S자 녹지축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함
-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기 위한 경관녹지 계획을 수립
- 도시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에게 산책 공간 역할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녹지인 연결녹지를 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미집행 녹지에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통한 실현가능한 녹지조성 목표를 수립
- 녹지보전지구를 지정하여 보전지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산림과 농지의 보전과 활용계획을 수립
- 가로수 정비와 효율적인 식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여건에 맞는 가로수 계획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도와 보행자도로는 도시공원, 시설녹지와 연계
- 도로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된 S자 녹지축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생태통로 계획
- 녹지·하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계획

[표-234] 녹지기본계획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녹지정비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집행 녹지에 대한 우선해제 및 단계별 계획수립
녹지보전계획	• 생태적 환경 우수지역 선별 • 녹지보전지구 지정 및 활용방안 제시
녹지확충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의 단계적 조성계획수립 • 신규 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의 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 산림의 생태복원 모델을 제시
가로수 계획	• 기존 가로수의 보완식재 및 특화가로수 계획
녹도 및 보행자도로계획	• 기존 녹도의 정비 및 특화가로의 녹도 조성 계획
생태통로계획	• S자 녹지축 단절구간 생태통로 계획
자전거도로 계획	• 주요하천, 녹도, 공원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계획
경관도로 계획	• 우수한 경관요소별 수변형, 도시형, 테마형 경관도로 계획

2. 녹지정비계획(시설녹지)

1)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의 시설녹지인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대상으로 함
- 2030년 녹지정비계획은 “대통령주재2차규제개혁장관회의(‘14.9.3.)이후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 배포(국토교통부 ‘14.12.30)에 따라 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우선해제, 재정적집행시설로 분류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해제여부 및 단계별집행,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 적극적인 신규녹지 지정 보다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중점으로 실현하는 계획을 수립
- 해제대상 미집행 시설을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별도로 향후 해제검토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2) 녹지정비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4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 해제가이드라인에서 시설녹지의 우선해제 기준을 적용

3)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어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가능한 경우
- 접도구역과 저촉되고 주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철도보호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 내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 집행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주 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간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된 완충녹지로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지자체가 정한 거리 내에 없는 경우
- 선정된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37개소 중 해제가이드라인 기준 분석 후 선정된 우선해제 시설녹지 중 완충녹지 26개소, 경관녹지 1개소로 총 27개소, 면적 1,587,952.5㎡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됨

[표-235] 우선해제시설 대상 총괄

구분		현황 (개소)	우선해제대상 (개소)	면적(㎡)
시설녹지	완충녹지	36	26	1,564,328.5
	경관녹지	4	1	23,624.0
	연결녹지	-	-	-
합계		40	27	1,587,952.5

[표-236] 우선해제시설 대상

자치구	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고시일	면적(㎡)	시설종류	분류결과
27개소		합계			1,587,952.5		
부평구	1	동수녹지	부평동 634-1일원	인고1063호 87.01.08	7,224.0	경관녹지	우선해제
서구	2	검단1호녹지	금곡동~왕길동 (광로2-4,동측)	인고118호 98.06.12	28,483.5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3	검단2호녹지	금곡동~왕길동 (광로2-4,서측)	인고118호 98.06.12	26,742.5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4	검단3호녹지	왕길동62호 광장주변	인고118호 98.06.12	77,186.0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5	검단4호녹지	금곡동~대곡동 (광로3-24호변북측)	인고118호 98.06.12	13,772.0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6	검단5호녹지	금곡동~대곡동 (광로3-24호변남측)	인고118호 98.06.12	12,000.0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7	검단8호녹지	왕길동~오류동 (대로3-58호변북측)	인고118호 98.06.12	17,243.0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8	검단9호녹지	왕길동~오류동 (대로3-58호변남측)	인고118호 98.06.12	15,000.0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9	검단10호녹지	당하동~왕길동 (대2-61호변북측)	인고118호 98.06.12	43,664.0	완충녹지	우선해제
서구	10	검단11호녹지	당하동~왕길동 (대2-61호변남측)	인고118호 98.06.12	7,091.0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1	시가지조성사업 영종1지구녹지	운서동 661-2일원	인고141호 98.07.03	71,000.0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2	대2-501호선	덕교동산73~ 을왕동산105	인고190호 01.10.23	117,794.0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3	대 1-501호	운북동 933일원	인고117호 00.07.03	362,094.0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4	대 1-502호	운북동 52일원	인고117호 00.07.03	211,504.0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5	광 3-504호	운남동 1608-5일원	인고187호 02.8.30	6,713.5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6	완충녹지 (공항고속도로)	운북동180-3일원	인고117호 00.07.03	436,340.0	완충녹지	우선해제
중구	17	대3-501호	운북동 779-7	인고174호 (1997.7.25)	40,600.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구	18	학익녹지	학익동서해안 고속도로변	건고83 (87.03.14)	51,510.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구	19	철도변녹지	도화동 640-18일원	인고174호 (2004.10)	2,899.0	완충녹지	우선해제

[표-236 계속] 우선해제시설 대상

자치구	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고시일	면적(㎡)	시설종류	분류결과
연수구	20	옥련녹지	옥련동 246번지	건고 689호 (77.05.13)	16,400.0	경관녹지	우선해제
남동구	21	냉정지구 녹지1	수산동 197-6일원	인고98호 (06.06.05)	643.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동구	22	냉정지구 녹지2	수산동 277-1일원	인고98호 (06.06.05)	1,489.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동구	23	남발촌지구 녹지	수산동 310-2일원	인고98호 (06.06.05)	1,998.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동구	24	도림1지구 녹지	도림동 96-12일원	인고98호 (06.06.05)	3,698.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동구	25	경인철도녹지	간석동 177-16	-	3,955.0	완충녹지	우선해제
강화군	26	남산1녹지	강화읍 남산리일원	경고39호 (88.02.20)	4,720.0	완충녹지	우선해제
강화군	27	남산2녹지	강화읍 남산리일원	경고39호(88.0 2.20)	6,189.0	완충녹지	우선해제

※남동구 경인철도녹지는 완충녹지 기능 상실 및 장기미집행 시설 시의회 해제 권고사항에 따라 해제 (2015.09.21)

4) 재정적집행시설

가. 재정적집행시설 절차

- 인천광역시의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중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을 시·군·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위에서 분석한 우선해제시설 27개소를 제외한 10개소의 시설녹지를 대상으로 1단계(3년), 2-1단계(2년), 2-2단계(5년)로 분류



[그림-344] 재정적집행시설 절차도

나. 단계별 녹지 조성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40개소 중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녹지 27개소를 제외한 공원10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2020년 실효대상 시설은 2-2단계에 분류될 경우 실효되어 집행이 불가 할 수 있어 우선적 시행이 필요하고, 2-2단계 총액은 1단계, 2-1단계 총액의 1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음
- 인천광역시의 단계별 시설녹지 조성계획은 1단계 시설녹지 2개소, 2-1단계 시설녹지 6개소, 2-2단계 공원 5개소로 총13개소, 436,528.0㎡ 분류

[표-237] 단계별 녹지조성계획-1

구분		개소	면적(㎡)	비고
재정적 집행 시설	2016년~2020년	1단계(3년)	2	91,059.0
		2-1단계(2년)	6	267,688.0
	소계		8	358,747.0
	2021년~2025년	2-2단계(5년)	5	77,781.0
	소계		5	77,781.0
합계		13	436,528.0	

[표-238] 단계별 녹지조성계획-2

구 분	합계		1 단 계		2-1 단 계		2-2 단 계	
	개 소	면 적(㎡)	2016-2018		2019-2020		2021-2025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계	13	436,528.0	2	91,059.0	6	267,688.0	5	77,781.0
완충녹지	11	434,265.0	2	91,059.0	6	267,688.0	3	75,518.0
경관녹지	2	2,263.0	-	-	-	-	2	2,263.0
연결녹지	-	-	-	-	-	-	-	-

[표-239] 단계별 집행 대상

자치구	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고시일	면적(㎡)	시설종류	분류결과
부평구	1	십정녹지	십정동 535-2일원	건고54호 70.02.09	72,471.0	완충녹지	1단계
남구	2	용현녹지	용현동 627-509	건고75호 (75.05.16)	18,588.0	완충녹지	1단계
남동구	3	소래구역1녹지	논현동 66-18일원	인고225 (11.09.14)	1,530.0	완충녹지	2-1단계
남동구	4	소래구역1녹지	논현동 66-18일원	인고225 (11.09.14)	1,857.0	완충녹지	2-1단계
남동구	5	소래구역1녹지	논현동 66-18일원	인고225 (11.09.14)	2,696.0	완충녹지	2-1단계
서구	6	광2-4호 동측	왕길동 356-10일원	인고182호 (01.10.17)	15,000.0	완충녹지	2-1단계
서구	7	석남녹지	석남동 219-3일원	건고54호 70.0209	242,705.0	완충녹지	2-1단계
서구	8	광2-4호 서측	왕길동 356-10일원	인고182호 (01.10.17)	3,900.0	완충녹지	2-1단계
계양구	9	선주지1녹지	선주지동 103-3일원	인고98호 (00.09.18)	2,099.0	경관녹지	2-2단계
계양구	10	독실1녹지	독실동 168일원	인고286호 (12.11.26)	164.0	경관녹지	2-2단계
서구	11	현대정유녹지	원창동 379일원	인고6호 (95.01.12)	20,740.0	완충녹지	2-2단계
서구	12	검단당하1녹지	검단 광3-23호선변 북측	인고118호 (98.06.12)	18,668.0	완충녹지	2-2단계
서구	13	검단당하2녹지	검단 광3-23호선변 남측	인고118호 (98.06.12)	36,110.0	완충녹지	2-2단계

5)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녹지변경

가. 경인철도녹지

- 인천광역시의 장기미집행 시설녹지인 경인철도녹지(3,955㎡)는 경인철도변의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능 상실 및 장기미집행시설 시의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제

[표-240] 경인철도녹지변경 내역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인 철도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간석동 586-1번지 일원	3,955	감)2	29,512	-경인철도변 방음벽 설치로 완충녹지 기능상실 -장기미집행 시설 시의회 해제 권고사항 이행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41호, 2015.09.21)

3. 녹지보전계획(일반녹지)

1) 기본방향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방안을 제시하며 생태적 중요성, 이용, 관리, 방재 등의 측면에서 녹지보전계획을 수립
- “시민에게 친숙하고 실현가능한 녹을 육성” 하기 위해 녹지의 복원 및 확충
- 기 시설 정비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녹지보존 및 단절 구간 연계 조성
-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서 인천광역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보전계획 수립
- 생태환경 평가 전문자료인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생태자연도, 임상도와 비오톱 조사 평가 등급도를 활용하여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녹지보전지구로 지정
-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연계시행하며, 목표연도 2030년 공원 확보 수요면적을 보완하는 녹을 육성하기 위하여 녹의 보전·확충 및 일반녹지(녹화)계획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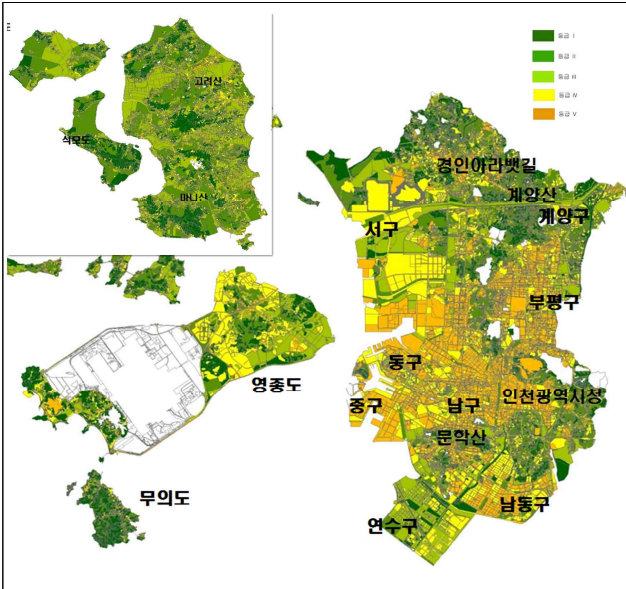
2)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 생태환경을 평가한 전문자료에는 비오톱 조사, 국토환경성평가등급도, 생태자연도, 임상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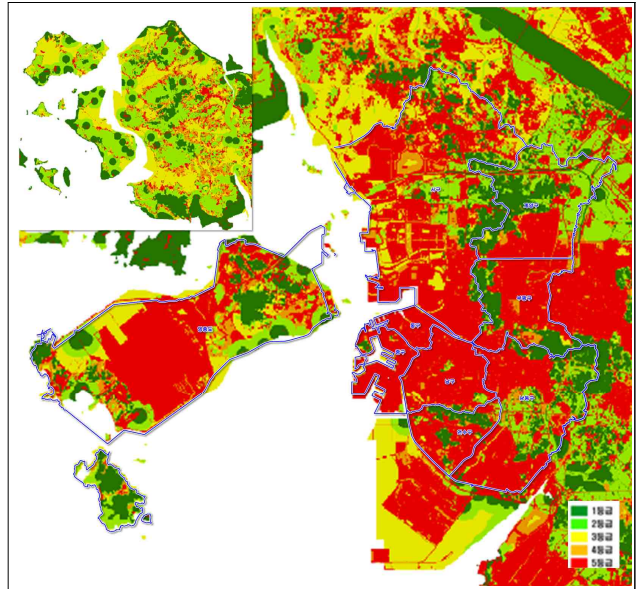
[표-241] 인천광역시 생태환경 평가 지표

구 분	주 요 내 용
비오톱 평가도	• 지역 내 공간을 경계로 가진 비오톱(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물 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으로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
국토환경성 평가등급도	•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 평가결과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한 지도
생태자연도	•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동물·식물의 분포상황, 경관 등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지표
임상도	• 산림을 임황(수종구성), 경급, 영급 그리고 수관밀도의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속성을 갖도록 구획된 임분

6장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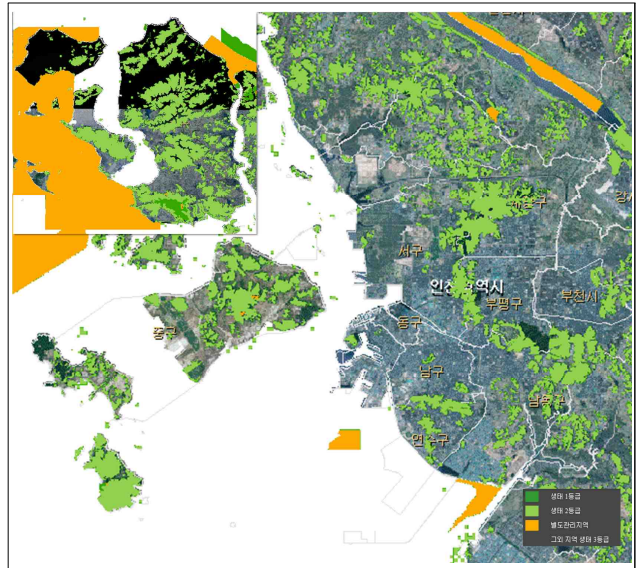
[그림-345] 인천광역시 비오톱평가도



[그림-346] 인천광역시 국토환경성평가도



[그림-347] 인천광역시 인상도



[그림-348] 인천광역시 생태자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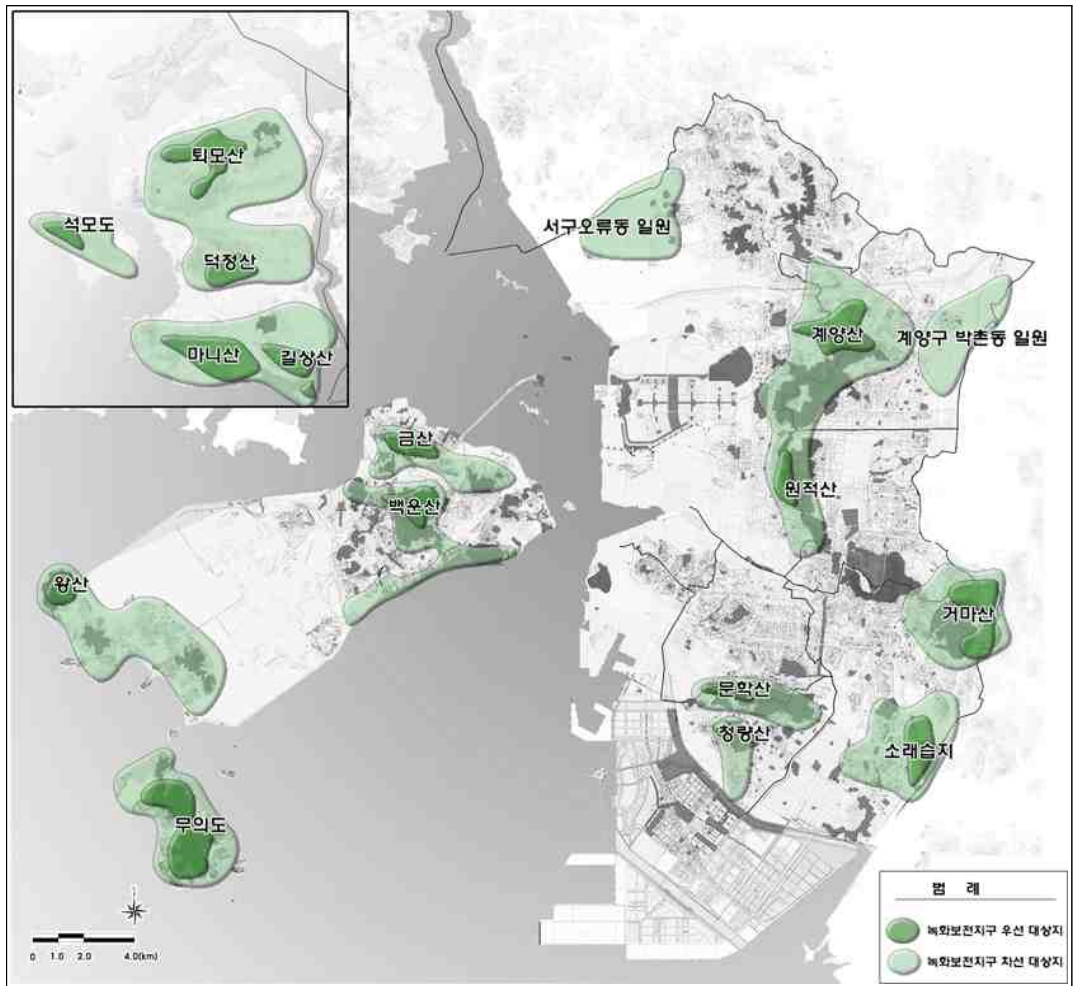
3) 계획방향

- 녹지보전지구는 비오톱 평가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생태자연도, 인상도를 활용하여 생태 환경우수지역을 우선대상지와 차선대상지로 구분하여 설정함

[표-242] 인천광역시 생태환경평가지표에 의한 녹지보전지구 대상

구분	녹지보전지구 대상
비오톱 조사	1등급 :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
	2등급 :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
국토환경성평가등급도	1등급 :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
	2등급 :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
생태자연도	1등급 :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
	2등급 :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
인상도	4등급이상 :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
	3등급 :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

- 비오톱 평가 1등급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이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임
- 비오톱 평가 2등급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임상도 3영급인 지역이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임



[그림-349] 녹지보전지구 대상지

- 도서지역인 강화도는 천연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퇴모산, 덕정산, 마니산 등 주요 산림자원은 생태환경 우수지역으로 녹지보전지구로 설정함

4) 세부계획

- 각 전문자료를 도면중첩기법(Overlay)으로 분석한 결과 녹지를 보전해야 할 지역이 내륙지역에서는 S자 녹지축에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음

-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는 식생 또는 임상이 매우 우수하여 녹지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문자료의 도면중첩기법에 의해 비오톱 1등급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임상도 4등급이상 지역으로 계양지구, 문학지구 등 8개 지구로서 주요 산림자원이 이에 속함
- 녹지보전지구 차선 대상지는 비오톱 2등급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 생태자연도 2등급, 임상도 3등급 이하 지역으로 서구 농경지, 강화지구 등 6개소임

[표-243] 녹지보전지구 현황

구 분	주요대상	면적(천㎡)	활용세부계획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	합계	8개소	56,055	행위제한, 녹지활용계약, 도시자연공원구역
	계양지구	계양산	4,571	
	인천대공원지구	거마산	3,253	
	호구포지구	소래습지, 폐염전	2,163	
	문학지구	문학산	1,076	
	영종지구	금산, 백운산, 왕산, 호룡곡산	8,948	
	강화1지구	퇴모산, 덕정산	16,506	
	강화2지구	마니산, 길상산	19,153	
	석모지구	석모도	2,548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	합계	6개소	322,449	녹지활용계약,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 농지의 보전과 활용,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서구 농경지	오류동 일원	9,772	
	계양구 농경지	박촌동 일원	8,354	
	S자 녹지축	주요산림자원 (원적산, 호봉산, 천마산, 청량산등)	60,086	
	영종신도시지구	영종신도시 일원 산림자원	18,622	
	용유-무의지구	용유-무의 주요산림자원	33,401	
	강화지구	주요산림자원 (퇴모산, 덕정산, 마니산, 길상산 일대)	192,214	

5) 녹지보전지구 보전 계획

가. 녹지보전지구 우선대상지

□ 행위의 제한

- 녹지보전지구는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목의 벌채,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영농행위가 일제히 금지되는 곳으로 임의 행동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곳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법적근거 또는 지침으로 보전방안을 마련

[표-244] 산림의보전에 따른 벌칙내용

구 분	근거규정	내 용
산림의 보전 등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립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장물(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조재)의 설비를 한 경우 4.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야간에 절취한 경우 6.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표-245]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구 분	근거규정	내 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표-246] 도시공원 금지행위

구분	근거규정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p>① 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를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p>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녹지활용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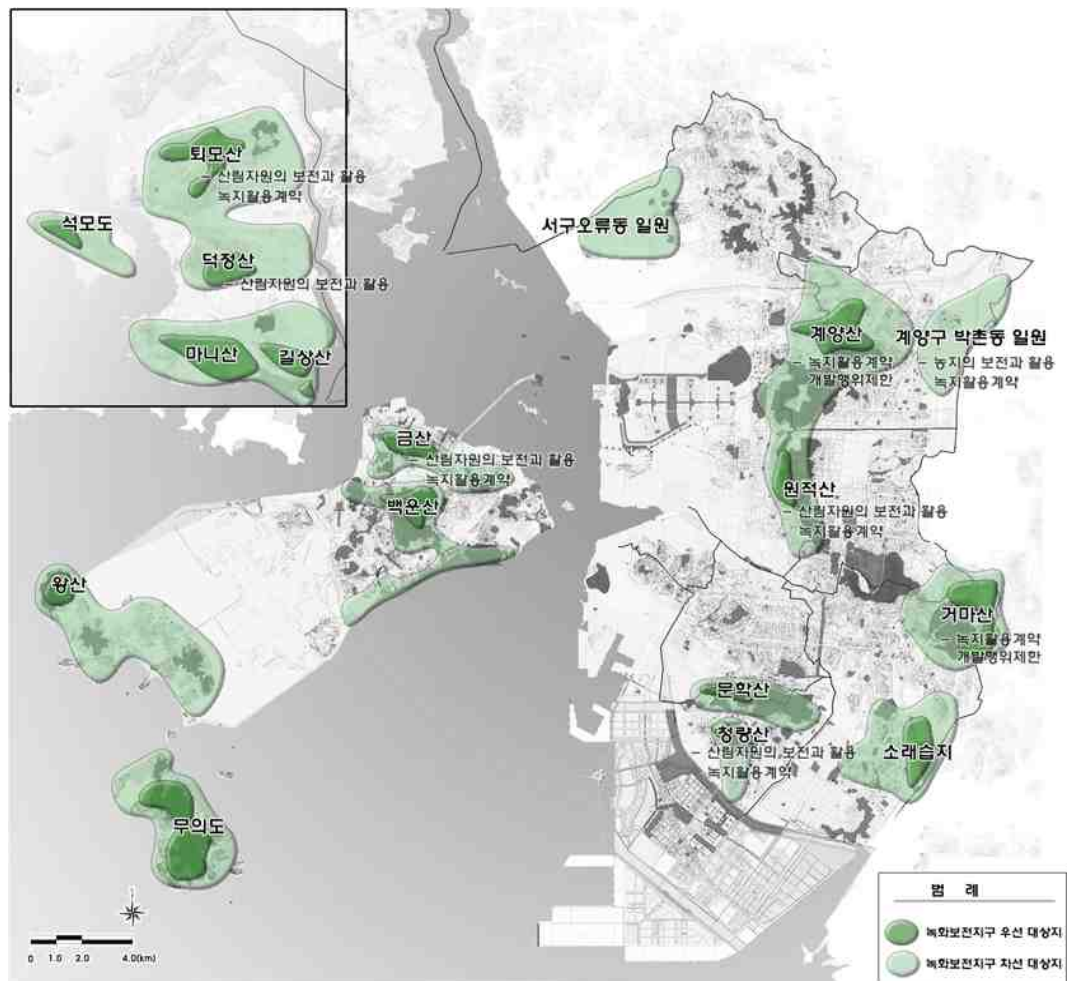
- 녹지활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안의 식생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표-247] 녹지활용 계약 내용

구분	근거규정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相)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 활용 계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①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相)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광장·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장 부문별 계획

- 공원녹지의 확충계획과 더불어 도심에 존재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도 중요함. 녹지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로서 이용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들 녹지는 방치되어 있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녹지활용계약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해당 지자체가 계약된 토지에 시민이 필요한 휴식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녹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녹지의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유지 녹지공간에 대한 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시민참여의식을 향상시키며 민간과 관의 협조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을 활용하여 녹지보전지구내 사유지를 녹화하여 시민들에 휴식시설을 제공하며 해당 지구의 식생 또는 유지·보존을 위한 자원을 제공
- 또한 녹지활용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토지매입 우선순위 조치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함



[그림-350] 녹지보전계획도

나. 녹지보전지구 차선대상지

□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

① 산림자원의 보전방안

- 생태적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토록 하며 산책로 또는 공원시설의 개발시 자연친화형 개발을 유도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지 및 구릉지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현존하는 녹지공간의 가치 제고 및 훼손된 녹지공간의 복원방안 계획
-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산지 및 구릉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돌출경관을 방지하고 산록의 개발이나 산줄기를 가로지르는 도로망의 개설을 금지토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생태공원의 지정 등을 통한 관계 법령에 의한 보전방안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시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방안 제시
- 이용에 의한 훼손은 이용 후 평가와 세부시설 계획 시 면밀한 동선계획과 시설이용계획을 통하여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② 산림자원의 관리방안

- 산림자원은 산림청 등 산지관련 각종 산림계획 등과 연계하여 자원의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함
-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의 경우, 산림내 공원시설의 입지로 불가피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최대한 보전을 우선하고,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
- 보전의 경우 설정된 산림자원에 대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사전에 개발에 배제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림자원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함
- 또한 이 지역이 산림내 소류지 또는 수계가 연계되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및 종교시설이 입지되어 지속적인 개발의 압력과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함
- 시가화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산지의 경우 연접부에 임의적 별채나 간별 및 산림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감독을 통한 관리 및 지역주민의 홍보 및 계몽을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함

③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관리기준

- 산림자원의 불가피한 개발이나 시설입지시에는 다음의 산림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관리 기준을 통합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여야 함
- 산림자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화 또는 공원화 되어 공원시설입지시 가능한 보전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함
 - 공원시설의 입지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를 기준으로 일정부분 이상은 개발을 제한함
 -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 이하에 공원시설을 입지토록 하며, 이 경우 표토의 보존과 복사이식 등을 통하여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임상의 자연발생을 유도함
- 공원시설의 입지시 인공적 포장 및 시설을 통한 자연경관 및 자원과의 이질감을 사전에 극복하는 계획과 설계 및 시설도입이 요구됨
 - 주요 산림자원을 관통하는 산책로 또는 등산로의 조성시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한 재질의 포장재 도입과 시설의 도입을 통하여, 경관적 이질감을 완화하고, 주변 동식물의 생육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는 시설을 입지토록 함
 - 특히, 조명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가공선의 설치, 지중화 및 조도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입증을 통한 계획과 시설도입이 요구됨
- 시설물의 입지는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간 다소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법면의 발생과 과도한 임목의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함
- 산림자원의 개발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체계 수립이 사전 계획시부터 선행되도록 함

□ 농지의 보전과 활용

① 도시외곽 농지보전의 기본방향

- 하천 및 저수지변 농촌전원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와 개발지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10~15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함
- 하천 및 저수지변 농지는 습지의 한 유형인 인공습지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하천 생태계와 연계된 생물서식처를 조성함

○ 도시외곽 농지주변의 건축물 고도를 규제함

- 농촌의 전원경관보전을 위한 개발지와 인접해 있는 농지주변의 고층건물 고도를 규제하여 전원적인 경관자원을 보전토록 함
- 하천변에서 시가지 방향으로 점차 높이가 같아지도록 하여, 하천 - 농지 - 시가지간의 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토록 함

○ 생태계 보전을 위한 농지보전지역을 설정함

-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보전지역을 설정하여, 철새의 관찰과 생장, 서식과 은신을 영위케 하고 이를 통한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녹지협정을 통하여 농지의 개발을 제한토록 함

② 농지의 보전방안

- 도시외곽의 천혜의 자연자원인 농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광의의 녹지이며, 식량의 공급이외에 토양의 보전, 수자원함양, 홍수의 조절, 대기의 정화는 물론 경관의 창출 등 무한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농지의 면적이 넓지도 않은 현실에서 가용지 확보를 통한 산업화로 인하여 무한한 자연자원이 점차 훼손되고 있고 이러한 농지의 훼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전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녹지공간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③ 도시농지의 다면적 기능

- 취락지구와 함께 잔존하는 농지나 수림지는 도시의 녹지골격 및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도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농지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녹지 혹은 오픈스페이스로서 다양한 역할을 함
- 기온과 습도를 조절해 주고 바람의 길을 형성하는 등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유기농법이나 저농약 농법을 시행하는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가 소생물의 서식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시로부터 배출되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퇴비화 하는 등 유기물이 재활용되고 보전되는 기반이고 밀집주택과 인접해 있는 농지는 일조, 통풍의 확보에 의해 주택지의 환경보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말농장의 이용률 향상은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에서 벗어나 농가의 지도하에 농업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도시민과 농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장소로서 활용되는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예요법 등 장애인의 복지 및 노인복지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현장으로서 도시농지가 이용되거나 농경재배프로그램의 신설이 가능할 것임
- 농가의 존속으로 인해 지역의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농가 고유의 공예품이나 농작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함
- 농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경관은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원풍경을 창출함으로써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도시경관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관리된 농지는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게 될 것임
- 농지가 지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농산물의 생산으로 인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의 기능을 가짐

[표-248] 농지의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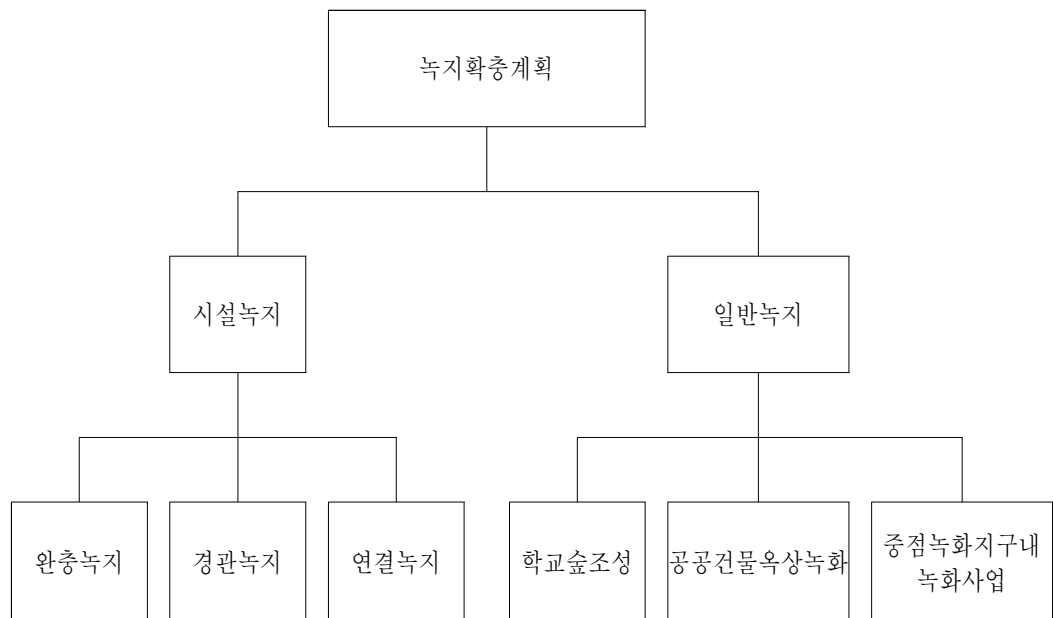
기 능	세 부 내 용
학교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근에 있는 일정규모의 농지의 경우 학교가 농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영농지도와 수확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학교와 농가가 연계하는 프로그램 • 학생들의 영농체험을 통한 인성교육과 현장학습효과의 기대와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 확보
노약자 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단체 또는 농협 등과 연계하여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활동 체험 프로그램 • 영농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친목도모, 외부인과의 접촉 등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 • 부대시설로 휴게공간, 농기구 창고, 화장실 등이 요구되며 시설 이용료와 비료, 묘목의 지출은 사용단체에서 지불
농촌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유희농지를 이용한 농촌학교 개설 • 송사리 잡기, 미꾸라지 탐구, 메기잡기 등 다양한 행사와 영농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조성
체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주택과 연계한 농지활용과 농촌체험 또는 민박 등을 목적으로 한 농가의 개방으로 농촌 활성화 •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서 및 체험공간으로서의 영농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 및 노동의 근면함을 체험하는 공간조성

4. 녹지확충계획(시설녹지+일반녹지)

1) 기본방향

- 녹지의 확충은 법정녹지인 시설녹지(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와 비법정녹지인 일반 녹지로 구분하여 확충계획을 수립함
- 시설녹지의 확충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녹지확보, 인천광역시 관문인 진·출입부 경관녹지 조성, 하천변 연결녹지 조성, 도심내 상징축을 위한 연결녹지를 계획
- 공원소외지역 해소 및 도심열섬화 현상 방지, 생활 환경개선 필요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녹화지구를 선정하여 일반녹화 계획
- 인천광역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숲터 조성, 학교숲 조성,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계획
- 녹지 확충계획은 생태적 중요성, 경관성, 도시공간구조,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및 경제성 등을 고려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중 녹지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녹지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시행

[표-249] 녹지확충계획도



2) 신규 시설녹지 확충계획

□ 시설녹지

- 시설녹지의 종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음
- 도시의 시가화가 계획시 시설녹지의 법적면적 이상의 녹지확충 계획이 수반되도록 유도하고,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절차에 적극 반영

[표-250] 녹지의 세부분류 및 설치기준 등

주 제	조 문	내 용
녹지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녹지의 설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 그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가.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m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이상으로 할 것

3) 철도 부지를 활용한 녹지확충

가. 수인선 상부공간 녹지확충

(1) 폐철도 부지 개요

- 1937년 수원~인천간 개통
- 1995년 수인선 마지막 협궤열차 폐지
- 복선 전철사업으로 4호선 오이도역에서 인천 송도역까지 13.1km구간을 2012. 6.29. 개통
-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7.3km구간 2016.2.27. 개통 예정

(2) 송도역~인천역 지하화 구간 현황

- 송도역~인천역구간은 7.3km해당하며 전 노선이 지하화 될 예정
- 현재 일부구간(서해대로 417번길, 410번길, 독배로 363번길)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 경찰서, 가옥 등으로 상부공간이 이용되고 있음
- 옛 철길노선 흔적이 남아있는 구간은 서해대로 417번길 0.6km, 서해대로 410번길 0.43km, 독배로 363번길 0.88km
- 총 1.91km가 남아 있으며, 현재는 녹지 및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나지 등으로 방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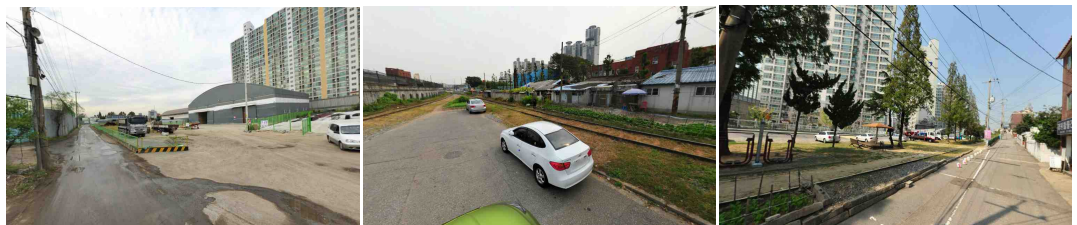
[표-251] 수인선 총연장

구분	수량
수원역~인천역 총연장	43.9km
오이도역~송도역	13.1km
송도역~인천역(지하화 구간)	7.3km

- 옛 철길 흔적이 남아있는 구간은 송도역에서 인천역간 7.3km 중 일부지역



[그림-351] 수인선 위치도



[그림-352] 나지 및 가건물 입지 [그림-353] 옛 철길과 나지로 방치 [그림-354] 녹지, 운동시설 설치

(3) 상부공간 녹지확보 방안

- 폐 철도부지가 존치되는 구간은 없고 지하화 되므로, 상부공간 녹화 대상지로 보아야 함
- 나지 및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은 총 1.91km, 평균 폭 10m로 총면적 0.191㎢가 녹지조성이 가능

□ 세부 이용 현황

- 서해대로 417번길 0.6km 구간은 나지로 방치되거나 공사 임시 가건물, 차량 등의 임시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서해대로 410번길 0.43km는 옛 철길 흔적이 존치되어 있고 나지로 방치되거나, 인근 주민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 독배로 363번길 0.88km은 산책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교목으로 식재되어 있고 지피, 초화류 등이 식재되어 녹지 및 쉼터, 생활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건축물이나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3개 구간은 폐철로의 흔적을 유지한 채, 특화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지 내 중심생활권 녹지로 확보



[그림-355] 녹지확보가능 구간

구분	수량	비고
녹지확보가능구간	1.91km	
철도부지 평균폭	0.01km	
녹지확보 면적	0.191㎢	

[표-252] 상부공간 녹지확보가능 면적

- 총연장 1.91km에 철도부지 구간의 평균폭은 10m이므로
녹지확보가능면적은 0.191㎢임



[그림-356] 철도부지 상부공간 위성사진-1 [그림-357] 철도부지 상부공간 위성사진-2

[표-253] 폐철도 부지 녹화 방안

구분	사례	계획 방향
놀이/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역 인접부 녹지 확보 가능부지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밝은 경관 조성 대상지를 아이들의 정서적·육체적 성장과정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공간으로 계획
도시빗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수로 · 조절지 · 레인가든 · 도로연석부 식생지 · 생태주차장 · 투수포장 등을 활용한 물친화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빗물관리 녹지로 계획
역사와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로, 철길 신호등과 같은 시설물을 존치하여 철도오브제를 활용한 포토존을 위한 경관으로 구성 철로변 환경과 유사한 자연경관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초본류 및 키낮은 관목류식재로 자연적 식생천이를 유도

※자료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 설계공모(이미지)

나. 경인선 도시철도 뚝개공원(녹지) 설치

- 경인선 도시철도의 지하화로 인한 상부 녹화계획 수립
- 백운 및 부평역 구간 뚝개공원 조성
- 인천의 상징적 녹지축인 S자 녹지축 연계방안 마련
- 지역민은 소음 및 공해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 1석2조의 효과
- 지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그림-358] 경인선 도시철도 위치도

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 복합화

-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구간 뒬개공원 조성
- 수봉공원 인근 뒬개 공원 설치 및 공원녹지 축 연계
- 지역민은 소음 및 공해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1석2조의 효과
- 지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그림-359] 경인고속도로 위치도

5) 폐·공가 포켓공원(쉼터) 조성

- 인천광역시의 구도심의 폐·공가는 총 1,351개소, 이중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는 약 850여 개소 임
-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폐·공가는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변 범죄 발생건수 증가,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어 주민 불편 초래, 치안 부재 발생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가 가능하고 인가 이전이라도 붕괴 등 안전사고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철거가 가능
-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민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갈음해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
- 또한, 재개발 구역 등 정비구역 내 폐공가의 경우, 조합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문제로 사실상 방치돼 왔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에 대해 철거 및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 함
- 폐·공가로 우범 지대화 돼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심 속 부족한 녹지 확보를 위해 포켓공원(쉼터)로 조성 필요



[그림-360] 폐·공가 현황-1



[그림-361] 폐·공가 현황-1



[그림-362] 폐·공가 포켓공원(쉼터) 조성예시-1



[그림-363] 폐·공가 포켓공원(쉼터) 조성예시-2

6) 장기미집행 시설녹지의 단계적 조성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된 미조성 녹지는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의 기준을 통해 우선해제 및 단계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 현재 시설녹지는 1,182개소가 결정되었으며, 이중 조성된 녹지는 663개소로 면적대비 조성률은 56%에 해당함
-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녹지사업 외 2020년까지 조성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시설녹지 및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분류된 우선해제녹지는 27개소에 이룸
- 이를 제외한 재정적 집행가능녹지 10개소에 대하여 2025년까지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조성을 추진토록 계획함

가.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대상설정

-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별 집행가능시설로 분류된 시설녹지에 대해서도 조성완료 전까지 매년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나.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조성계획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녹지 중 장기미집행 시설녹지는 2025.12.31 이전에 우선 조성토록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함
- 총 10개 시설녹지 중 1단계는 2018년까지 총 2개소를 조성하고, 2단계에 3개소, 3단계 즉 2025년까지 5개소를 조성하여 완료토록 함

[표-254] 장기미집행 시설녹지의 단계별 조성방안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6-2018		2019-2020		2021-2025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	430,445	2	91,059	3	261,605	5	77,781
완충녹지	8	428,182	2	91,059	3	261,605	3	75,518
경관녹지	2	2,263	-		.	-	2	2,263

5. 녹지복원계획(일반녹지)

1) 기본방향

- 녹지 보전의 방법론적 계획으로, 주요 원식생 모델을 추출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목과 복원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능/자연/이용/생태적 배식기법을 적용함
-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도심 내 녹지 중 훼손지, 경작지로 사용되는 곳에 대한 복원방안을 제시하고, 인공화 및 직강화 된 도심하천 복원의 일환으로 천변 녹지대의 복원 방안을 제시함
 - － 도시개발로 인한 절개지의 복원계획
 - － 도로개설과 확장으로 인한 훼손지의 복원계획
 - － 산불 및 인위적 훼손지의 복원계획
 - － 외래종 침입에 따른 훼손지 복원계획
 - － 인공림의 산림식생개선을 통한 자연림 복원계획

2) 도시개발로 인한 절개지의 복원

- 도시개발이나 집단적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기존산림이 주된 대상지임
- 특히 도시개발시 도시개발지와 산림지역간에는 법면이 발생되어 절개지가 발생 되고, 법면지역은 생태적으로 주연부로서 도시산림의 끝과 자연산림의 연결지점으로 매우 중요한 환경지역임
- 이에 기존의 지리적 형태와 특징적 보전 지형 및 인접지형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절개사면의 복원이 필요함
- 지형의 경사도 및 방향,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시 절개지의 경사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단계에서 절개지의 경사면을 이용한 테라스 하우스를 도입이 필요
- 경사면의 절성도를 최소화하고 암반면 등 절개후 복원이 어려운 지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일부지역에 대한 복원을 조치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훼손을 효율적 이용으로 복원토록 함

- 경사면에 따른 복원공법의 차이를 두며, 그 기울기에 따라 식재의 형태와 식생조 하부 패턴을 각기 상이하게 적용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창출토록 함
 - 0~3%의 경사지 : 표면배수의 문제점을 고려한 식재시 큰 규모의 식재군 형성 및 마운딩 처리
 - 3~8%의 경사지 : 완만한 구릉지역으로 흥미로운 시각경험을 제공하고 동선이나 구조물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량은 점차 증가하나 식재지로서는 가장 적당한 경사지
 - 8~15%의 경사지 : 구릉지이거나 암반노출지로서 토양층이 깊이 발달되지 않아 관상수목의 집중적인 식재가 불가능한 곳
 - 15~25%의 경사지 : 일반적인 식재기술로는 식재군락의 조성이 불가능한 곳
- 경사면의 복원은 앞서의 복원모델의 적용이 다소 어렵고 법면안정화 공법과 생태적 기법을 도입하여 법면의 안정화와 생태적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함

3) 도로개설로 인한 훼손지 복원

-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지침에 따른 노선의 설정과 시공으로 훼손을 최소화 하며, 훼손이 발생한 경우 자연생태에 가까운 복구 방안을 계획
- 시공시 훼손지의 복원으로 서식지의 훼손 최소화 및 소실의 경감, 친환경공법의 적용, 서식환경의 질적변화에 대한 완충공간의 확보, 적합한 식물종이 선택한 복원기법의 수법, 생태이동통로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시행

□ 계획 및 설계시 훼손방지계획

- 도로개설시 대상지의 면밀한 환경조사를 통한 서식환경의 이해를 통해 친환경공법의 적용과 서식환경파괴의 방지할 수 있는 선형의 설정 및 대체서식지를 조성함
- 동물의 습성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이동통로의 설계와 터널, 교량 구조형식을 고려하도록 하며, 최소한의 지형변화를 지향하고 불가피한 비탈면 발생시 식생의 발달구조를 고려한 복원기법을 도입함

□ 환경문제의 최소화 및 친환경적 생태환경 조성방안

- 시공 이전 대상지의 현황측량 및 조사, 계획시 미조사된 생물종의 특성을 육안 또는 배설물 등으로 확인하여, 미조사되거나 미발굴되어진 특성을 확인하고 서식지 또는 산란지 등의 소실을 최소화 함
- 환경부와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에서는 기존 복원녹화공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안을 제안하였고 이는 비탈면의 구배에 따라 녹화목표가 달라지는 방법으로 30°구배에서는 교목과 중·저목으로 구성된 식물군락으로 복원하고, 45°에서는 중저목을 주요 구성으로 한 식물군락으로 복원하며, 60°구배의 경우 저목이나 초본류로 구성된 식물군락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유지관리

-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생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 유무와 변화의 추세변화에 대한 피해여부 등 그 결과를 고려한 안정화 방안을 수립함
- 동식물의 개체수 변화에 따라 서식환경의 조성, 소음 및 조명의 차폐녹지대, 통로의 재설치 등으로 개발이전의 생태환경으로의 균형방안을 수립함

4) 산불 및 인위적 훼손지 복원

- 인근의 지역민 또는 불법점거민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과 근본적인 점유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나지 또는 공지형태의 경우 초화류 초기식재 등으로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경우 친환경적 식생모델에 의해 다층구조림으로 복원 시행함
- 산불 등으로 인한 자연식생의 훼손은 그 복구방안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며, 이는 손쉬운 복구방안의 제시로 기존의 식생구조를 파괴하여 기존 산림의 틀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종속적인 생태구조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훼손지의 경우, 하계 강우시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방지하는 시설의 최소한의 도입과 자연천이과정의 영위를 다하여 다소 경관적으로 험벗었다 하더라도 복원은 자연의 손에 의해 자연적 천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5) 외래종 침입에 따른 훼손지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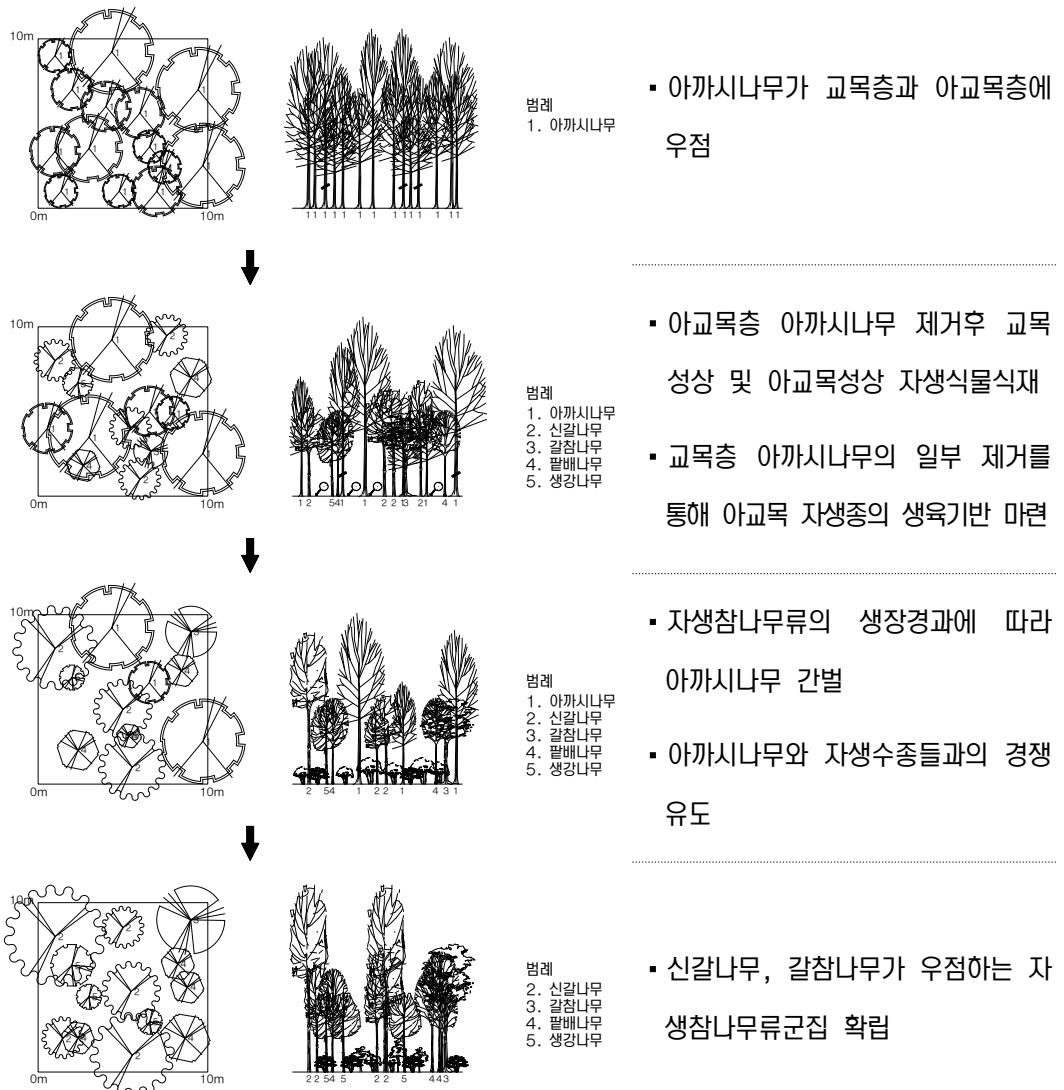
- 미국자리공 등 외래종의 산림지 훼손지에 대해 시민 참여운동 등을 통한 외래종 제거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훼손지를 복원토록 하며, 지역별 식재모델에 의한 도시숲 복원 사업을 시행함
- 산림복원시 교목층의 식재뿐 아니라 다층구조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 다층림을 통한 하부 외래종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식재기법과 패턴이 요구됨
- 외래종은 생육과 삼목 등의 번식이 왕성하고 초기 벌개 제근 이후 식생번식이 가능함에 지속적인 벌개 제근 활동과 지역주민 및 민간봉사단체, 산악회 등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하여 복원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6) 인공림의 자연림 복원계획

- 인천광역시 산림내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인공림은 자연식생이 거의 혼효되지 않은 인공림으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산림식생개선이 필요

[표-255] 인천광역시 산림복원 구상

구분	식생구조	복원 방안
자연천이 유도	인공수종과 자생수종이 경쟁중인 식물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로부터의 교란방지를 통한 자연천이 유도
식생관리를 통한 천이 유도	교목층과 아교목층에 인공수종이 우점하는 식물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인공수종을 점차적으로 제거 자생종 식재 및 생육유도를 통한 천이 유도



[그림-364] 인공림 복원관리 모식도

7) 훼손지 복원 계획

- 산림 훼손지는 비오톱조사에 의한 자료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림훼손현황을 조사하여 작성되었으며 훼손 총면적은 1,280,000㎡에 이릅니다
- 훼손지 현황을 바탕으로 2015년 ~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복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256] 단계별 훼손지 복원 계획표

구분	면적(㎡)	비고
합계	1,280,000	
1단계 (2015~2020)	250,000	
2단계 (2021~2025)	250,000	
3단계 (2026~2030)	7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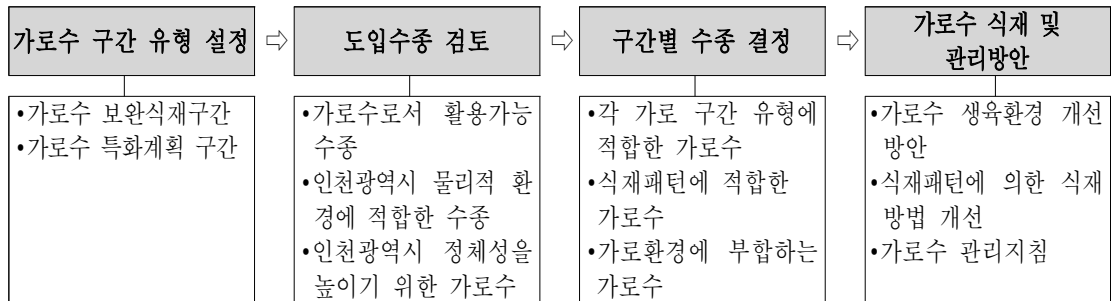
[그림-365] 인천광역시 산림 훼손지 복원 계획도

6. 가로수 계획

1)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고유한 정서를 반영하면서도 가로경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가로수종 특화를 도모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가로환경을 조성함
- 기존 가로수가 끊어진 부분에서 보완식재를 통해 녹음을 제공하고 불량한 도시환경의 완충재로서 가로수 역할을 증대. 가로수를 통하여 인접공원 및 녹지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생태통로로서의 역할을 분담함
- 주변토지이용 및 가로 횡단구조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수형관리를 통한 가로수 특화계획을 수립함
- 가로수의 생태적, 환경적, 형태적, 유지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적정 가로수종을 선택함
- 가로수 식재로 시민의 휴식을 도모하고 이용객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가로수 정비 및 관리방안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함

[표-257] 계획의 기본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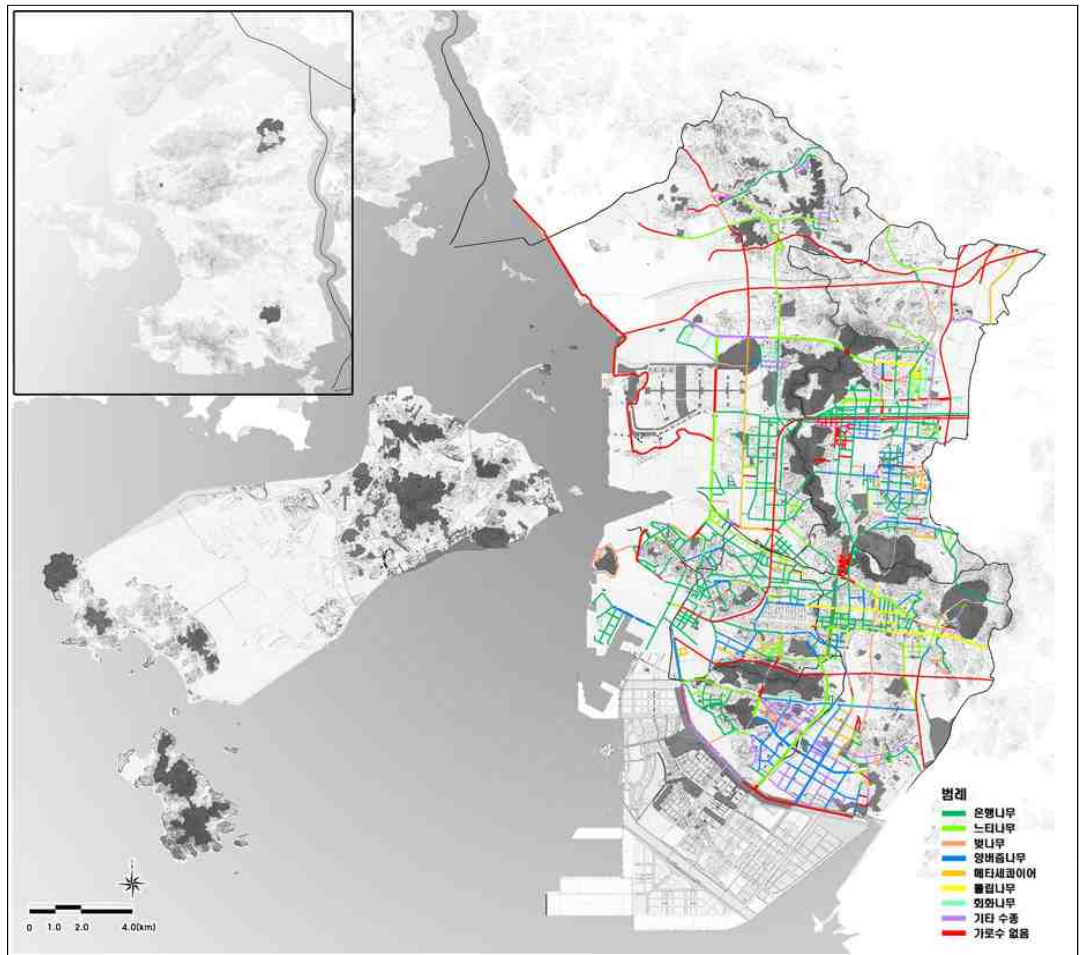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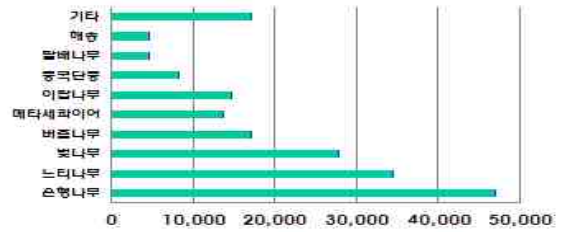
2) 현황분석

가. 가로수 현황

- 인천광역시의 가로수현황 조사결과 전체노선에 식재된 가로수는 총 39종에 197,413본이며, 은행나무 47,287본(23.95%), 느티나무가 34,652본(17.55%)로 두 개 수종이 41.5%로 식재되어 있으며 이외 벚나무 30,188본, 버즘나무 16,760본, 메타세콰이아 14,150본, 이팝나무 17,770본, 중국단풍 9,581본으로 7개 수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로수종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두 수종에 편중을 보여 수종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며, 목백합은 인천광역시의 시목으로서 상징성을 가짐
- 인천광역시 가로수 체계는 가로별 특색이 없는 상태이거나 불규칙한 식재로 체계화가 미비함

[표-258] 주요수종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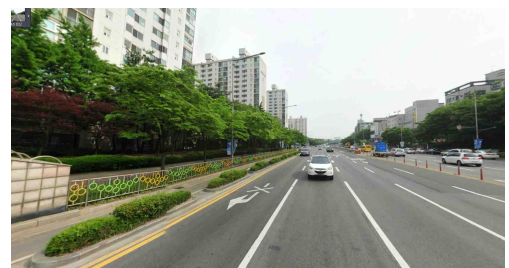
수종	구성비(%)
합계	100.0
은행나무	23.95
느티나무	17.55
벚나무	15.29
버즘나무	8.49
기타	34.72



[그림-366] 주요수종별 가로수 현황도



[그림-367] 미래로 가로수 현황(은행나무, 소나무)



[그림-368] 경원대로 가로수 현황(느티나무)

3) 도입 가로수종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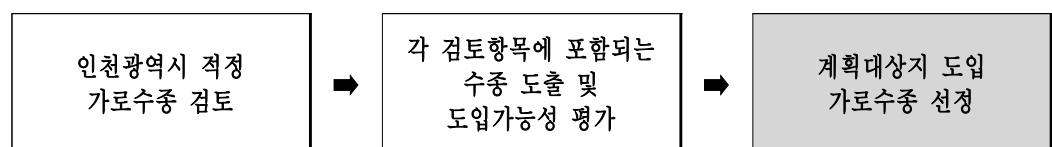
가. 가로수의 일반 구비조건

- 가로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로환경에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모든 구비조건을 갖춘 수종만을 고려할 경우 가로수 도입수종이 지나치게 단순화 될 우려가 있어 이런 조건들 중 주요사항에 적합한 수종은 가로수종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로수로서 가져야 하는 구비조건으로 다음 항목을 고려
 - －생태적 조건으로 내공해성, 내건성, 내염성, 생장력, 맹아력, 내병해성이 강해야 함
 - －형태적 조건으로 수형이 정형하고 고유수형을 가지며 지엽이 밀생하고, 하절기에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며 충분한 지하고가 확보되는 수종
 - －생장속도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속성수가 바람직함
 - －사업대상지의 기후 및 풍토에 잘 맞는 수종
 - －가능한 한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에 비중을 두고 주변 지역과 도로 이용자에게 친숙한 수종
 - －전정에 잘 견디고 수목의 수급이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을 가진 수종

나. 가로수종의 선정기준

- 본 계획에서 제시된 생태적, 형태적, 유지관리조건 등을 가급적 충족하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종의 단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건충족이 되지 않는 수종이라도 의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는 수종은 선정함
- 인천을 상징하는 상징수목이나 자생수종으로서 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인천광역시의 적정 가로수종 중 계획대상지에 도입가능 수종을 검토 반영
- 계획대상지가 임해매립지임을 감안하여 기존 임해매립지에 도입된 가로수종을 검토하여 계획대상지에 도입가능 수종을 검토 반영
- 기타 일반적인 가로수 적정 수종 중 지역기후 특성 및 임해매립지반을 고려하여 도입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종을 검토 반영

[표-259] 가로수종 선정개념도



다. 인천광역시의 적정 가로수종

- 기 연구된 결과로 인천광역시내에 생육가능한 수종들의 성장상태를 고려하여 선정된 18개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검토함

[표-260] 인천광역시 적정 가로수종 특성검토

성 상	수 종	원 산 지	수 형	내한성	내공해성	맹아력	이식성	성장속도	비 고
상록교목	곰솔	한국,중국,일본	원추형	중	강	강	용이	빠름	
	메타세콰이어	중국	원추형	강	중	약	보통	빠름	
낙엽교목	은행나무	한국,중국,일본	원추형	강	강	약	용이	보통	
	피나무	한국,중국	원정형	강	중	중	용이	빠름	중부자생
	양버즘나무	유럽,서아시아	원정형	강	강	강	용이	빠름	
	왕버들	한국	원형	강	강	강	용이	빠름	중부자생
	쉬나무	한국	평정형	강	강	중	보통	빠름	중부자생
	이팝나무	한국,중국,일본	원정형	강	강	강	용이	느림	중부자생
	느티나무	한국,중국,일본	평정형	강	중	중	보통	빠름	
	팽나무	한국,중국	평정형	강	강	강	용이	빠름,느림	중부자생
	갈참나무	한국,중국,일본	원정형	강	중	강	곤란	빠름	중부자생
	능수버들	한국	하수형	강	강	강	용이	빠름	
	중국단풍	중국	원형,타원	강	강	강	용이	느림	
	벗나무	일본	원정형	강	중	강	보통	빠름	
	튜립나무	북미	원추형	강	중	중	곤란	빠름	
	회화나무	한국,중국	평정형	강	강	강	용이	느림	
	꽃개오동	중국	원정형	강	강	중	보통	빠름	
감나무	한국,중국,일본	평정형	중	중	약	곤란	느림		

※자료 : 인천광역시, 1995, 인천광역시 가로수 식재체계 정립과 관리개선방안 참조

라. 도입가능성 검토

- 본 계획에서는 인천광역시 적정 가로수 선정수종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도입가능성을 평가함
- 도입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로수 구비조건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계량화하여 도입수목을 검토
- 또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가로수로 적합하거나 선호수종을 선택

[표-261]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상록, 낙엽수 여부	지역특성 반영	성장속도	보통인 수종 선호
내염성	강한 수종 선호	원산지	자생수종 선호
내한성	"	구입용이성	구입용이 수종 선호
내공해성	"	지역경관성	지역경관에 적합한 수종 선호
맹아력	"	주민선호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
이식성	용이한 수종 선호		

마. 도입 가로수종

- 평가항목에 따라 18가지 수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종을 가로수로 도입 검토함

[표-262] 가로수 도입수종

구분	도입수종
상록교목	곰솔
낙엽교목	이팝나무, 양버즘나무, 목백합, 뽕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능수버들, 중국단풍, 목백합(시목)

4) 가로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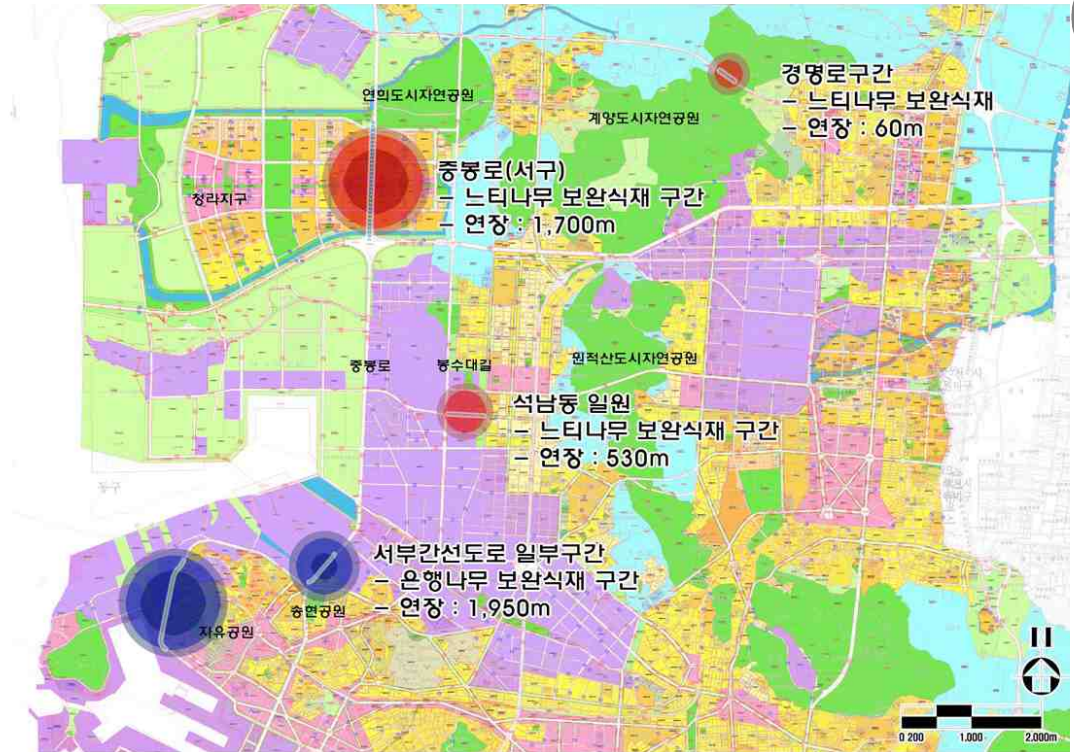
- 가로수 계획은 기존 가로수를 보완하는 식재구간과 인천광역시 가로경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존 및 신규특화계획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함

가. 가로수 보완식재 계획

- 기존가로수를 활용하여 통일된 수종으로 부족구간을 식재함
- 보완식재기법 계획
 - 사업대상의 선정
 - ① 수목개량 / 갱신지역
 - ② 수목교체 및 보완지역
 - 도입수종
 - ① 기존 수목과의 연계(수종, 규격)
 - ② 지역특성화에 따른 수종선정
- 느티나무 보완식재구간으로 중봉로 외 3개구간이 있으며 2.5km에 해당하며 630여분을 식재계획 함
- 은행나무 보완식재구간으로 서부간선도로 1.9km구간이 해당하며 480여분 식재

[표-263] 기존가로수 보완식재 계획 구간

노선	주요수종	연장(km)	본수(본)	비고
합계	5개구간	4.4	1,115	
중봉로-서구일부구간	느티나무	1.7	426	
석남동 일원	느티나무	0.5	133	
경명로 일원	느티나무	0.3	71	
서부간선도로 2구간	은행나무	1.9	485	



[그림-369] 보완식재 계획

나. 가로수 특화계획

- 가로수 특화계획은 크게 해안이나 하천변 가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특화계획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징 가로수 특화계획을 수립함
- 해안, 하천변 가로 특화계획은 서해로와 아암로를 선정하였으며 상징 가로수계획에는 봉수대길, 제1경인고속도로, 드림파크로, 경인 아라뱃길을 선정함

[표-264] 가로수특화계획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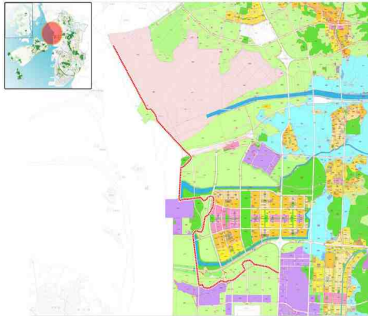

구분	노선	주요수종	연장(km)	비고
합계			59.1	
①	서해로	이팝나무	15.5	조성완료
②	아암로	왕벚나무	4.6	조성완료
③	봉수대길	느티나무	4.6	특화계획구간
④	제1경인고속도로	목백합(시목)	11.1	특화계획구간
⑤	드림파크로	산벚나무	8.8	특화계획구간
⑥	경인 아라뱃길 특색 가로수길	왕벚나무 등	14.5	특화계획구간

(1) 해안변 - 하천변 가로수 특화계획

- 앞에서 살펴본 가로수 도입가능 수종 중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구간별 수종을 선정함
 - ① 바닷물 침수 등의 피해에도 강한 수종
 - ② 폭풍의 피해에 내성이 강한 수종
 - ③ 기후 적응성이 강한 향토수종
 - ④ 같은 규격을 가진 동일수종으로 대량공급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수종
 - ⑤ 지역주민 선호수종

□ 서해로 가로수 특화구간(조성완료)

- 청라-검단지역의 연안을 잇는 '서해로'에 해안경관을 활용한 특화가로 조성

조성내용	위치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종 : 이팝나무 • 총연장 : 15.5km • 주요 특화전략 : 만개한 이팝나무와 해안 경관의 어우러짐을 통한 관광효과 유도 		

□ 아암로 가로수 특화구간(조성완료)

- 연수구-남동구 지역의 서해연안을 잇는 '아암로'에 수변경관을 이용한 특화가로 조성

조성내용	위치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종 : 왕벚나무 • 총연장 : 4.5km • 주요 특화전략 : 남동 유수지와 송도23오근린공원 등의 수변경관과 화려한 왕벚나무 꽃과의 조화로운 경관 유도 		



(2) 상징 가로수 특화 계획

○ 상징 가로수길 가로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역 및 주제에 해당하는 수종
- ② 균제미, 균형미, 통일감을 갖는 수종
- ③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
- ④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수종
- ⑤ 지역주민 선호 수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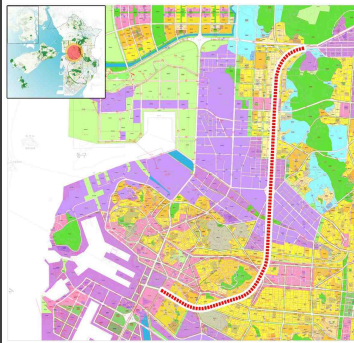

□ 봉수대길 가로수 특화구간

○ 검단지역과 청라지구를 잇는 봉수대길을 상징가로로 설정하여 특화가로로 조성

조성내용	위치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종 : 느티나무 ● 총연장 : 4.6km ● 주요 특화전략 :조형미, 균제미가 뛰어난 느티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한 특화경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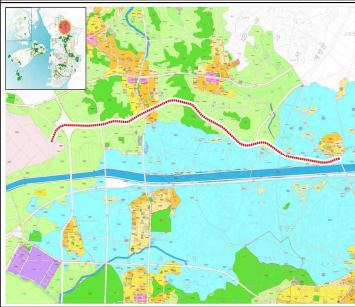

□ 제1경인고속도로

○ 도시재생축인 제1경인고속도로가 지중화되는 구간을 상징가로로 설정하여 특화가로로 조성

조성내용	위치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종 : 목백합나무 ● 총연장 : 11km ● 주요 특화전략 :도시재생축인 제1경인고속도로 구간에 인천의 상징수종인 목백합 나무를 식재하여 대표수종의 아름다움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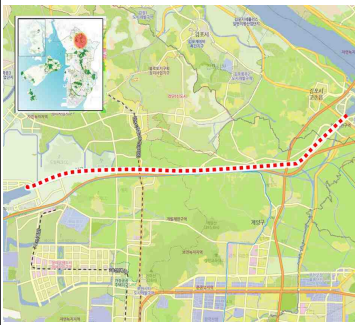

□ 드림파크로 가로수 특화구간

- 검단지역과 계양구를 가로지르는 드림파크로에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친화적 상징성을 부여한 특화가로 조성

조성내용	위치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종 : 산벚나무 • 총연장 : 8.7km • 주요 특화전략 :인천 북부지역의 주요 도로축인 드림파크로에 산벚나무를 식재하여 수려한 봄 경관을 특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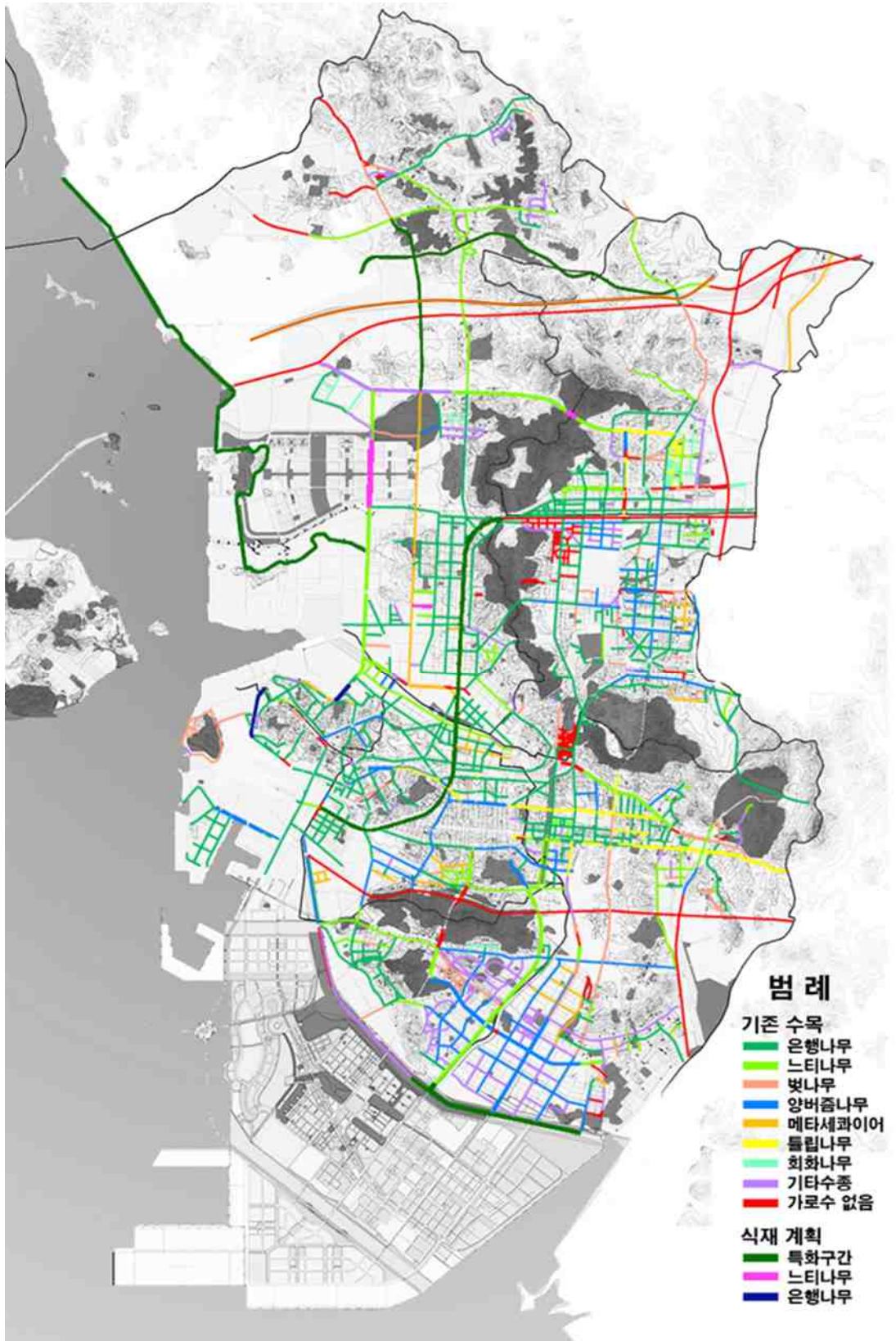
□ 경인 아라뱃길 특색 가로수길 조성계획

- 경인 아라뱃길 녹지구간 내 화목류 식재를 통해 특색 있는 경관 조성
-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인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화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기금 일부 활용

조성내용	위치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종 : 왕벚나무 • 총연장 : 14.5km • 주요 특화전략 :경인 아라뱃길 녹지구간에 화목류 식재를 통해 수변경관 개선 및 새로운 관광 명소화 		

□ 기대효과

- 다층 식재 등 화목류를 계절별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
- 다양한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는 경관 조성을 통해 인천의 새로운 친환경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
- 외부 방문객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



[그림-370] 2030년 가로수 계획도

(3) 수형관리를 통한 가로특화 계획(제안)

- 기 조성된 가로수 현황을 분석하여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수형관리 및 보식모듈을 제시
- 가로수 정비 및 관리를 통해 가로수 길을 특화하는 계획(안)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 남동대로(4.5km) ● 특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사지제거 등 약전정 -하부식수대보완, 다층식재 -환경정화 및 녹화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 먼우금로(3.1km) ● 특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위적 형태미의 강전정 -상업가로의 특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 해돋이로, 신송로 (1.6km) ● 특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정없이 고유수형유지 -자연스런 녹음공간 제공 -식수대설치, 수벽설치



[그림-371] 가로수 특화방안 조성 전 후 비교도- 남동대로



[그림-372] 가로수 특화방안 조성 전 후 비교도- 먼우금로



[그림-373] 가로수 특화방안 조성 전 후 비교도- 해돋이로, 신송로 등

(4) 가로 유형별 관리를 통한 가로특화 계획(제안)

- 주변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
- 관리 유형으로는 공업, 상업, 업무, 주거지인접, 일반생활, 역사경관, 도시생태네트워크, 자동차중심가로 등으로 분류하여 장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토지이용별 기존 수종이 양호하거나 지역민의 만족도가 높을 시에는 현재 수종을 유지

[표-265] 가로 유형별 관리를 통한 가로특화 계획

구분	토지이용	가로특화	도입수종	비고
①	공업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지역의 공해 저감 • 환경정화수목 반영 • 띠녹지 조성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이팝나무 등	
②	상업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 상가 간판 가리는 문제 해결 • 상가 및 통행문제 해결 • 띠녹지 최소화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이팝나무 등	
③	업무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후퇴 전면공지 발생 • 넓은 보행공간 활용한 띠녹지 조성 • 수형 정돈 중심의 수목관리 	느티나무, 칠엽수, 양버즘나무, 대왕참나무 등	
④	주거지 인접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 연속적 입지 • 단지외부 녹지와 가로수 연계 • 띠녹지 조성 	산벚나무, 목련, 이팝나무, 단풍나무, 복자기, 등	
⑤	일반 생활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토지이용 혼합 • 화목류 및 띠녹지 조성 • 단조로운 가로경관 탈피 	산벚나무, 산딸나무, 목련,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⑥	역사경관 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 미를 해치지 않는 향토수종 • 단일한 수종의 단정한 띠녹지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⑦	도시생태 네트워크 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하천 등 대규모 녹지와 인접 • 야생동물의 먹이 수목반영 	산사나무, 모감주나무, 마가목, 산벚나무 등	
⑧	자동차 중심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적 역할 부여 • 표지판, 운전시야 확보 위주 수형관리 	양버즘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어, 대왕참나무 등	

(5) 가로별 수형관리 표준모델(제시)

- 기존 가로수 기준 관리모델 표준 제시
- 가로보도폭, 인접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수형 관리 방안 제시
- 가로수의 주변토지이용 및 보도폭, 도로구조 등 여건별로 구분하여 기준모델, 비대칭A형, 비대칭B형, 비대칭C형으로 구분하여 제시

[표-266] 가로별 수형 관리 모델

구분	토지이용	가로특화	비고
①	기준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3m이상 • 대칭형, 생육공간 충분 • 수형 정상적 생육 	
②	비대칭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3m이상 • 비대칭형 • 후면 수형전정 	
③	비대칭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3m이상 • 상가건물 간판과 간섭 • 수관폭을 1/2쯤계 관리 	
④	비대칭 C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3m이하 • 보도폭 협소 • 건물 간판과 간섭 • 수관폭 좌, 우, 후면을 1/2쯤계 관리 	

5)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

가. 가로수 식재

- 식재적기
 - －춘기 : 3월 상순~4월 하순, 추기 : 10월 상순~11월 중순
- 식재간격 : 6~8M
 - －신호등, 전신주등 기타 가로시설물 저촉 시는 주변 여건에 맞게 식재
- 수종선정
 - －목백합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향토수종 식재
 -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성 가로수 적극 도입
 - －신설노선, 수종갱신노선에는 은행나무 식재 지양
(전체 가로수 34개 수종 중 은행나무 30.31% 식재)
 - －수종선정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심의를 득한 후 시행
- 규격
 - －흉고기준 : 흉고 10cm, 나무높이 4.0m이상
 - －밑지름 기준 : 밑지름 12cm, 나무높이 4.0m이상
 - －지하고, 수고, 폭 등을 일정하게 식재
- 식재위치
 - －제설재, 차량 등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에서 수간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
 - －보도폭 등 여건을 고려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열식재로 녹지량 확충

나. 가로수 보식

- 기준 : 동일로선, 동일구간별로 수종·규격·간격을 통일
 - ※ 대형목이 심어진 노선의 보식은 기존 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 12cm(밑지름 15cm)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
- 동일노선에 2가지 수종이상 심어져 있거나 수목간의 규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은 동일수종 및 규격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

다. 전지·전정

- 전지·전정 작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종별 고유수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작업
- 사전심의 : 반드시 녹지조경심의 절차 이행 후 시행
 - ※ 전주 등 상부공간에 지장물이 없는 등 수고생장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녹지심의 신청시 반려 예정

- 작업시기
 - －낙엽진 후부터 수액 이동전(2월말)
 - －교통표지판(신호등)등 차폐 가로수는 수시 작업
- 수종별 기본 수형
 - －원추형 : 은행나무, 튜립나무, 해송, 메타세콰이아 등
 - －원정형 : 버즘나무 등
 - －평정형 :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 유의사항
 - －수종별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모양과 높이가 일정하도록 유도
 - －굵은 가지 전지 시는 수간 손상이 없도록 방부제 처리
 - －가로수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지치기 시행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
 - －수종별 가지치기 유의사항
 - 은행나무 : 보행자와 건물에 지장을 주는 가지의 지점부를 절단하되 수간 끝은 절단하지 말 것
 - 버즘나무 : 수형의 전체적인 가지치기 보다는 숙아주기, 하수지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
 - 벚 나무 : 가지치기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계 전정 후 방부제 처리

라. 가로수 관리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 관수시설
 -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 등, 보도폭, 도로의 여건 고려
 - －수종 및 보도폭 고려 크기 조절
-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분(식수대)의 흙 높이가 보도블럭 상단보다 5~10cm 정도 낮게 식재(성토)
- 가로수 지주대 설치
 - －훼손된 보호틀은 수시점검 후 정비 및 교체
 - －가로수 보호틀은 가로수의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대상형(연속형), 직사각형으로 개선
 - －교통량, 보행량에 따라 보호덮개는 철강재 또는 구조물보다는 나무 파쇄물, 자갈,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 친환경적인 소재 활용

□ 토양개량 및 비료주기

○ 생육환경 조사

- 노선별 생육상태를 조사 관리대장을 작성
- 식재시 토양의 pH과다 여부 등 필요시 토양검사 실시

○ 토양개량

- 대상지
 - 토양답압, 오염, 척박지, 매립지, 절개지 등
 - 제설재 등 약해 피해지
 - 협소한 식재공간, 토양의 영양결핍 등 수세 약한 지역
- 추진방법
 - 콘크리트, 보도블럭 등 제거 후 토양개량제와 병행한 치환
 - 철쭉, 잔디 등 하층식재를 통한 경관미 제고

○ 비료주기

- 대상지
 - 조기단풍 및 조기 낙엽 등 생장 부진지역
 - 수세가 약하여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추진방법
 - 토양의 70%가 생육환경 열악함을 감안 관리대상 지역의 70% 실시
(춘기 30%, 추기 70%)
 -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등의 토양개량 권장

[표-267] 가로수 관리지침

관 리 목 표	관 리 내 용	효 과
통일미 유지	• 결손수목에 대한 보식, 집중시비, 수형보정, 수종교환, 열세목과 우세목의 성장조절 등	가로별 독자성 확보
아름다운 대형목으로의 육성	• 가지절단 억제와 적절한 조절, 해안의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정방침 수립, 피해의 위험이 적은 곳에는 강전정을 피함	해안경관의 유지
투수성 포장 및 식재지 개선	• 가로변 연석의 높이와 식수대의 높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수목뿌리 부패 예방
연도주민의 협조 유도	• 관수시기, 방충해에 대한 신고접수	피해상황의 조기발견
식재와 관리업무의 일원화	• 최소한 계획단계에서는 관리의 주체를 일원화 계획지침의 일관성 유지	계획지침의 일관성유지

7.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1) 기본방향

- 도시내 지역적-광역적 균형 잡힌 가로경관계획의 수립
- 보행위주의 정적인 단일목적의 공간에서 활동 중심의 다목적 가로환경조성으로의 전환
- 지역적 특성, 각종 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기존 가로환경의 개선방향 및 모듈제시

2)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대상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존가로
- 수변공간 : 주요하천, 해안, 유수지
- 문화자원 : 체육시설, 문화시설, 역 주변, 공원
- 자연자원 : 폐염전, 갯벌, 우수산림

3)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특화가로계획 : 활동중시의 테마가로 설정 및 가로계획
- 기존가로개선계획 : 기존가로경관의 일관성 있는 표준식재패턴 제시

가. 특화가로계획

□ 기본 방향

-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가로축 설정
- 주축, 테마루트, 보조동선체계 설정을 통한 특화가로망 형성
- 시점, 결절점, 종점의 설정을 통한 다양한 경관의 연속성 부여

□ 특화가로계획의 전략

- 주축 : 대표수중선정 및 통일감을 주는 계획으로, 인천광역시 보행환경의 상징성 부여
- 테마루트 : 주축과 주요 결절점을 잇는 특화루트 유형 및 전략 제시
- 보조동선 : 테마루트내 결절점과 결절점을 잇는 동선으로, 기존가로 개선계획의 적용을 통한 보행환경 전반의 개선 유도

[표-268] 테마루트 특화전략

특화루트 유형	특화전략
복합문화 테마루트	① 결절점의 성격에 맞는 포장재료 및 패턴의 특화 ② 가로수 하부식재의 특색화를 통한 가로경관연출 ③ 이색 가로시설물의 배치 및 계획
수변경관 테마루트	① 경관식재(포인트식재, 유도식재)를 통한 주요 조망점 활용 ② 분수·물놀이 등 다양한 체험요소의 배치
주요구간 연결 테마루트	① 구간의 곳곳에 쉼터조성을 통한 정주공간 확보 ② 주변공간으로부터의 완충지역을 설정함으로 가로이용의 집중도 및 빈도수 증대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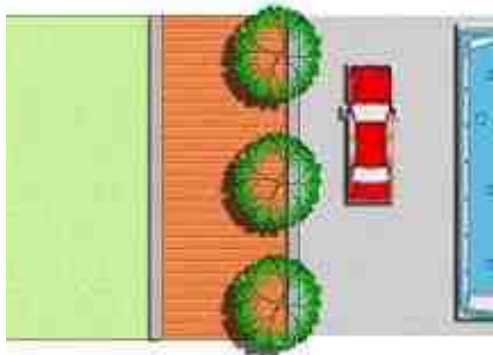
[표-269] 특화가로계획

유형	주요구간	결절점	연장(km)	
합계			146.52	
주축	•남북축(청라-구도심-송도) : 중봉로-아암로	청라지구, 월미공원, 송도지구	18.35	
	•동서축(월미공원-중앙공원-인천대공원) : 월미로-참외전길-경인로-구월로-백범로	월미공원, 중앙공원, 인천대공원	16.70	
테마루트	복합문화 테마루트	① 구도심	월미공원, 화도진공원, 송현공원, 수봉공원, 인천교공원	16.49
		② 송기천변-중앙공원	남동유수지, 승기천, 문학경기장, 선학체육공원, 문학산성	23.17
		③ 장수천변	소래습지생태공원, 폐염전, 오봉산, 도림공원	25.80
	수변경관 테마루트	① 청라지구(공촌천-심곡천)	청라지구내 근린공원과 연계된 시설들	16.44
		② 굴포천 복원구간	굴포천, 시냇물공원, 신트리공원, 부평공원	7.54
	주요구간 연결 테마루트	① 중봉로(청라-동구)변	북향, 원신공원	6.89
		② 제1경인고속도로 지중화구간	도화가좌동인천 등 도시재생사업부지 연계구간	15.14

□ 특화가로 녹도 및 보행자도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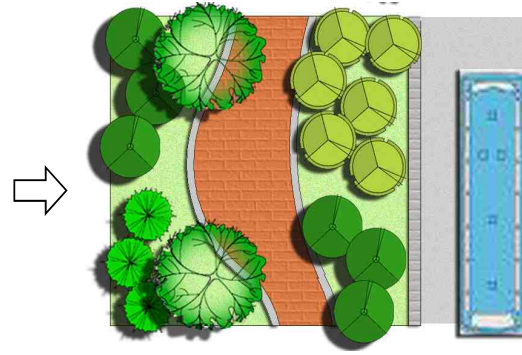
- 도로변 보도 구조를 개선함 : 차도 - 녹지 - 보도 - 대지경계
- 보도 녹지(따 녹지) 조성 : 도로경계석에 접하여 잔디, 자생식물, 관목, 교목 등 식재
→ 녹시율(綠視率) 증대

기존 보도(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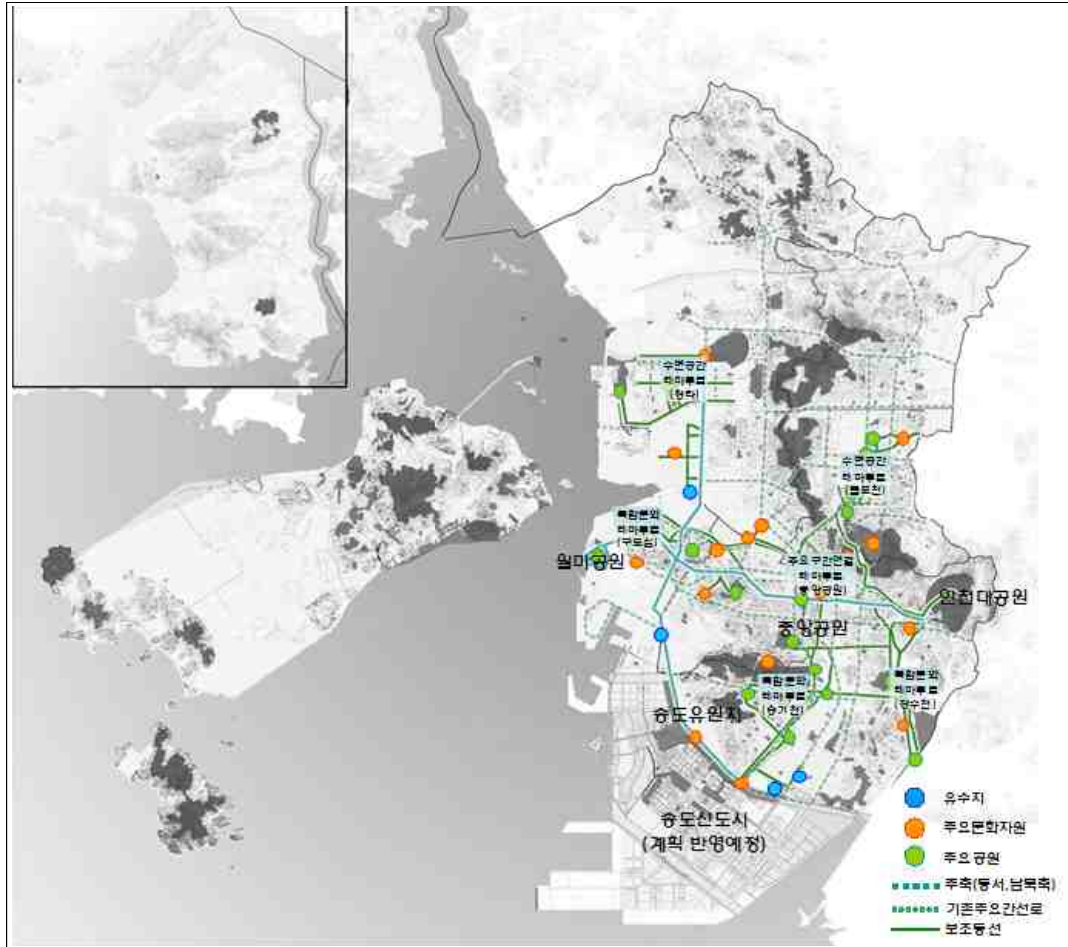


(녹지·대지 - 보도 - 차도)

보도 구조 개선(안)



(녹지 - 보도 - 녹지 - 차도)



[그림-374] 녹도 및 보행자가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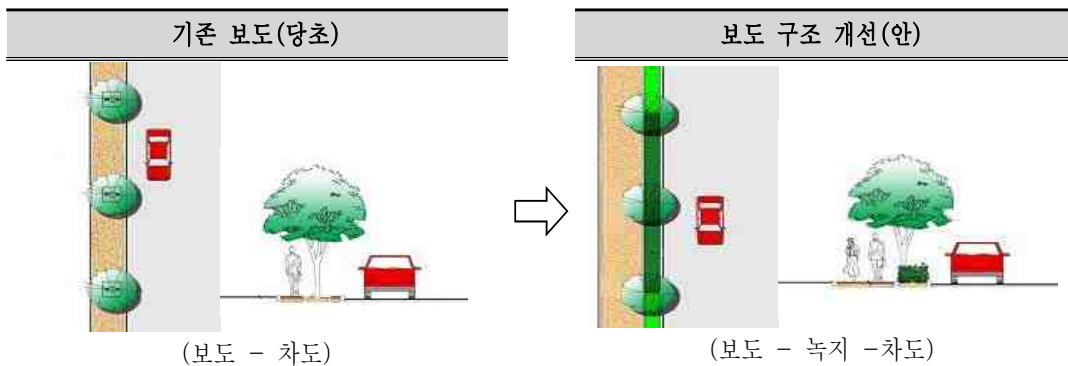
나. 기존보행환경 개선계획

□ 기본방향

- 기존의 열악한 환경의 보행로들을 대상으로 식재방식과 가로시설물의 차별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

□ 기존 보행환경 개선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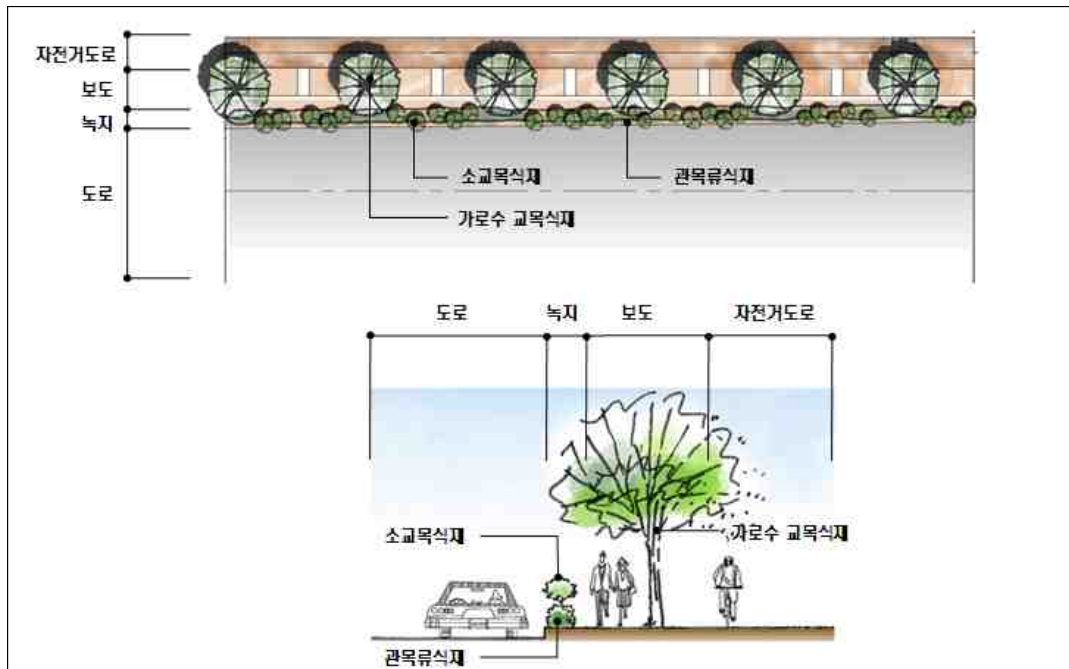
- 보도 폭원을 3.5m이상 확보하여 가로수 하층에 녹도 조성
→ 3.5~5.0m 보도 : 1열 녹지, 5.5m 이상 보도 : 2열 녹지(도로과 협조)



다. 녹도 및 보행자도로 패턴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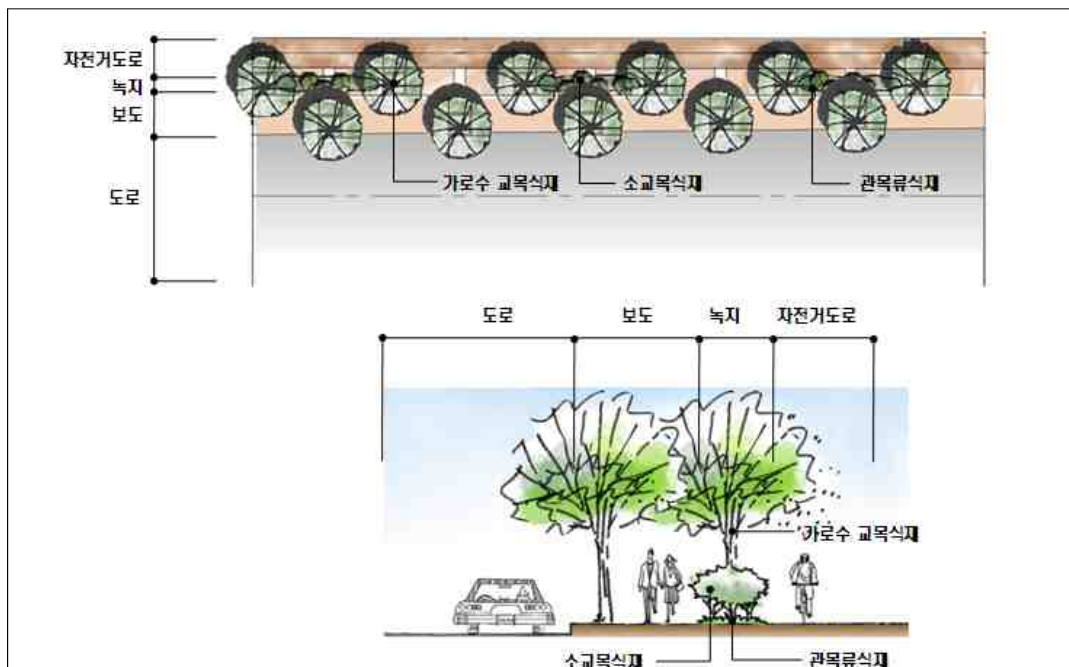
○ 도로폭원에 따라 녹도 및 보행자도로의 패턴을 제시함

- (1) 보도폭 2.5~4.0m, 자전거도로 2.0m
: 중앙 교목 1열 차도측 관목 0.5열 식재



[그림-375] 식재평면도, 식재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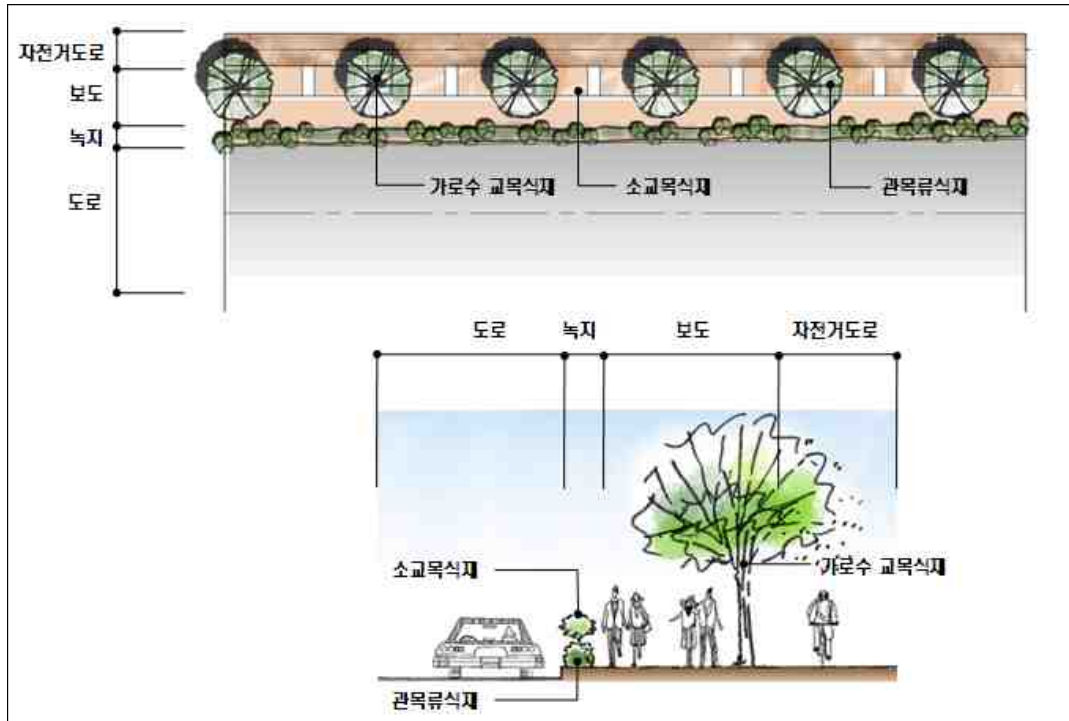
- (2) 보도폭 5.0~6.0m, 자전거도로 2.0~2.25m
: 중앙 교목 2열 중앙 관목 1열 식재



[그림-376] 식재평면도, 식재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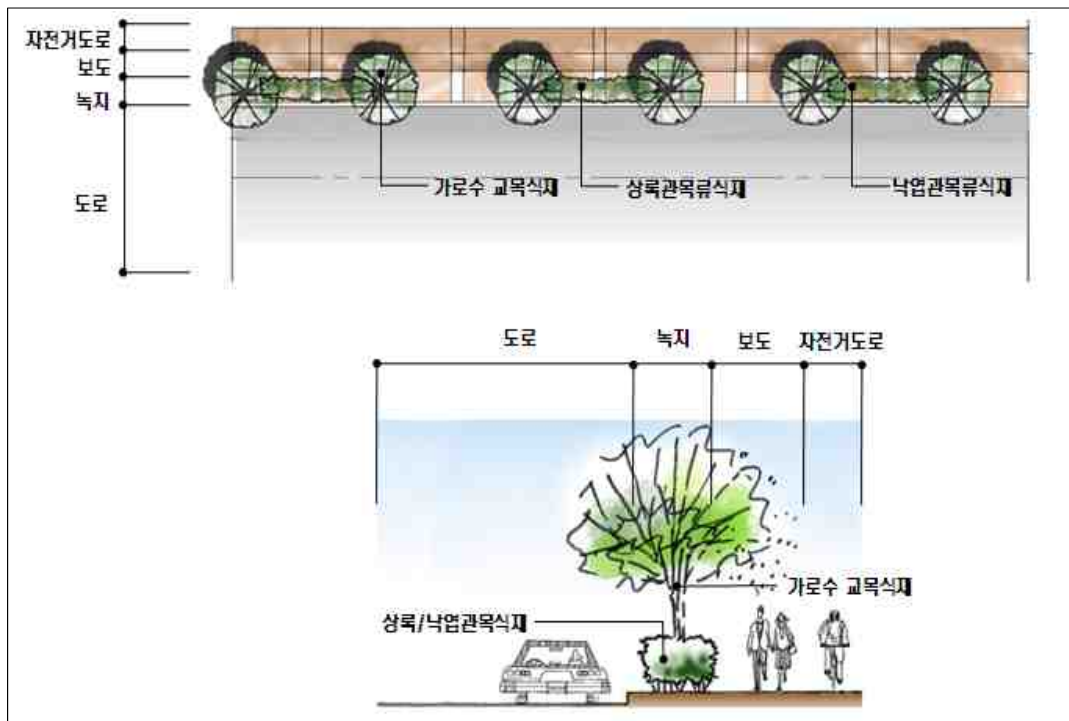
6장 부문별 계획

- (3) 보도폭 5.0~6.0m, 자전거도로 2.0~2.25m
 : 중앙 교목 1열 차도측 관목 1열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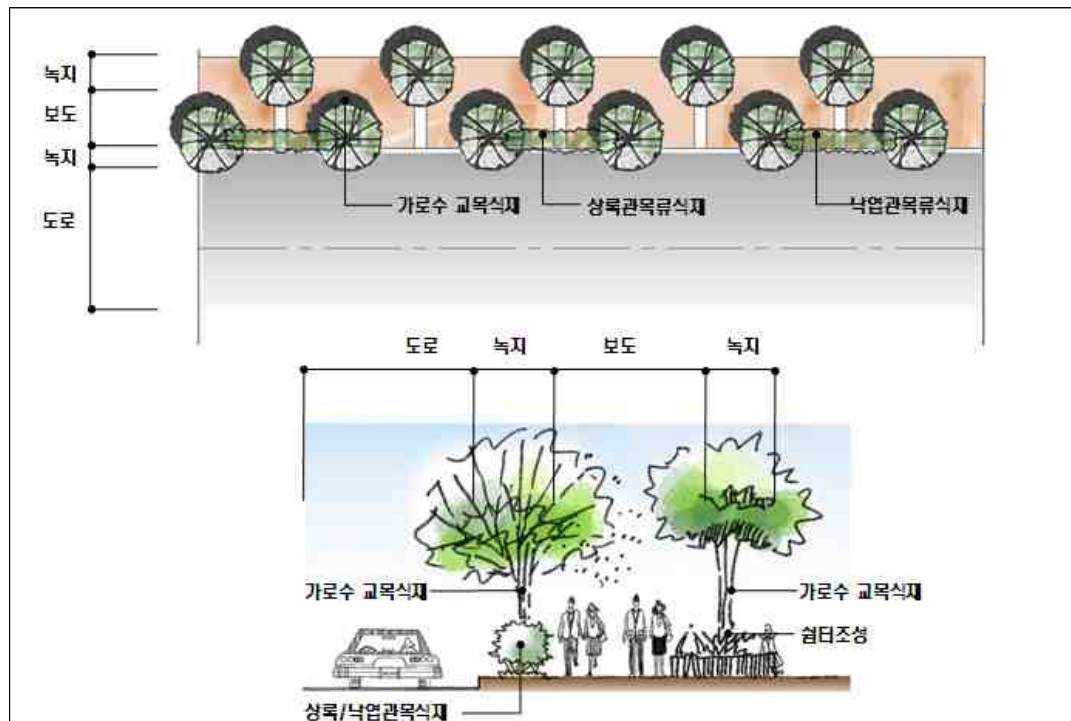
[그림-377] 식재평면도, 식재단면도

- (4) 보도폭 3.5~4.0m, 일방향 보행자도로 or 자전거도로
 : 차도측 교목 1열 차도측 관목 1열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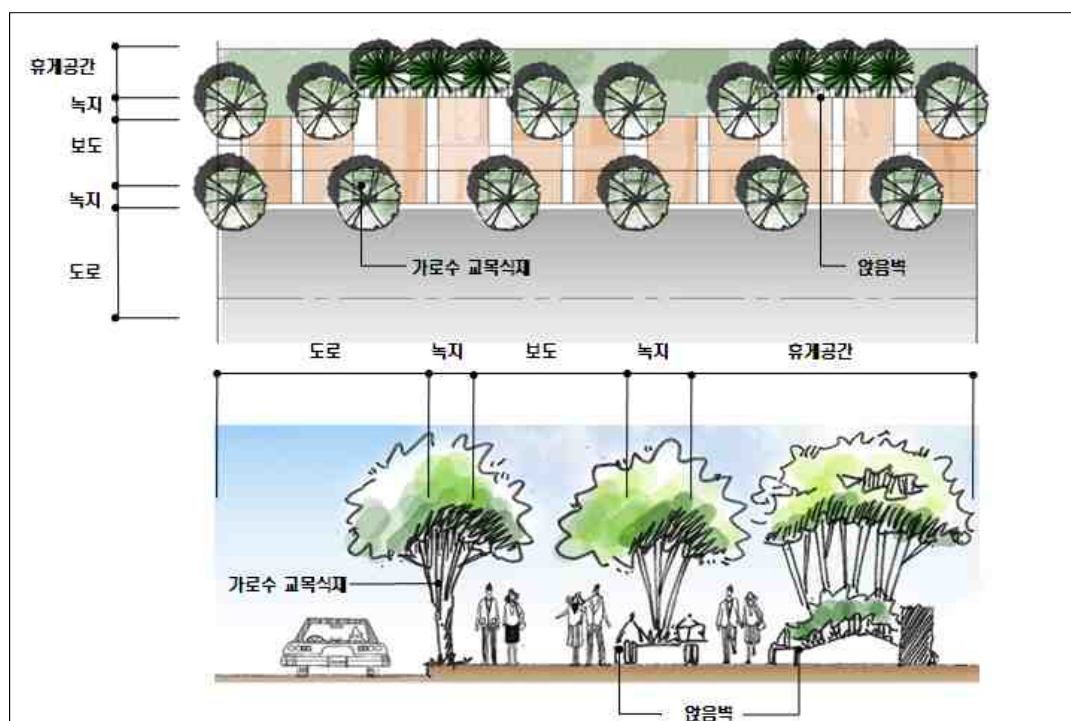
[그림-378] 식재평면도, 식재단면도

- (5) 보도폭 5.0~5.5m
: 교목 2열 차도측 관목 1열 식재



[그림-379] 식재평면도, 식재단면도

- (6) 보도폭 6m 이상
: 교목 2열 관목 2열 식재



[그림-380] 식재평면도, 식재단면도

8. 생태통로계획(ECO-BRIDGE)

1)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의 주요 보전녹지체계인 한남정맥과 이를 포함한 S자형 남북녹지축의 단절구간을 파악하고, 단절구간의 연결방안 제시
- 단절구간 및 연결방안의 유형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설계지침 제시
- 생태통로의 연결을 통한 동·식물 목표종의 지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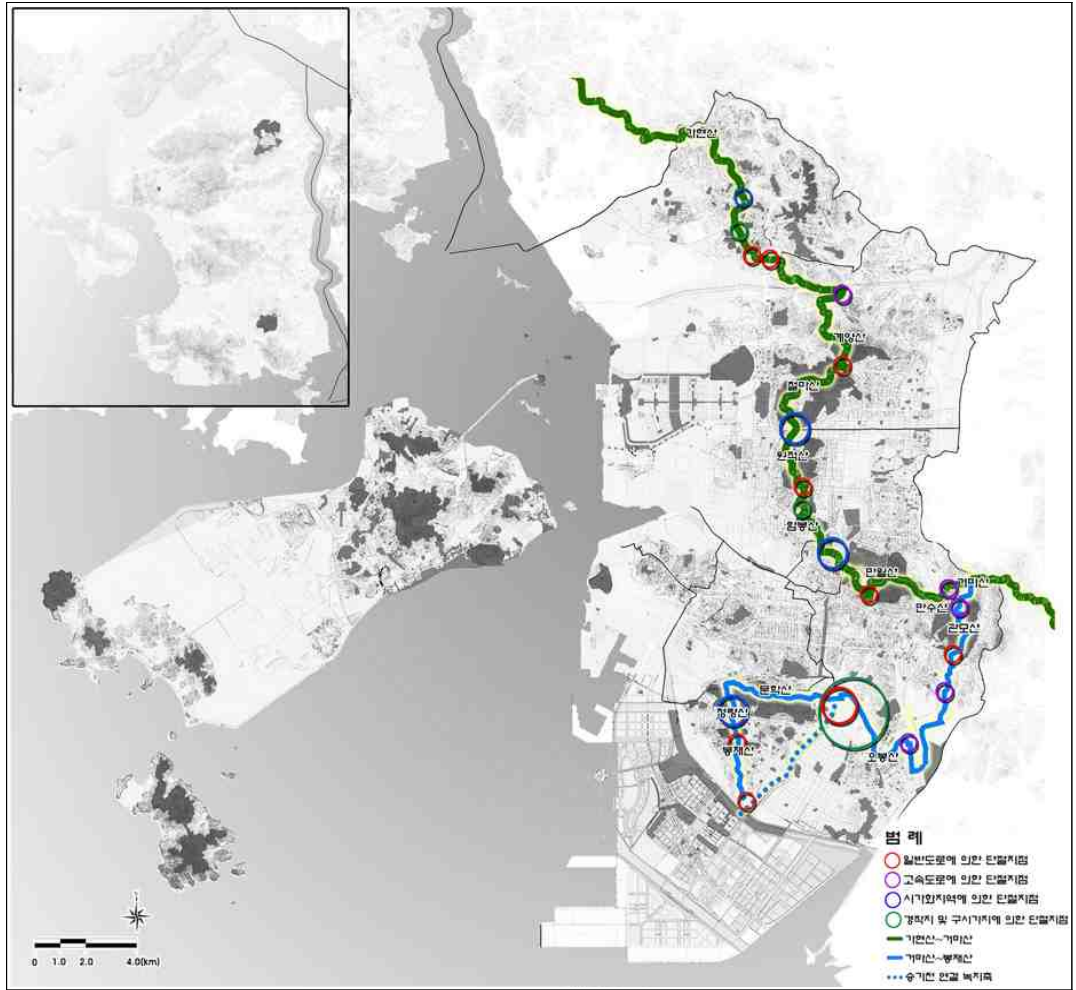
2) 생태통로 대상 설정

□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의 남북 녹지축은 백두대간 13정맥 중 하나인 한남정맥의 중심에 있어 생태 네트워크가 필요
- 인천광역시 내륙지역은 가현산,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함봉산, 만월산, 만수산, 거마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녹지축과 관모산, 오봉산,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으로 이어져 송도 신도시로 넘어가는 녹지축이 합하여져 S자 녹지축을 형성함
- S자 녹지축은 각종 도로 및 시가화 개발지역에 의해 훼손 및 단절된 구간에 대한 녹지축 복원계획을 수립함
- 가현산~계양산~천마산~원정산~함봉산~만월산~만수산~거마산~관모산~오봉산~문학산~청량산~봉재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의 단절구간을 파악함
- 현장답사를 통해 단절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1개소로 도로에 의한 단절, 시가화 지역에 의한 단절, 경작지 및 구시가지에 의한 단절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음

[표-270] S자 녹지축 전체 단절현황

구분	단절유형		개소	주요 단절지명
계			21	
가현산~거마산	도로	일반도로	5	• 수도권매립지수송도로, 서곶길, 경원로, 원적산길, 주안산길
		고속도로	2	• 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시가화지역		3	• 검단1지구, 청천동, 십정동
	경작지		2	• 신공폐인트 일대, 가좌동 일대
거마산~봉재산	도로	일반도로	2	• 백범로, 앵고개길
		고속도로	3	•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국도, 영동고속도로
	시가화지역		1	• 옥련동
	경작지 및 구시가지		1	• 수산동 일대
승기천 연결녹지축	도로	일반도로	2	• 경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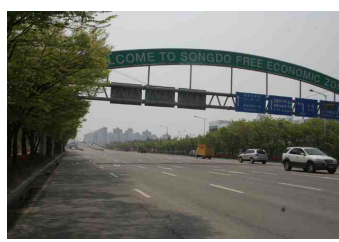


[그림-381] 인천광역시 주요 녹지축 단절현황도

가. 도로에 의한 단절현황



- 비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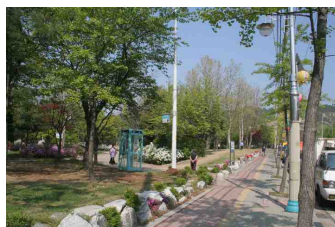


- 경원로



- 드림파크로

나. 시가지에 의한 단절현황



- 부평구 호봉공원 인근



- 연수구 옥련동 일원



-승기천변 산책로

다. 경작지에 의한 단절현황



- 남촌동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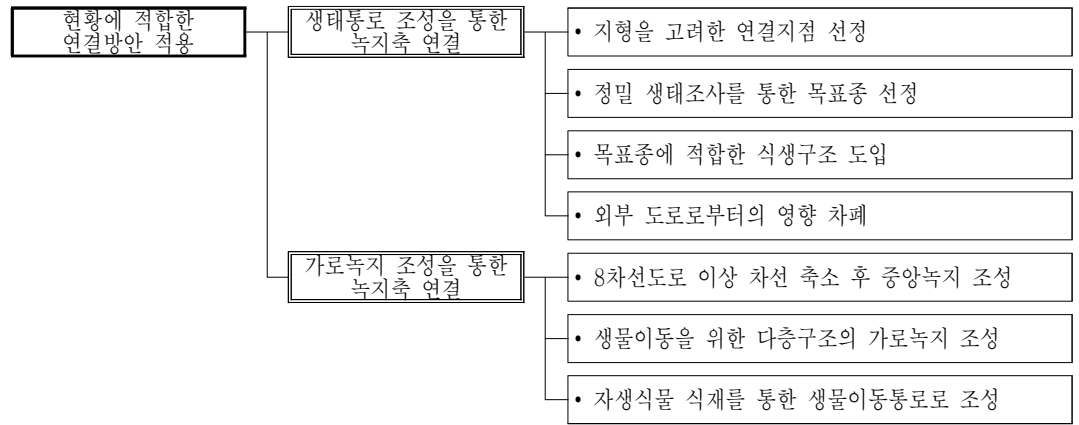
- 서창동 일원



- 만월산 일원

3) 단절 유형에 따른 연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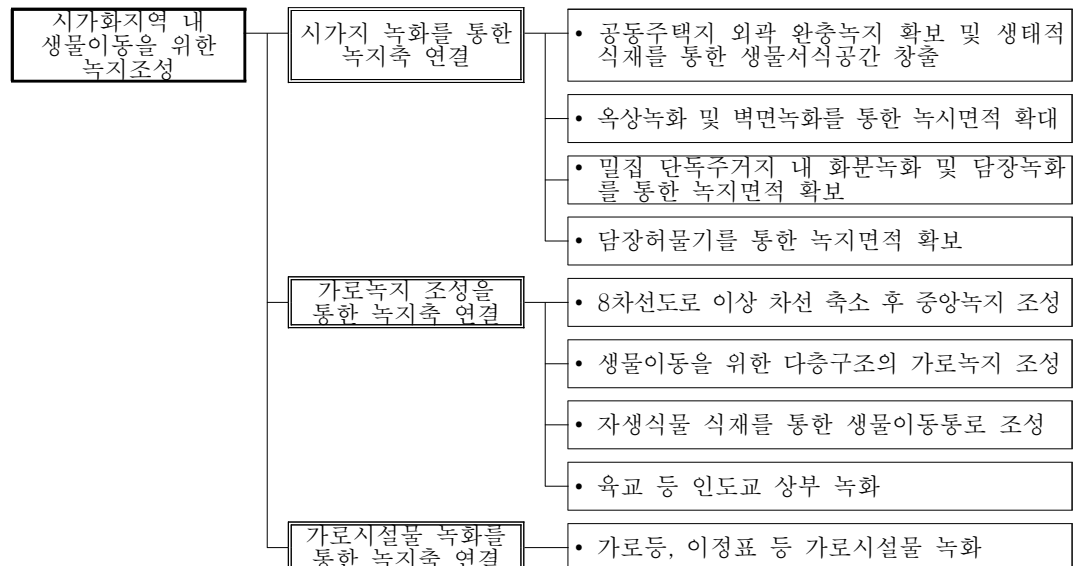
- 도로 개설로 단절·훼손된 구간을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로 도시경관·녹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생태계를 복원함



[그림-382] 노량진 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계획



[그림-383] 노량진 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계획 조감도





[그림-384] 일본 도쿄 가로수산보도 신궁외원 전면 은행나무 4열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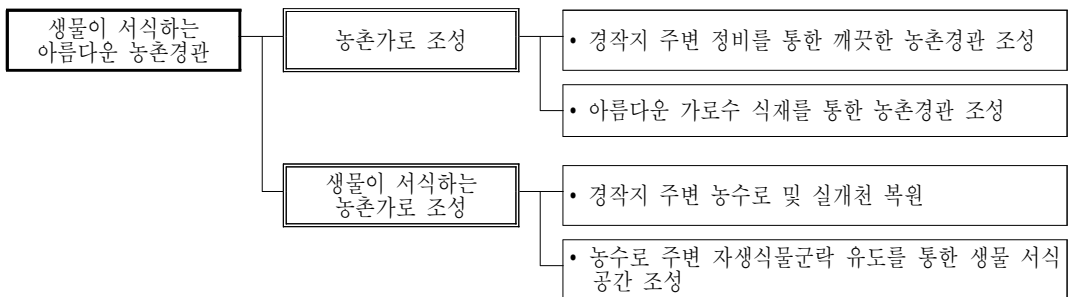
[그림-385] 일본 도쿄 가로수산보도 오모테산도 가로녹지 조성현황



[그림-386] 서울 선유도공원 선유도 보행육교



[그림-387] 서울 흑석동 현충공원내 다리



[그림-388] 독일 칼스루에 아름다운 농촌경관



[그림-389] 독일 칼스루에 경작지변 양버들 가로수

4) 계획 방향

- 앞서 검토한 21개소 단절 현황을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12개의 단절구간에 생태통로 2개소, 녹도 6개소, 보도육교(출렁다리)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표-271] 생태통로계획

번호	단절구간	단절도로명	연결방법	비고
①	계양산~천마산	경명로	생태통로	조성완료
②	천마산~원적산	경인고속도로	녹도	향후반영
③	원적산~함봉산	원적산길	생태통로	조성완료
④	함봉산~백운공원	경원로	녹도	조성완료
⑤	십정산~만월산	경인로	녹도	향후반영
③	만월산~만수산	주안산길	보행육교	조성완료
⑦	만수산~거마산	무네미길	녹도	향후반영
⑧	관모산~장수천~오봉산	장수천	보행육교	향후반영
⑨	비류길	비류대로 일원	보도육교	조성완료
⑩	문학산~청량산	비류길	보도육교	향후반영
⑪	봉재산~승기천	경원로	녹도	조성완료
⑫	백운역 철도변	백운역 상부	녹도	추진중

※참조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내부자료



※참조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내부자료

[그림-390] 생태통로 현황 및 계획도

5) 생태통로의 유형에 따른 조성방법

□ 생태통로 연결구간

○ 생태통로로 개발한 구역은 계양산~천마산구간, 경명로에 징매이교개 생태통로 설치완료



- 경명로



- 원적산길



[그림-391] 생태통로 연결구간

가. 징매이 고개

○ 계획내용

- 위치 : 계양산 징매이고개 정상에서 동사면 146m
- 도로위를 횡단하는 상부터널형(왕복 8차로 2 Arch 터널)
- 이동제한 구조물, 차량소음 및 불빛 방지시설, 식재 및 녹화 등



[그림-392] 경명로 위치도



[그림-393] 경명로 생태통로

나. 원적로

○ 계획내용

- 위치 : 원적로 고개 정상에서 서구방향 200m
- 도로 위를 횡단하는 상부 터널형(왕복 6차로, 파형강관 Arch 터널)
 -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형태, 규모 등 결정
- 이동제한 구조물, 차량소음 및 불빛 방지시설, 식재 및 녹화 등



[그림-394] 원적로 위치도



[그림-395] 원적로 생태통로

6) 생태통로 조성사업

□ 생태통로 조성시, 생태축 복원을 위한 녹화식물

- 녹지화를 위한 식물로는 최대한 양쪽 산의 식물 연계성을 고려하고, 외래종이 아닌 우리나라 자생 식물들 중에서 비교적 쉽게 녹화되고 장기적으로 녹화가 잘 유지되는 식물로 함. 또한 양서·파충류와 포유류의 이동통로와 서식지로도 사용가능한 초·목본 식물을 식재함
- 초기 녹화시에는 초본류 중 다년초이면서 빠르게 정착하여 번식할 수 있는 벼과·사초과, 콩과식물(살갈퀴, 갈퀴덩굴 등), 십자화과의 냉이류, 석죽과 별꽃류, 제비꽃, 꽃마리 등의 식물로 함

- 목본류로는 주로 관목을 식재해야함. 공과식물로 절개지 녹화를 위해 개발되어 있는 싸리 속의 식물과 싸리보다는 크기가 작은 관목이지만, 줄기가 옆으로 뻗어 비교적 넓은 부근에 걸쳐 군락을 형성하는 땅비싸리 속의 식물들을 높은 밀도로 식재하여 방음벽외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불빛 차단함
- 식물 연계성에 알맞게 본 조사에서 파악된 진달래, 개암나무, 쥐똥나무, 병꽃나무, 조팝나무 등을 이식함
- 계양산의 목본 우점종인 참나무과의 신갈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를 생태축 양쪽 입구 부근에 식재함

□ 관찰 목표 예상종

- 조류 : 소형 명금류(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류, 멧새류),
대형류(멧비둘기, 직박구리, 지빠귀류, 물까치)
 - 지역에 생태이동통로를 만들었을 때 주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종은 비행거리가 길지 않은 소형의 명금류로서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류, 멧새류 등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외의 비교적 대형종인 멧비둘기, 직박구리, 지빠귀류, 물까치 등은 비행거리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소형의 명금류보다는 이용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의 단절된 상태보다는 서식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이동통로에서 조류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형 명금류가 주로 서식지로 이용하는 관목림이나 덩굴림 등의 조성이 필요함
- 양서류 : 참개구리
- 파충류 : 누룩뱀, 살모사, 쇠살모사, 아무르장지뱀
- 포유류 : 너구리, 족제비, 다람쥐, 청설모, 소형 설치류

※ 출처 : 시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보호야생동·식물 관리계획 수립 참조

9. 자전거도로 계획

1) 기본방향

- 공원과 공원의 연계, 공원과 녹지와 연계 고려한 자전거도로 계획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함
-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상호간 기능 분담 및 보완
- 신도시인 영종, 청라, 송포지구의 자전거도로계획을 반영함
- 자전거 무료 대여 운영 프로그램(Public-Bike)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

2) 자전거 이용코스 개발

- 각 지역별 공원간 자전거 이용 코스 개발로 레저·관광·스포츠 등 이용 다양화를 추진함
- 현황
 - 인천광역시 전체 및 공원간 자전거 도로가 부족함
 - 자전거 이용자가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추진방안
 - 다양한 자전거 이용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함

[표-272] 자전거 이용코스 개발

구 분	대 상	추 진 내 용
자전거 연계 교통코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주요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코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접근하는 교통코스의 개발, 자전거 접근로 정비 등
레저용 trail 코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 구릉지 등 경관이 좋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용 자전거 trail 코스 개발 • 편의시설(휴게소 등)설치, 산악자전거 코스 등
공원 사이클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거점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주제공원 투어코스 개발 • 안내인이 있는 자전거 여행 등 추진
관광투어 코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 영종도 주요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 영종도 해안도로 관광 사이클링
신도심내 자전거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영종, 청라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 계획내용 반영

3)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자전거도로 계획

가. 인천광역시 자전거 전용도로망

- 인천광역시 자전거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참조하여 공원녹지기본 계획에서 자전거계획을 수립함



[그림-396] 인천광역시 자전거 전용도로망 계획

나.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자전거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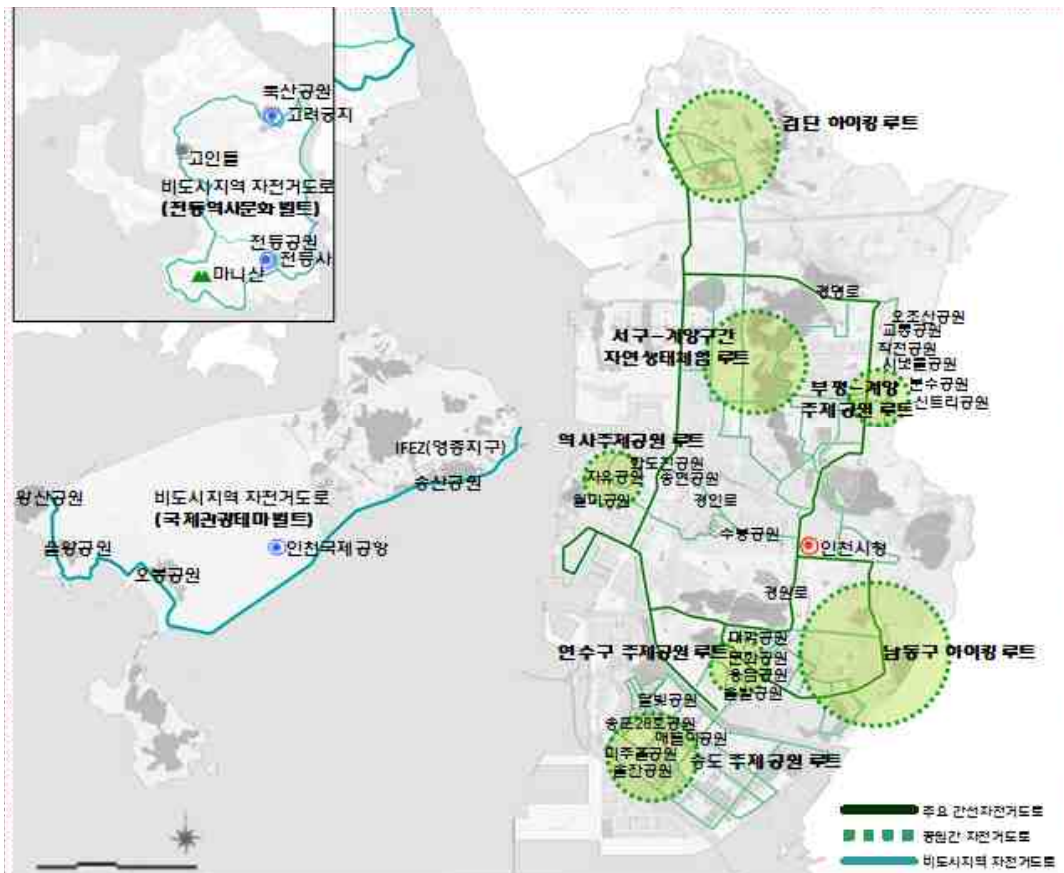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내륙지역을 크게 순회하는 도시지역 자전거도로계획과 각 구별 주요공원을 연계하는 테마별 자전거계획, 도서지역내 관광테마루트계획으로 계획함

6장 부문별 계획

[표-273] 공원녹지 자전거도로 계획코스 개발

구분	코스 개발	연장(km)
합계		314.18 (189.04)
도시지역내 자전거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도심을 순환하는 주요 간선도로 -경명로→장제로→경인로→남동로→해안순환도로→서해로→봉수대길 	53.65 (28.95)
공원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주제공원 루트 -월미공원→자유공원→화도진공원→송현공원→주인공원→수봉공원 	22.41 (1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단 하이킹 루트 -검단중앙공원→검단묘지공원→검단7호공원→블로제1호공원→검단근린공원 	11.09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계양구간 자연생태탐험 루트 -계양공원→원적산공원→호봉공원→약사공원(산악자전거코스)→인천대공원 	34.75 (2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양~부평 주제공원 루트 -계양교통공원→서운공원→분수공원→대촌공원→신트리공원→굴포천 복원구간→부평공원 	18.26 (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구 하이킹 루트 -중앙공원→인천대공원→도림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논현공원→2014아시아 경기대회 체육공원→승기천 	34.51 (1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구 주제공원 루트 -대학공원→솔밭공원→솔안공원→부수지공원→용담공원 	26.65 (4.10)
비도시지역내 자전거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테마 자전거 투어 -강화도 : 전종 역사문화 벨트 -영종도 : 국제관광테마벨트 	112.86 (90.66)

※ ()는 계획면적 중 미조성 된 구간의 연장임



[그림-397] 공원녹지 자전거도로 계획도

4) 자전거 무료 운영 대여 프로그램(Public-bike) 개발

- 각 자치구별 공원간 무인공공임대 자전거 서비스 제공
- 도시내 지역간·공원간 단거리 통행수단 및 공원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단으로 활용
-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기간 및 업체의견 수렴



[그림-398] 무인공공임대 자전거 제공 서비스

[표-274] 추진사례 (국내·외)

구 분	프랑스파리 ‘벨리브’	서울시 송파구 ‘무료 자전거 이용’
이용방법	•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대여 후 목적지에 반납하여 직접 요금을 지불하는 셀프식 시스템	• 신분증 확인→연락처 확인→대여→이용→이용상태확인→신분증 수령
공급방법	• 전용트랙을 이용해 공급 및 배분하며 반납이 많은 곳에서 대여가 많은 곳으로 배분	• 대여 네트워크 구축 (4개 대여소 어디에서나 대여 및 반납가능)
요금결제	• 실명확인이 가능한 요금결제 방법 (신용카드, 선불교통카드)	• 무료

[표-275] 자전거 이용시설 확보

구 분	내 용	
자전거 보관소	시설종류	• 자전거 -경량자전거, 다인승 자전거의 개발 -보관소 이용 목적에 따라 옥외형, 실내형 보관소
	설치장소	• 각 주요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주체	• 각구자치구 : 조례화 추진, 설치권장(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등) • 민간유치유도 : 자전거에 광고 삽입 등



< 경량 자전거 >



< 다인승 자전거 >



< 옥외형 보관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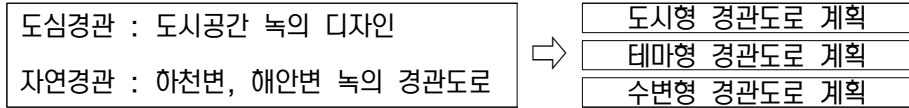


< 실내형 보관소 >

10. 경관도로 계획

1)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명품 경관도로 육성계획



2) 유형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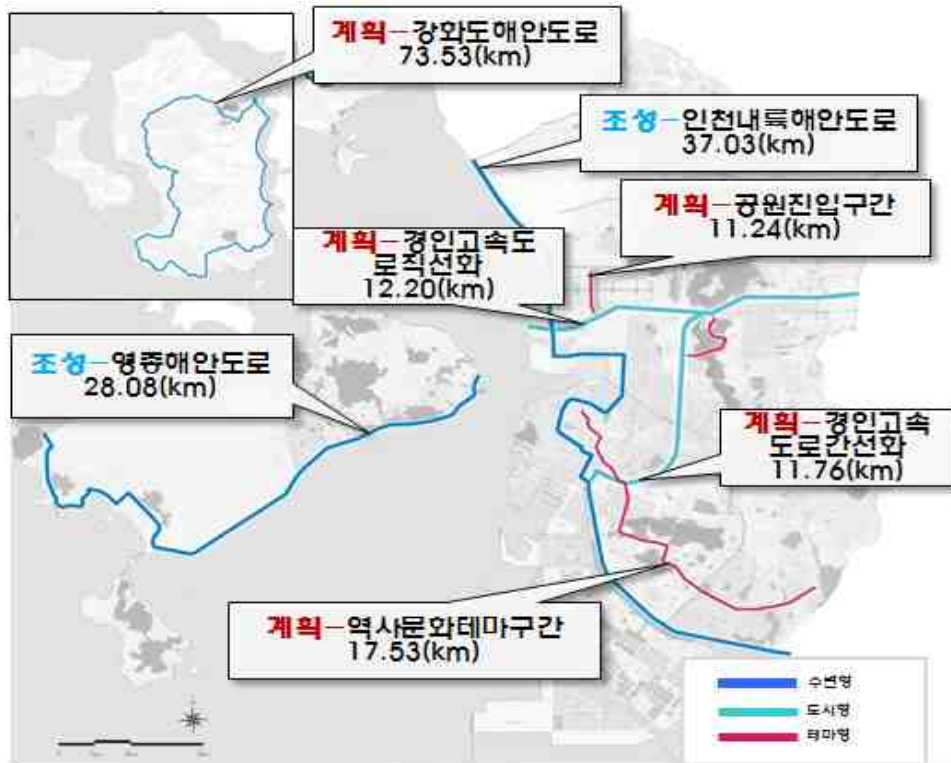
- 수변형 : 해안변, 하천변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해안경관도로 계획
- 도시형 : 도시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 테마형 : 공원진입부나 문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가로를 테마에 맞게 연출

[표-276] 경관도로 유형 분류

구	분	연 장(km)	비 고
합 계		191.39 (126.08)	
수 변 형	인천내륙 해안도로	37.03	조성완료
	영종도 순환도로	28.08	조성완료
	강화도 순환도로	73.53	향후반영
도 시 형	경인고속도로 간선화구간	11.78	향후반영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	12.20	향후반영
테 마 형	공원 진입구간(원적산, 청라지구)	11.24	향후반영
	역사·문화 테마거리	17.53	향후반영

※ 참조 :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25년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 ()는 계획면적 중 미조성 된 구간의 연장임



[그림-399] 경관도로계획도

3) 세부계획

가. 수변형 경관도로 계획

-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시설설치

[그림] 수변형 경관도로 조성예시도



조성사례1



조성사례2

나. 도시형 경관도로 계획

- 상징성 강화, 통일된 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상징물 설치

[그림] 도시형 경관도로 조성예시도



조성사례1



조성사례2

다. 테마형 경관도로 계획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식재도입 및 가로시설물 정비

[그림] 테마형 경관도로 조성예시도



조성사례1



조성사례2

라. 기존보행 시설물 개선계획

[표-277] 기존 보행 시설물 개선계획

유형	현황	개선
교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안전표지가 인접하여 혼란 야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의 불규칙한 배열로 인한 혼란 도시미관과 판단을 흐리는 신규표지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조명,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지주 방식의 도입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점유시설물로 보행폭의 축소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 낙후 가로수시설물의 색채 및 형태의 일관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대를 활용한 가로 시설물의 설치 지속적 유지·관리 보수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위치함으로써 보행 환경 악화 및 가로경관 저해 공기주입식 지주간판 등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고 보행교통 저해 무미건조한 디자인과 고채도의 색상으로 주위와 부조화 및 도시미관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차별화 옥외광고물 마스터플랜 및 지침마련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행정 및 지원 체계 구축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처벌 주민참여를 통한 옥외광고물 형식 유도

※ 출처 : 2006 인천광역시 시가지경관계획 참조



(예) 교통시설물 개선사례



(예) 옥외광고물 개선사례



(예) 가로시설물 개선사례



(예) 도로시설물 개선사례

마. 경관도로 조성기법

- 대상도로의 성격(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함
-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디자인이 필요함
-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형태이어야 함
- 통일과 변화를 고려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경관을 생각함
- 지역경관의 보호, 지역경관과의 조화, 새로운 경관 창조 등의 입장을 고려함

[표-278] 경관정비시의 고려사항

구 분	경관정비시 고려사항
수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의 펼쳐지는 경관이 연속적으로 전해지는 연속경관이 연출되도록 고려 • 도로 노선상에서의 전망 상태를 고려한 쉼터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설치되는 부대시설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검토
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의 삭막한 경관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재계획을 검토 • 인천만의 도시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독특한 경관계획을 수립
테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유적, 문화재, 사찰 등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로 이용자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배려 • 역사적 특성을 모티브로 한 부대시설의 설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 • 역사적, 문화적 랜드마크 설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

[표-279] 경관유형별 조성기법 적용

구 분	목표설정	계획주제	시설계획
수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의 평온함, 여유로움의 전망공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안정감을 유발하는 수평적 파노라마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지역 경관을 위한 쉼터(전망대, 주차장, 지압보도 등)설치 • 수변지역에 조화되는 가드레일 및 방호벽 설치 • 적절한 식재 밀도 계획 • 조망이 양호한 지점의 휴게시설 계획
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에서 느끼는 인천만의 이미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도시이미지 향상과 차별화된 디자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벽 주변의 녹화계획 • 인천의 진입도로의 특성화(랜드마크 시설설치) • 인천을 상징하는 시설물 디자인 계획 • 생태도로 기법(생태이동통로, 축구경사로, 유도울타리 등)
테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의 인식과 문화감각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상징하는 시대적 공감 유발 • 대표적 문화재를 통한 역사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을 모티브로 한 부대시설 계획(가로등, 표지판 등) • 인천을 상징하는 보도와 가로시설의 디자인 계획 • 목재방음벽 및 전통적인 색채 계획 • 미래도시 인천창조 프로젝트 반영 • 가로화단의 리듬감 있는 식재계획

6장 부문별 계획



[그림-400] 수변형 경관도로 선진사례



[그림-401] 도시형 경관도로 선진사례



[그림-402] 테마형 경관도로 선진사례



3 도시녹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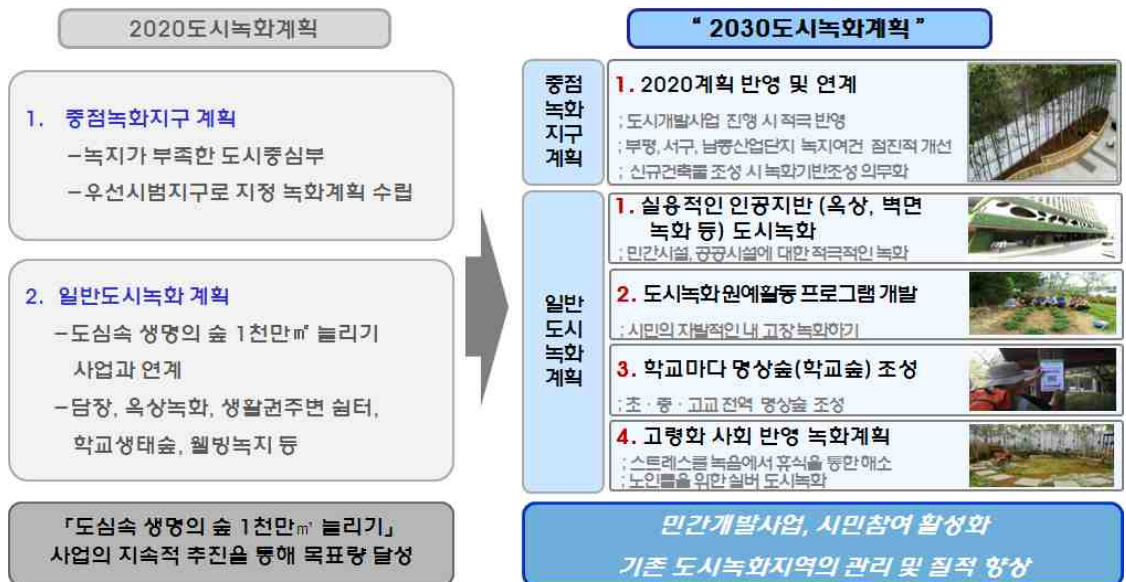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중점녹화지역)과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함
- 도시녹화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Network) 형성계획과 상호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함
- 녹지가 부족한 도심중심부의 보다 적극적인 녹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도심공간내 특별히 녹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중점녹화지역 설정
- 2020공원녹지기본계획의 연계시행
- 녹지·공원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형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 중점녹화지구계획 및 도시녹화 사업

- 중점녹화지구는 도시내 녹지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각종 공원녹지계획과 단위 사업계획이외에 소외되었던 지역을 선정, 우선시범지구로 지정 녹화계획을 수립함
- 2008년 이후 연안부두지구, 박촌동지구, 검암 1,2지구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으로 녹화를 시행해 왔으며, 경서1지구, 서구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제4차국가산업단지, 남동 국가산업단지 녹화 추진현황이 없어 금회 2030년 계획에서 추가 반영하여 지속 추진

[표-280] 2020년 도시녹화계획 대비 2030년 도시녹화계획



2. 중점녹화지구 선정기준

1) 중점녹화지구 기본방향

-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녹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녹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일정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녹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중점녹화지구의 설정을 통해 도시공원 등의 공공사업녹화, 시민에 의한 사유지녹화추진 등 시민, 기업, 행정이 연대한 시가지 녹지공간 증대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지원
- 아울러 중점녹화지구는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등의 상황과 수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함
-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한 지역으로 주민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녹지경관의 연출과 이벤트, 축제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2020년 중점녹화계획 연계 추진토록하고, 2020년 계획은 중점녹화지구의 가로변 수벽조성, 수목 및 초화류 조성, 담장녹화, 화단조성, 벽면 녹화 등의 계획이 주요사안이었으나, 중점녹화지구의 녹화 추진실적이 미진하여 금회 2030년 계획에서 추가 반영하여 지속 추진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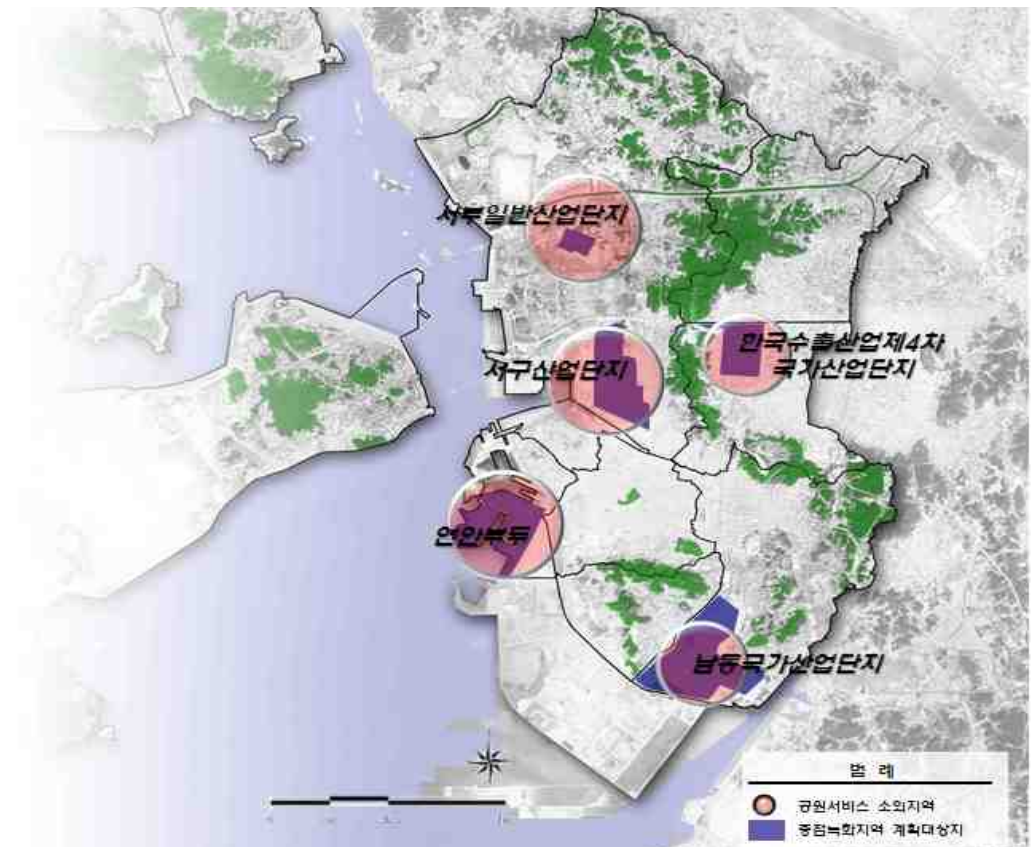
- 녹화사업의 사업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녹화사업 모델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
- 도시화에 의해 녹지가 적어 적극적인 녹화가 필요한 지역
- 인천광역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확충할 수 없는 지역
- 시민의 이용수요 및 주변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환경개선요인 및 개발가능성이 낮거나 없어서 녹화사업이 필요한 지역
-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도시전반의 위해요인(열섬현상,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야기하는 혐오시설이 밀집한 지역
- 도시화로 인한 기존환경의 피해가 예상되어 환경의 적극적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

3) 중점녹화지구 지정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나 공원 및 녹지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 연안부두지역과 박촌동 지구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함
- 택지정비사업으로 주거지역이 조성되었으나 협소한 녹지계획으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녹화사업이 필요한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1지구를 지정함
- 공업지역으로 녹지가 부족하여 도시열섬 현상 및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시온도 저감 및 대기오염의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서구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 제4차 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를 재 지정하여 녹화 추진

[표-281] 중점녹화지구 지정

구 분	위 치	선 정 이 유	면적(천㎡)
합계	8개소		13,792
중구	연안부두지구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안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녹화필요	1,008
계양구	박촌동지구	•공원소외지역으로 녹지면적 확보	359
서구	검암1지구	•사업완료된 택지정비계획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에 의한 녹지부족 개선	663
	검암2지구		409
	경서1지구		342
	서구산업단지 지구	•공단 인근, 공원소외지역 일반녹지면적 확보	2,201
부평구	한국수출산업제4차국가산업단지 지구	•공업지역의 공원, 녹지면적 부족 개선	2,613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지구	•공업지역의 공원, 녹지면적 부족 개선	6,197



[그림-403] 2030년 중점녹화지구 위치도

4) 주요녹화 방안

가. 중점녹화지구 녹화계획 방안

- 중점녹화지구는 지역별, 녹지특성별, 주변여건에 따라 가로변수벽조성, 화단조성, 담장녹화, 벽면녹화, 수목 및 초화류 조성, 쉼터 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녹화방안과 기법을 제시

[표-282] 주요녹화 방안

구분	조성방안	계획예시
가로변 수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에 지장이 없는 가로변 보도공간에 수벽을 조성하여 녹시율 향상 및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부족한 녹지확충을 통한 생태적 안정성 도모 	
화단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밀집지역 간선도로변에 시민들이 화단을 조성하여 사계절 개화시킴으로 쾌적한 주거지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자율 참여를 확산시킴 	
담장 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및 주거지 담장을 녹화하여 녹시율을 향상시키고 시민 자율 참여확산으로 이웃간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주민 화합 분위기 고양과 푸른도시 창출에 기여 	
벽면 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변 유휴공간에 생명이 숨쉬는 녹지 조성 및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 인공구조물을 녹화하여 녹시량 증대 및 회색도시 이미지 탈피 	
수목 및 초화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하부에 녹도를 조성, 초화류를 식재하며 도심 가로변을 특색거리로 조성하여 가로녹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보행자가 즐길 수 있는 주제거리로 조성 	
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 주변에 소공원 같은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식공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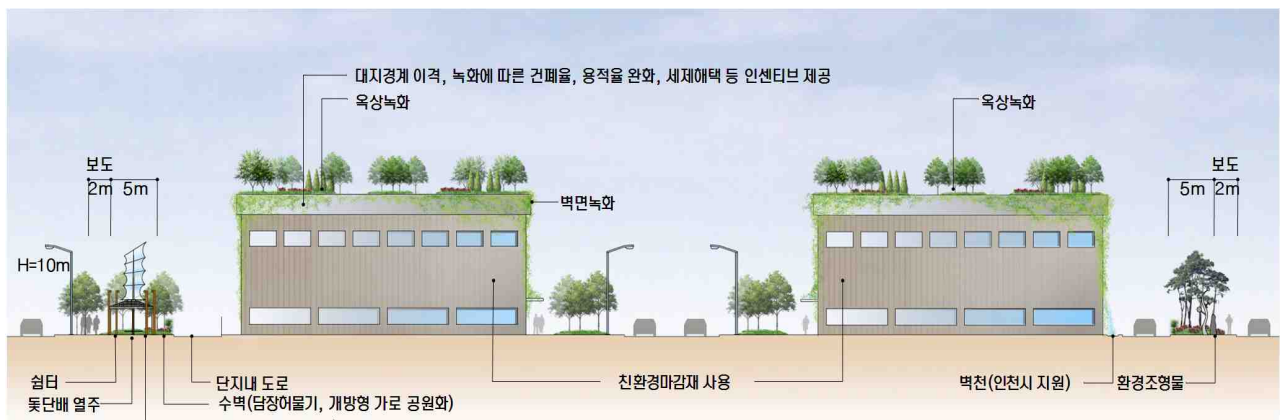
나. 중점녹화지구 세부계획

□ 연안부두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58-42 일원
- 대상지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파악되며 서해안과 인접해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연안부두 터미널에 조성되어 있는 해안변 친수공간을 거점 공원화하여 녹화사업을 계획함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 - 벽면·옥상녹화, 우수·중수 활용, 특수포장 사용으로 생태 면적을 높임.
 - 열손실 저감 = 친환경 마감재 사용
 - 신재생 에너지 활용 = 지열, 풍력, 태양열 등

[표-283] 연안부두지구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예 시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16,600	21,590		현황
가로변 수벽조성	3,660	7,320		
수목 및 초화류 조성	10,280	10,280		
담장녹화	2660	3,990		



[그림-404] 연안부두지구 조성 단면도

6장 부문별 계획

□ 박촌동 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5-10 일원
- 대상지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북측에는 군부대 남동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하여 공원·녹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부족한 공원·녹지를 가로녹화 및 담장, 벽면녹화를 적극 도입함
- 주변(북, 서측) 산림을 활용한 체력단련코스, 휴게시설조성, 법정공원은 아니더라도 공원화 계획수립

[표-284] 박촌동 지구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4,691	6,241	
가로변 수벽조성	486	729	
수목 및 초화류 조성	981	785	
담장녹화	588	588	
화단조성	1,290	774	
벽면녹화	1,346	3,365	

예 시 도



현황

개선안

□ 경서1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94-7 일원
- 대상지는 북측에 연접하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 인근 청라지구와 공촌천 등의 공원 녹지공간이 있지만, 지구 내 협소한 보도폭과 부족한 녹지공간에 가로수벽, 담장녹화, 화단조성을 조성하여 녹시율을 높임
- 도시개발사업(재정비) 실시계획인가시 보다 많은 녹지공간 확보를 요구토록하고 기존녹지축이 연결이 되도록 개발 방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함
- 동서 녹지축 연결을 위한 가로 선형 녹지와 및 옥상 녹화를 통한 생태거점 확보

[표-285] 경서1지구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5,040	4,318	
가로연수벽조성	80	120	
수목 및 초화류 조성	1,520	1,216	
담장녹화	1,020	1,530	
화단조성	2,420	1,452	

예 시 도



현황

개선안

6장 부문별 계획

□ 검암1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검암동 643-2 일원
- 대상지는 보도 폭이 좁고, 부지 내 공원 녹지 공간이 부족하여 가로변 수목 및 초화류 조성, 화단조성, 담장녹화를 통하여 도시녹화를 계획함
- 보도폭이 좁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부분별 담장허물기 사업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쉼터조성, open space 확보, 녹화토록하고 보도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지층 생태계 활성화
- 주 보행축은 점진적 경관 개선 공사를 통해 보행 인프라 구축과 시설 정비
- 지구 경관을 해치는 건축설비, 전신주, 옹벽, 담장,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street furniture에 공공디자인을 적용
- 아파트내 쉼터를 재조성하고 기존 담장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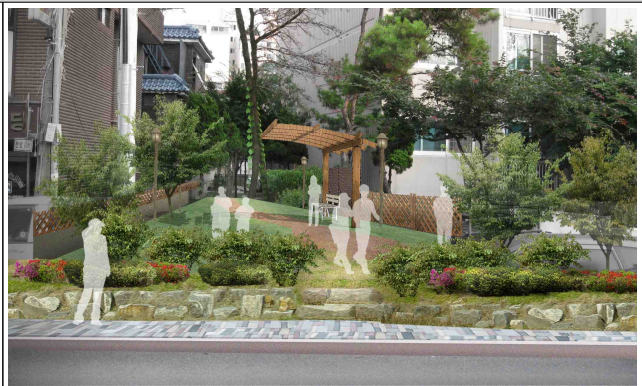
[표-286] 검암1지구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9,450	7,552	
수목 및 초화류 조성	5,630	4,504	
담장녹화	840	1,260	
화단조성	2,980	1,788	

예 시 도



현황



개선안

□ 검암2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6-1 일원
- 대상지는 보도 폭이 좁고, 부지 내 공원 녹지 공간이 부족하여 가로변 수목 및 초화류 조성, 화단조성, 담장녹화를 통하여 도시녹화를 계획함
- 도로 소음차단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복측, 서측 지구경계 녹지띠 형성을 점진적으로 추진
- 녹지대 간 소동물 이동 중 road kill 방지를 위한 지구내 도로 완충구간(과속방지 및 투수성 포장재)설치 유도

[표-287] 검암2지구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7,500	7,270	
가로변 수목 조성	220	440	
수목 및 초화류 조성	1,860	1,860	
담장녹화	2,260	3,390	
화단조성	3,160	1,580	

예 시 도



현황

개선안

4) 공업단지의 녹화계획

□ 서구 산업단지 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25 일원
- 대상지는 가구 및 각종 공업시설이 위치하여 환경오염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어 녹지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므로, 가로변 수벽조성, 수목 및 초화류, 담장녹화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계획함
- 측면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하여 측면, 입면 녹화(미화), 도로변 주차장 포장재 개선(투수, 친환경 잔디블럭 등)
-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공원·녹지 확보가 어려우나 공장부지 외곽부 녹지와, 개방시 세제혜택, 용적을 등의 인센티브제 적극 실시, 점진적 도심 녹지공간 확보

[표-288] 서구공단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29,650	27,848	
가로변 수벽조성	3,740	5,610	
수목 및 초화류 조성	10,860	10,860	
담장녹화	5,870	5,870	
화단조성	9,180	5,508	

예 시 도



현황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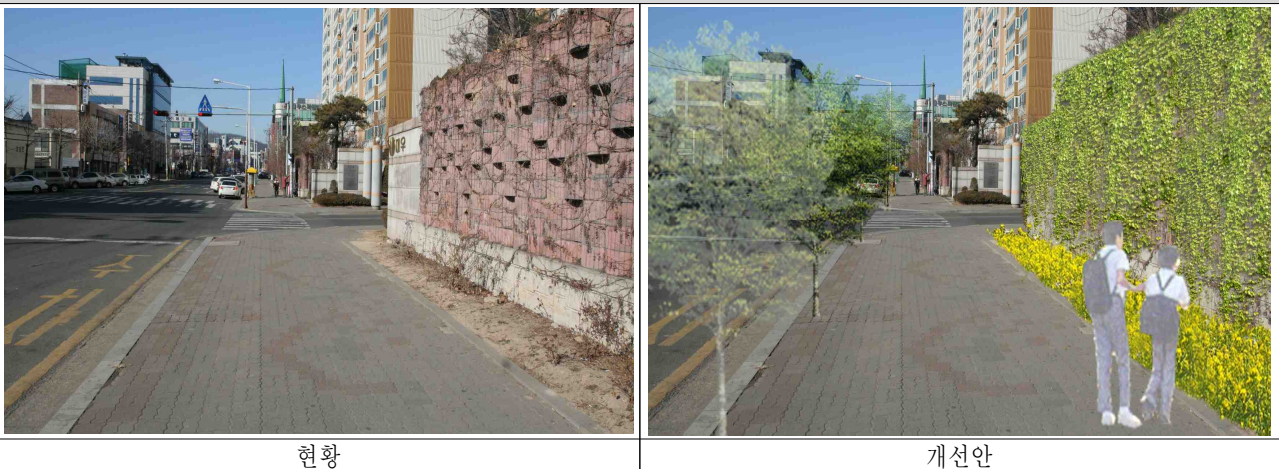
□ 한국수출산업 제4차국가산업단지 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3번지 일원
- 대상지는 대우공장 주변으로 위치한 산곡동, 청천동 일원의 부족한 녹지환경을 수목 및 초화류 조성 및 화단조성을 통하여 인근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가로변 수벽조성 및 담장녹화를 통하여 대우공장 주변의 가로환경을 개선함
- 보도 전반 및 부분적 도로 포장재의 친환경 투수포장 재료의 교체(잔디블럭 등)
- 대우공장부지 외곽부 녹지화후, 부분적 개방유도 및 적극적 옥상녹화

[표-289] 부평공단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28,030	21,234	
가로변 수벽조성	2,740	4,110	
수목 및 초화류 조성	12,930	10,344	
담장녹화	1,200	1,200	
화단조성	11,160	5,580	

예 시 도



현황

개선안

6장 부문별 계획

□ 남동 국가산업단지 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5-5 일원
- 대상지는 서해, 승기천, 남동 유수지 등 곳곳에 풍부한 수변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 가로변 수벽조성, 수목 및 초화류 조성, 담장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남동공단의 부족한 도시녹지공간을 개선함
- 수변공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녹지 회랑 조성유도, 통경축 인접 건축물에 한해 용적율을 높이는 대신 녹지공간 확보, 시민에 개방토록 점진적 개선 유도

[표-290] 남동공단 중점녹화 계획

계 획 표			계 획 도
구분	길이(m)	면적(m ²)	
합계	30,990	31,378	
가로변 수벽조성	8,220	12,330	
수목 및 초화류 조성	18,610	14,888	
담장녹화	4,160	4,160	

예 시 도



중점녹화지구 조감도

3. 일반도시녹화 계획








1) 일반 도시녹화 기본방향

- 지속적인 일반 도시녹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녹의 확충
- 인공지반의 녹화, 도시녹화 원예활동, 학교 숲,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녹화계획을 추진

2) 일반 도시녹화 기본계획

- 인공지반 녹화 (옥상, 벽면, 담장, 인공구조물 녹화 등)
- 도시녹화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 명상숲(학교숲) 녹화
- 고령화사회를 반영한 녹화계획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 도시농업
- 골목길 녹화

[표-291] 주요도시녹화 계획 및 내용

구분	녹화종류	내용	예시도
①	인공지반 (옥상, 벽면녹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녹화 • 신규 건축물 조성시 녹화의무화 	
②	도시녹화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자발적인 내 고장 녹화하기 • 시민단체와 관이 협업하여 시민에게 홍보 및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개최 	
③	학교마다 명상숲(학교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 전역 명상숲 조성 • 학교운동장 인공잔디에서 천연잔디화 	
④	고령화 사회 반영 녹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를 녹음에서 휴식을 통한 해소 • 노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휴식 공간, 실버 도시녹화 	
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꿈나무 대안교육모델을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을 통해 구현 • 창의성, 집중력, 탐구능력 등 학습능력을 향상 	
⑥	도시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 등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 	
⑦	골목길 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주변 회색빛 마을 골목길에 주민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자연과 생명이 살아있는 골목길 녹화로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 	

3) 일반 도시녹화 방안

가. 인공지반 녹화 (옥상, 벽면, 담장, 인공구조물 녹화 등)

□ 옥상녹화

- 도심지의 녹화는 도시열섬화 저감, 에너지절약 효과 및 공공건물 담장을 없애고 개방형 열린공간 조성으로 보다 친근한 환경조성
- 시민의 왕래가 많고 보도와 연접된 지역은 담장철거 부지와 보도 공간을 연계하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며, 녹음수와 꽃나무를 다층적으로 식재하고 정자, 그늘시렁, 의자 등의 편익시설을 조화롭게 배치 휴식공간 제공
- 담장철거 후 부지 정리시 기초콘크리트 등 지장물의 철저한 제거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 도모가능
- 다양한 볼거리, 주민참여, 기업참여, 이용자들의 쉼터·휴식공간제공, 비용절감, 도시환경개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사례 : 유네스코회관 옥상 생태공원

[표-292] 옥상녹화 일반유형 및 특성

유형		특성	비고
관리·중량형	토심 20cm이상	정원형 이용을 위주로 하는 형태 초본식물, 관목, 교목의 다층 식재 수생비오톱 도입 등 이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시설물 도입가능(예:유치원, 학교, 병원, 백화점 등)	
혼합형	저관리·경량형과 관리·중량형의 혼합 토심 30cm내외	초본식물과 관목위주의 식재	
저관리·경량형	토심20cm이하	초본식물 위주로 식재 건물하중에 구조적 제약이 있는 옥상, 출입이 어려워 유지관리가 곤란한 옥상 또는 지붕에 적용	

[표-293] 활용성에 의한 옥상녹화 유형

구분	내용	비고
옥상정원	- 옥상에 식물을 식재함과 동시에 쉼터의 기능을 부여하여 건축물에 부가된 정원과 같이 이용하는 형태	
옥상피복	- 도시열섬·도시건조화 등의 저감을 위한 - 대안으로서 환경적 기능에 중점	
옥상비오톱	-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자연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	
옥상화단	- 많이 시행되어 온 방식 - 옥상경계부에 화단을 만들어 식재	
옥상텃밭	- 개인가정에서 많이 시행해 온 방식 - 수목식재보다는 실용적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옥상녹화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
-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 건강한 도시생태녹화를 조성
- 대형건물 주변 미기후를 조절하고, 실내온도 저감효과를 통해 냉·난방기 사용 절제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스테핑 효과를 통해 생태적 거점공간을 연결

[표-294] 옥상녹화의 기능 및 효과

구분	기능	비고	
환경적 효과	도심열섬 완화	- 옥상의 토양층과 식생층으로 온도저감효과	
	홍수예방	- 우수 저장효과와 우수휴출 지연효과로 도시 홍수예방	
	대기정화	- 식생층이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벤젠, 분진 등을 흡수	
	수질정화	- 식생과 토양층이 우수의 분진과 오염물질을 여과시킴	
	소음경감	- 식생과 토양층의 소리파장 흡수	
	도시경관 향상	- 건물 외관 향상	
	생물서식처 제공	- 도시의 조류, 곤충의 서식처 제공	
경제적 효과	건물 지가 상승	- 건물의 외관, 이미지 향상으로 지가 상승	
	에너지 비용절감	- 토양층이 단열효과를 가지므로 냉·난방 비용절감	
	건물 내구성 향상	- 토양층의 콘크리트 노화 방지	
사회적 효과	휴식공간 제공	- 이용자에게 휴식과 교류의 공간 제공	
	환경교육 장소 제공	-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등)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등)의 옥상녹화를 이용한 환경교육의 장 제공	

□ 입면녹화

- 벽면녹화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한 것으로 그 범위는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방음벽, 고가구조의 도로, 철교의 교각, 하천의 수직호안, 콘크리트 옹벽 등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
- 도시 열섬현상 등 도심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지역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더불어 담장이 설치되어야 할 곳은 충분한 식재를 하고 자연친화적인 담장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 모색
- 도심 가로공원과 연계하여 문화공간을 넓히고 소통 차단 담장이 아닌 녹화공간으로 재창조

[표-295] 벽면녹화 유형분류

구분	내용		수종
등반형	일반형 (부착등반형)	입면의 기부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덩굴의 성장에 따라 벽면에 직접 부착 등반 비용이 저렴, 시공용이,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 중부지방에서 적용이 가능한 흡착형, 낙엽성 식물	담쟁이덩굴, 헤데라류, 모람류, 능소화류
	등반보조재형	등반보조재 설치 후 덩굴식물식재하여 녹화 건물에 영향이 적게 미치고 식물을 용인, 결속시킴으로서 생육을 재촉할 수 있음 설치비용과 공간이 필요	감기형식물 (능소화, 인동덩굴, 으름덩굴, 노박덩굴)
하수형	일반형	입면의 상부나 옥상 등에 식재용기를 설치하고 성장하는 덩굴을 늘어뜨려 녹화 건물에 영향이 적고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 생육기반의 설치 장소가 충분한 하중을 견뎌야 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생육이 불량하거나 잎이 상할 수도 있음	헤데라류, 마삭줄류
	보조재 이용형	벽면에 철망, 와이어 등 아래로 늘어뜨리기 위한 지지대 설치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생장을 촉진할 수 있음 회감기 식물이용과 자주 결속 시켜줄 필요가 있음	청미래덩굴, 머루 노박덩굴, 으름덩굴
벽면작창형	플랜터형	입면에 식재공간을 설치하고 식물을 심어 녹화하는 방법 벽면의 줄눈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반 용기를 설치하여 녹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이 복잡하지만 미리 식재하여 설치하면 초기녹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지피식물, 원예용 초화, 다육식물 등
	패널형	식재된 녹화 패널을 벽면에 장착하여 녹화 다양한 식물종의 사용이 가능, 디자인적 효과 연출가능 관리측면에서도 용이하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급배수나 설치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초본, 목본, 이끼류 등
베란다이용형	각층의 베란다가 식재용기를 놓아 관목, 초목 등 식재하여 입면의 녹화경관을 도모하는 방법	화목류, 제라늄, 베고니아, 아이비 등	
에스켈리어형	입면에 트렐리스, 웬스 등 설치하여 나뭇가지, 덩굴을 엮거나 고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녹화대상 면에 고정시키는 방법 경관적인 측면 요구되는 공간에서 유용하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주목, 박태기나무, 산딸나무, 개나리 등	

□ 인공녹화 적용방안(제안사항)

-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필요
- 녹화사업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지원정책 검토
- 도시개발,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등에 의한 개발사업 계획 시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10%미만을 옥상, 담장, 벽면녹화를 조성하도록 의무화

[표-296] 인공녹화 추진계획(제안)

구분	주요내용(제안사항)	비고
대상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유사 사업개발 시 공공건물(공공청사, 주민센터, 병원, 학교, 공공어린이집, 유치원 등) 및 공동주택	
내용	바닥면적의 10%미만 옥상이나 벽면녹화 또는 담장녹화 등 식물식재 녹지를 조성	
방법	조례지정 개발사업계획 심의단계에서 의견 제시	

나. 도시녹화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 국민·기업·단체 참여활성화

- 국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도시숲 조성·관리
- 사회공헌활동으로의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 녹색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활성화

- 국민들의 이용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축제 등 문화교류의 장으로 이용 활성화
- 도시숲·명상숲(학교숲)에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산림체험·교육확대
- 도시내 숲과 도시외곽의 숲길(올레길, 둘레길 등)을 네트워크화

□ 민간에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국·공유지에 민간이 도시숲을 조성
- 사유지를 소유한 민간이 도시숲을 조성

□ 도시숲 홍보 강화

- 도시숲의 홍보 강화로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 도시숲의 조성·이용·관리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스토리텔링화
- 도시숲체험 코스, 명상숲(학교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특색있는 가로숲 등이 연결된 스토리텔링 사례발굴

다. 명상숲(학교숲) 녹화

- 학교 내 여유 공간에 명상숲을 조성하여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지역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명상숲(학교숲)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녹지와 휴게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학교의 유기적 통합의 장을 마련
- 적용방안으로는 학교를 도시생활권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 녹지 육성하며, 산림청에서 정하는 명상숲(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기존 명상숲(학교숲)을 최대한 활용,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담쟁이덩굴 등을 통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성격강화, 운동장 외관부와 유유 공지를 활용하여 다층 식생구조의 숲을 조성
- 친자연적 학습공간 및 녹지공간 확충, 기업참여를 통한 명상숲(학교숲) 확대 및 활성화,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사례 : 각 시·도·군 명상숲(학교숲) 조성

6장 부문별 계획

- 조성목적, 기능, 지형적 조건 등을 유형별로 구분
- 대상지에 적절한 타입을 선별하여 명상숲을 조성

[표-297] 명상숲 녹화 유형

구분		조성대상지	사례
경계형	공동경계숲	학교 경계구역과 이웃소유자의 경계구역에 공동으로 조성될 숲. 경계선 좌우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전제로 하며, 담장은 절거하고 담장 좌우에 10~14m의 숲을 조성	
	단독경계숲	경계는 공동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경계구역에만 조성	
근린 녹지형	비탈숲	경계부가 비탈로 된 경우 조성하는 숲	
	야외숲	학교부지 안에 있는 잔존 식생지이기는 하나 소외되었던 공간을 적극 조립한 곳	
	모퉁이숲	학교부지 안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한 숲	
	미래숲	정문으로부터 본관이나 교실 건물로 진입하는 통행로에 직선형으로 조성	
	화단숲	현재 조성된 화단을 폭을 넓혀 조성	
환경 조절형	소음방지숲	학교주변의 소음원으로부터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	
	시각차폐숲	학교주변에는 학생들의 시각을 저해하는 각종 오염원들을 차폐하기 위해 조성	
	기후조절숲	교정이 넓고 트여 있거나 먼지가 많은 공장지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바람과 먼지 등으로부터 학교환경 보호	
	중정원	학교 건물 사이의 중앙 공간에 조성	
전문 학습원	학습원	기준에 자연학습원, 재배장, 사육장, 관찰원, 실습장, 연못 등의 명칭으로 설치된 곳 주변	
	화목원	꽃피는 나무를 중심으로 소형 정원으로 구성	
	향기원	주로 방향식물을 이용해 조성하는 숲	
	식물원	학교부지가 넓고 이미 부지 내에 어느 정도 숲의 형태를 갖춘 곳이 있다면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습원 겸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조성	
역사 문화형	학교전통숲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연관된 숲	
	문화유적숲	주변의 문화적특성을 명상숲(학교숲) 조성에 반영된 숲	

라. 고령화사회를 반영한 녹화계획

□ 실버공원

- 낮은 녹지율을 고려하며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노인들의 생활에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녹음·휴식공간의 필요성을 가짐
- '효'를 모티브로 한 테마공원으로써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원 조성
-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공원의 이용객은 주로 노인층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을 위한 공원시설, 문화생활, 여가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노인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방안으로는 포장(관절과 뼈에 무리가 덜 가는 충격완화가 되는 탄성포장재 이용), 시설(안마기능과 같은 특색 있는 휴게시설 도입, 이용자 연령이나 선호도에 맞는 체력단련시설 도입), 여가공간(게이트볼장과 같은 운동공간 도입,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노인층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 녹지공간 도입)과 같은 방안으로 조성
- 시대적 트렌드, 여가활동 증대, 화합의 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사례 : 오솔길 실버공원

성남시 영장근린공원을 실버공원으로 조성계획 등

마.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 틈마다 초록 자연학습장 조성

- 이동에 제약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좀 더 가까우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학습공간의 필요성을 가짐
- 도시 내에 접근이 용이한 이용성이 편리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여 아이들이 자연과 공감하며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의미 있는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도시 내 단절되어 있던 비오톱 활성화를 위한 생태통로의 역할로서 활성화 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방안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고, 체험 공간조성(텃밭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국자생 수목 식재, 야외수업을 하거나 소풍을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약간의 휴게시설 도입, 생태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 형성
- 생태계 보전, 자연생태 축 설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사례 : 꿈나무 자연사랑 체험장
 - 대구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결실의 중요성 등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물 재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은 어린이집별 분양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 농작물 재배경험이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바. 도시농업

- 도시농업은 도시 또는 도시인근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와 더불어 도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농업적 활동을 의미함
- 도시농업의 목적 : 도시민들이 영리 이외의 목적인 취미 등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
- 오늘날 선진외국에서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녹지확보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기존도시공원의 기능을 겸한 시민농원을 조성함으로써 양호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추진

□ 도시농업의 대표 유형

- 도시인의 경작과 휴양을 목적으로 도시근교의 시설녹지나 농지를 임대하여 시행
- 도시텃밭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여 장려하고 있으며, 공공소유의 유휴지 및 시가화구역 내 농지를 활용하여 농업생산조달 뿐 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및 레크리에이션 등 시민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지확보에서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법제를 갖추고 있음

(1) 일본의 시민농원(市民農園)

- 1990년 시민농원촉진법 시행으로 활성화
- 입지에 따라 도시형, 도시근교형, 농촌지역형 등 세가지 분류
- 농지의 유효활용대책이라는 측면과 도시농업의 활성화
- 우리나라의 주말농장과 비슷한 유형

(2)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 산업화 이후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동경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말농장의 형태로 탄생
- 도시의 공공녹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정착

(3) 영국의 할당채원(Allotment garden)

- 주거지근처 접근이 편리한 곳에 도시민 특히 노인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설정
- 이를 통해 채소재배 및 사회적 교류를 유도

(4) 러시아의 다차(Dachs)

- 사유재산, 기증 또는 매매가 가능한 별장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소유하며 운영
- 인구4.5명당 1개를 소유할 정도로 널리 운용되고 있음

□ 도시농업 사례

- 도쿄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 가와사키시 시민농원
- 인천 부평 도시농업공원
- 서울 은평구 갈현도시농업공원

[표-298] 도시농업 사례

구분	내용	비고
도쿄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도심에 위치하며, 강 하천부지까지 포함해 관리 규모는 7만2000㎡이름 • 구청에서 직접 조성, 관리해오다 8년 전부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탁체제로 바꾸어 운영시행 중(예산 부담은 현재 구청에서 90%지원) • 농지를 없애지 말고 좀 더 확대하자는 데 큰 의미 •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마련 	
가와사키시 시민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화에 따른 농지 감소를 막기 위해 개설 • 시민농원, 시민팜농원, 체험형농원, 지역교류농원으로 구성 • 시민농원은 10㎡씩 분할해 1000여 개의 구획으로 시민에게 2년마다 분양되며, 시민들은 연간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내면 누구나 참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 • 시민팜농원과 체험형농원은 시의 관여를 받지 않고 자율적 승인을 받아 운영 • 농지가 계속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농지를 보전·개선하기 위해 시민농원이 시작됐으며, 농작물 생산 목적보다 농지와 농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 	
인천 부평 도시농업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십정녹지로 예정되어 있는 일부부지에 '부평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해 운영. 우리나라 도시농업공원의 시초 • 3,379㎡(1,030평)에 약8천만원을 들여 전국 처음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 • 텃밭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력하는 한편 텃밭 운영에 다른 농업기술과 작물재배 기술 등을 지원 •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농부학교, 주말농사학교, 십정동도시농부학교, 장애인 농사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서울 은평구 갈현도시농업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가 도시농업공원으로 추진하는 운동을 통해 농업공원으로 조성된 사례 • 지역단체와 주민, 은평도시 농업네트워크 등의 활동으로 공동체와 생명이 숨쉬는 건강한 도시농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도시농업 확보방안(제안)

- 장기미집행공원 중 근린공원 이상(10,000㎡), 국·공유지 부지가 많은 공원 등을 선별하여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 조성함으로써, 공원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참여 관리·운영 기회를 확대
- 현재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으로 시설결정 되는 법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공원화하는 것이 제약사항이자 안전장기로 활용
- 장기미집행녹지, 유휴공지를 선별하여 도시농업공원과 유사한 도심형 커뮤니티가든(도시 텃밭) 조성도 녹화방안으로 활용 가능

사. 골목길 녹화

- 생활주변 회색빛 마을 골목길에 주민들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자연과 생명이 살아있는 골목길 녹화로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
- 식물을 이용한 녹지대 조성, 휴게공간 조성, 담장녹화, 트렐리스를 이용한 담장녹화, 내 집앞 화분가꾸기 사업 등이 있으며, 담장벽화, 문패 만들기, 등 구조물 및 시설을 이용해 골목길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 등이 있음

[표-299] 골목길 녹화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서울 꽃으로 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길 가꾸기 사업 캠페인 • 생활주변 회색빛 마을 골목길에 주민들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자연과 생명이 살아있는 골목길 녹화 	
서초구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직접 붉은 조팝, 병꽃, 미스김라이락, 로즈마리 등 다양한 꽃들로 다단형 화단을 조성해 노후된 계단을 알록달록한 자연으로 채우고, 낙서로 얼룩진 어둡고 우중충하던 골목길 담장은 트렐리스(목재격자)를 활용해 식물들을 심어 새롭게 단장 • ‘새콤한 길, 달콤한 길, 짹짹 길, 향긋한 길’ 4가지 테이스티 로드 조성 • 계절에 따라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골목길 주제에 맞는 벽화와 안내판 등도 설치돼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주민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 이용 	
서대문구 골목길 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대 뒷길 골목에 녹화사업 추진 • 화분을 이용한 컨테이너 정원을 조성, 주민과 사회적 기업들도 함께 참여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수목 식재와 관리 등 생활 원예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 후 녹화사업에 참여 	



[그림-405] 골목길 녹화 외국사례사진

□ 골목길 녹화 확보방안(제안)

- 구도심의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골목길 녹화 대상지를 자치구별로 선정하여, 골목길 녹화사업 추진
- 골목길 별 “향기, 색상, 계절” 과 같은 주제를 정해 녹화를 유도

아.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 공공공지 개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 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 공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치기준이 명시

□ 공개공지 개념

- 『건축법』상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그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율과 높이제한을 완화

□ 주요내용 및 사례비교

[표-300]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사례비교

구분	공공공지	공개공지	비고
주요내용	공공공지는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음	공개공지는 사유지이므로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시설설치 기준적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각 시도별 『건축조례』	
사례	향후 도로 추가 사항 발생 시 공공용도의 토지이용대응 가능	도시공사 사옥부지이므로 타용도의 전환 불가하며 공공의 쉼터로 이용이 최선	
			
	울산시 남구 공공공지를 참나무숲길로 조성	광주도시공사 사옥 전면 공개공지 조성	

□ 공공공지 조성방향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기준 적용
-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경우 긴의자, 그늘시령,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공개공지 조성방향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9조 공개공지 등』 설치기준 적용
-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 유효높이가 4m 이상 되도록 함
- 공개공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함

□ 공공공지·공개공지 관리방향

- 계획 및 조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 필요
- 인접상가 등의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표-301]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관리방향

구분	공공공지	공개공지	비고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조성·사후 관리를 위해 설치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조성·사후 관리를 위해 설치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 • 일률적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다양화된 기준 필요 	
위반시 행위규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관리의 지도점검과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관리의 지도점검과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식별성, 이용성을 높이고 타용도로 이용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수립시행 	
시설보완 및 기준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준 세분화 •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위주의 계획시행을 위한 조성전 사전협의 조율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내시설 설치 의무화 	

4 산림휴양시설 확충계획

1. 기본방향

- 도심의 양호한 산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을 조성하여 지역민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활용
- 계양산, 무의도 일원의 국유지(산림청)를 활용하여 휴양림, 수목원 등의 조성
-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위한 시설도입
- 수목유전자원의 네트워크구축 및 탐방, 체험 학습장으로 제공
- 산림문화·휴양 체험공간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양림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계획내용

1) 계획 컨셉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휴일 및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하여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성 대두
- 자연(특히 숲속)에서의 산책, 명상, 대화를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주말에 편안한 휴식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 에코·힐링 숲으로서 숲길 정비, 서식처조성 등 생태적 기능강화
-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도입하여 심신을 정비 할 수 있는 공간마련
- 치유 공간의 유형으로서 산림휴양, 산림치유, 도시생태 공간 계획

2) 치유의 공간 반영 사례

□ 산림휴양 공간

- 숲길을 거닐며, 삶의 여유를 찾는 휴양목적의 공원으로 기존 산림자원을 활용
- 요가, 산림욕,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한 산림휴양문화공간, 건강레크레이션 광장, 산림휴양림, 쉼터, 생태수로, 관찰데크, 건강상태에 맞춘 코스별 산책로 등을 계획



[표-302] 산림휴양공간 사례

구분	주요시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운악산 자연휴양림) • 면적 : 151ha • 단풍이 아름다운 운악산 경관 속에서 자연탐방, 등산, 산책으로 여가를 즐기며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양림 • 산림문화휴양관, 연립관, 숲속의집, 숲속수련장, 족구장, 야외교실, 문화재복원 가마터, 자연탐방로, 등산로 	

□ 산림치유 공간

-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 개념을 도입한 공간
-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이기 때문에 기존의 삼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과는 구별됨



[표-303] 산림치유공간 사례

구분	주요시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횡성 청태산 (청태산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 면적 : 403ha •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 • 포레스트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요가실, 풍욕장, 물치유실), 치유의 숲길 (느린 휴식 치유숲길, 걷는 기쁨 치유숲길, 자연 누리 치유숲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라도 장흥 정남진 우드랜드 내 치유의 숲 • 면적 : 2ha (치유의 숲) •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건강증진 하도록 조성한 숲 • 풍욕장, 온욕장, 원두막, 야외테크, 토굴, 요가실 등 	

□ 도시생태 공간

- 인위적으로 조성된 기존의 정형형 공원에 비해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
- 공원 및 녹지관리 비용절감 효과 교육적 의의를 도모
-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의 모습으로 최대한 조성
-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환경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자연 상태를 지속적으로 자연관찰 활동 공간 제공
- 생태적으로 안정된 장소에서 자연환경기작(Eco-system)을 관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생태적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한된 관찰기회를 제공
- 자연성으로부터 소외된 도시공간에 자연요소를 도입하고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접촉기회 증진 및 기형화된 도시 생태계에 자연의 서식처를 도입
-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지역에 요구된 생태적 생산성을 충족

[표-304] 도시생태공간 사례

구분	주요시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 (길동생태공원) • 면적 : 80,683㎡ • 탐방객안내센터, 화장실, 관찰데크(습지지구) 414m , 관찰데크(산림지구) 430m, 저수지 3,490㎡, 조류관찰대 3개소, 원두막, 초가집, 움집, 석담 및 석축 60m, 야외관찰대, 야외강의장, 파고라 (광장지구)등 • 길동생태문화센터(2005년 4월 22일 개관) • - 1전시실 : 서울의 생태 (새 박제 12점, 생태해설전시대, 습지 및 한강어류 수족관 4개소, 서울시 인공위성지도 등) • - 2전시실 : 길동생태공원의 생태(대형거미 및 벌집모형, 멧돼지 박제, 공원영상, 새소리 듣기 전시대, 곤충 및 버섯표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샛강생태공원) • 면적 : 한강공원 내 • 방문자센터(생태프로그램 운영), 여의마당, 민속마당, 버들광장, 여의못, 생태연못, 창포원, 버들숲, 수질정화원, 물억새마당 등 	

3) 계양산 일원 산림·휴양시설

○ 계양산 일원의 휴양림 1,909,164㎡, 수목원 247,776㎡ 조성

[표-305] 계양산 산림·휴양시설 계획

구분	계양산	비고
위치	계양구 계양동 일원	
휴양림면적(㎡)	1,909,164	
수목원면적(㎡)	247,776	



[그림-406] 계양산 산림·휴양시설 계획 위치도

4) 무의도 일원 산림·휴양시설

- 무의도 일원의 휴양림 1,390,000㎡, 수목원 959,000㎡ 조성

[표-306] 무의도 산림·휴양시설 계획

구분	무의도	비고
위치	중구 무의동 일원	
휴양림면적(㎡)	1,390,000	
수목원면적(㎡)	959,000	



[그림-407] 무의도 산림·휴양시설 계획 위치도

5) 석모도 일원 산림·휴양시설(조성완료)

- 석모도 일원의 휴양림 1,283,632㎡, 수목원 540,864㎡ 조성

[표-307] 석모도 산림·휴양시설 계획

구분	석모도	비고
위치	중구 무의동 일원	
휴양림면적(㎡)	1,283,632	
수목원면적(㎡)	540,864	



[그림-408] 무의도 산림·휴양시설 계획 위치도

6) 산림·휴양시설 내 치유센터 조성계획

□ 치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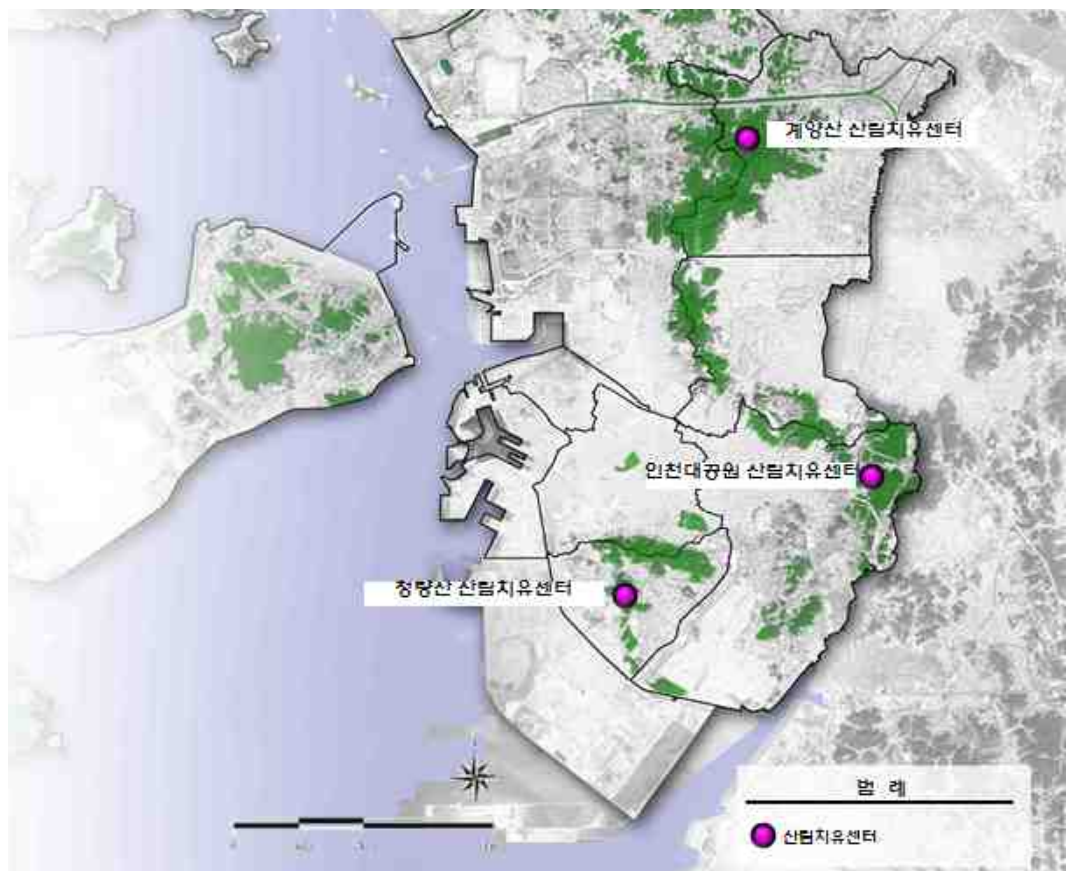
- 산림이 지닌 보건 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한 국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도모하고, 관련 산림자원의 육성에 기여할 목적
- 산림체험형 관광휴양 치유명소로 노약자 및 장애우에 대한 숲 체험과 산림치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주요 도입시설

- 건강증진센터 : 이용자의 시설이용전후 비교를 위한 건강체크(혈압, 키, 몸무게 등) 설비와 문진을 통한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수치유센터 : 족욕, 물속 걷기, 물속 체조하기
- 연구센터 : 산림치유체험, 연구개발, 교육,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

□ 치유센터 조성 계획

- 계양산, 청량산, 인천대공원 내 치유센터 각 1개소 씩 건립 예정
- 산림휴양시설지로의 진입이 가장 가까운 입구부에 조성 예정으로 실제 조성위치 및 면적은 산림 휴양시설 조성 시 세부 입지분석을 통해 조정 확정토록 계획



[그림-409] 치유센터 계획 위치도

5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1. 기본방향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수립 목적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 하도록 명시
- 인천시는 현재 18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1개의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1개의 도시자연공원은 현재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18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정비방향을 제시, 양호한 산림의 보전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

[표-308]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① 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생육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양호한 소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③ ①또는 ②의 조건을 가진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생태계 또는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토지적성평가 활용
양호한 경관의 보호	①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 지역 ② 주요한 조망대상 또는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③ 지역의 역사 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적 및 유물이 입지한 지역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보	①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산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되는 녹지 ②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 ③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참조

3)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설정기준

- 일정 규모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 및 영향권을 포함하여 경계 설정하며, 지형적인 특성 및 경계를 고려
-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

4)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

-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지리적 특성 등의 사유로 도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개수(지방2급 하천 이상)로 인하여 발생한 2천㎡ 미만(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3천㎡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
-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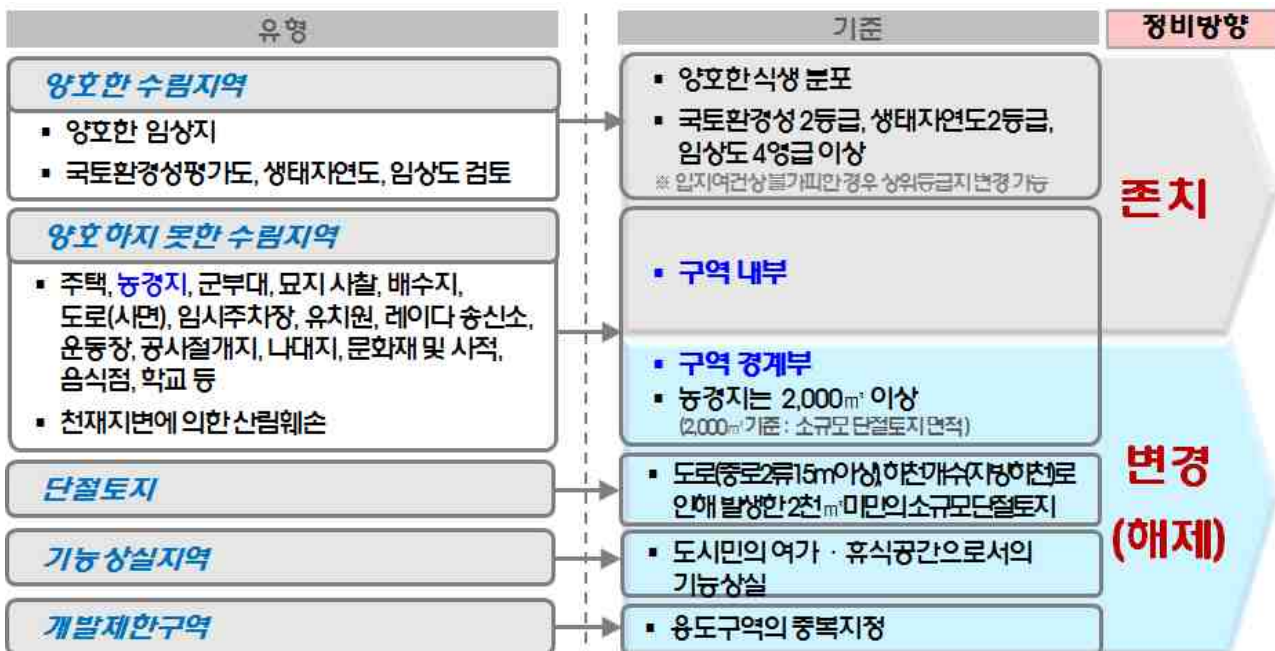
2.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방향설정

1) 기본방향

- 위에서 제시한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림지역, 양호하지 못한 수림지역, 단절 토지, 기능 상실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유형을 구분
- 첫째, 양호한 수림지역은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고, 국토환경성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을 보존 또는 존치 하도록 함
- 둘째, 양호하지 못한 수림지역은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이 존재 유무를 파악하여 구역내 훼손지는 존치, 경계부는 조정하도록 하여 설정, 여기서 농경지 규모기준은 소규모 단절토지의 면적기준 2,000㎡적용, 기준 이상 일 때만 변경(해제)이 가능하도록 함
- 셋째, 도로(중로2류 15m이상), 하천개수(지방하천)로 인해 발생한 2천㎡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 했을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음

6장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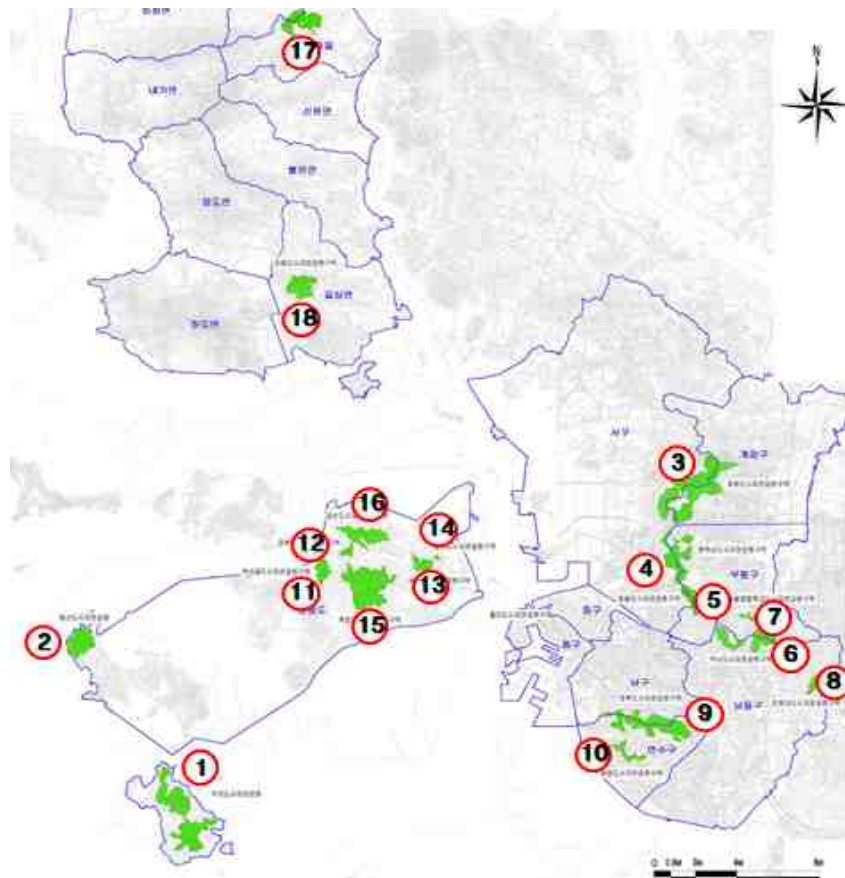
- 넷째,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 저하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 상실한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변경(해제)할 수 있음
- 다섯째,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이 된 부분은 변경(해제) 가능
- 인천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8개소에 대한 직접조사(현장조사), 간접조사(전산자료, 환경자료, 토지조사 등)를 토대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양호하지 못한 수림에 대해 정비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면적은 해제하여 2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지침」 기준을 통해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
- 향후 시설이나 건축물로 인해 훼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허가 등 합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필요



[그림-410]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방향

[표-309]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표

구분	명칭	고시일	면적(㎡)	비고 (개발제한구역 중복면적)	
도시 자연 공원 구역	1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195(15.8.10)	3,667,164.0	
	2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195(15.8.10)	1,327,838.0	
	3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4,803,801.0	137,859.3
	4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1,776,818.4	1,776,818.4
	5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656,427.8	656,427.8
	6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1,823,568.8	188,411.3
	7	경찰종합학교 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299(15.11.16)	49,346.0	
	8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321,958.4	321,958.4
	9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2,837,474.0	
	10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471,699.2	
	11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587,347.0	
	12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207,578.0	
	13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506,778.0	
	14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40,921.0	
	15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3,484,848.0	
	16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1,326,638.0	
	17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1,376,399.0	
	18	전등도시자연공원구역	인고98(13.6.24)	1,203,203.0	
합계			26,469,807.6	3,081,475.2	



[그림-411]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도

3.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안)

1)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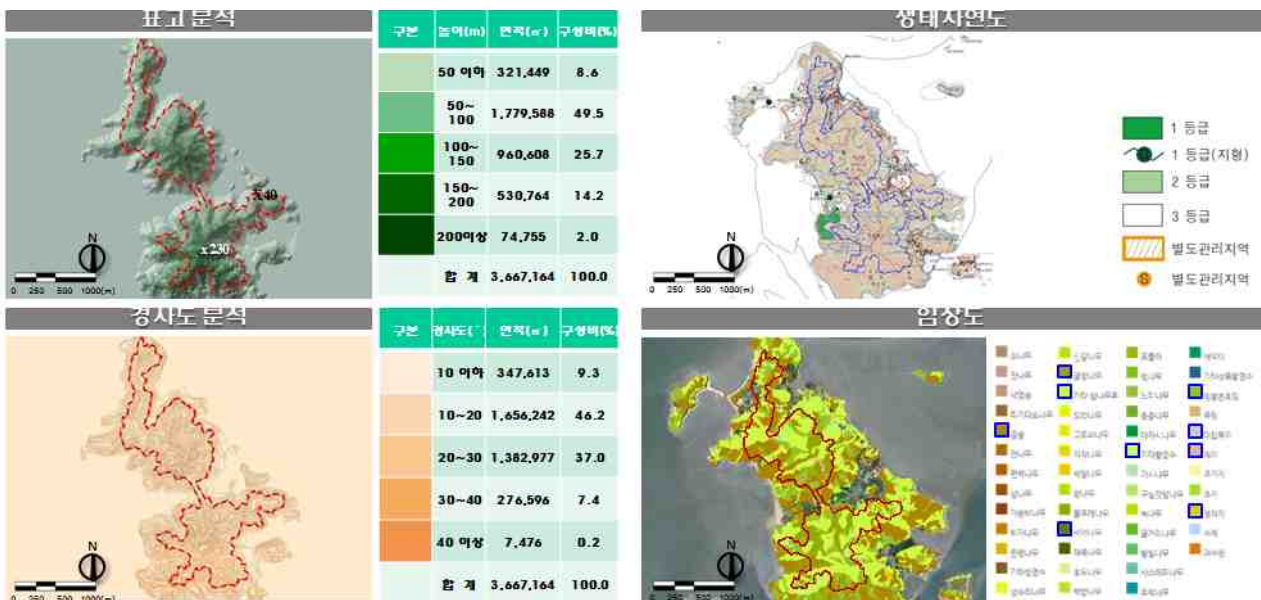
-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무의동에 위치하고 남서측에 위치한 섬으로 북측 큰무리 선착장을 통해 드나드는 배가 연결 교통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전체면적 3,667,164.0㎡임
- 서측으로 실미도, 하나개해수욕장, 하나개유원지 등이 입지하며 수려한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그림-412]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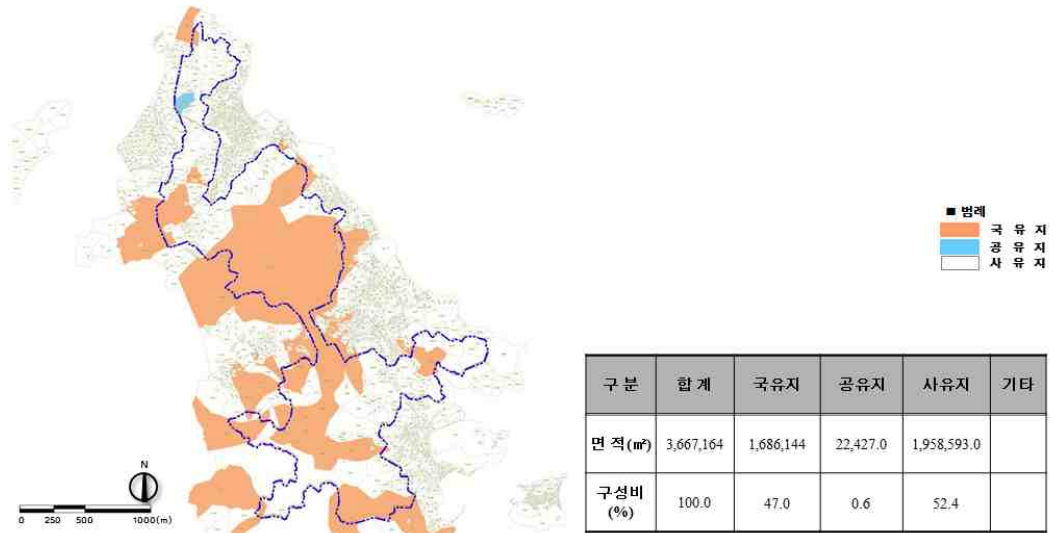
- 약190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83.2%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곰솔, 참나무류, 서어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13]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47.0%이며, 사유지는 52.4% 분포



[그림-414]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서측 중앙 일부지역에 농경지, 가시설 입지, 전체적으로 수림이 양호하고 해안경관과의 조화로 경관보존 필요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7,673㎡) : 농경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8,892㎡) : 농경지, 도로



[그림-415]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2)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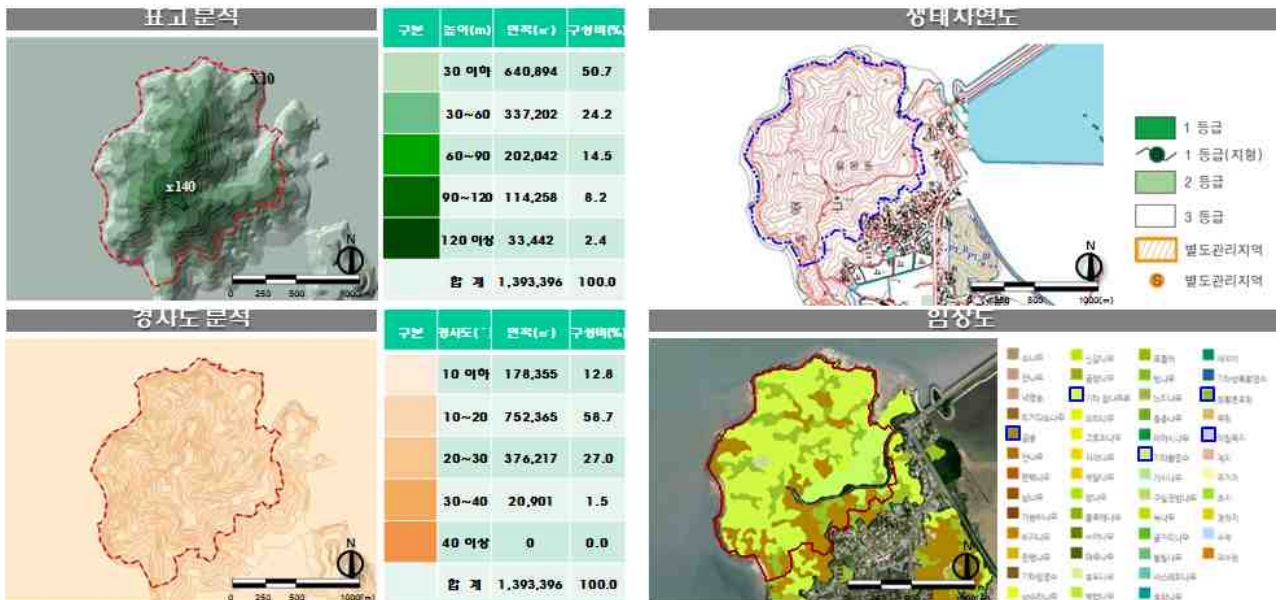
-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서동 일원에 위치하고 동측에 인천국제공항 북측에는 방조제가 근접, 전체면적 1,327,838㎡임
- 북·서측은 해안에 접하고 있으며, 왕산마리나, 왕산해변, 영종스카이라이프 등 입지하여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그림-416]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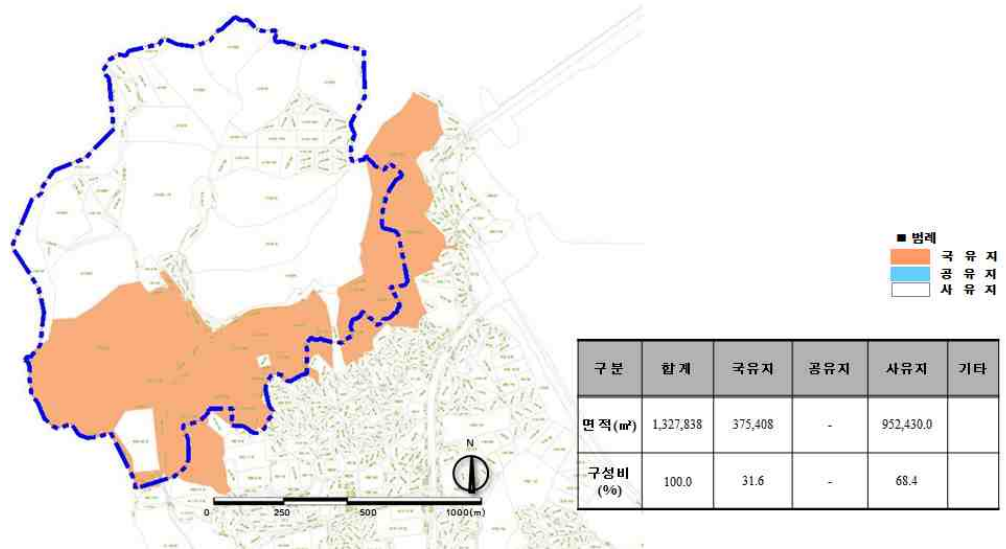
- 약130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85.7㎡를 차지함
- 생태자연도 3등급지가 100% 식생은 곰솔과 참나무림 등으로 형성



[그림-417]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31.6%이며, 사유지는 68.4% 분포



[그림-418]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상지 남측의 군부대 및 내부의 레이더송신소 등으로 훼손, 전체적으로 수림이 양호하고 해안경관과의 조화로 경관보존 필요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60,159㎡) : 인천국제공항레이다 송신소, 군부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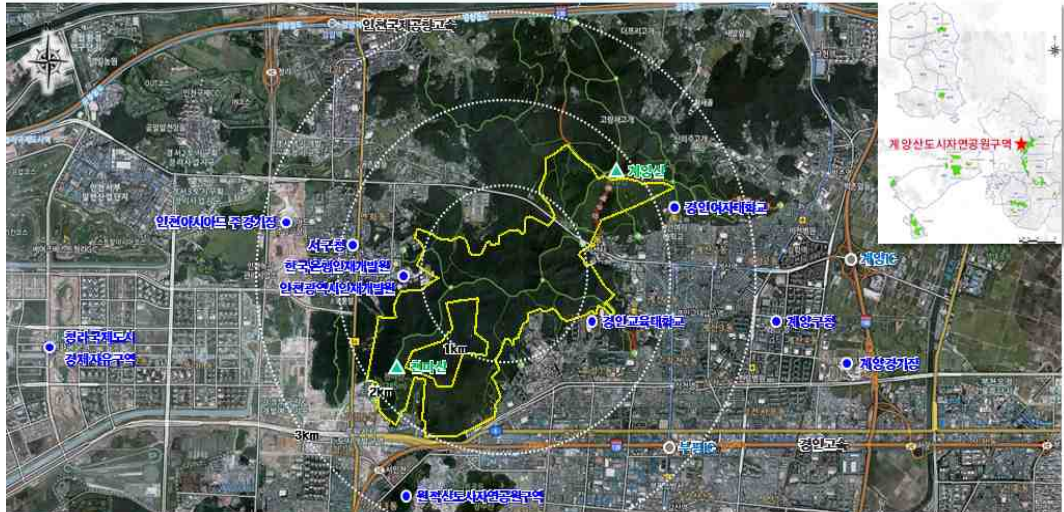


[그림-419]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3)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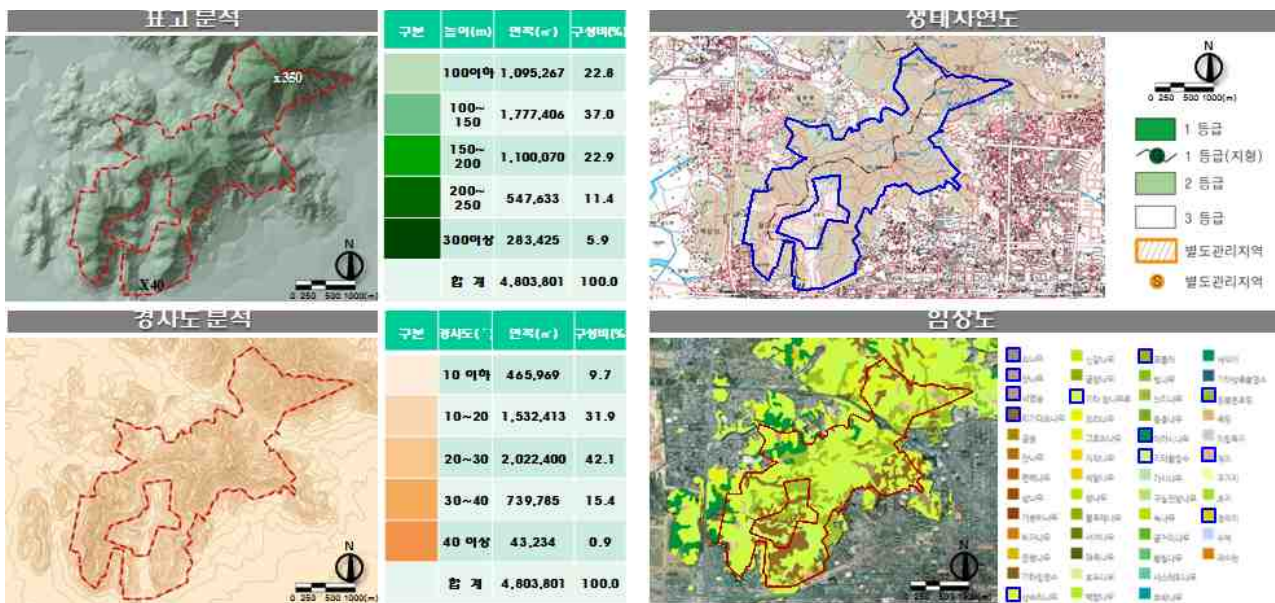
-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계양구 계산동, 서구 연희동 일원에 위치하고 북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 남측으로는 경인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4,803,801 m²임
-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인근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및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등이 입지



[그림-420]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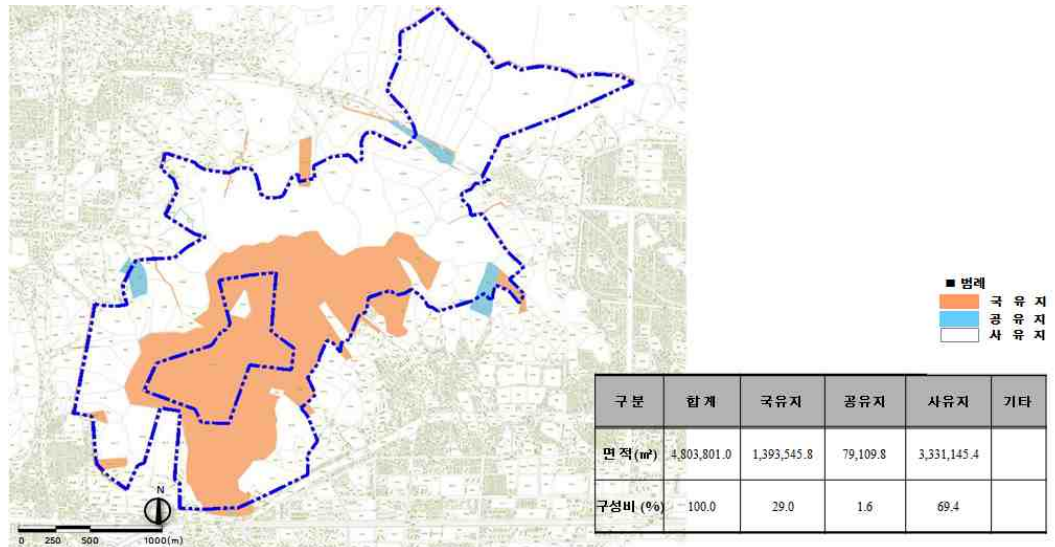
- 약310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경사도가 전체의 74%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소나무류, 참나무, 아까시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21]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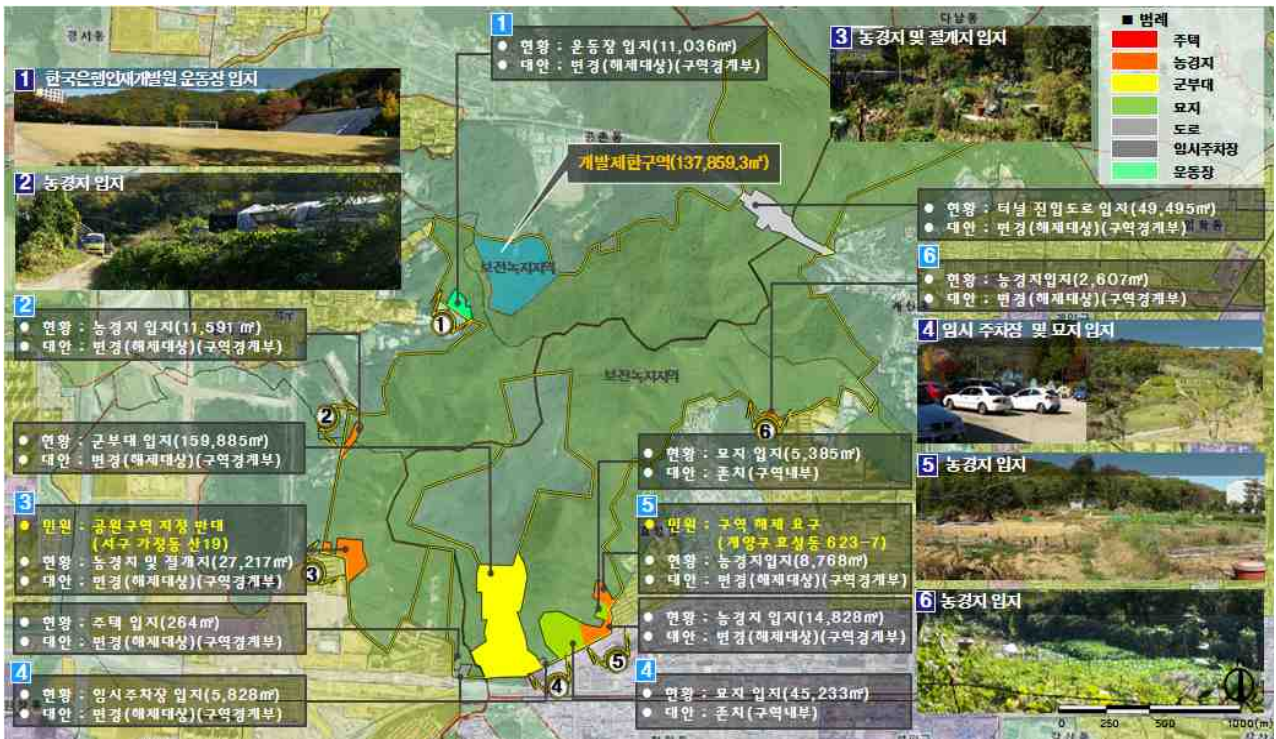
○ 국·공유지는 30.6%이며, 사유지는 69.4% 분포



[그림-422]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상지 북서측에 개발제한구역 137,859.3㎡은 용도구역 중복지정으로 제척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50,618㎡) : 묘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291,519㎡) : 농경지, 도로, 임시주차장, 운동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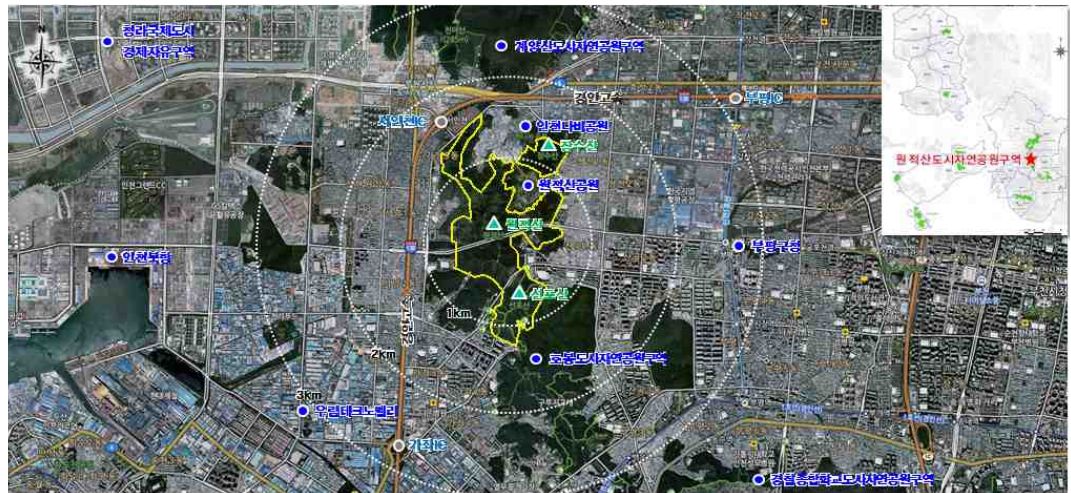


[그림-423]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4)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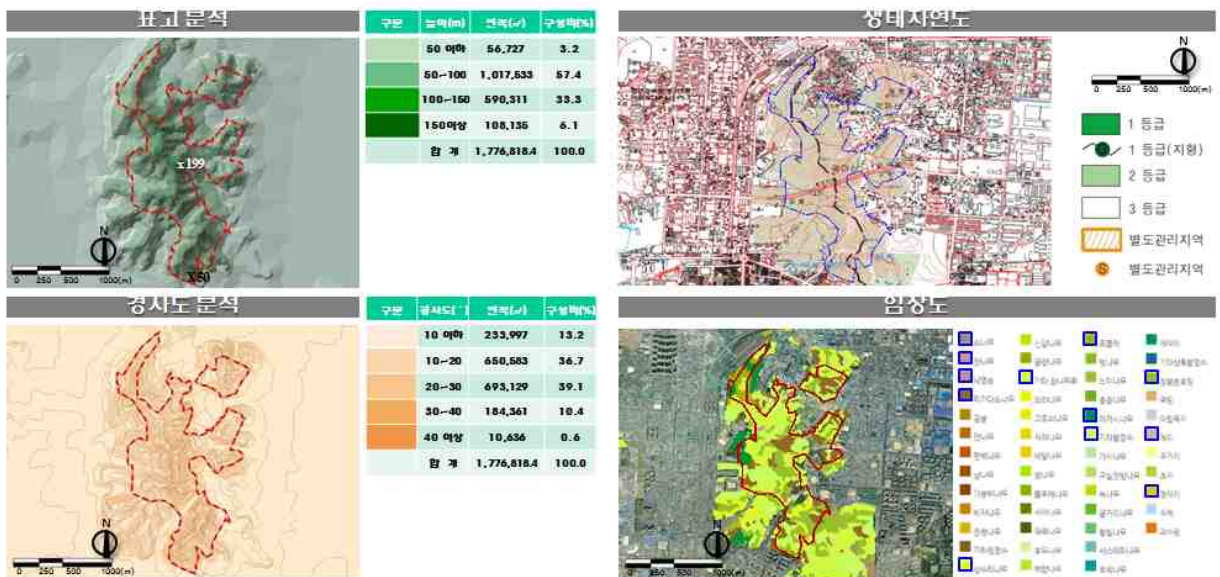
-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구 가좌동,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위치하고 북측 및 서측으로는 경인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1,776,818.4㎡임
- 계양산,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분포, 인근에 인천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등이 입지



[그림-424]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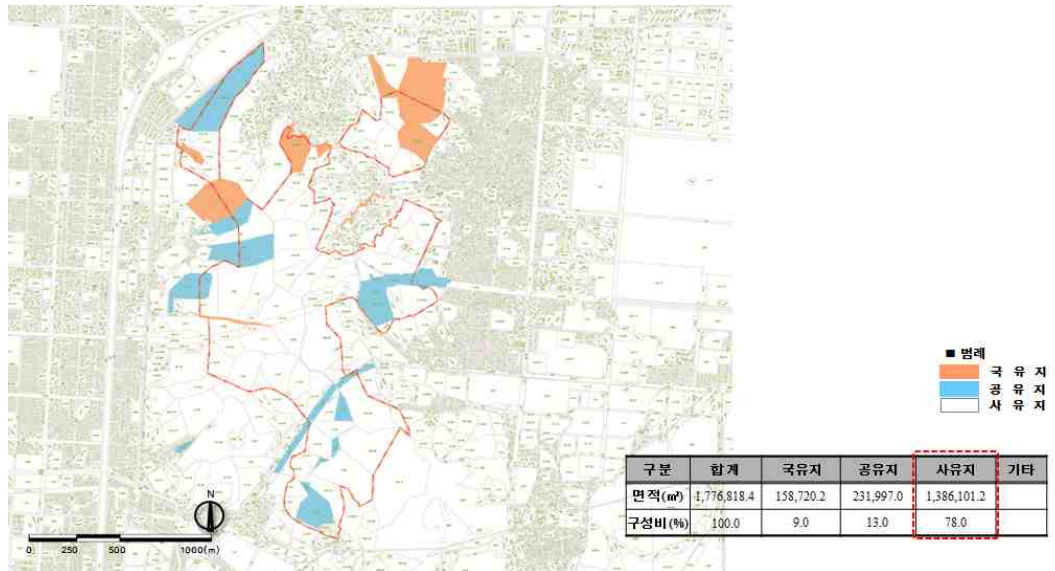
- 약149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경사도가 전체의 75.8%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소나무류,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25]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22.0%이며, 사유지는 78.0% 분포



[그림-426]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상지 약98% 개발제한구역 1,759,429.7㎡은 용도구역 중복지정으로 제척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지 않은 잔여부지는 남북방향으로 3개소(17,388.7㎡)로 나누어져 있으며, 남측부지는 인접한 아파트 옹벽으로 진입불가, 북측2개소 또한 진입로가 없어 진입불가하고 일부는 텃밭으로 불법 경작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중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지리적 특성 등의 사유로 도시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역을 포함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를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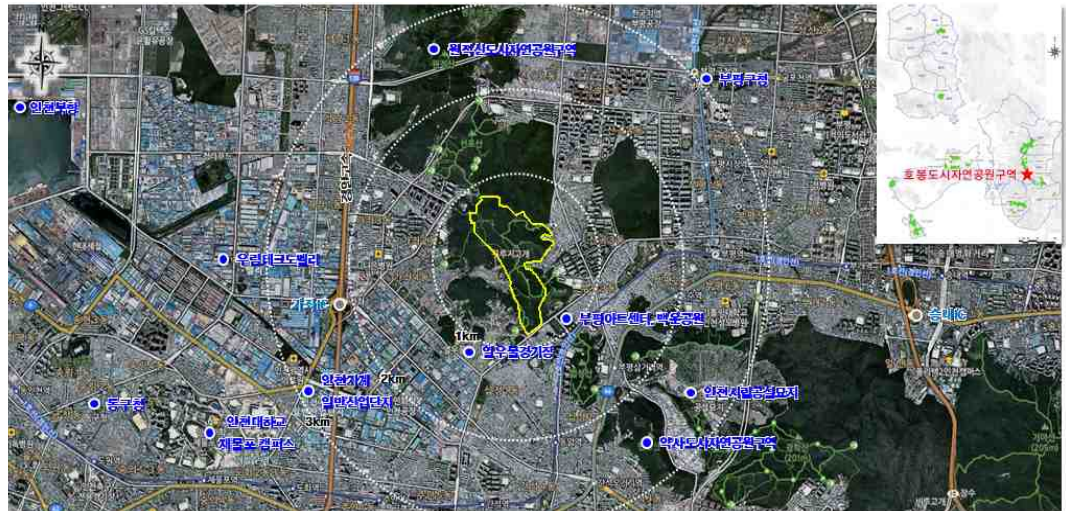


[그림-427]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5)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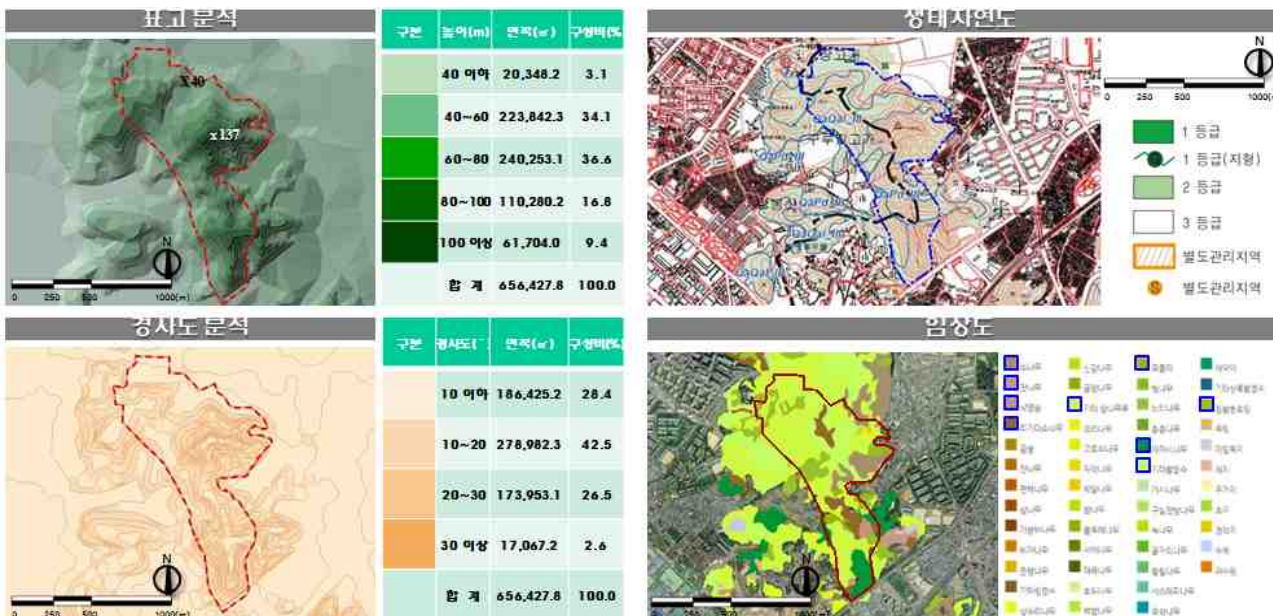
-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구 가좌동, 부평구 일신동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으로 경인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656,427.8㎡임
- 원적산,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분포, 인근에 부평아트센터, 백운공원, 열우물경기장 등이 입지



[그림-428]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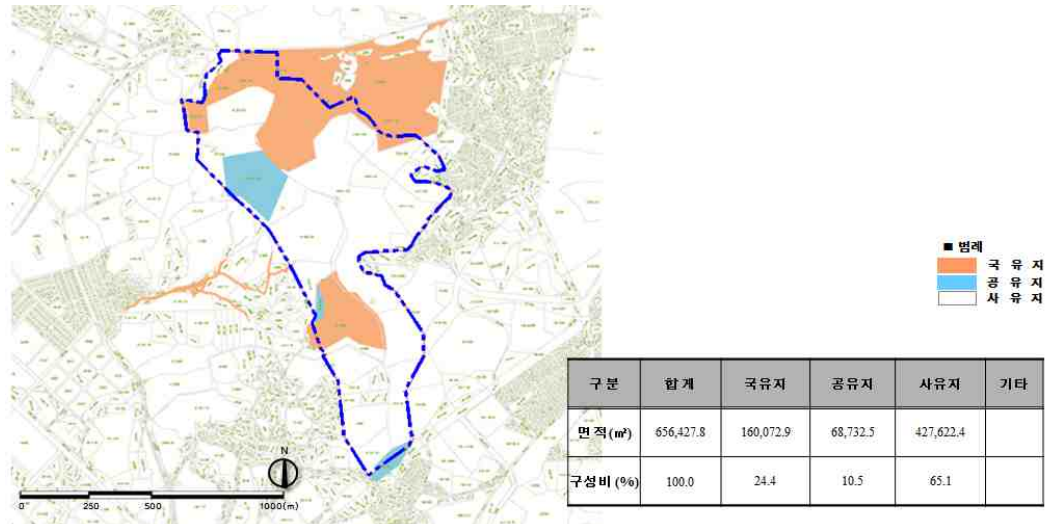
- 약97m의 표고차를 보이고, 0~20%경사도가 전체의 70.8%를 차지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100%, 식생은 소나무류, 참나무류, 포플러 아까시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29]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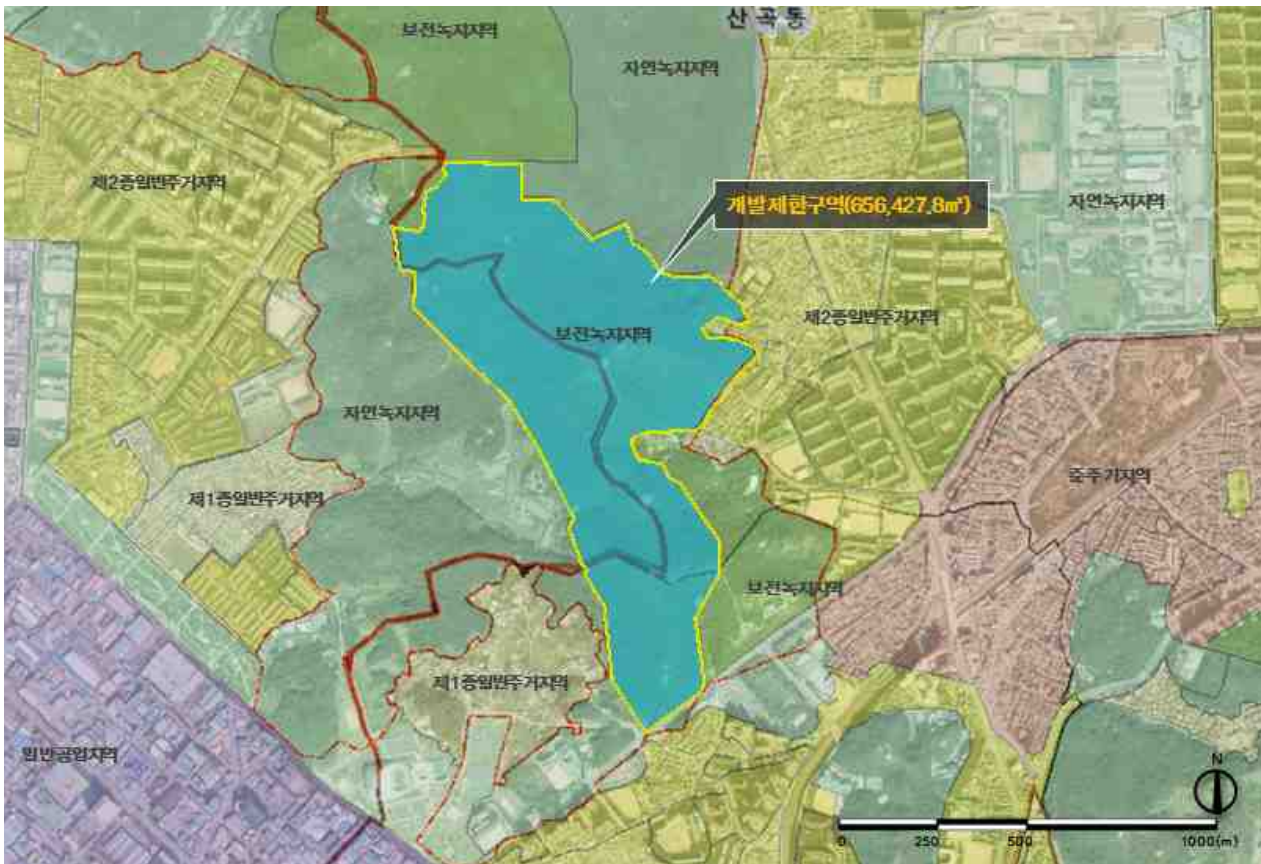
○ 국·공유지는 34.9%이며, 사유지는 65.1% 분포



[그림-430]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상지 100%가 개발제한구역 656,427.8㎡로 되어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지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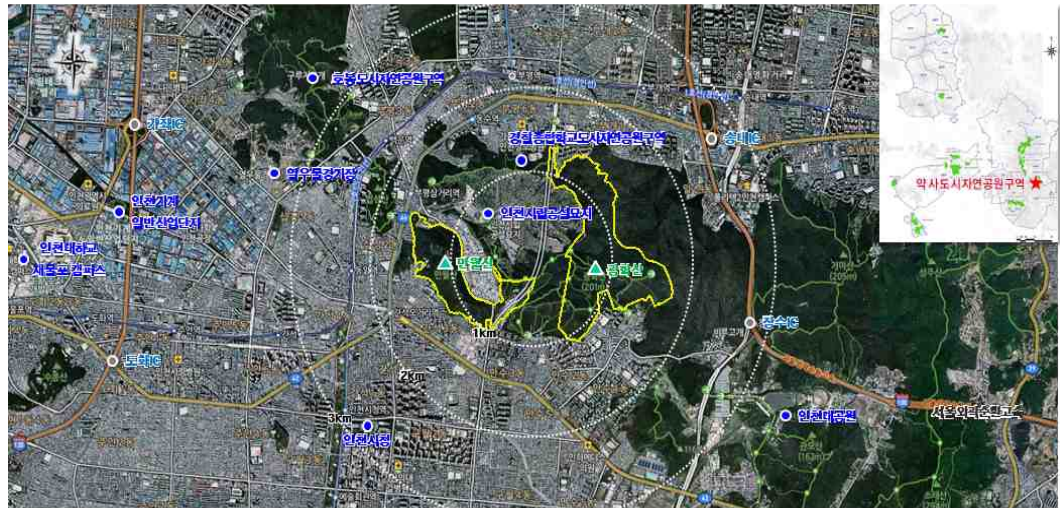


[그림-431]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6)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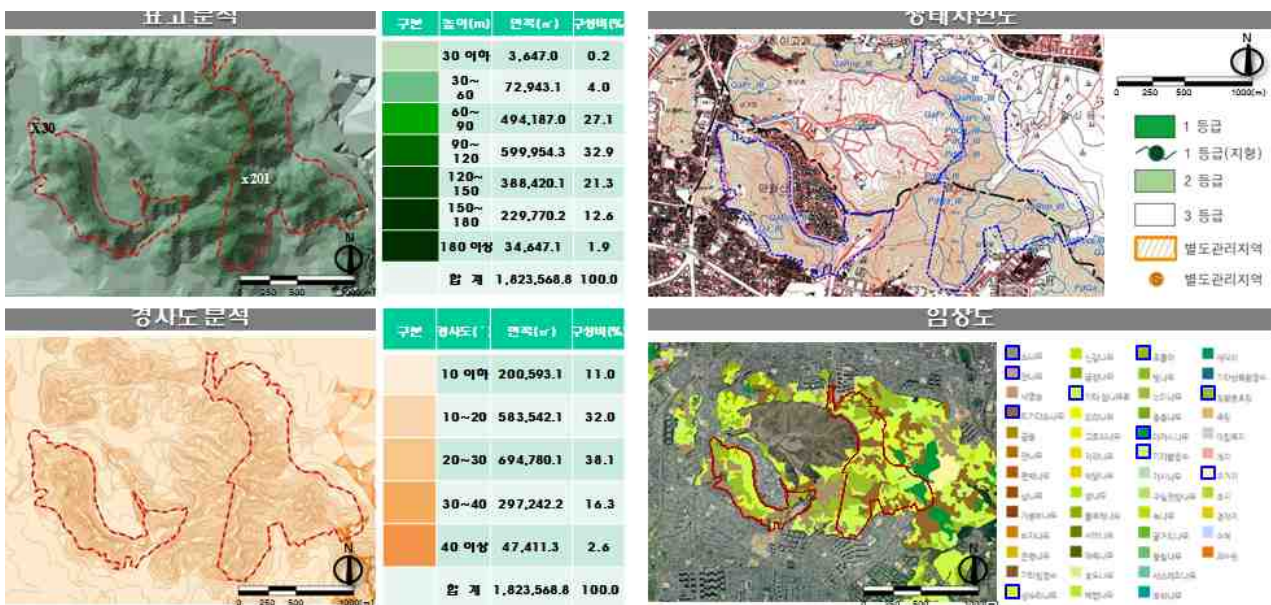
-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구 가좌동, 부평구 일신동 일원에 위치하고 동측으로 서울의 광순환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1,823,568.8㎡임
- 호봉,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분포, 인근에 인천시립공설묘지, 인천시청, 열우물 경기장 등이 입지



[그림-432]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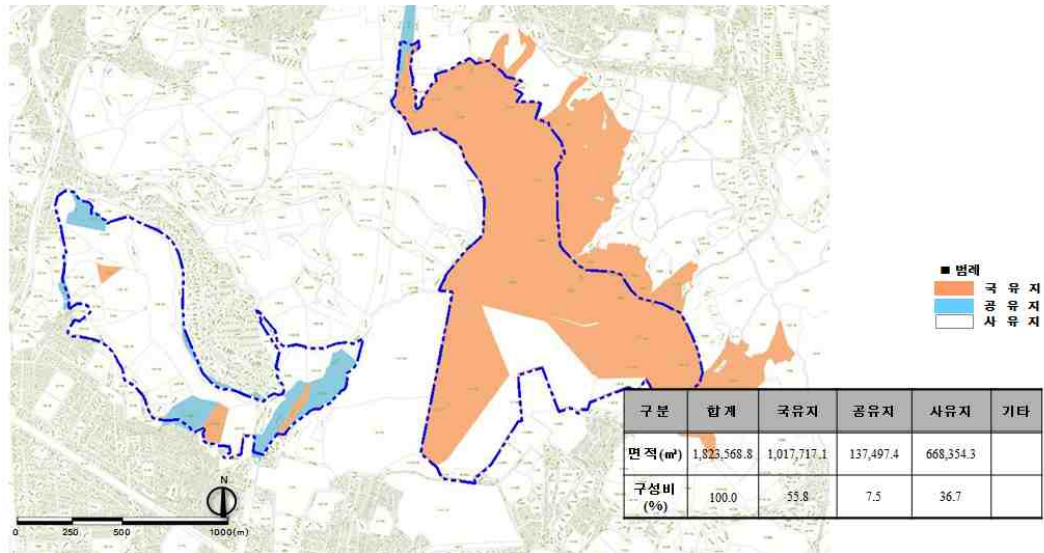
- 약171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70.1%를 차지함
- 영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소나무류, 상수리나무, 포플러 등으로 형성



[그림-433]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34.9%이며, 사유지는 65.1% 분포



[그림-434]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상지 동측에 개발제한구역 188,411.3㎡ 은 용도구역의 중복지정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척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1,816㎡) : 농경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190,159㎡) : 농경지, 사찰, 배수지, 도로, 임시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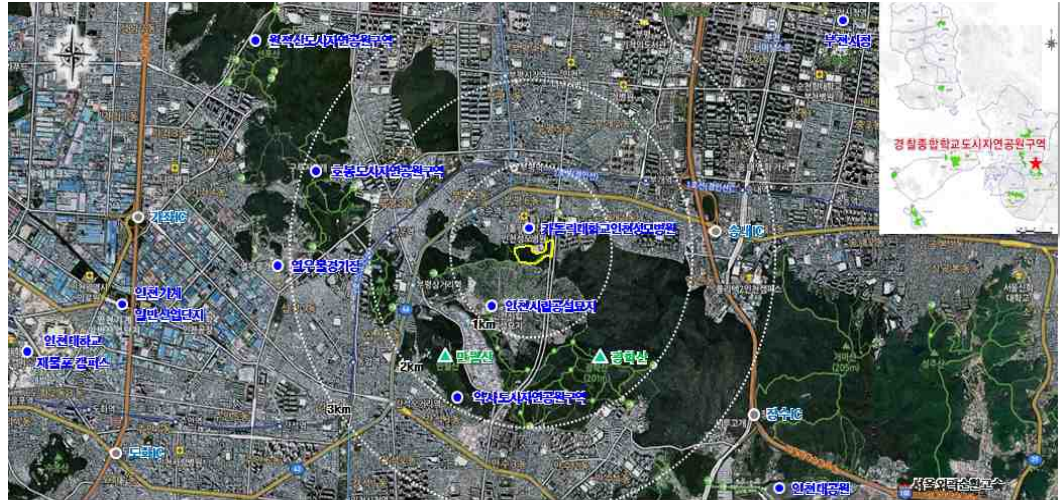


[그림-435]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7)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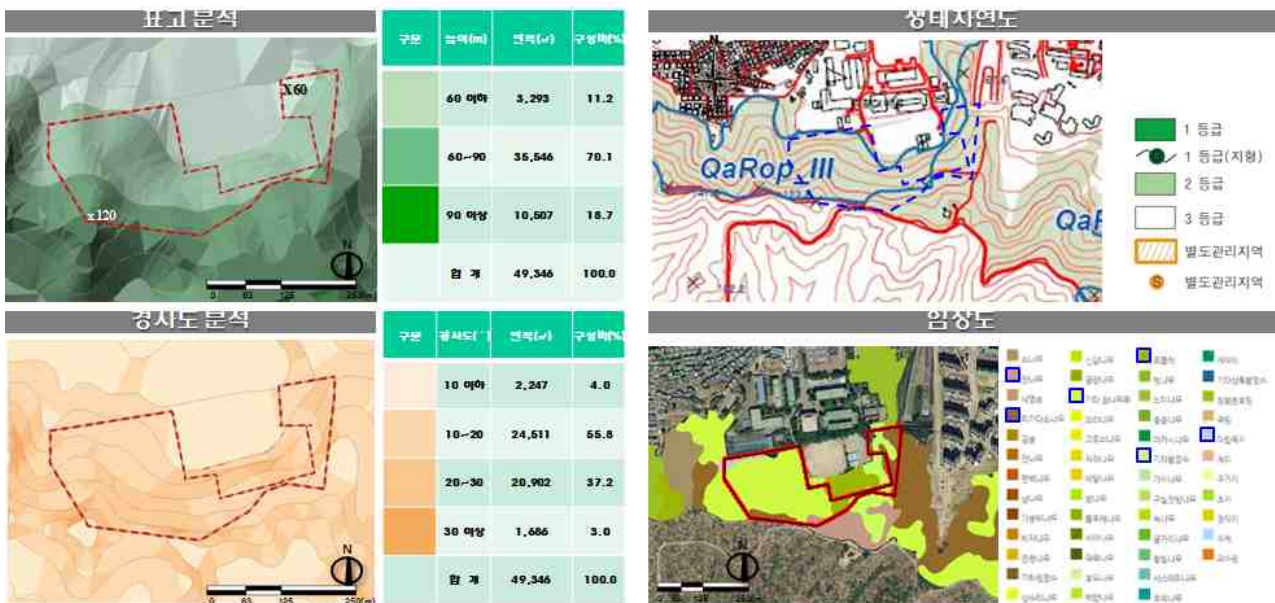
-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은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위치하고 동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49,346㎡,임
-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주거지역이 분포, 인근에 인천시립공설묘지,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이 입지



[그림-436]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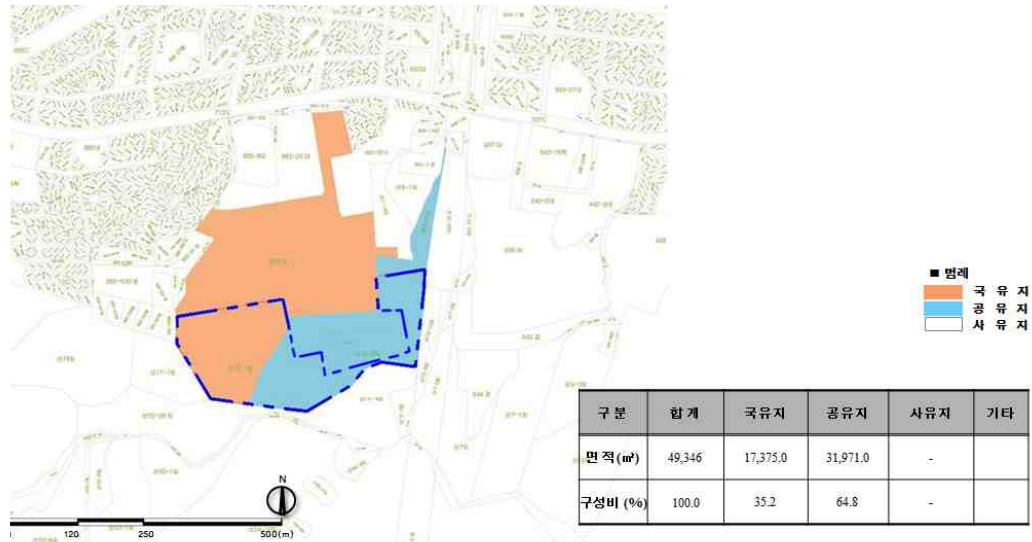
- 약60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93%를 차지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100%, 식생은 소나무류, 참나무류, 포플러 등으로 형성



[그림-437]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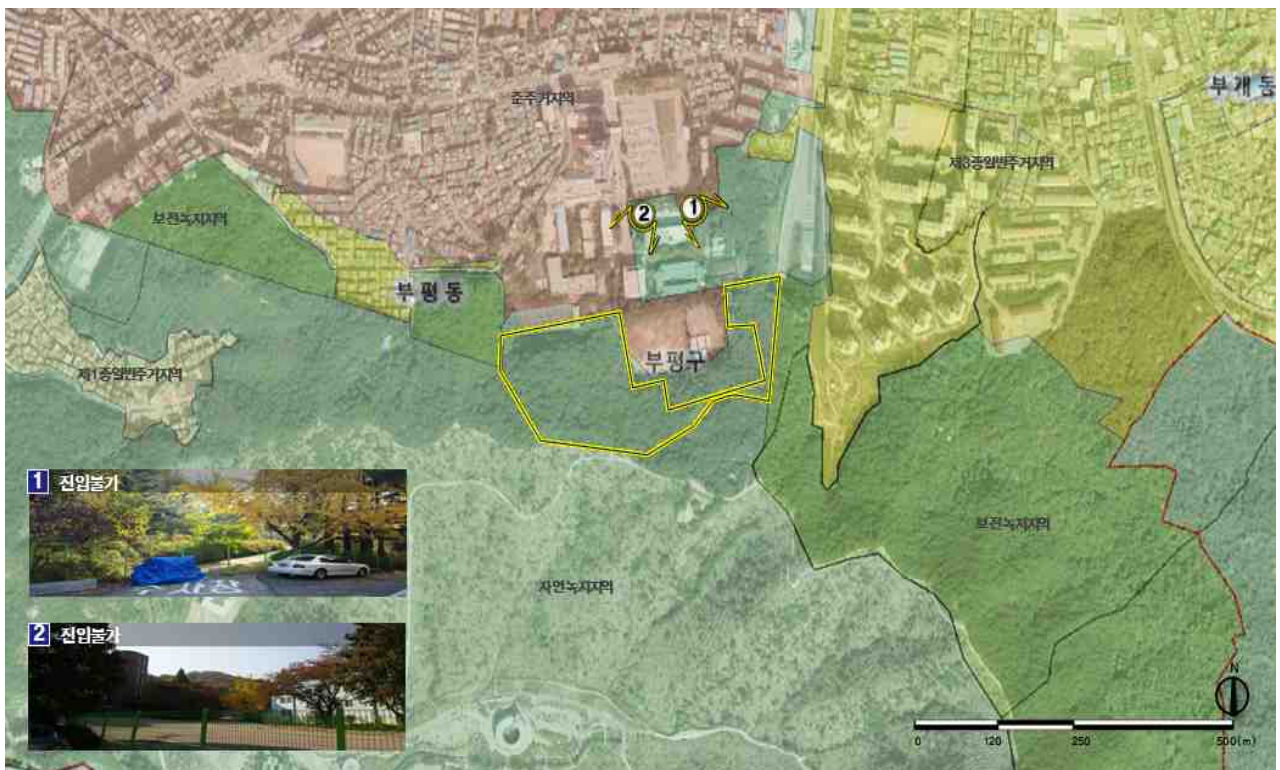
- 국·공유지는 100.0%이며, 사유지는 0% 분포



[그림-438]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경찰종합학교 이전 후 건물의 기능 상실 및 안전성의 이유로 학교 주변에 웬스 설치, 대상지로 진입 불가
- 진입이 불가하여 항공사진 검토 결과 훼손지가 없어 구역 전면적 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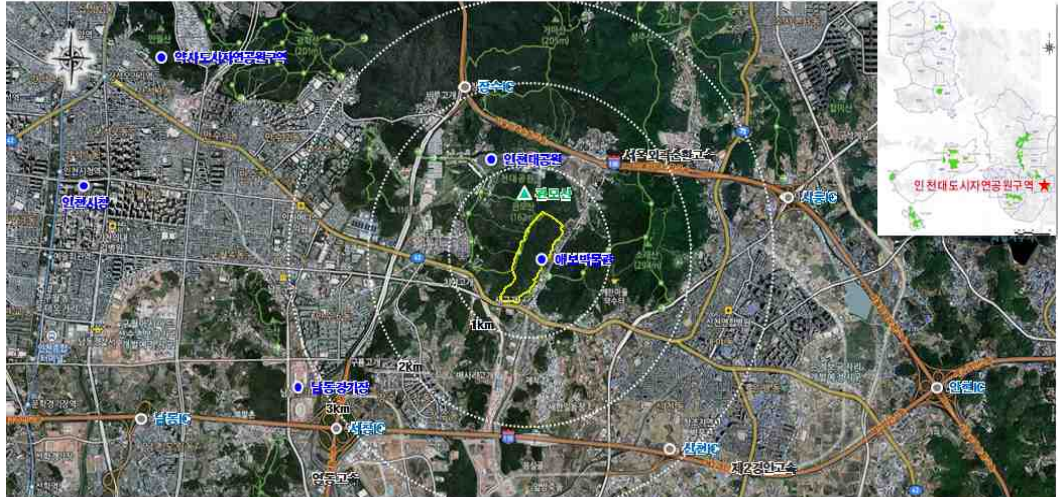


[그림-439] 경찰종합학교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8)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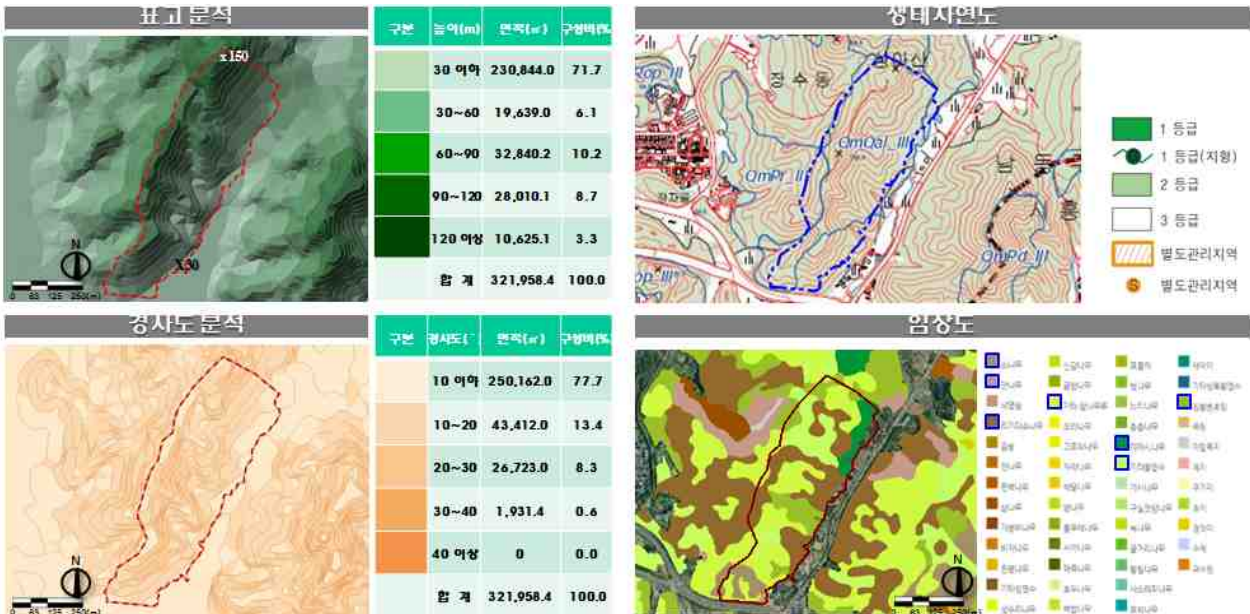
-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남동구 장수동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 남측으로는 제2경인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321,958.4㎡임
-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주거지역분포, 인근에 인천대공원, 애보박물관, 남동경기장 등이 입지



[그림-440]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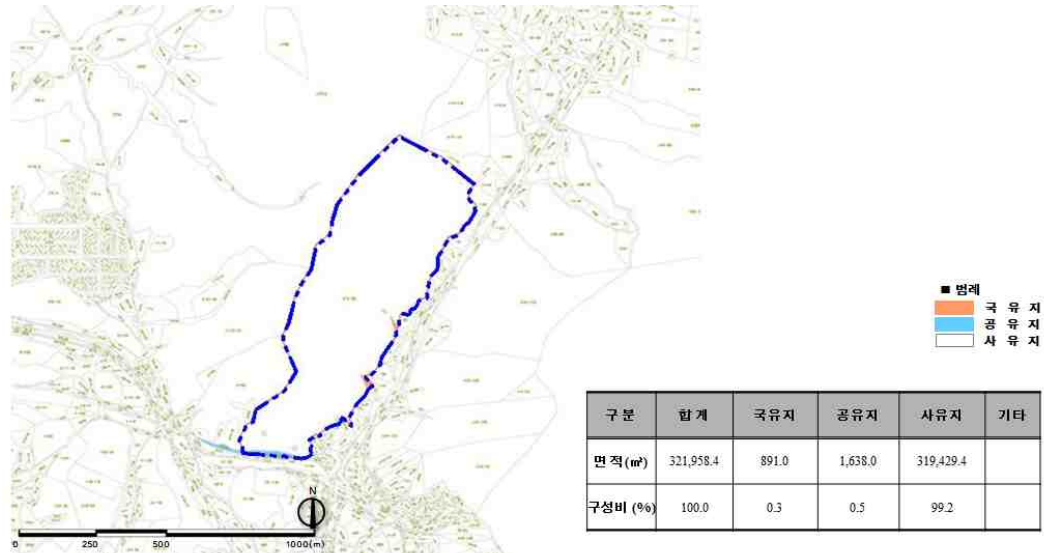
- 약120m의 표고차를 보이고, 0~20% 경사도가 전체의 91.1%를 차지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100%, 식생은 소나무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41]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34.9%이며, 사유지는 65.1% 분포



[그림-442]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상지 동측 경계부에 애보 박물관 주변으로 농경지 등 훼손지가 분포하나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321,958.4㎡로 용도구역의 중복지정 인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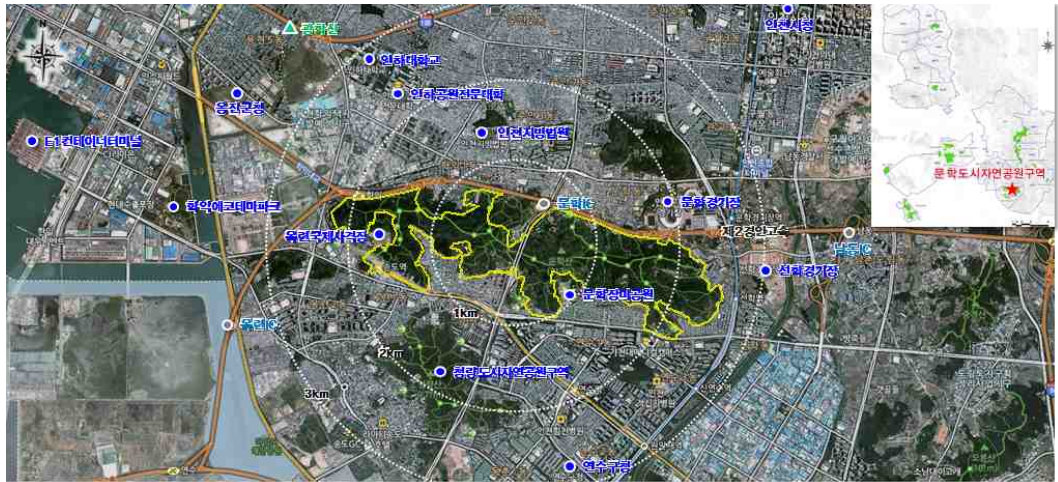


[그림-443]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9)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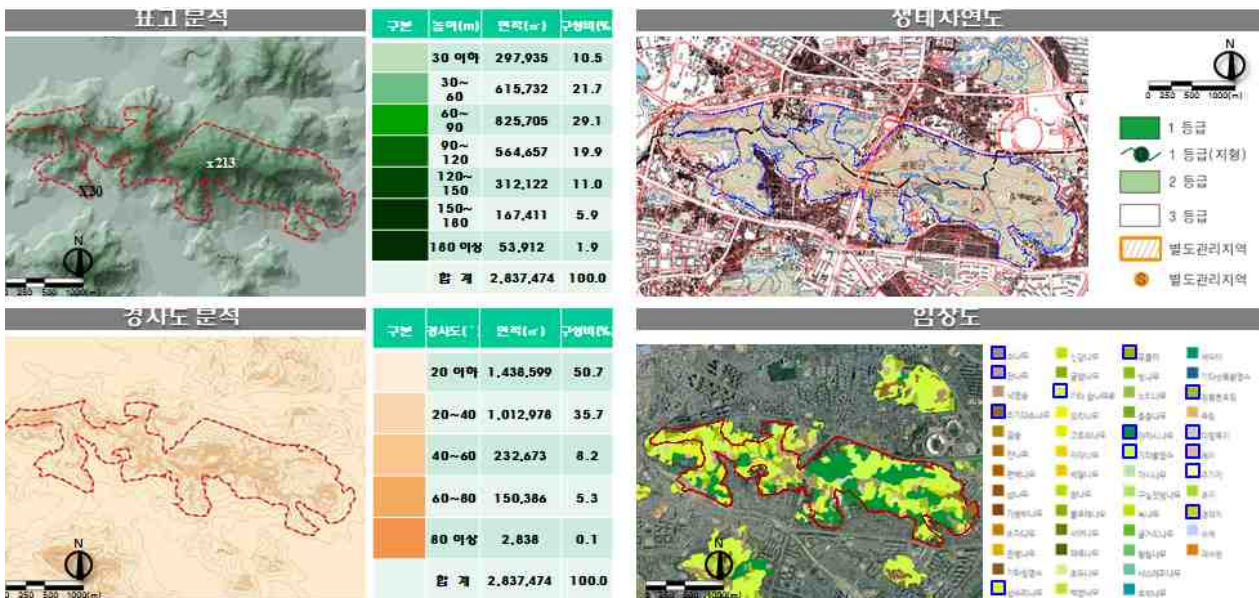
-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남동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 남측으로는 제2경인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2,837,474.0㎡임
-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주거지역 분포, 인근에 문학경기장, 문학장미공원, 옥련국제사격장 등이 입지



[그림-444]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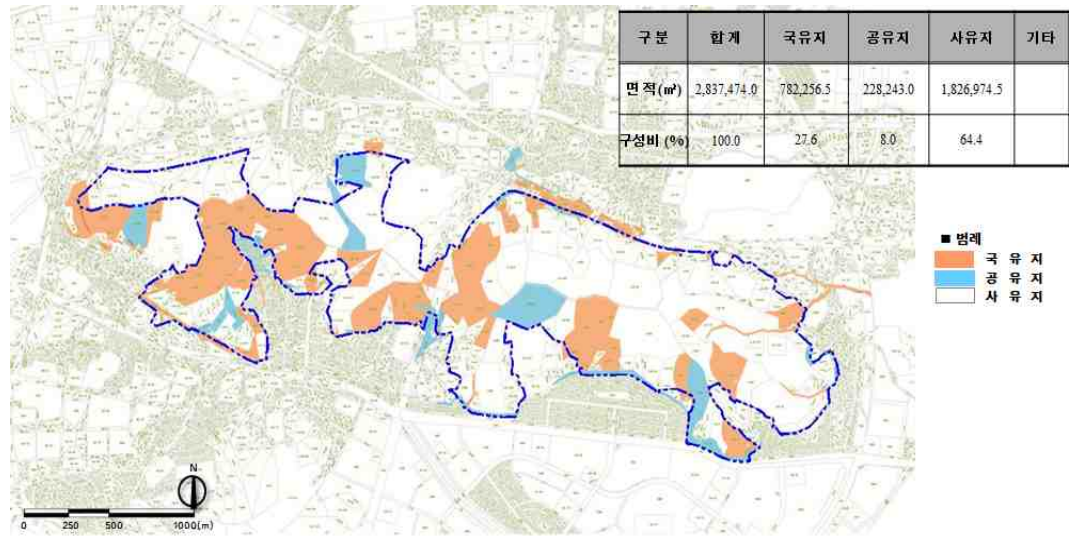
- 약183m의 표고차를 보이고, 0~40% 경사도가 전체의 86.4%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부분1등급지 분포, 식생은 소나무류, 상수리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45]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35.6%이며, 사유지는 64.4% 분포



[그림-446]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62,308㎡) : 묘지, 사찰, 농경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46,942㎡) : 농경지, 나대지(공장창고), 주택, 음식점



[그림-447]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1

6장 부문별 계획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17,119㎡) : 주택, 사찰, 묘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97,410㎡) : 주택, 농경지, 도로, 사찰, 유치원



[그림-448]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2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3,522㎡) : 군부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202,237㎡) : 주택, 농경지, 군부대, 배수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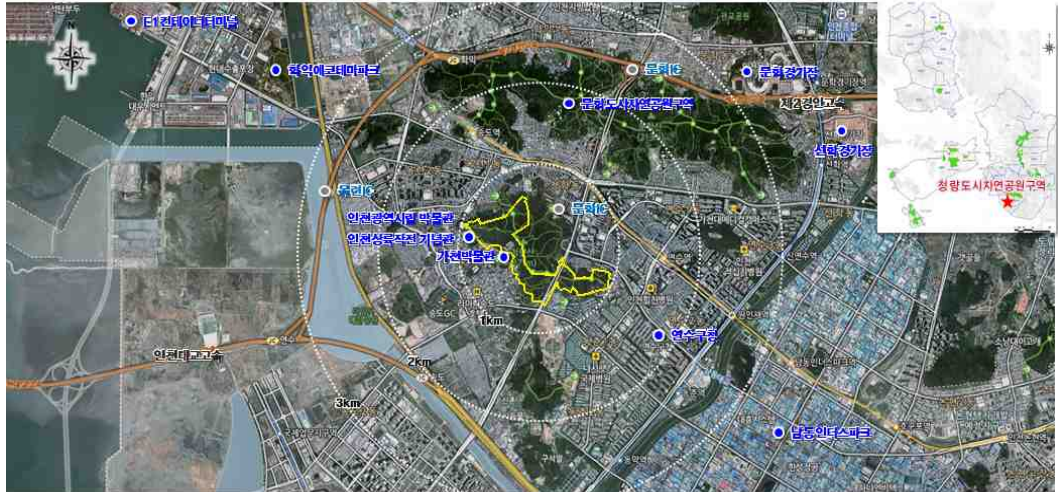


[그림-449]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3

10)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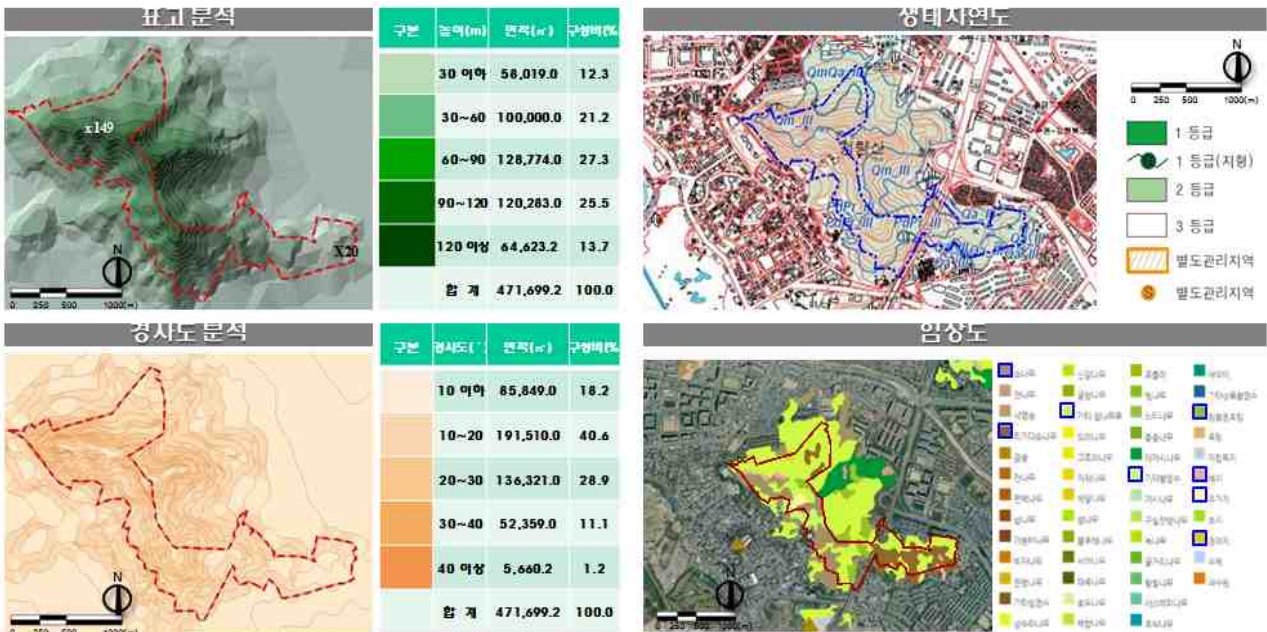
-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 남측으로는 제2경인고속이 근접, 전체면적 471,699.2㎡임
-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접하고, 한남정맥의 주축에 위치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분포, 인근에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이 입지



[그림-450]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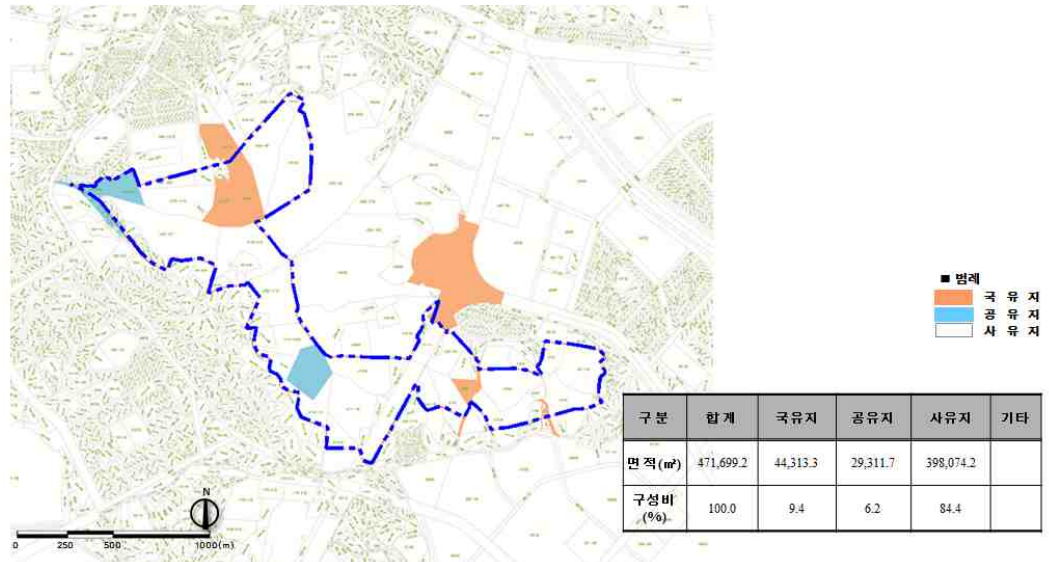
- 약129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69.5%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소나무류, 참나무류 등으로 형성



[그림-451]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15.6%이며, 사유지는 84.4% 분포



[그림-452]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25,768㎡) : 주택, 묘지, 농경지, 공사절개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64,099㎡) : 사찰, 도로, 농경지, 비닐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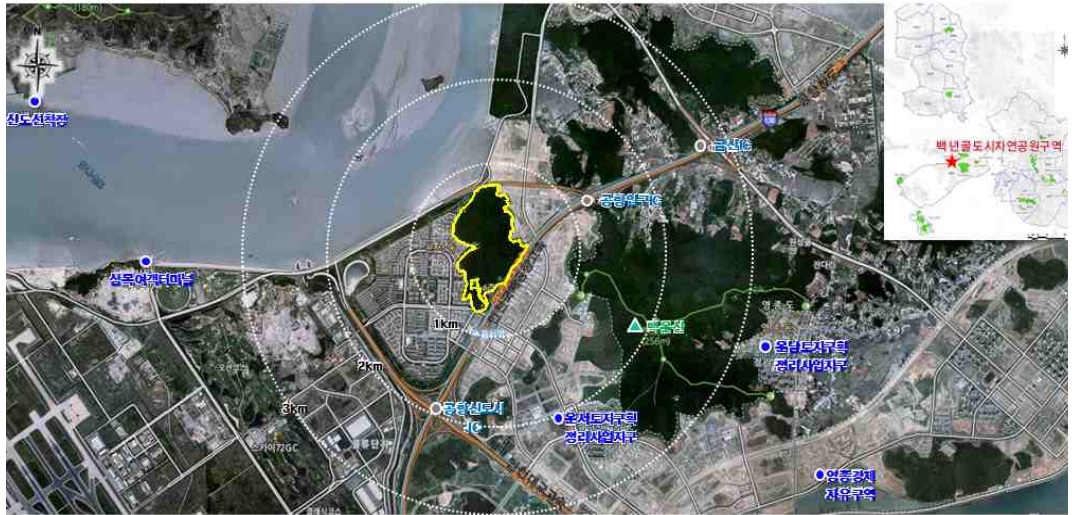


[그림-453]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1)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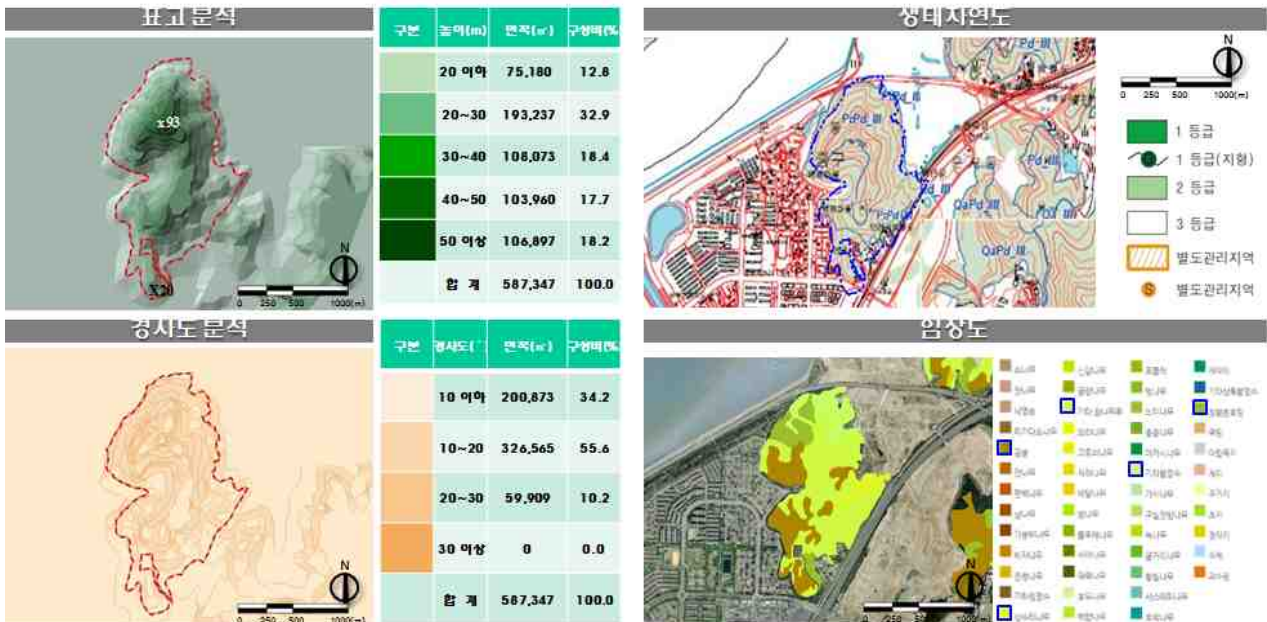
-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서동 일원에 위치하고 동측에서 남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가 인접, 전체면적 587,347.0㎡임
- 남서측2km내에 공항신도시가 위치하고 동측으로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북측으로는 운북,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인접하여 도심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



[그림-454]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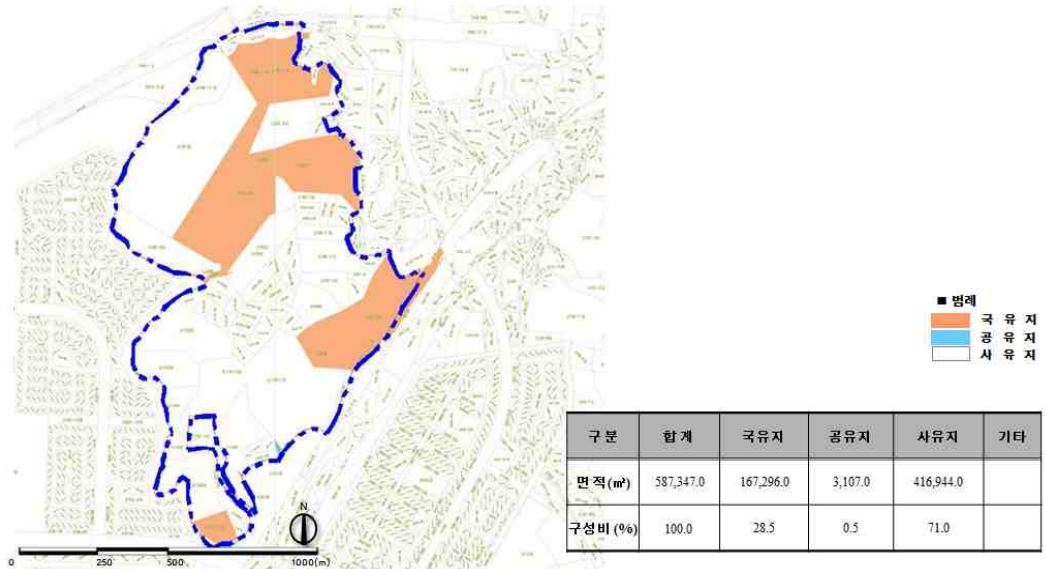
- 약73m의 표고차를 보이고, 0~20% 경사도가 전체의 89.8%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곰솔, 상수리나무, 참나무류 등으로 형성



[그림-455]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공유지는 29%이며, 사유지는 71% 분포



[그림-456]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13,780㎡) : 농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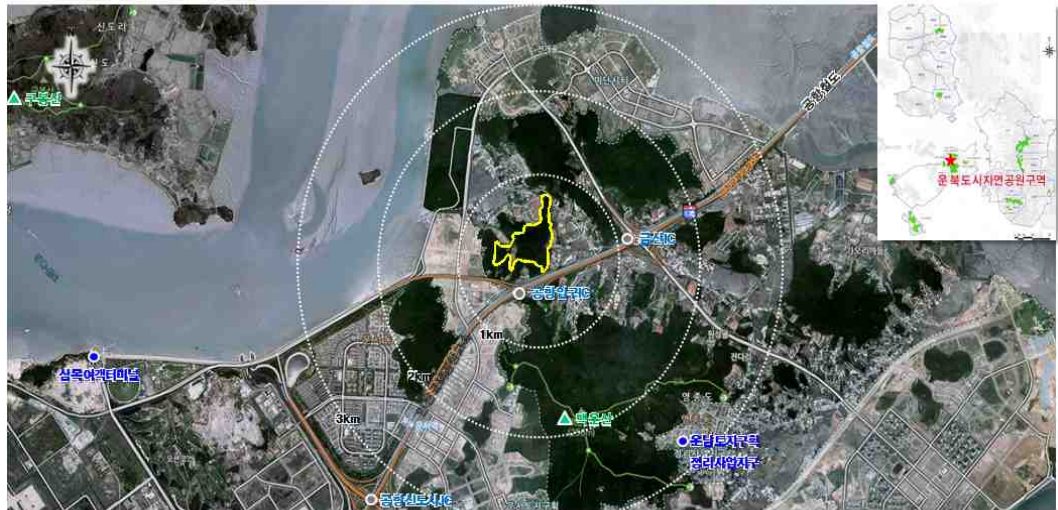


[그림-457]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2)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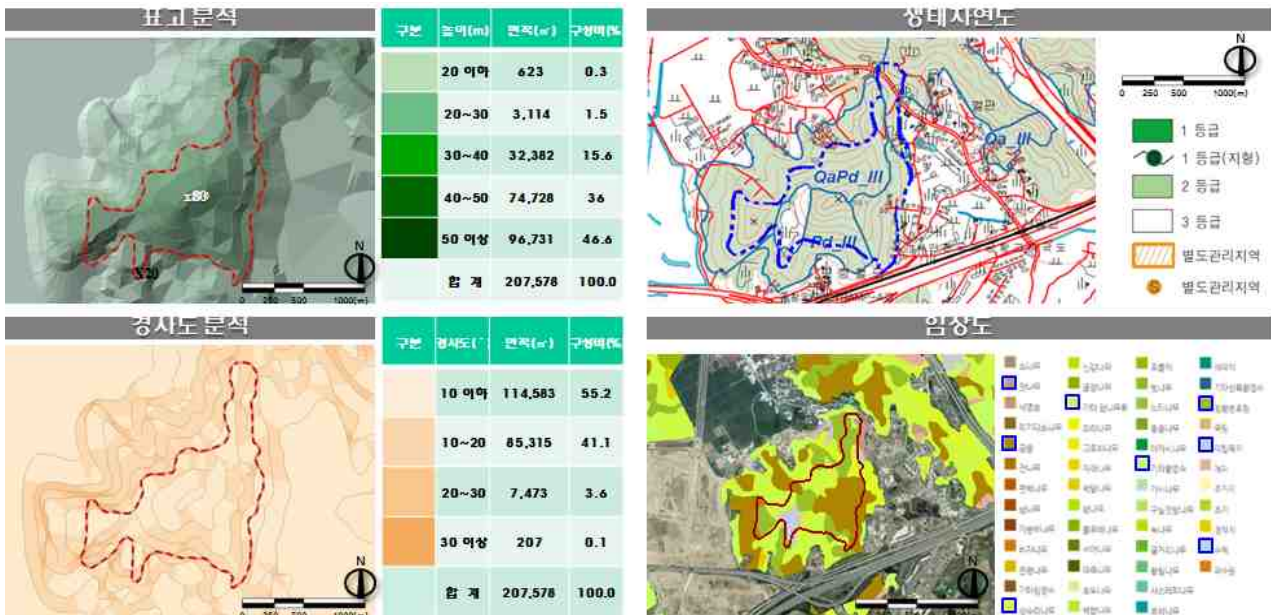
-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서동 일원에 위치하고 남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합입구IC에 접하여 교통편리, 전체면적 207,578.0㎡임
- 동·서·남·북측으로 석화, 운북, 백운산,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인접하여 도심지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



[그림-458]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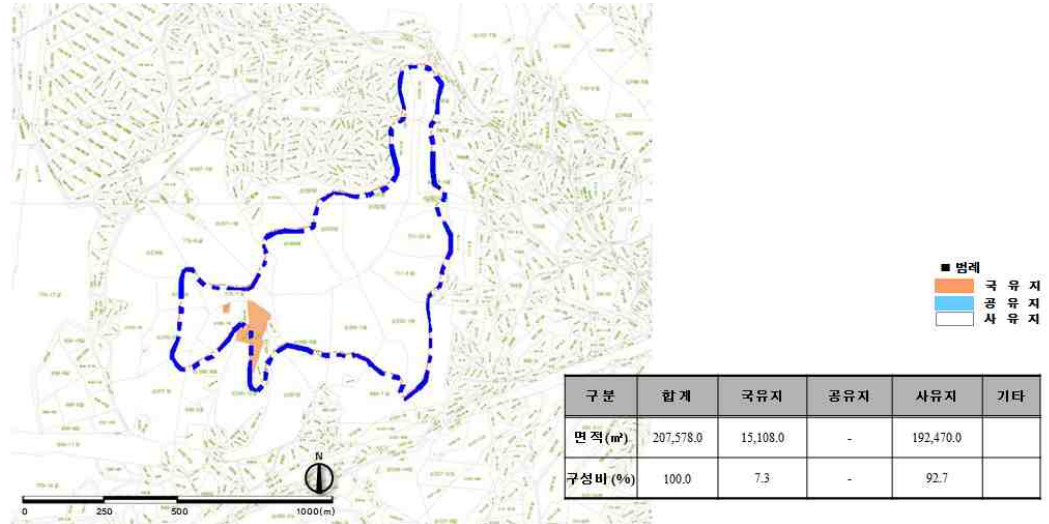
- 약60m의 표고차를 보이고, 0~20% 경사도가 전체의 96.3%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곰솔,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59]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7.3%이며, 사유지는 92.7% 분포



[그림-460]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897㎡) : 농경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9,897㎡) : 농경지



[그림-461]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3)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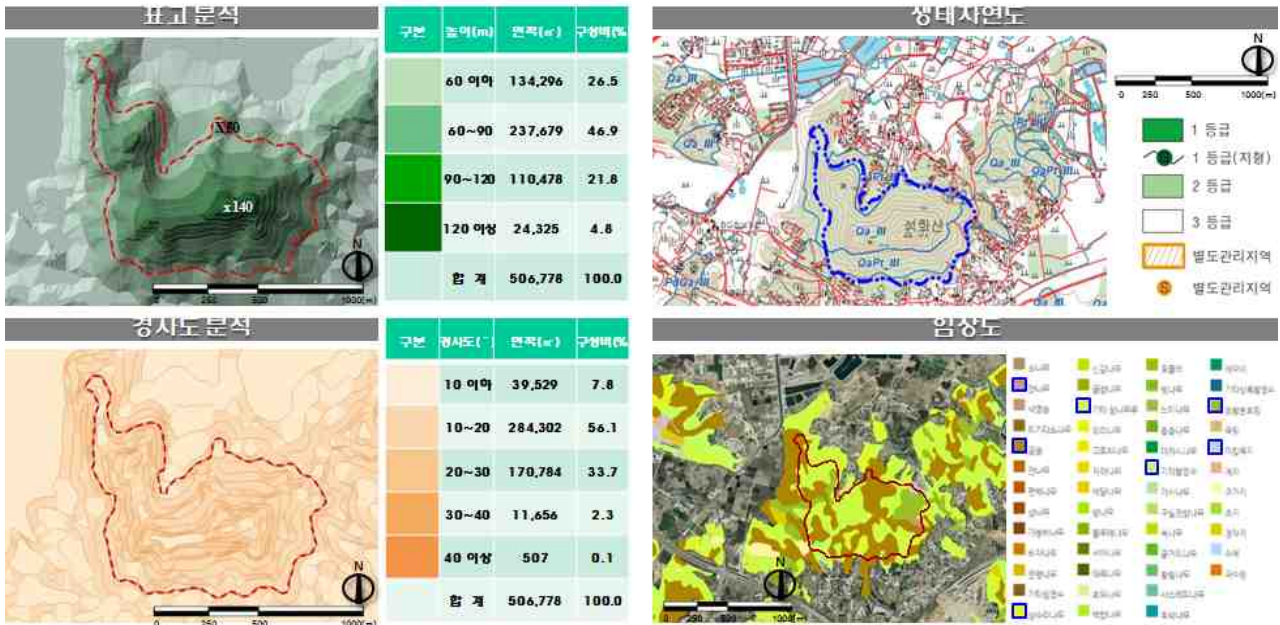
-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서동 일원에 위치하고 북서측 2km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가 근접, 전체면적 506,778.0㎡임
- 서측에는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하며, 4면이 자연녹지지역에 면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낮은 편임



[그림-462]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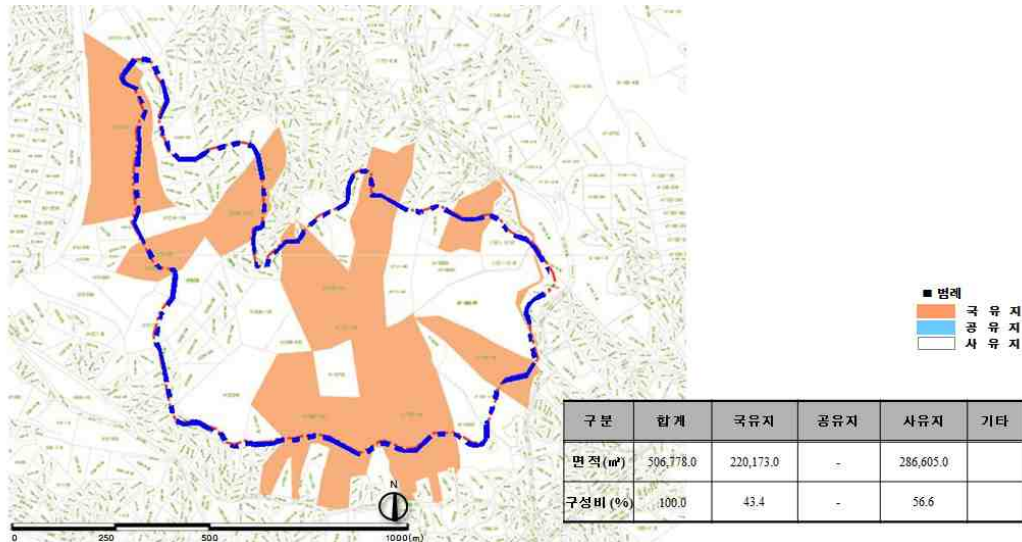
- 약90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89.8%를 차지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100%, 식생은 곶솔, 상수리나무, 참나무류 등으로 형성



[그림-463]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43.4%이며, 사유지는 56.6% 분포



[그림-464]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대부분 양호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 됨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355㎡) : 묘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3,593㎡) : 농경지



[그림-465]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4)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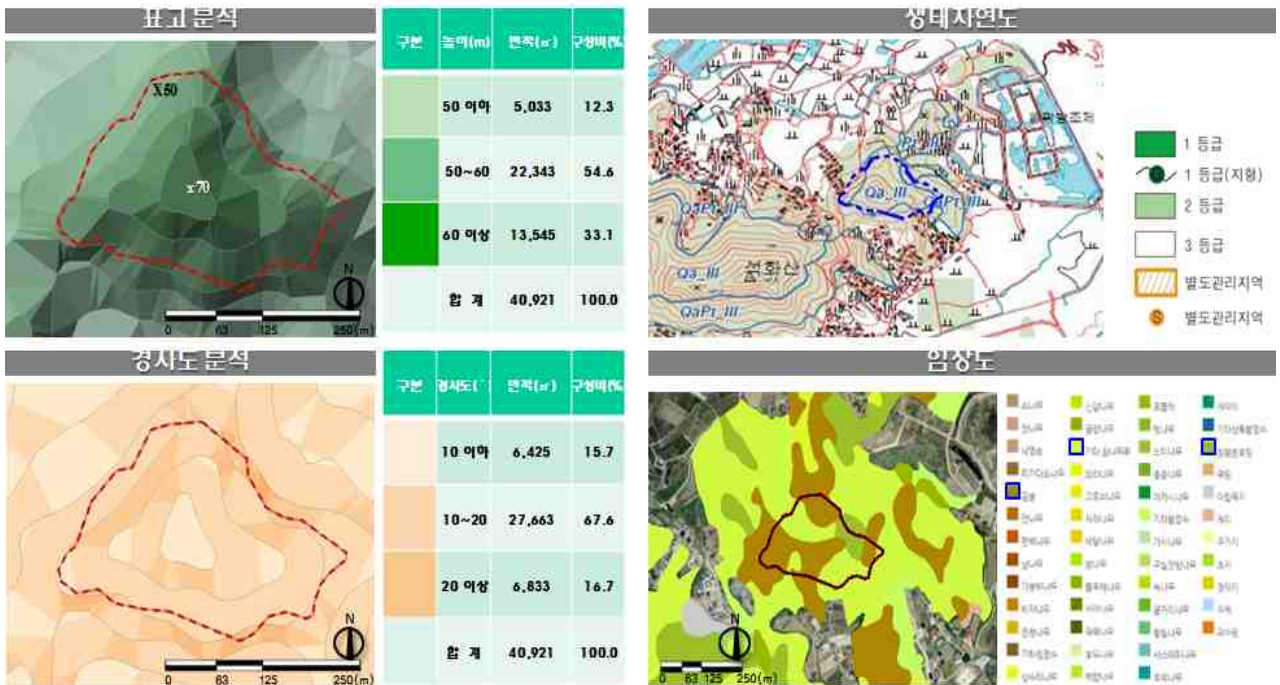
-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서동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 2.5km내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인접, 전체면적 40,921.0㎡임
- 서측에는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 함



[그림-466]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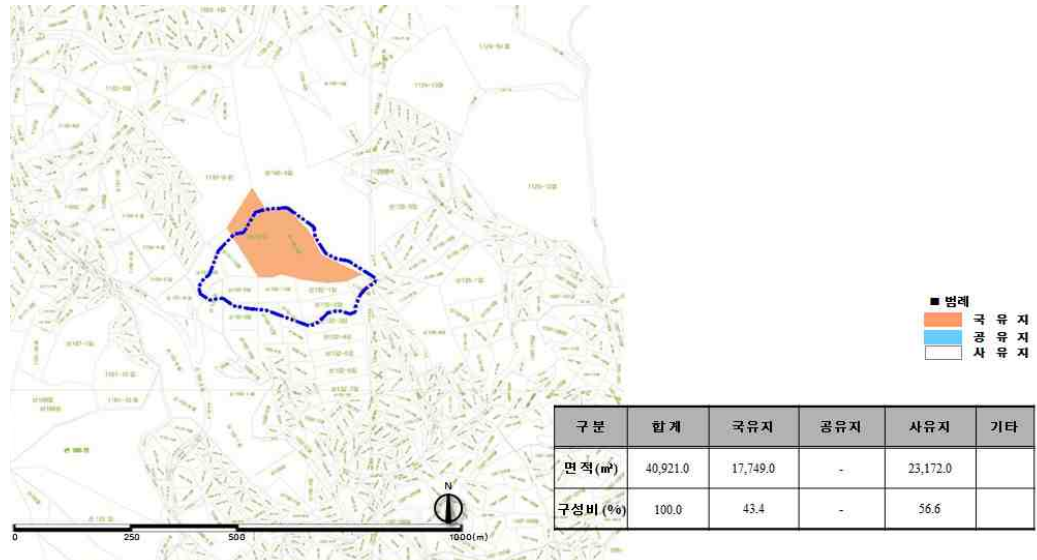
- 약20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20% 경사도가 전체의 67.6%를 차지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100%, 식생은 곰솔, 참나무류 등으로 형성



[그림-467]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43.4%이며, 사유지는 56.6% 분포



[그림-468]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양호한 식생의 중심지로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 입지적 특성상 보존필요



[그림-469]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5)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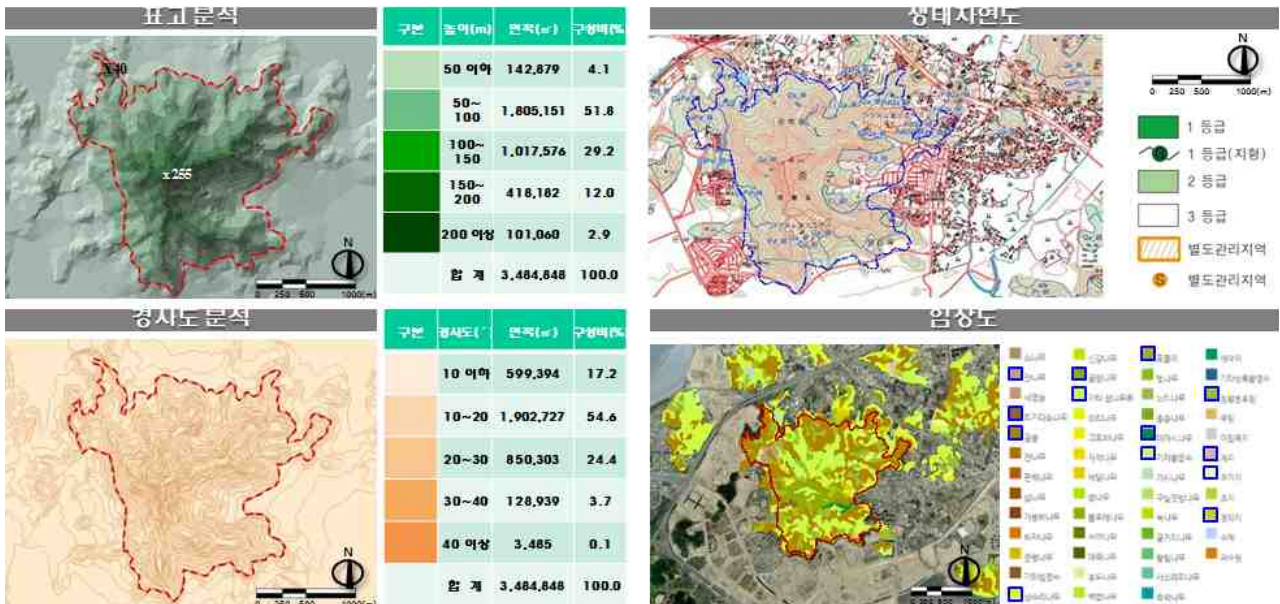
-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서, 운남, 운북동 일원에 위치하고 북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입지, 전체면적 3,484,848.0㎡임
- 남서측에 운서,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인접 함
- 북동측으로 석화, 중산, 금산,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과 함께 도심의 주요 녹지축 형성



[그림-470]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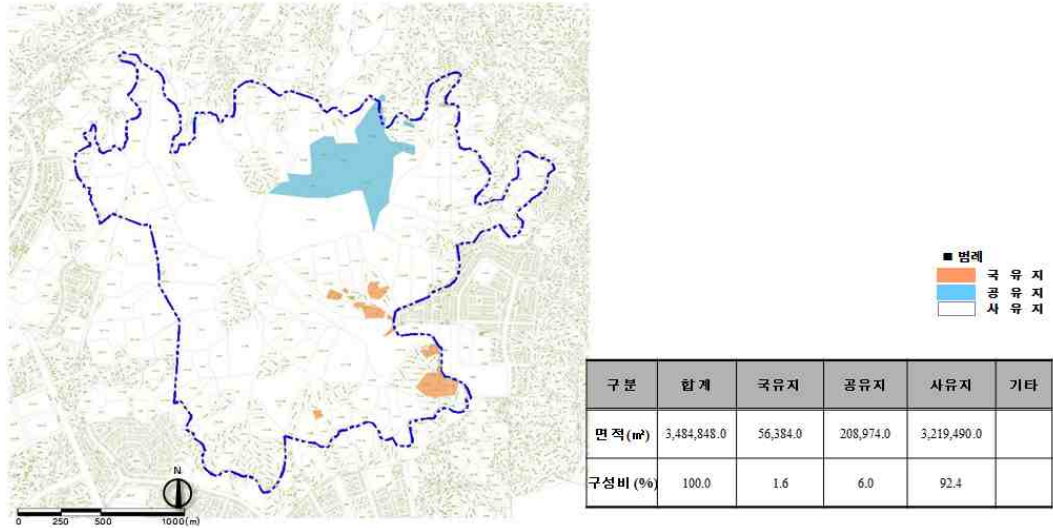
- 약215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79%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곰솔, 굴참나무, 포플러 등으로 형성



[그림-471]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7.6%이며, 사유지는 92.4% 분포



[그림-472]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46,230㎡) : 사찰, 문화재 및 사적, 농경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35,177㎡) : 농경지



[그림-473]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6)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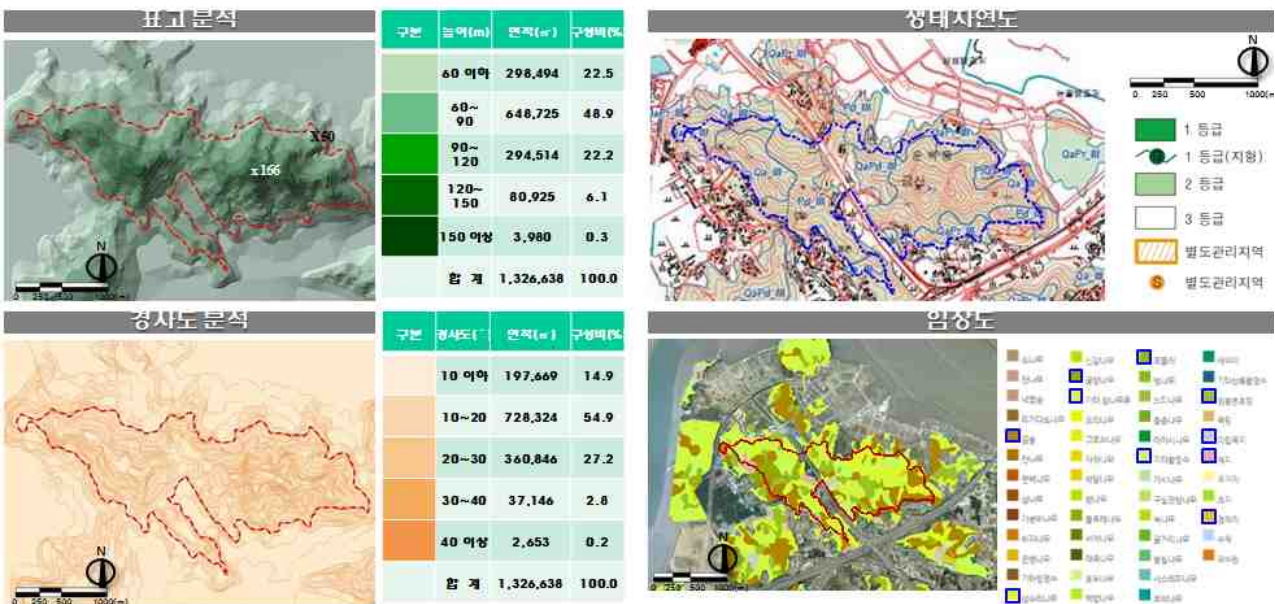
-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위치하고 영종도 복단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남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가 입지하여 접근용이, 전체면적 1,326,638.0㎡임
- 북측으로는 미단시티에 접하며, 남측으로는 석화, 중산, 백운,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인접하여 도심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



[그림-474]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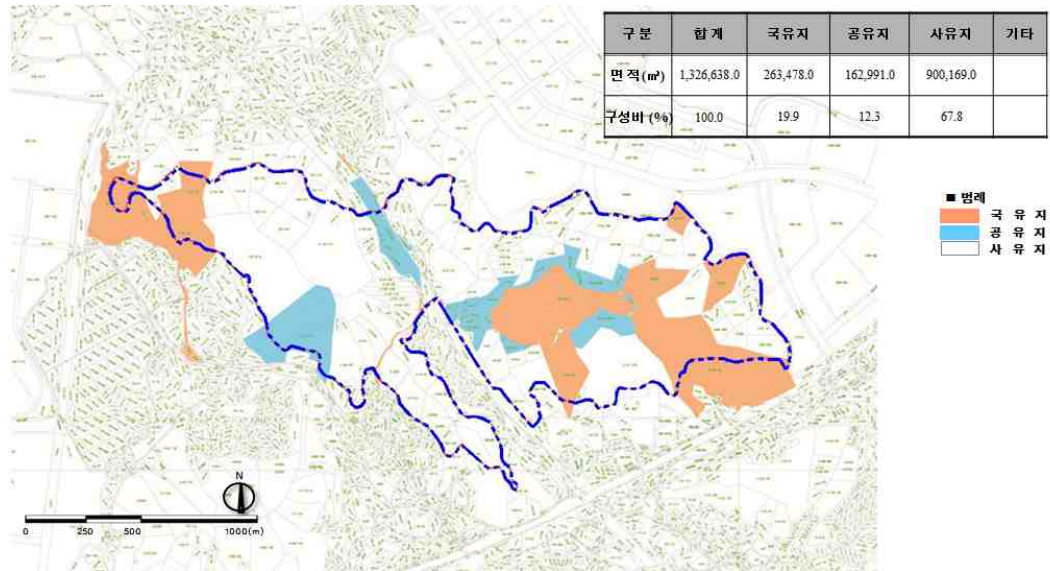
- 약215m의 표고차를 보이고, 10~30% 경사도가 전체의 79%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곰솔, 굴참나무, 포플러 등으로 형성



[그림-475]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32.2%이며, 사유지는 67.8% 분포



[그림-476]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3,754㎡) : 농경지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37,293㎡) : 농경지



[그림-477]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7)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가. 위치 및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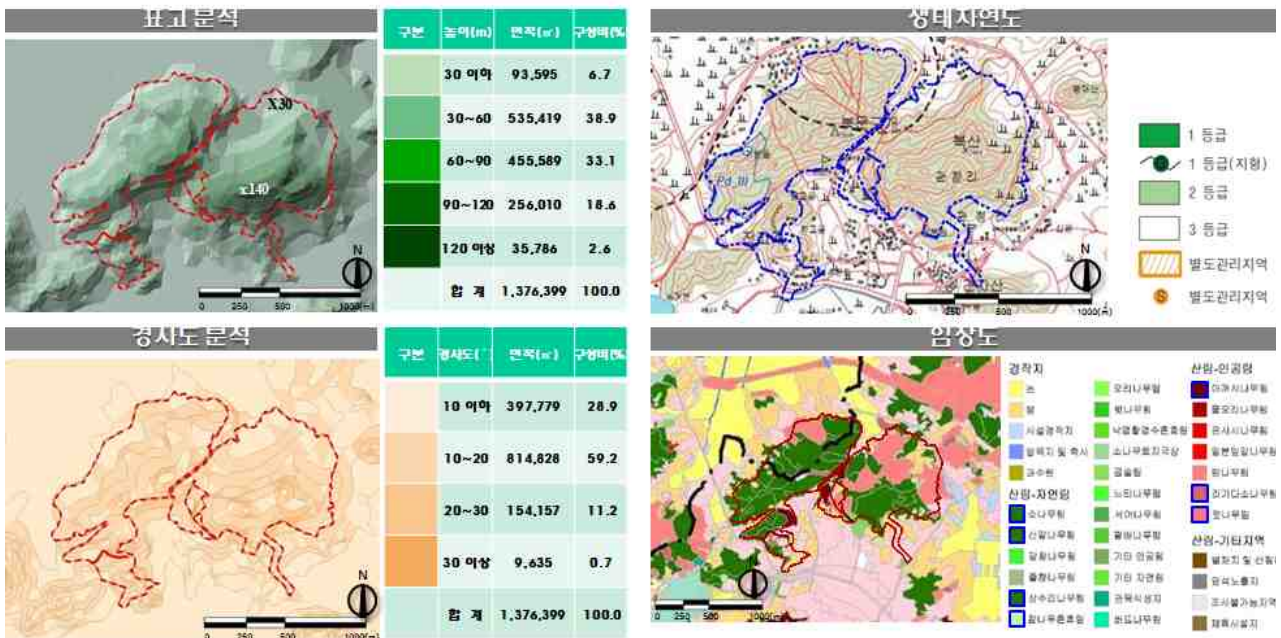
-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강화군 강화읍 일원에 위치하고 동측으로 강화대교를 통해 육지 부와 연결, 전체면적 1,376,399㎡임
- 중심에 강화고려궁지, 강화산성북문, 서측에 강화고인돌체육관, 고천리고인돌군, 남측에 강화군청, 강화산성 남문 등 역사문화유적 및 주요관광서 등이 입지하고 있음



[그림-478]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 및 입지여건도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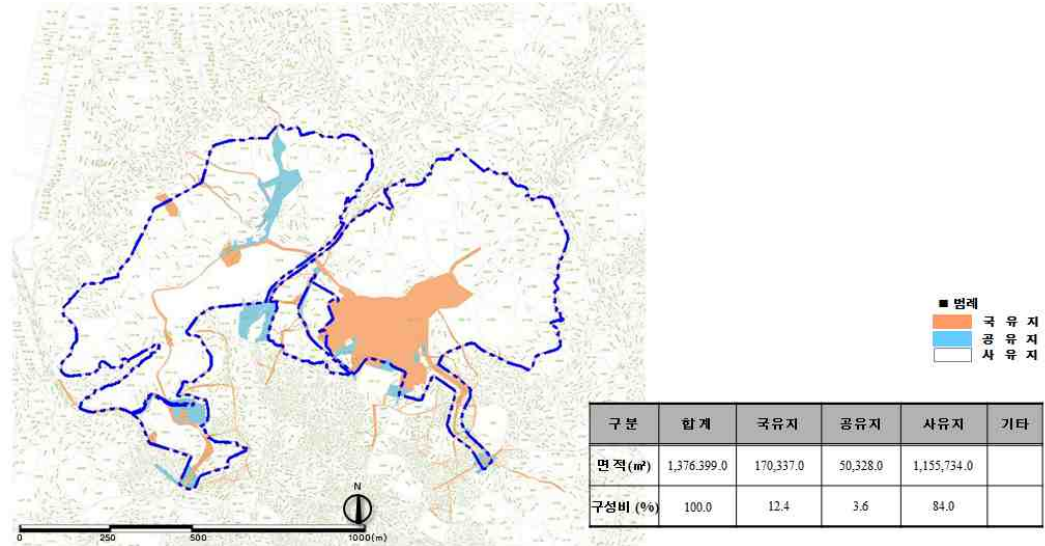
- 약110m의 표고차를 보이고, 0~20% 경사도가 전체의 88%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소나무류,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79]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16%이며, 사유지는 84% 분포



[그림-480]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라. 종합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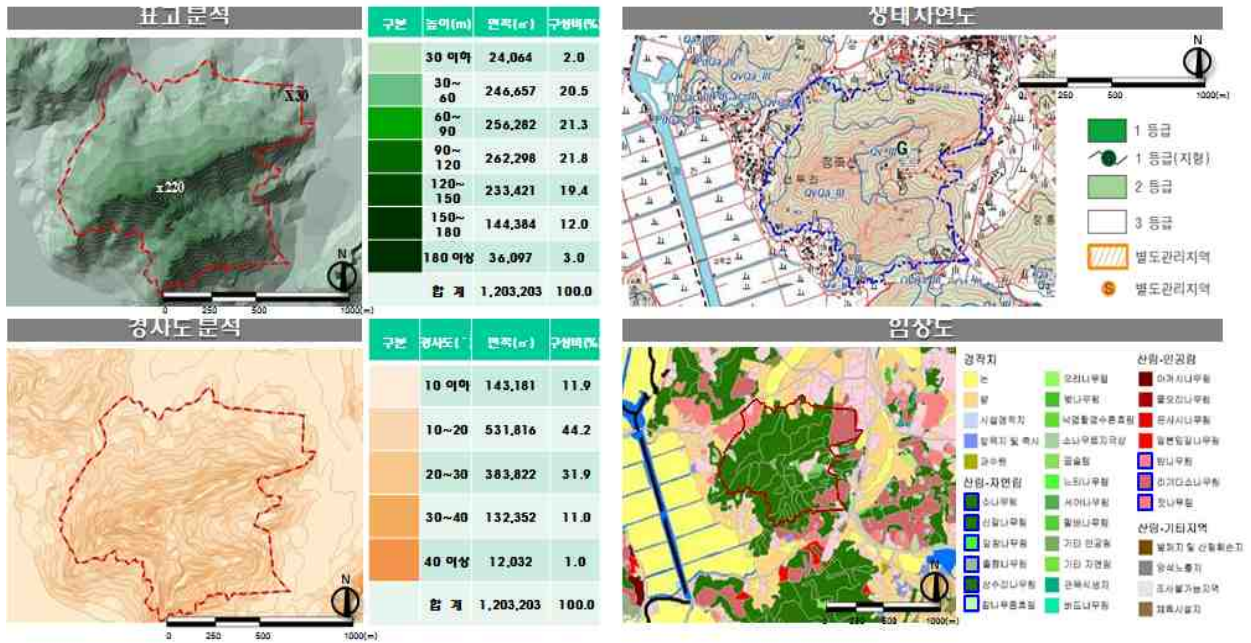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21,038㎡) : 문화재 및 사적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65,748㎡) : 농경지, 학교



[그림-481]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1

나. 자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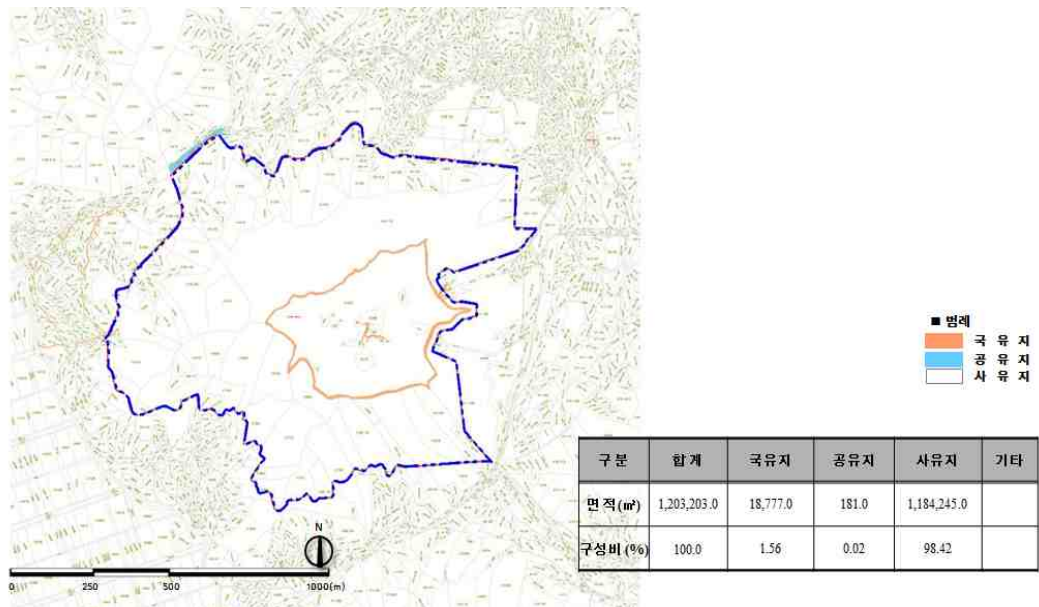
- 약110m의 표고차를 보이고, 0~20% 경사도가 전체의 88%를 차지함
- 양호하지 못한 수림 대부분이 3등급지, 식생은 소나무류,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으로 형성



[그림-484] 전동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분석도

다. 소유자별 현황

- 국유지는 1.58%이며, 사유지는 98.4% 분포



[그림-485] 전동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별 현황도

- 구역 내부 존치 대상 (197,836㎡) : 문화재 및 사적
- 구역 경계부 변경(해제) 대상 (49,137㎡) : 농경지



[그림-486] 전등도시자연공원구역 종합분석도

19) 경계부 양호하지 못한 수림의 유형

가. 양호하지 못한 수림의 유형 및 관리방안

- 인천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부의 양호하지 못한 수림의 조사결과 주택, 농경지, 군부대, 묘지, 사찰, 배수지, 도로, 주차장, 유지원, 레이다 송신소, 운동장, 공사철거지, 나대지, 문화재 및 사적, 음식점, 학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분포
- 양호하지 못한 수림에 대해서는 추후 본 계획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훼손시기, 행정처리 사항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그림-487] 경계부 양호하지 못한 수림의 유형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시공원 등 여가·휴식공간 등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녹지의 보전 및 이용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양호한 식생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등산로의 일부구간 또는 전구간의 출입제한을 목적으로 등산로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생태계의 학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탐방객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생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
 - 등산로의 복원, 훼손지 나무심기, 자연보전지역 훼손 감시활동, 귀화식물 제거활동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체나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경관 특성을 살려 계절별 경관 포인트를 설정하여 경관 해설판을 설치할 수 있고, 조망위치에 따라 전망대를 설치하여 촬영 등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방안

가. 시설의 정비 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내의 주요시설은 산책로, 탐방로 및 일부 편익·휴게시설로서 주요재료 별 특성에 부합되는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내의 개별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시설로 이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정비와 관리를 시행토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비상 응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비상응급체계를 구축토록 함
- 주요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며, 급경사지는 계단 또는 로프, 안전웬스를 도입하고, 산림내 산책로에는 약천후 등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기능의 휴게시설을 도입하여야 함
- 아울러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체력단련시설 세부설치 기준

- 등산로는 이용자의 도보이용을 위한 시설로 등산로 형태와 산책로 형태로 구분하여 설치함
(등산로:1.0~2.0m / 산책로:1.5m~2.5m)
-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진입부, 주거지 근처에 배치하며 500㎡ 이내로 설치함
- 체력단련장은 산책로, 광장, 약수터 등과 같이 설치하거나 인근에 설치함
- 체력단련장은 철봉, 평행봉 등의 운동시설과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구비함
- 간이휴게소는 주로 동선의 결절점, 산책로 주변, 광장 및 운동시설 주변에 33㎡이하로 설치함
- 평의자는 관리를 고려하여 폭이 넓은 각재를 사용함
- 등의자는 안식각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조망이 양호한 곳에 설치함
- 평의자·파고라는 휴게공간, 광장, 외주부에 설치하고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다. 노면 및 급경사지 정비

- 임도정비와 연계하여 노면 및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함
- 우기 이전에 배수로 및 절·성토면 사면을 철저히 관리함
 - －집수구 적치토사, 집수구상단 및 배수관내 토사제거, 도수로·돌수로 등 보수
 - －산 돌쌓기 구간 보수, 비탈정리, 위험낙석제거, 피해 위험지 비닐피복·마대쌓기 등
- 겨울철 노면의 상습 결빙구간을 해소함
- 낙엽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해소함
- 급경사지 낙석을 예방 및 정비함

3) 도시자연공원구역 재해 방지 계획

가. 산지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 계곡부 개별 지양함 / 택벌림 유도함
- 다층혼유림으로 조성하여 재해를 방지함
- 산사태 및 홍수피해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함
- 산림경영계획 편성시 재해예방시설을 반영함

나. 산불방지계획

-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정립함
- 산불진화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함
- 산불진화 인력확충 및 시범훈련을 실시함
-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함
-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함
-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을 제거함
-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 및 산불예방운동을 전개함
- 뒷불정리/사후조치/산불가해자를 조치함

다. 산사태 방지계획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토사의 깊이가 1~3m로 비교적 얇기 때문에 튼실한 산림을 조성하면 수목의 뿌리가 흙을 고정시켜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음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탈면에서의 산사태 발생률은 자연사면에서의 그것에 비해 약 5.7배나 높음으로 인위적으로 비탈면을 조성한 후에는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의 마련이 필요함

라. 풍수해 방지계획

-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 하천 및 유역정비
- 대규모 및 중소규모 댐 운영
- 내수배제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우수유출저감방안/재난영향평가
- 경사면의 유지관리/교량설계 유지관리
- 응급복구 및 현장지휘체계
- 재난대책 예산 및 교육/홍보수립

5. 도시자연공원구역 특화 테마벨트

- 계획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이 조성될 때 주변여건 및 지역특성, 인문적·자연적 환경에 알맞게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테마를 가진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이 되도록 함

[표-310] 도시자연공원구역 특화계획

구 분	대상(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용
자연문화 탐방벨트	계양 원적산 호봉 약사 인천대	1) 습지체험 2) 숲 생태 체험 3) 자연식물 강연 4) 산악자전거 5) 릴레이 등산코스
전통문화 탐방벨트	문학 청량	6) 전통예절체험 7) 의복문화체험 8) 서예체험 9) 전통악기 공연 10) 한지체험
역사문화 탐방벨트	북산 전등	11) 국악 공연 12) 전통·근대문화 체험(산성, 갑곶돈대, 초지진)
해양생태 탐방벨트	왕산 무의	13) 해양생태 체험(해저탐험) 14) 갯벌생태 체험(머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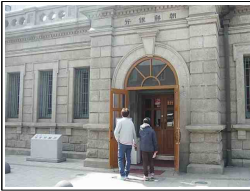
[자연문화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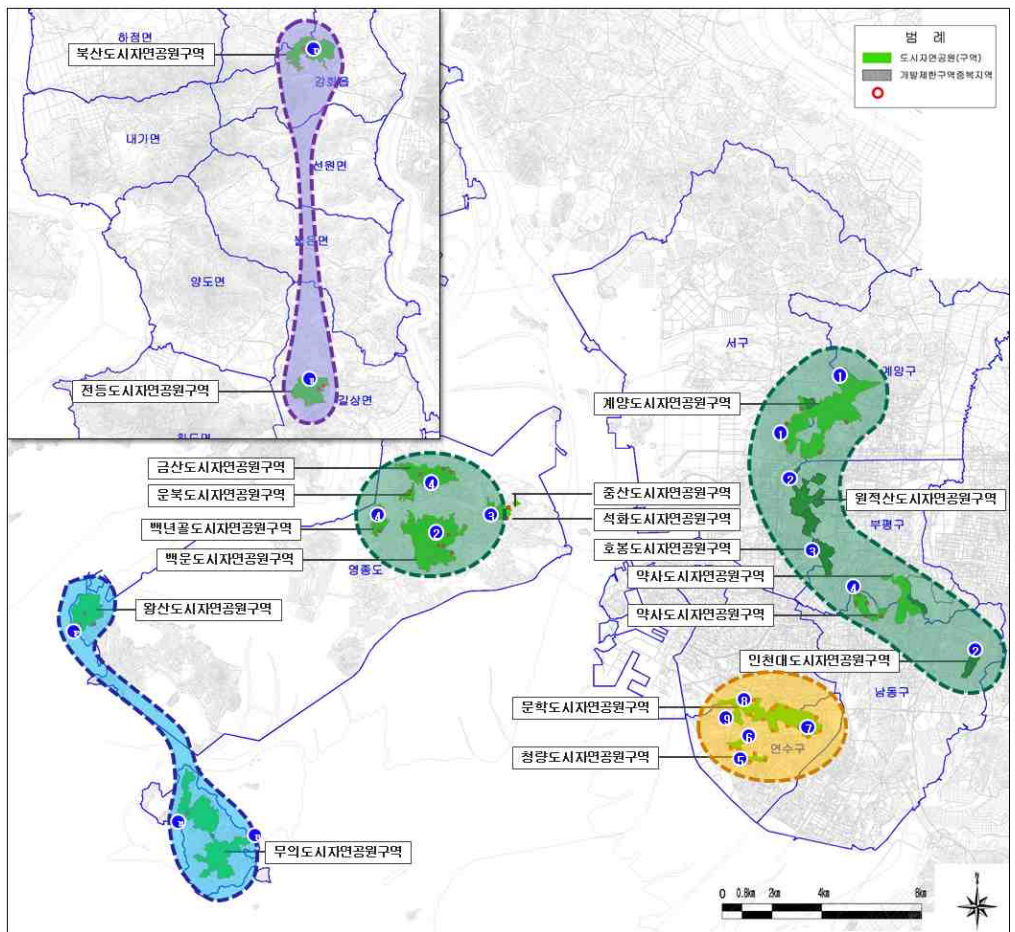
[전통문화 탐방]



[역사문화 탐방]



[해양생태 탐방]



[그림-488] 도시자연공원구역 특화계획도

6. 도시자연공원구역 총괄표

- 도시자연공원구역 18개소 26,465천㎡ 중 양호하지 못한 수림 1,268천㎡ 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역 3,081천㎡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설정 기준 및 변경(해제)기준에 따라 정비를 계획하여 총 3개소 4,347천㎡ 감소한 15개소 22,122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계획함.

[표-311] 도시자연공원구역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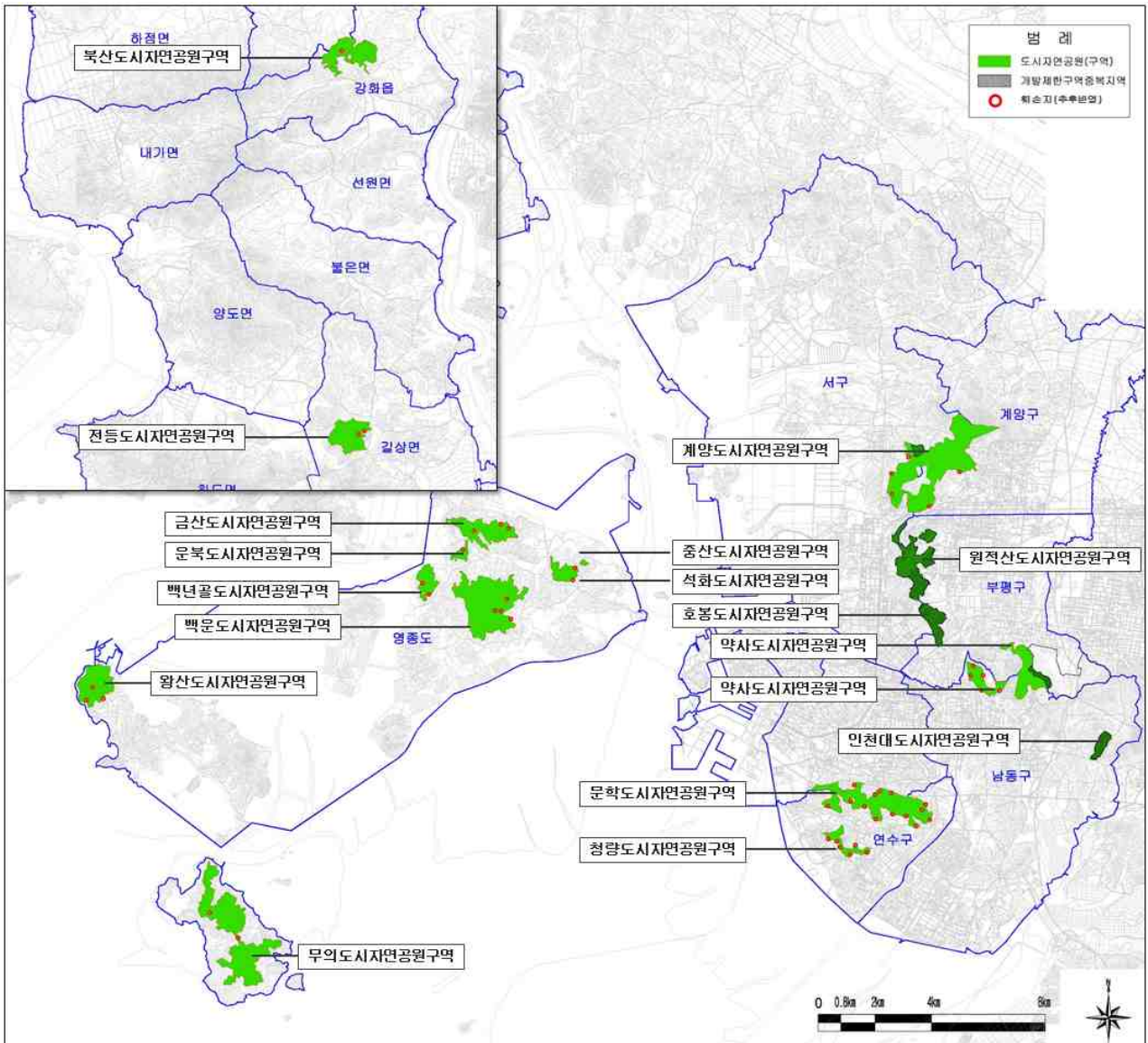
구분	명칭	기정면적 (㎡)	증감면적 (㎡)		변경면적(㎡)	비고
			양호하지 못한 수림	개발제한구역 중복면적		
도시 자연 공원 구역	1 무의도시자연공원구역	3,667,164.0	8,892.0	-	3,658,272.0	
	2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	1,327,838.0	60,159.0	-	1,267,679.0	
	3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	4,803,801.0	291,519.0	137,859.3	4,374,422.7	
	4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1,776,818.4	-	1,776,818.4	-	폐지
	5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	656,427.8	-	656,427.8	-	폐지
	6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1,823,568.8	190,159.0	188,411.3	1,444,998.5	
	7 경찰종합학교 도시자연공원구역	49,346.0	-	-	49,346.0	
	8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321,958.4	-	321,958.4	-	폐지
	9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2,837,474.0	346,589.0	-	2,490,885.0	
	10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471,699.2	64,099.0	-	412,844.2	
	11 백년골도시자연공원구역	587,347.0	13,780.0	-	576,567.0	
	12 운북도시자연공원구역	207,578.0	9,897.0	-	197,681.0	
	13 석화도시자연공원구역	506,778.0	3,593.0	-	503,185.0	
	14 중산도시자연공원구역	40,921.0	-	-	40,921.0	
	15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3,484,848.0	35,177.0	-	3,449,671.0	
	16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1,326,638.0	37,293.0	-	1,289,345.0	
	17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1,376,399.0	158,274.0	-	1,218,125.0	
	18 전등도시자연공원구역	1,203,203.0	49,137.0	-	1,154,066.0	
합계		26,469,807.6	1,268,568.0	3,081,475.2	22,122,764.4	

7.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18개소 26,469천㎡에 대하여 양호하지 못한 수림, 개발제한구역 중 복면적을 정비 계획하여 3개소 4,344천㎡가 감소된 15개소 22,128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계획함

[표-312]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표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도시자연공원구역	18	26,469,807.6	15	22,122,764.4	감)3	감)4,347,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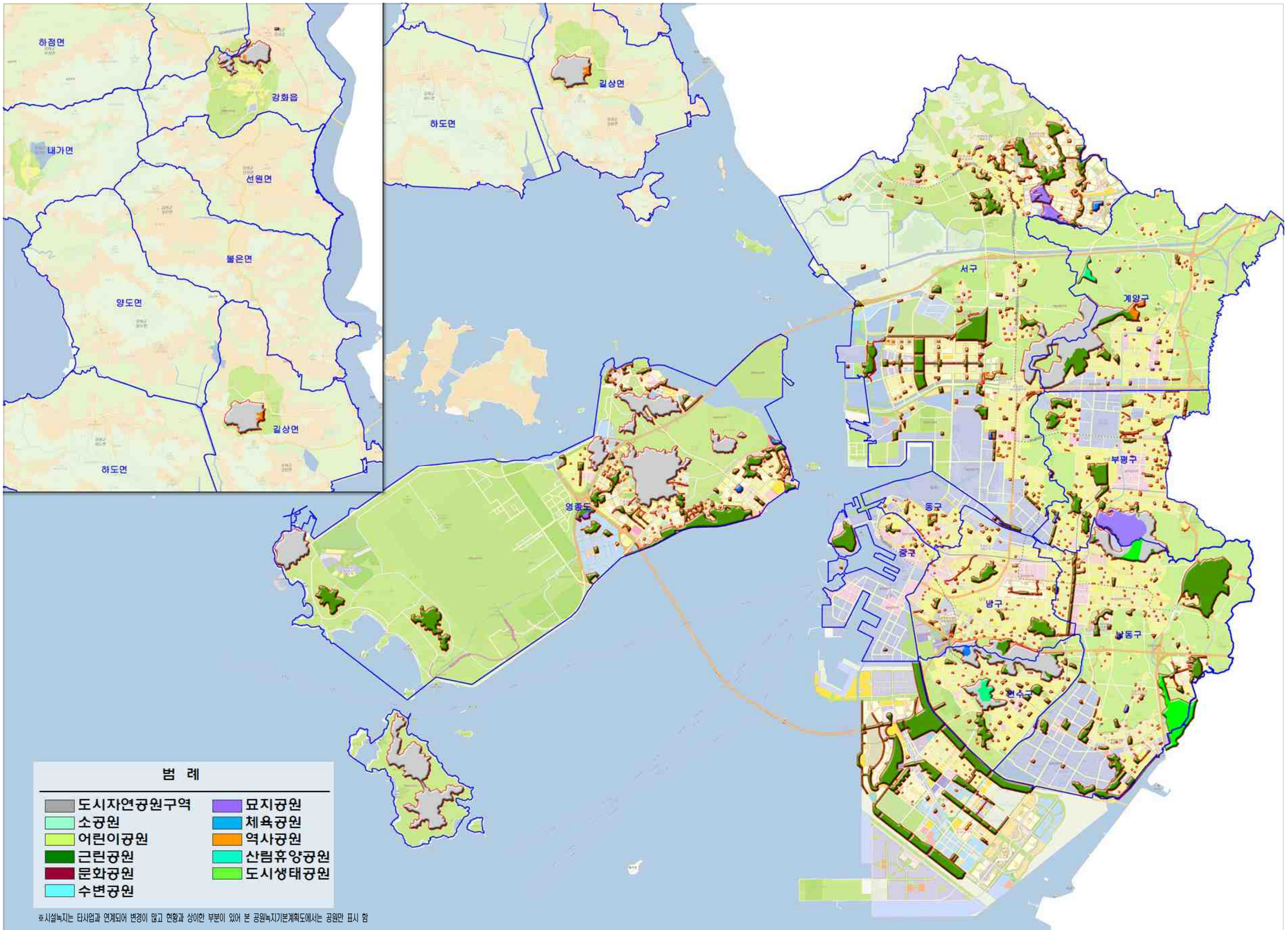
[그림-489]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도

6] 공원·녹지 종합 계획

○ 앞서 계획한 공원과 녹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313] 공원녹지 종합계획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도시자연공원구역	18	26,469,807.6	15	22,122,764.4	15	22,122,764.4		
공원녹지소계	2,374	54,579,340	2,307	49,822,568	2,526	57,844,636		
도시공원	소 계	1,119	44,504,191	1,081	41,272,504	1,317	49,345,040	
	도시자연 공원	1	605,733	0	0	0	0	
	생활권 주제	소공원	156	275,407	146	268,888	341	460,364
		어린이 공원	581	1,837,614	576	1,816,792	576	1,816,792
		근린 공원	329	35,919,763	307	33,321,150	315	33,450,150
		문화 공원	10	670,054	10	670,054	10	670,054
		수변 공원	16	1,187,248	16	1,187,248	16	1,187,248
		묘지 공원	3	2,381,884	3	2,381,884	3	2,381,884
		체육 공원	15	477,519	15	477,519	22	553,519
		역사 공원	5	218,072	5	218,072	6	467,132
		산림 휴양	1	338,798	1	338,798	20	6,253,798
도시 생태	2	592,100	2	592,100	8	2,104,100		
시설 녹지	소 계	1,255	10,075,149	1,226	8,550,064	1,209	8,499,596	
	완충녹지	883	7,697,807	855	6,192,678	852	6,192,678	
	경관녹지	297	1,895,733	296	1,875,776	295	1,875,776	
	연결녹지	75	481,409	75	481,610	62	431,142	



범 례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근린공원	산림휴양공원
문화공원	도시생태공원
수변공원	

*시설녹지는 타사업과 연계되어 변경이 많고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본 공원녹지기본계획도에서는 공원만 표시 함

[그림-490] 2030년 공원배치계획도

IV. 군·구별 공원녹지기본계획

1 기본방향

- 군·구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하여 공원·녹지 확충계획 및 미 조성 공원의 단계별조성계획 수립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공원녹지 계획
- 일상생활 속에 친숙한 공원이용 및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관리 및 확충체계 마련
- S자 녹지축과의 연계 및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체계 확립
- 생활 속에 파고드는 친숙한 공원이용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활용 가능한 소공원 지정

2 군·구별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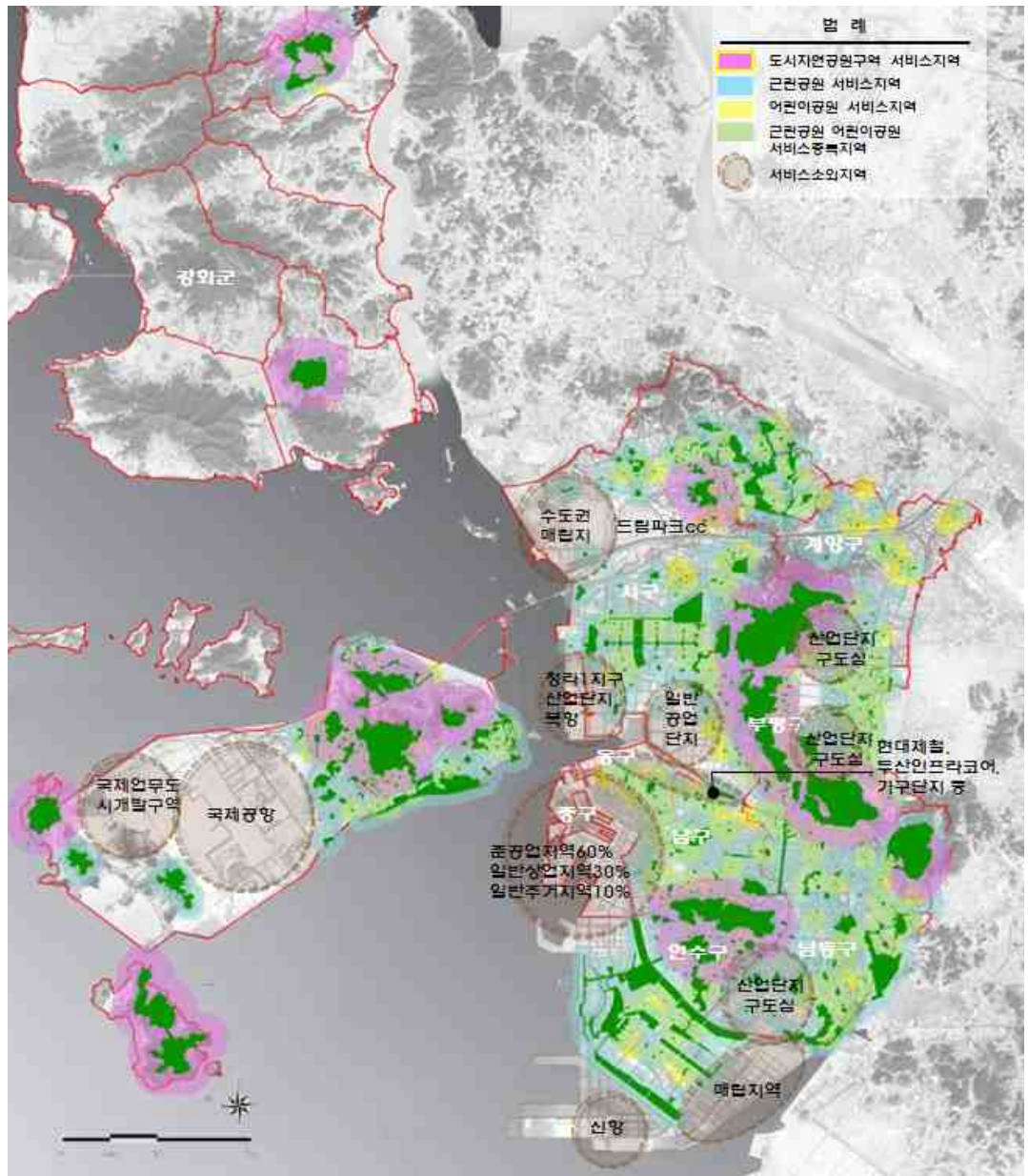
- 자치구별로 해안경관과 자연자원의 보전 구도심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질적, 양적인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부족한 녹지 확충 및 시민의식 개선
- 녹지축의 연계 및 보전, 쉼터의 공원화 등 다양한 녹화 모색, S자 녹지축 보전 및 해안경관축의 확립
- 거점공원 육성 및 연계체계 확립과 녹지활용계약을 이용한 녹지확충 등을 반영하여 계획



[그림-491] 군·구별 기본구상

③ 자치구별 균형 있는 녹지확충 방안

- 위에서 제시한 공원확충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서비스가 소외되는 자치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구도심, 수도권 매립지, 산업단지, 복합 등이 분포
- “틈마다 초록” 개념도입으로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공원화 계획
- 1인당 동일한 공원녹지율은 확보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조성
- 단계별 공원조성 및 민간기업,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확충 유도 등



[그림-492] 자치구별 공원서비스공간 분석에 의한 소외지역

[표-314] 자치구별 균형 있는 녹지 확충 전략

구분(녹지확충 필요 지역)		주요전략	
특 마 다 초 록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60% • 일반상업지역30% • 일반주거지역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옥상녹화, 외부 주차장 부지 축소 후 녹지로 조성 ◆ 쉼터의 소공원화 ◆ 중점녹화지구설정 및 공장 이전지 공원화 ◆ 민간기업, 기업공원 확충 ◆ 자투리 공간 발생 시 녹화 추진(골목길녹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업무도시개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 지역내 분포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조성으로 녹지 및 가로녹지 등의 조성됨 ◆ 서비스분석에서 제외(주변이용 불가)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공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제철 단지 • 두산인프라코어단지 • 가구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기업공원 확충 ◆ 산업, 공업단지 조성 시 시설녹지 조성 ◆ 공공건물(옥상, 담장)녹화 추진 ◆ 자투리 공간 발생 시 녹화 추진(골목길녹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등) ◆ 중점녹화지구설정 및 공장 이전지 공원화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이 고르게 분포 ◆ 자투리 공간 발생 시 녹화 추진(골목길녹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등) ◆ 수인선 폐철도 녹화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 중인 부지 • 인천신항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이 고르게 분포하고 2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분포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확충 ◆ 공공건물 옥상녹화 ◆ 학교숲 공원화 조성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공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동인더스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농경지 분포 ◆ 공원이 고르게 분포 ◆ 자투리 공간 발생 시 녹화 추진(골목길녹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등) ◆ 중점녹화지구설정 및 공장이전지 공원화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구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출산업제4차 • 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원추진 및 대형공원 조성완료 ◆ 자투리 공간 발생 시 녹화 추진(골목길녹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등) ◆ 중점녹화지구설정 및 공장이전지 공원화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구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출산업제4차 • 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농경지 분포 ◆ 자투리 공간 발생 시 녹화 추진(골목길녹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 등) ◆ 중점녹화지구설정 및 공장이전지 공원화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매립지 • 청라1지구산업단지 • 일반공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분포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확충 ◆ 공공건물 옥상녹화, 외부 주차장 부지 축소 후 녹지로 조성 ◆ 학교숲 공원화 조성 ◆ 중점녹화지구설정 및 공장이전지 공원화
강화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등 자연자원 풍부 ◆ 자투리땅 확보 시 쉼터조성 등 녹화 추진 	

4. 군·구별 공원녹지 기본계획

1. 인천광역시 목표년도(2030년) 공원녹지 군·구별 계획

[표-315] 공원녹지 군·구별 확충 방안

구분	인구 (천명)	공원녹지지정		1인당 공원녹지지정 면적(㎡/인)	공원녹지조성		1인당 공원녹지조성 면적(㎡/인)	조성율 (%)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인천광역시	2015	2,980	2,374	54,579	18.32	1343	22,175	7.44	40.63
	2020	3,100	2,307	49,822	16.07	1534	29,918	9.65	60.05
	2030	3,500	2,526	57,845	16.53	2333	51,008	14.57	88.18
경제청	2015	243	471	16,842	69.31	186	4,899	20.16	29.09
	2020	252	467	16,842	66.63	346	10,147	40.14	60.28
	2030	285	465	16,842	59.01	465	16,842	59.01	100.00
중구	2015	48	181	5,151	107.33	161	2,438	50.81	47.34
	2020	49	175	3,992	79.95	161	2,436	48.79	61.03
	2030	56	189	4,624	82.02	187	4,024	71.38	87.02
동구	2015	90	54	456	5.08	19	372	4.14	81.54
	2020	93	54	456	4.88	19	372	3.98	81.54
	2030	105	62	1,067	10.09	53	451	4.27	42.32
남구	2015	430	191	2,432	5.66	56	657	1.53	27.04
	2020	447	187	2,230	4.99	56	666	1.49	29.87
	2030	505	220	2,858	5.66	185	1,981	3.92	69.32
연수구	2015	221	136	2,868	12.98	92	1,266	5.73	44.16
	2020	229	133	2,758	12.00	95	1,673	7.28	60.65
	2030	259	161	3,585	13.81	159	2,985	11.50	83.27
남동구	2015	520	397	9,070	17.44	343	7,099	13.65	78.27
	2020	540	382	8,575	15.85	355	7,533	13.93	87.85
	2030	610	408	9,968	16.32	398	9,327	15.27	93.57
부평구	2015	570	258	4,730	8.30	171	3,015	5.29	63.74
	2020	592	253	4,246	7.16	177	3,301	5.57	77.75
	2030	669	280	5,090	7.60	272	4,466	6.67	87.75
계양구	2015	367	125	1,579	4.30	79	645	1.79	40.87
	2020	381	125	1,579	4.14	82	770	2.02	48.80
	2030	431	153	2,769	6.43	147	2,156	5.00	77.87
서구	2015	428	532	10,515	24.57	225	1,744	4.08	16.59
	2020	445	512	8,925	20.05	232	2,982	6.70	33.41
	2030	502	540	10,191	20.28	421	8,525	16.96	83.65
강화군	2015	63	32	930	14.77	14	34	0.54	3.68
	2020	65	22	214	3.27	14	34	0.52	15.98
	2030	73	51	846	11.43	49	246	3.32	29.08

2.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해돋이공원, 샌트럴공원, 청라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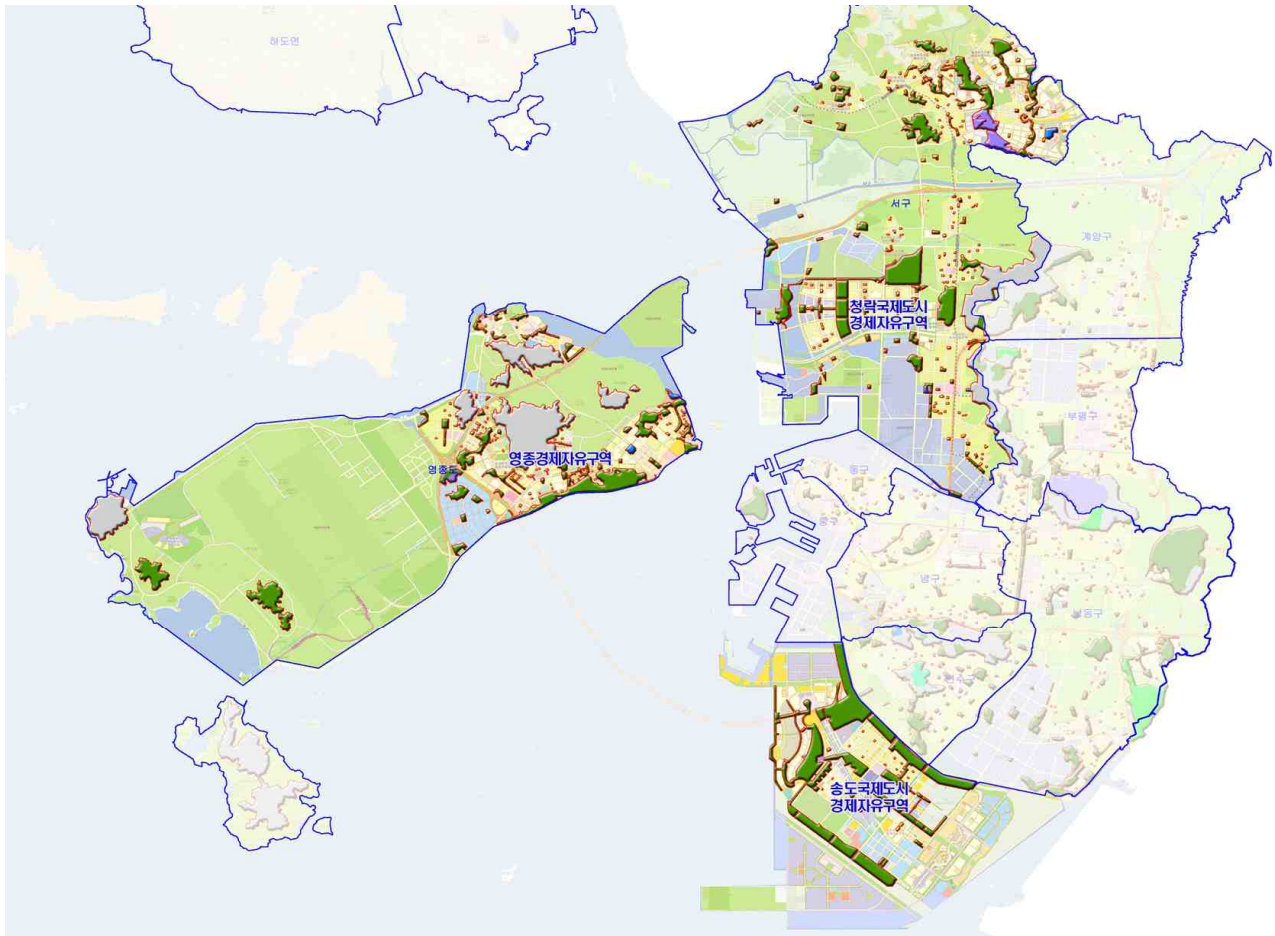
[표-316] 경제자유구역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119	13,244	-	-	21	85	18	51	71	11,376	4	517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3	1,053	1	100	1	59	-	-	-	-	-	-

[표-317] 경제자유구역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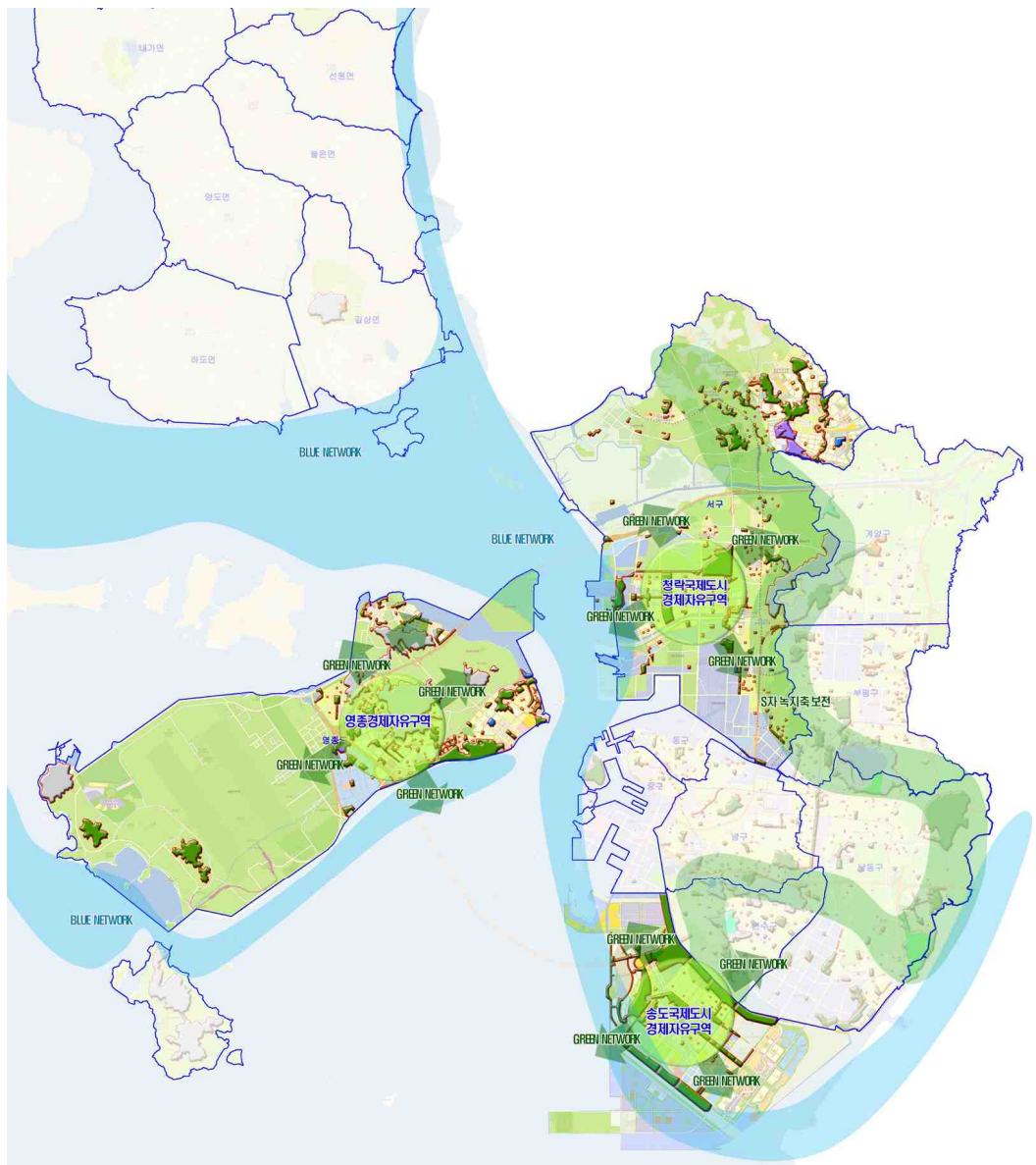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352	3,598	236	2,283	73	1,025	43	289



[그림-493]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인천의 선진녹색 도시조성"
- 거점 공원 : 해돋이공원, 샌트럴공원, 청라호수공원
- 영종경제자유구역은 영종도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삼면이 바다 (갯벌)로 이루어져 그린·블루 네트워크의 종합적인 녹의체계
-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은 육지지역의 S자 녹지축, 서해의 블루 네트워크와 연계한 녹의 확장 인근 산업단지의 부족한 녹을 충족
-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은 첨단도시와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으로 체계적이고 선진 녹의 도시이미지를 통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



[그림-494]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각 사업지구마다의 목표연도까지 체계적인 공원 녹지 조성
- 바다(갯벌)와의 연계한 녹의 네트워크 구축
- 각 사업지구마다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한 인천의 부족한 녹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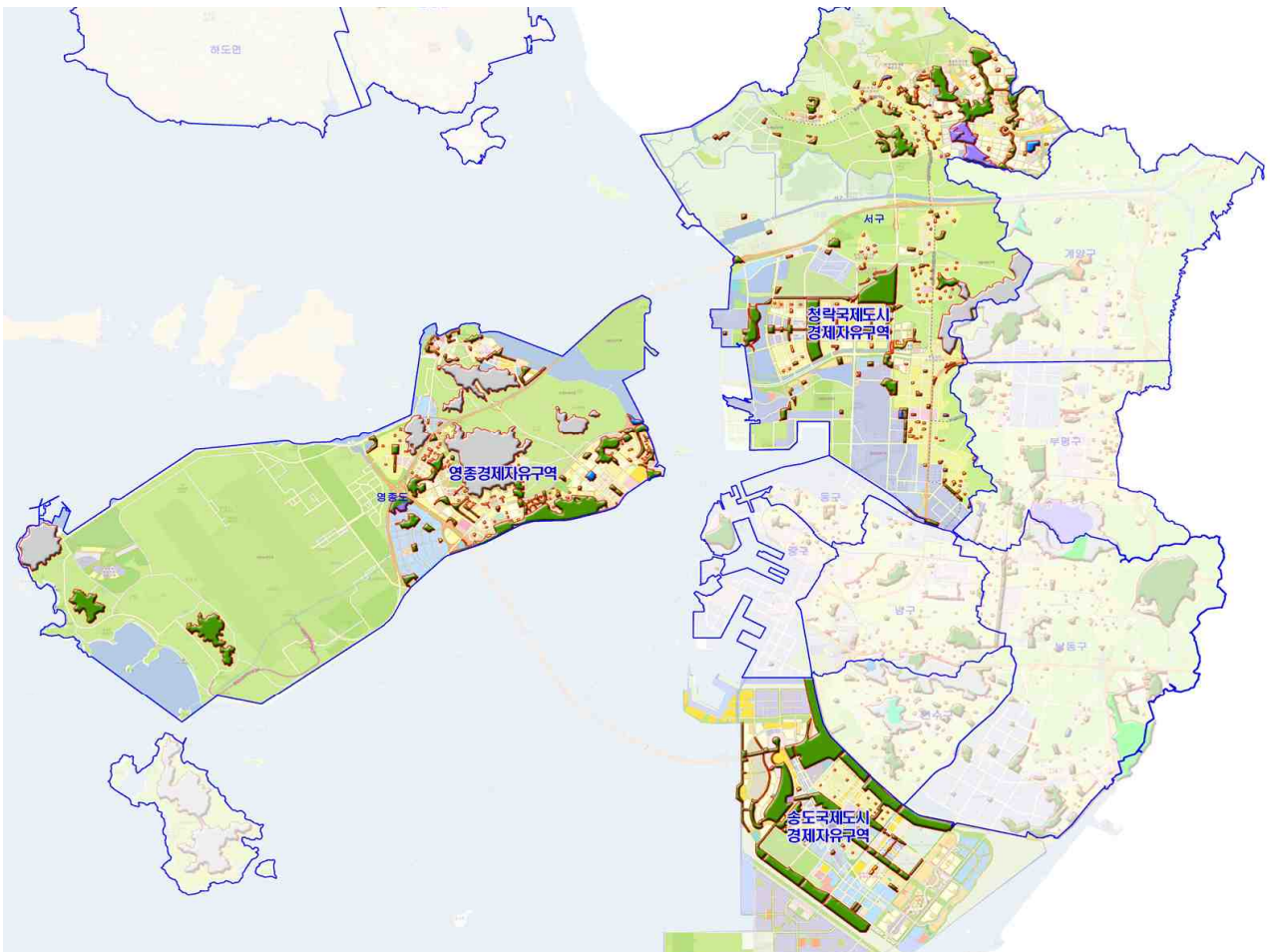
[표-318] 경제자유구역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119	13,244	-	-	21	85	18	51	71	11,376	4	517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3	1,053	1	100	1	59	-	-	-	-	-	-

[표-319] 경제자유구역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안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346	3,598	232	2,283	73	1,025	41	289



[그림-495]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기본계획

3. 중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월미공원, 소월미공원, 자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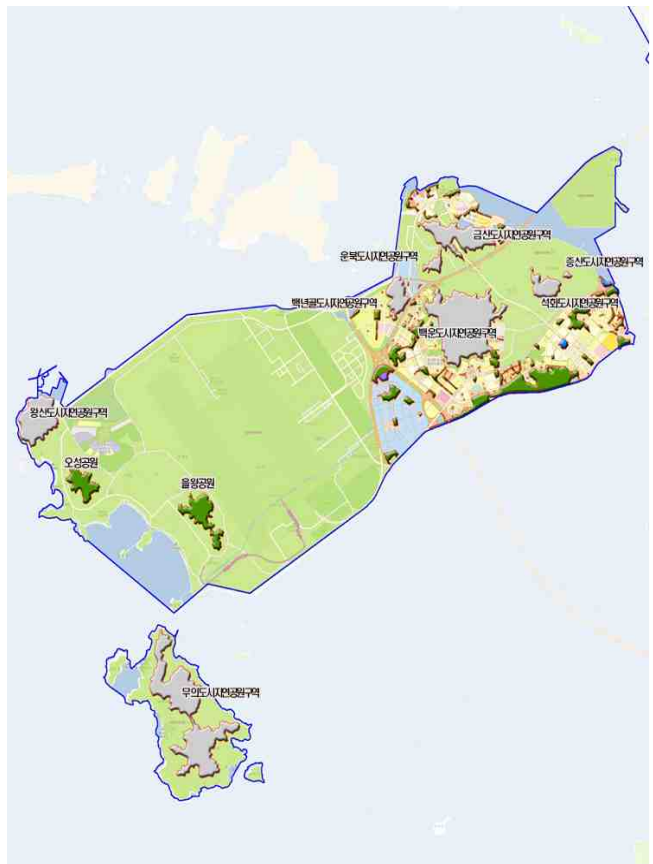
[표-320] 중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81	2,965	-	-	17	32	34	115	29	2,758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	-	-	-	1	61	-	-	-	-	-	-

[표-321] 중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100	2,187	73	1,866	17	228	10	93



[그림-496] 중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서해로 다가가는 공원녹지"
- 거점 공원 : 월미공원
- 서해로 뻗어가는 동서 녹지축, 서해에 인접한 해안 경관축 조성
- 영종도를 제외한 육지지역의 구도심지 가용지부족 작은 자투리 공간마다 녹화
- 해안 경관축 도심 경관도로 조성
- 공원녹지 소외지역인 연안부두 일대는 중점녹화지구 설정 및 도시녹화사업 집중



[그림-497] 중구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해안경관도로 계획
- 도심 골목길 녹화 옥상녹화 등 자투리 공간의 다양한 녹화계획 수립
- 영종도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확충
- 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확충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과거수인선 상부의 상징적은 녹화계획
- 연안부두의 중점녹화지구 지정을 통한 가로변 수벽조성, 벽면녹화 등의 도시녹화계획

[표-322] 중구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97	2,997	-	-	32	44	34	115	30	2,777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	-	-	-	1	61	-	-	-	-	-	-

[표-323] 중구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구	90	1,027	64	706	16	228	10	93



[그림-498] 중구 공원녹지기본계획

4. 동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화도진공원, 송현공원

[표-324] 동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구	34	263	-	-	6	5	24	60	4	198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구	-	-	-	-	-	-	-	-	-	-	-	-

[표-325] 동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구	20	194	10	177	8	10	2	7



[그림-499] 동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해안경관축체계 및 해양도시 이미지 구축"
- 거점공원 : 송현공원
- 중구, 서구와 더불어 서해에 인접한 해안경관축 완성을 위한 기반다짐
- 동구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구도심의 도시환경개선
- 해양도시이미지에 걸 맞는 상징성 있는 항구조성 및 녹화사업 추진
- 동구지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가로 녹화 및 도시녹화사업을 적극 유치함



[그림-500] 동구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송현배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쉼터 소공원화 7개소
- 화수화평주택재개발, 송림초교주변주거개선지구, 송림1·2동주택재개발, 송림3주택재개발, 대현하교주거환경개선지구, 샛골주택재개발, 금속주택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의한 공원 및 녹지의 확충
- 산업단지의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도시녹화계획
- 학교밀집지역 학교 숲 조성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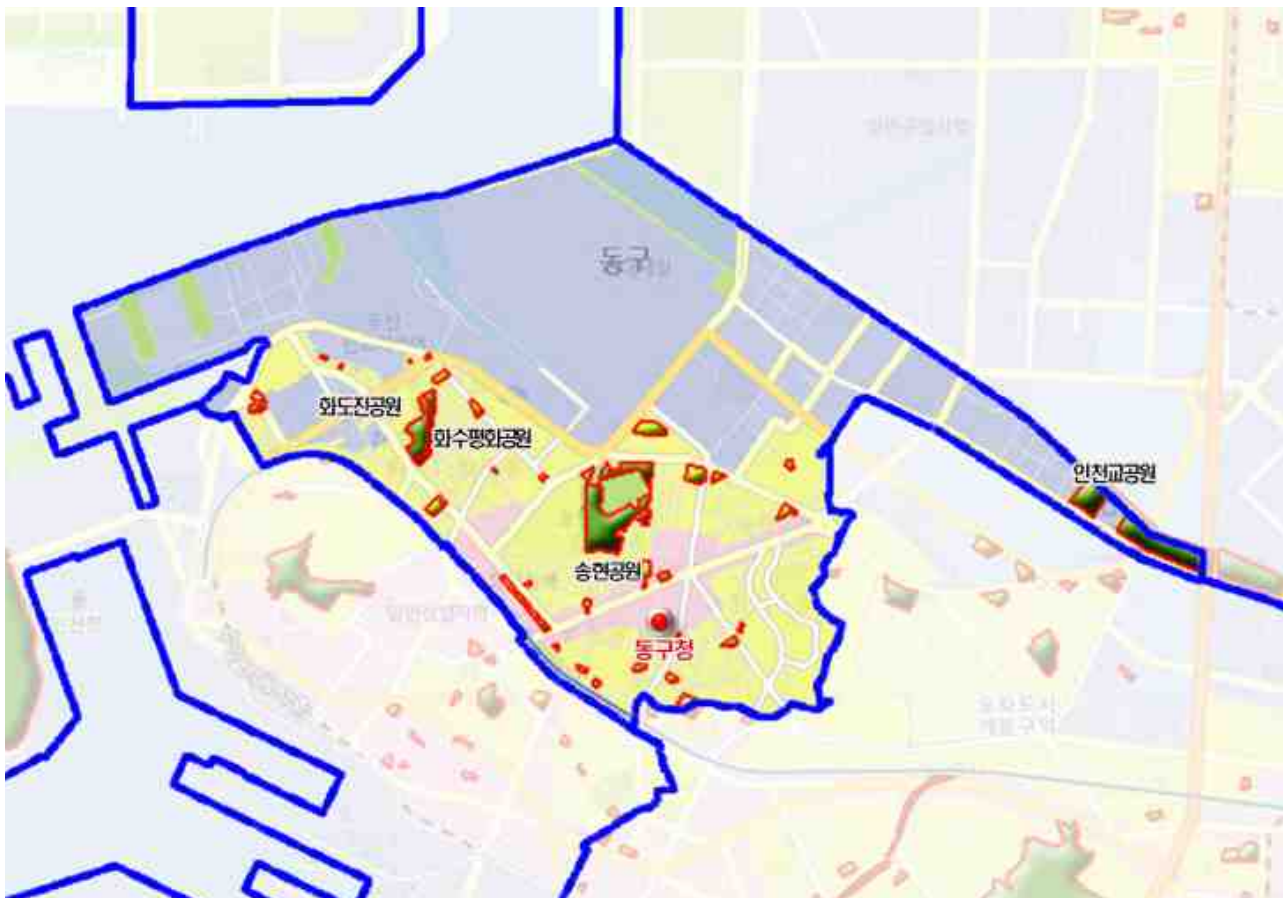
[표-326] 동구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구	42	280	-	-	13	12	24	60	4	198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구	-	-	-	-	1	10	-	-	-	-	-	-

[표-327] 동구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구	18	187	10	177	8	10	-	-



[그림-501] 동구 공원녹지기본계획

5. 남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수봉공원, 석바위공원, 관교공원, 햇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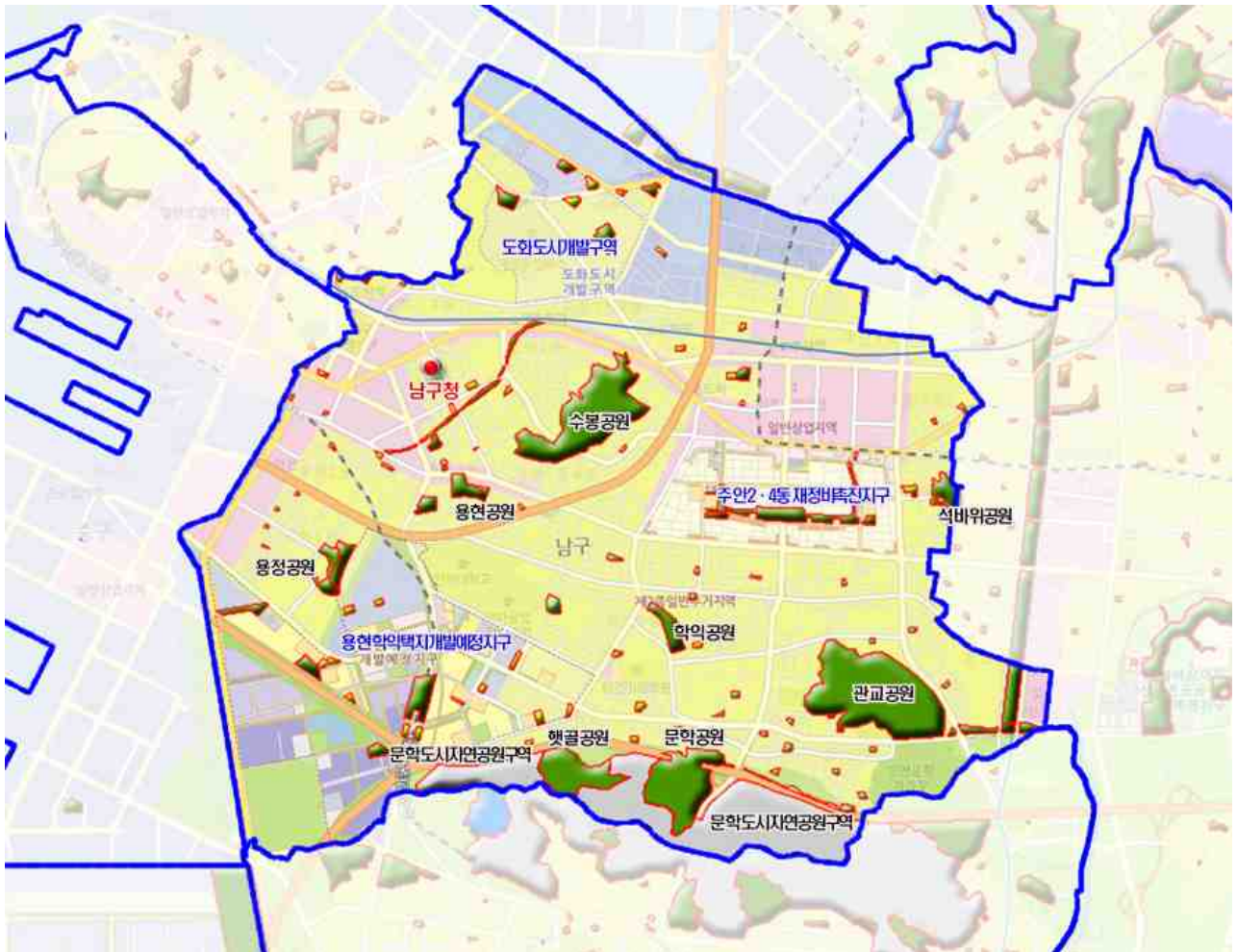
[표-328] 남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구	110	1,810	-	-	25	48	69	209	15	1,545	1	7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구	-	-	-	-	-	-	-	-	-	-	-	-

[표-329] 남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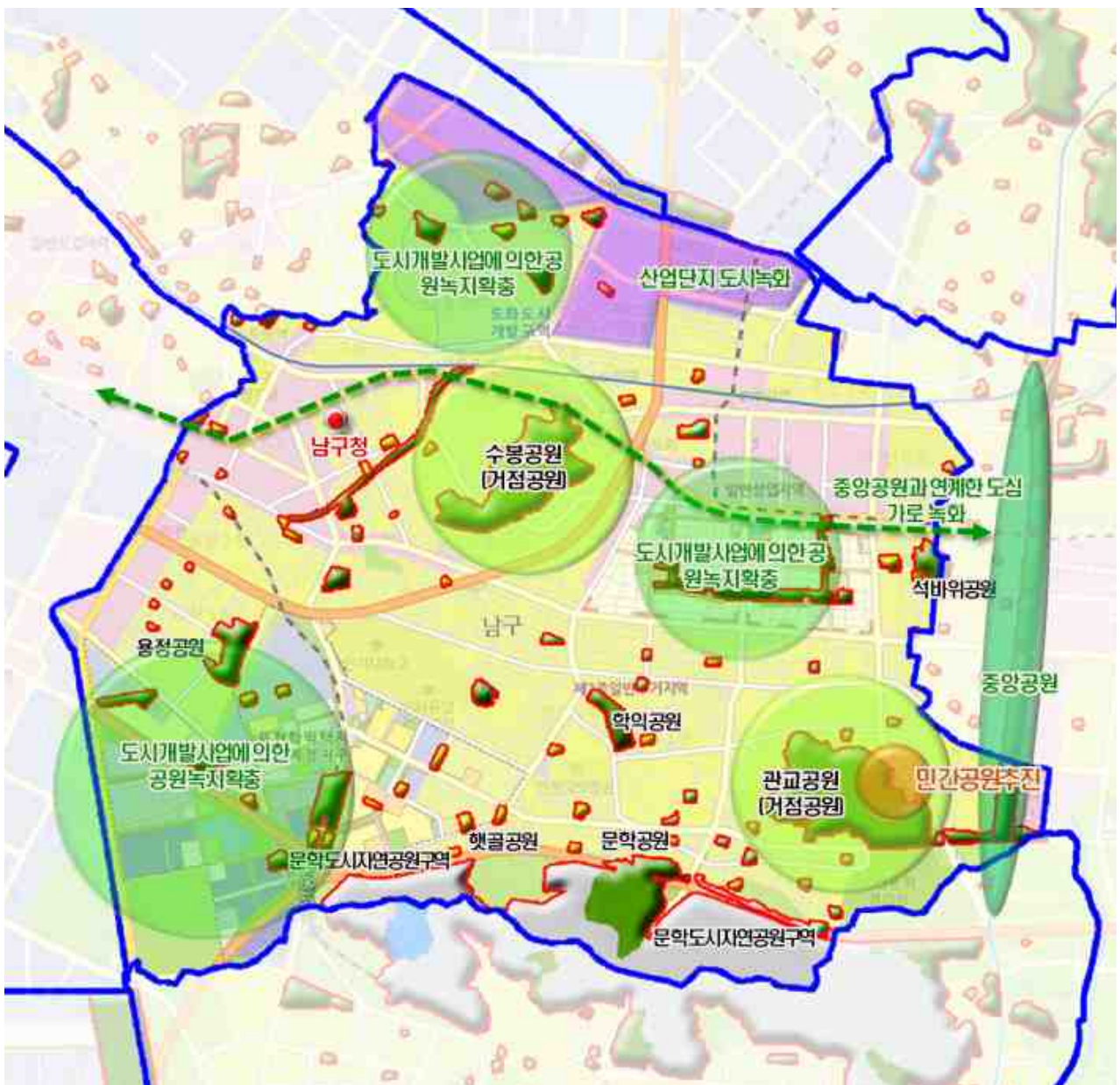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구	81	623	59	574	13	17	9	32



[그림-502] 남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녹지축 구축으로 도심 녹색활력 증강"
- 거점공원 : 수봉공원, 관교공원
- 남동구의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도심가로, 녹화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 동서녹지축 부축을 조성하도록 인주로에 녹도를 계획하여 녹지량 증대 및 바람길 유도
-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확장되는 보전과 새로운 녹의 조성



[그림-503] 남구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햇길공원, 재님이공원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대상
- 관교공원 민간공원 추진(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해제)
- 쉼터, 소공원화 35개소 계획
- 도화도시개발구역, 주안2·4동재정비촉진지구, 용현학익택지개발예정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
-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림경관 보전
- 학익배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공원)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과거 수인선의 상징적인 녹화계획

[표-330] 남구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구	144	1,703	-	-	60	79	68	197	14	1,409	1	7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구	-	-	-	-	1	10	-	-	-	-	-	-

[표-331] 남구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구	74	556	57	519	13	17	4	20



[그림-504] 남구 공원녹지기본계획

6. 연수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청량공원, 옥련공원, 송도2공원, 장미공원, 동춘공원, 무주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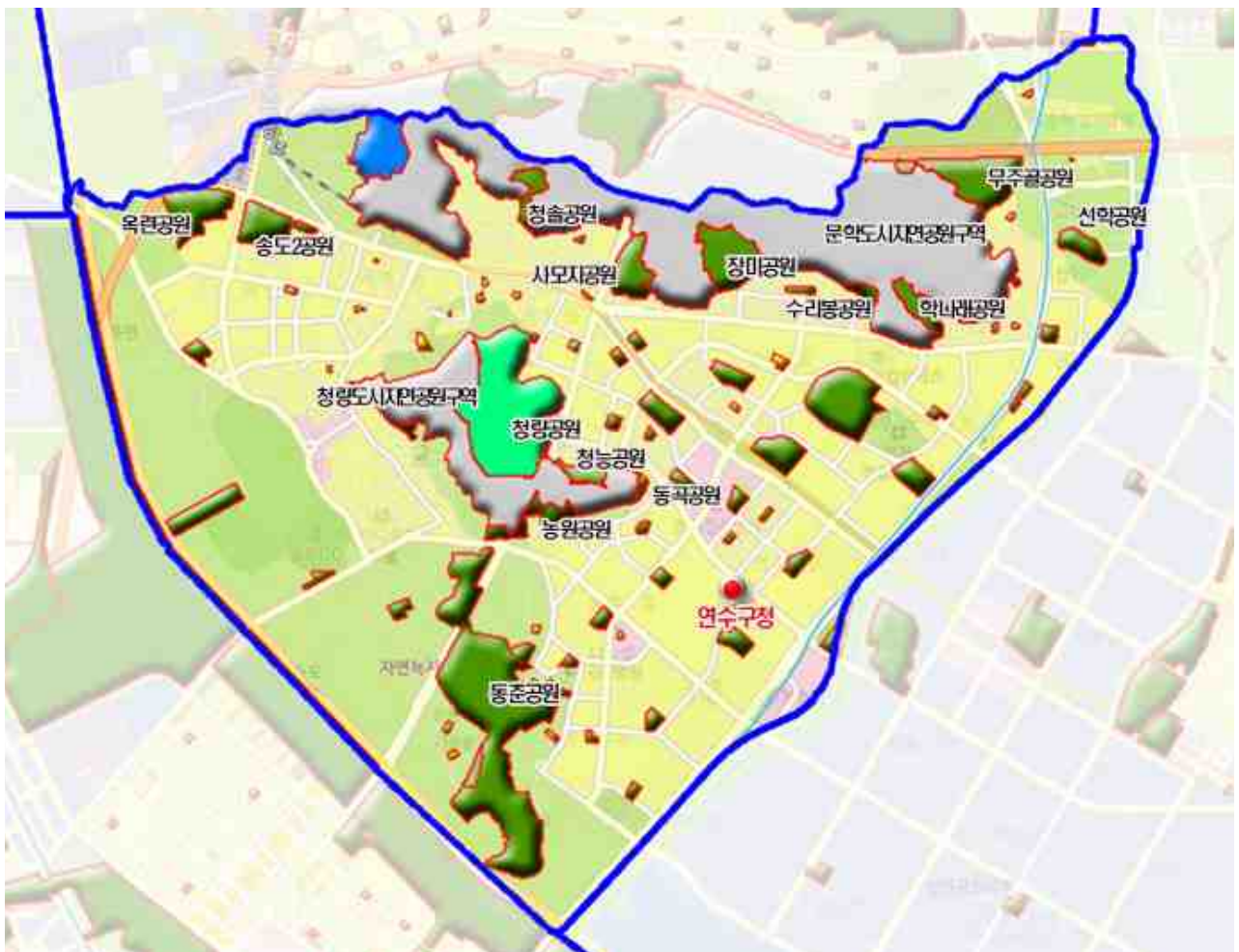
[표-332] 연수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수구	102	2,495	-	-	3	2	59	247	34	1,725	3	64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수구	-	-	-	-	2	117	-	-	1	339	-	-

[표-333] 연수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수구	34	373	27	347	7	26	-	-



[그림-505] 연수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주제공원 조성 및 특화된 녹의 네트워크"
- 거점공원 : 장미공원, 청량공원, 동춘공원 등
- 문학,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의 S자 녹지축의 보전 및 도시공원 확충
- 송도지구와 인접, 하천의 블루네트워크를 통한 녹의 연결
- 문학,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 공원의 확충 및 개성 있는 녹의 조성



[그림-506] 연수구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옥련공원, 수리봉공원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 대상
- 무주골공원, 동춘공원, 송도2공원 민간공원추진(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해제)
- 쉼터, 소공원화 25개소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공원확충 → 선학동 근린공원
- 문학,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녹의 보전, 산림경관 보전
- 동춘3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에 의한 공원녹지 확충

[표-334] 연수구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수구	126	2,629	-	-	28	37	59	247	32	1,632	3	64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수구	-	-	-	-	2	117	-	-	1	339	1	193

[표-335] 연수구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수구	33	357	27	347	6	10	-	-



[그림-507] 연수구 공원녹지기본계획

7. 남동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도릉농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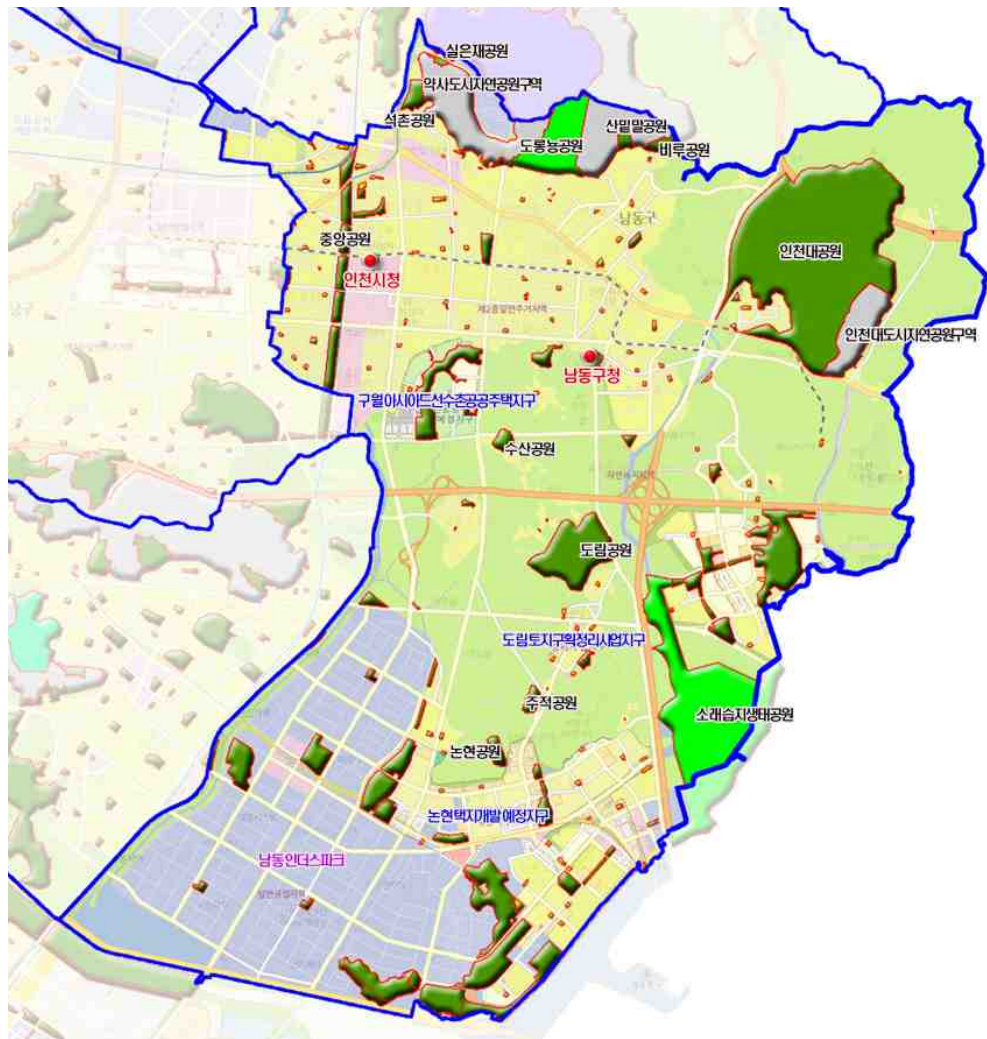
[표-336] 남동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동구	182	8,268	-	-	20	30	117	305	38	7,455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동구	4	54	-	-	1	36	1	4	-	-	1	385

[표-337] 남동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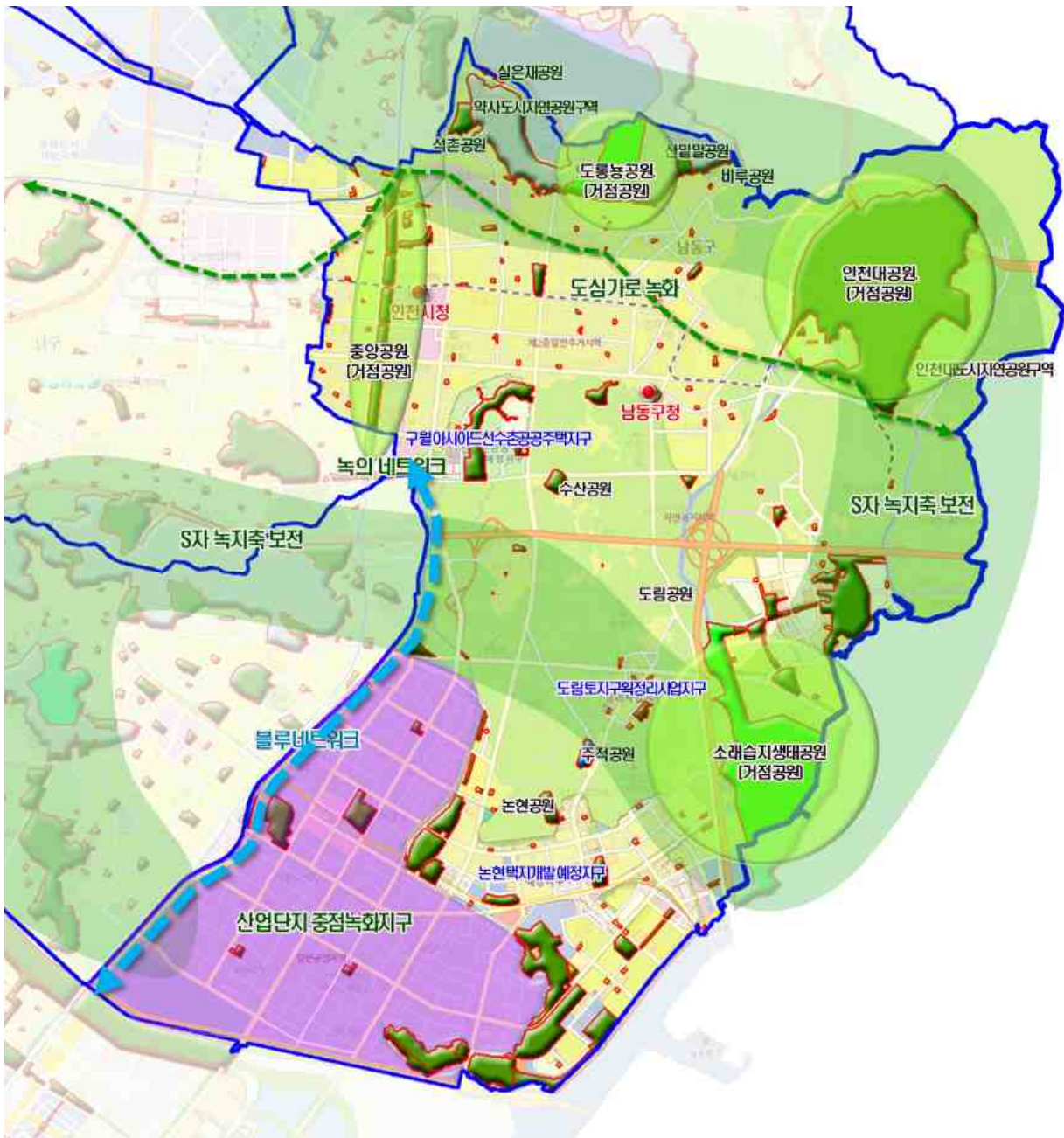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동구	215	803	157	484	55	312	3	7



[그림-508] 남동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거점공원 네트워크 및 녹의보전"
- 거점공원 : 중앙공원,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도릉농공원
- S자 녹지축 내의 약사·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녹지축 보전 및 녹의 확장
-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의 녹의 확충
- 대규모 산업단지 녹의 확보



[그림-509] 남동구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
- 도림3지구, 도림공원, 비루공원, 실은재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 대상
- 남동공단유수지, 남동공단제2유수지, 만월산 배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쉼터, 소공원화 20개소 계획
-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공공주택지구,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논현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확충
- 남동인터스파크(산업단지)의 중점녹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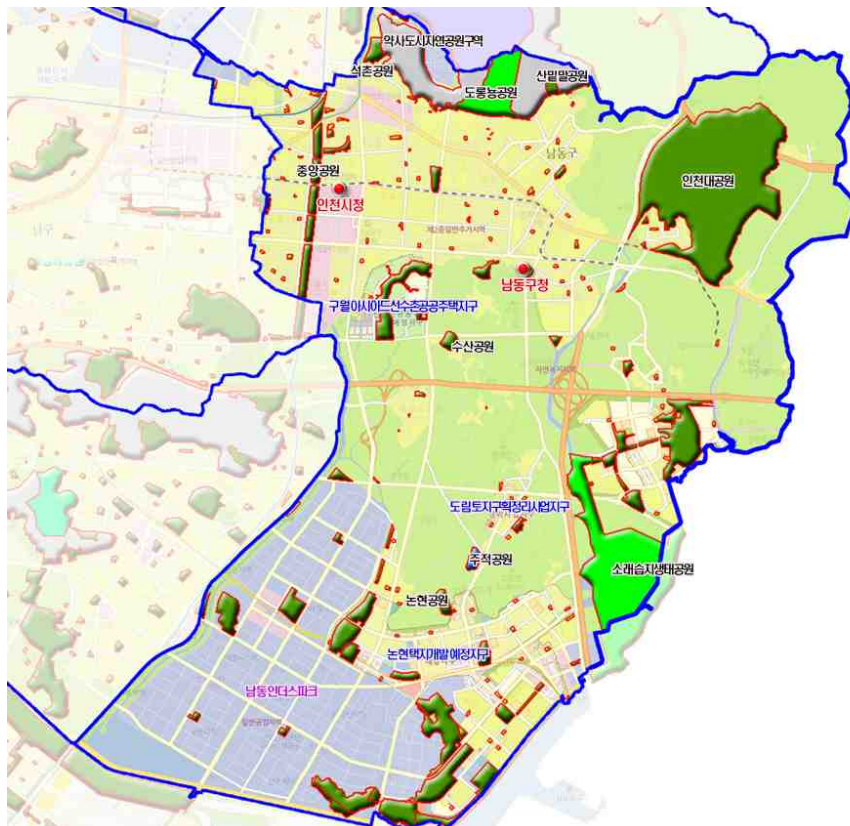
[표-338] 남동구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동구	195	8,573	-	-	33	42	116	301	36	6,993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동구	4	54	-	-	2	52	1	4,264	-	-	3	1,127

[표-339] 남동구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남동구	211	795	153	476	55	312	3	7



[그림-510] 남동구 공원녹지기본계획

8. 부평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신촌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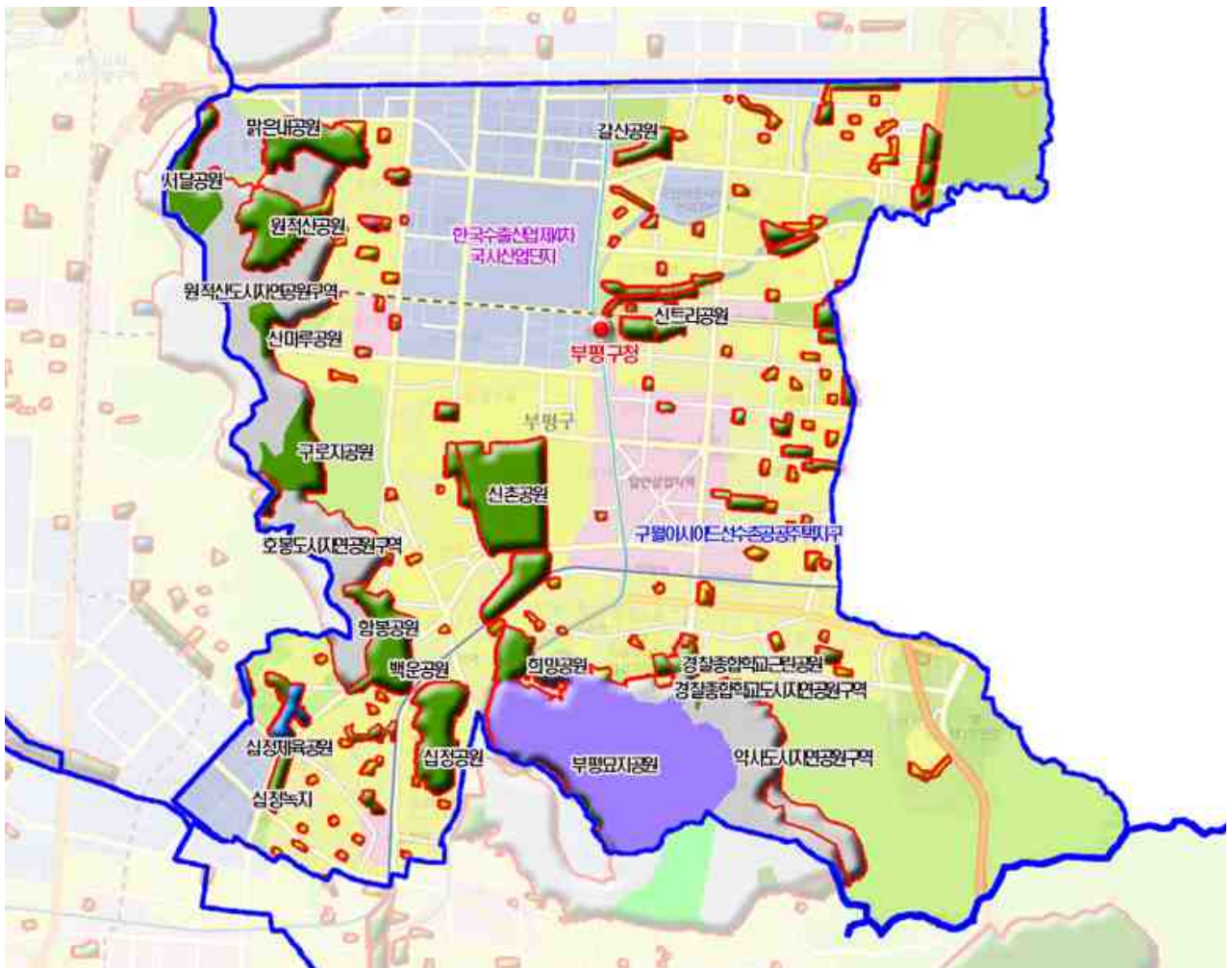
[표-340] 부평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부평구	152	4,453	-	-	24	38	87	250	37	2,243	1	9

구분	수변공원		모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부평구	-	-	1	1,655	1	50	-	-	-	-	1	207

[표-341] 부평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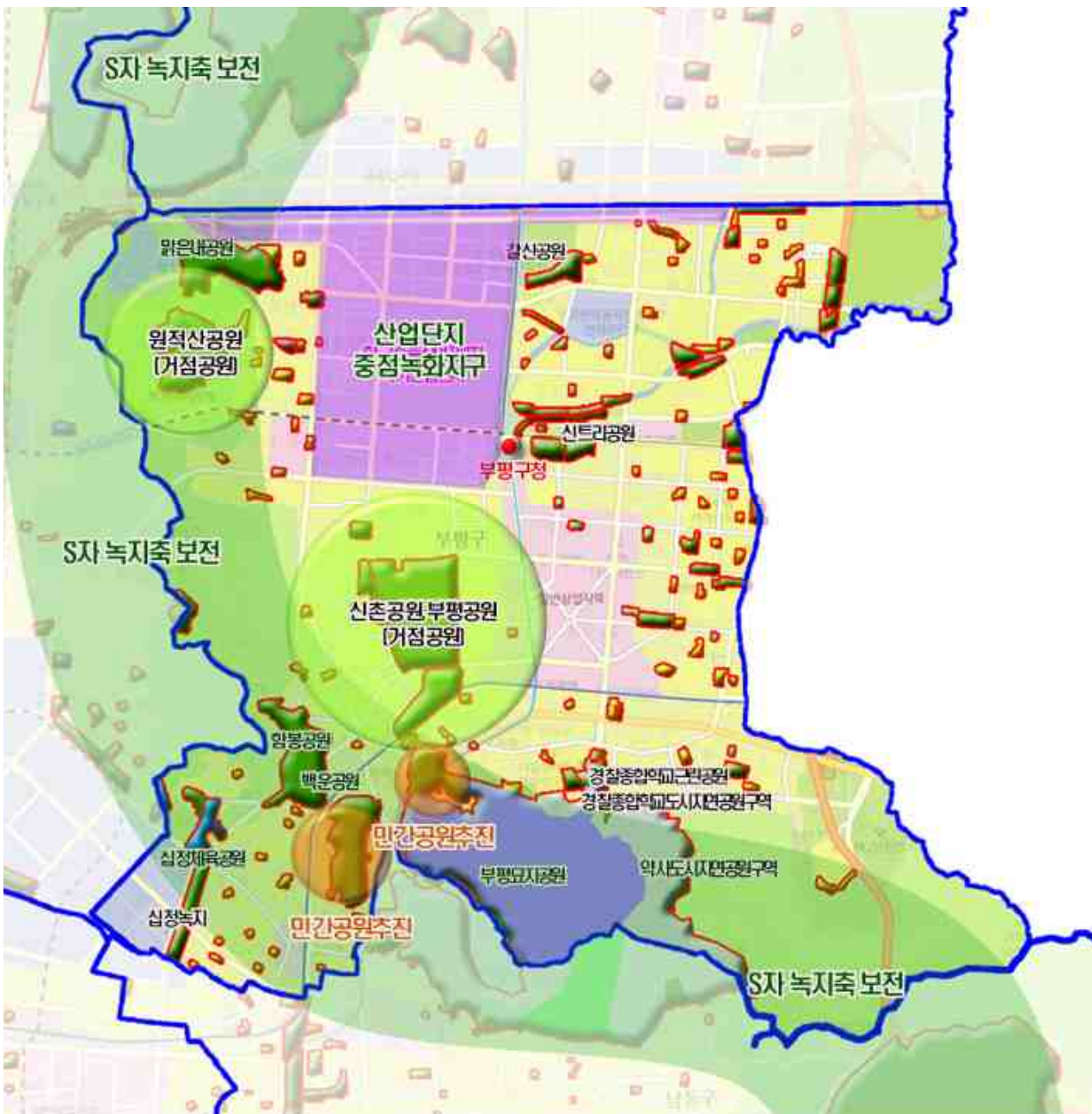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부평구	106	278	76	231	30	47	-	-



[그림-511] 부평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S자 녹지축의 보전 및 확충체계 확립"
- 거점 공원 : 신촌공원, 부평공원, 원적산 공원
- S자녹지축의 원적산, 호봉, 경찰종합학교, 역사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 S자 녹지축과 인접한 도시공원과의 연계
- 한국수출산업제4차국가산업단지의 중점녹화지구 설정



[그림-512] 부평구 공원녹지기본구상

9. 계양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계양공원, 계양역사공원, 이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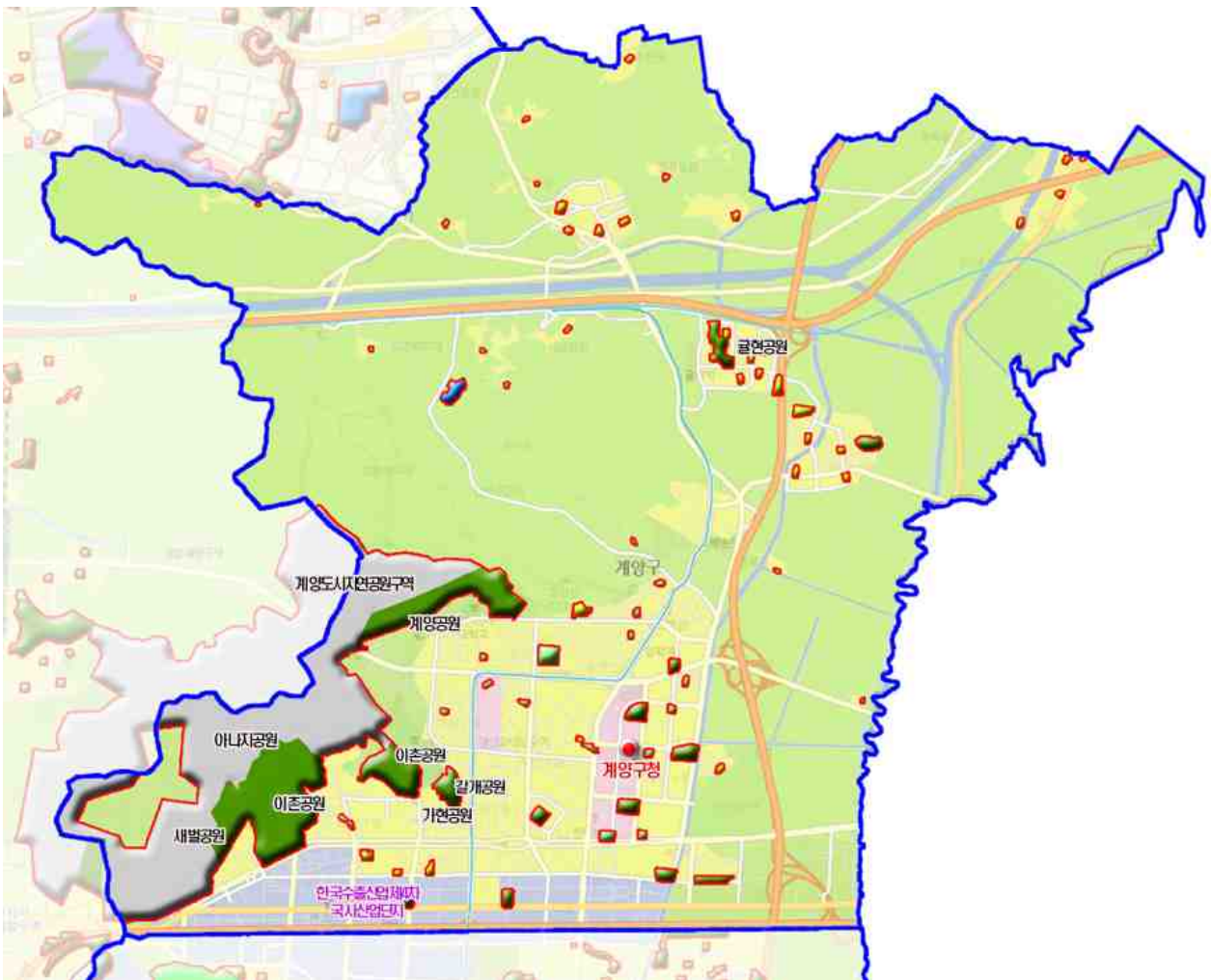
[표-344] 계양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양구	84	1,482	-	-	21	8	45	131	15	1,295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양구	-	-	-	-	3	49	-	-	-	-	-	-

[표-345] 계양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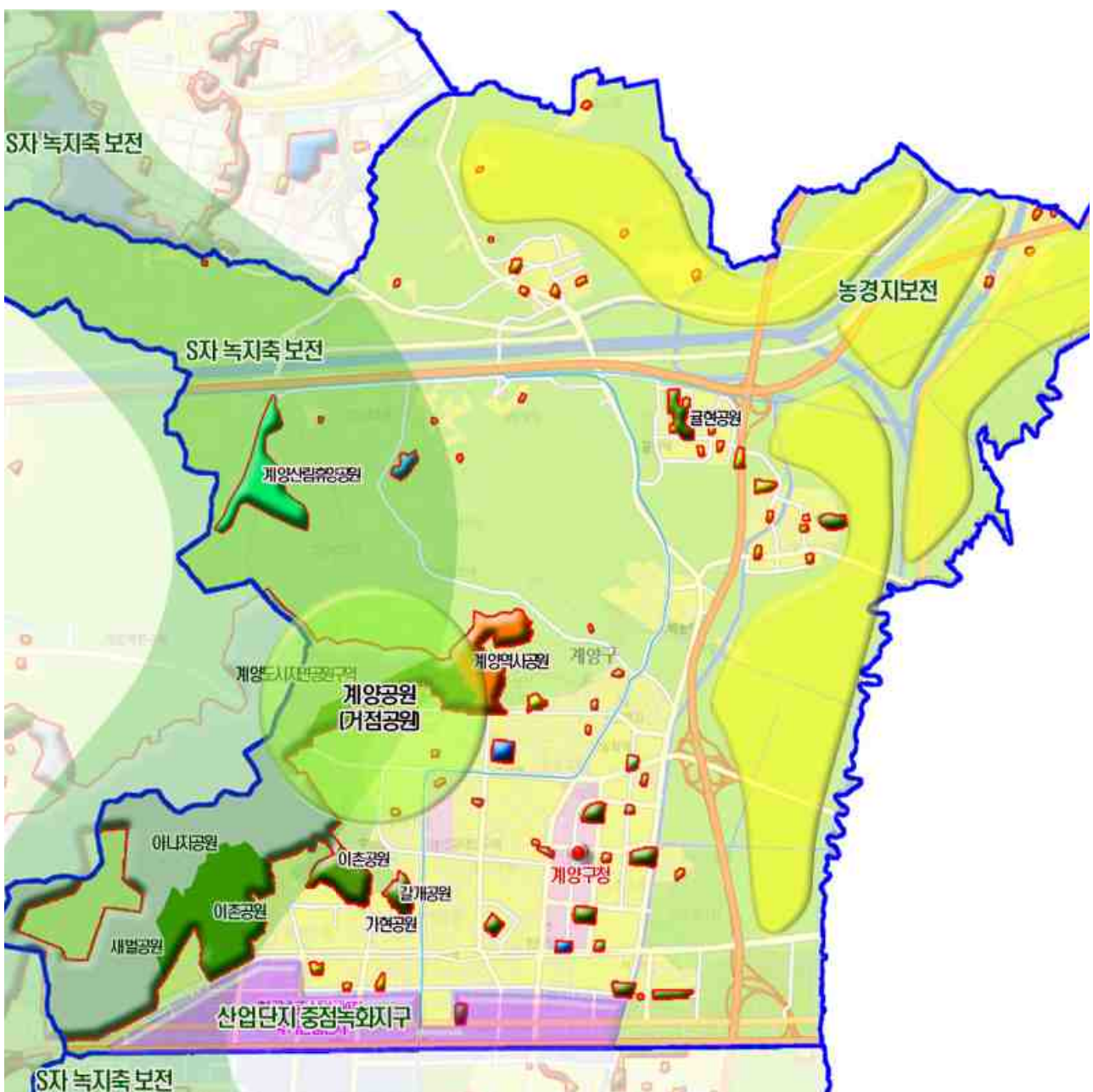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양구	41	97	26	76	15	21	-	-



[그림-514] 계양구 공원녹지현황

2) 기본구상

- "산림과 도심경작지가 어우러진 보전형 공원녹지계획"
- 거점공원 : 계양공원
-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인접한 도시공원의 확충
- 도심경작지의 보전을 통한 도시생태계 보전
- 경인운하와 연계한 블루 네트워크 계획



[그림-515] 계양구 공원녹지기본구상

10. 서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검단중앙공원, 연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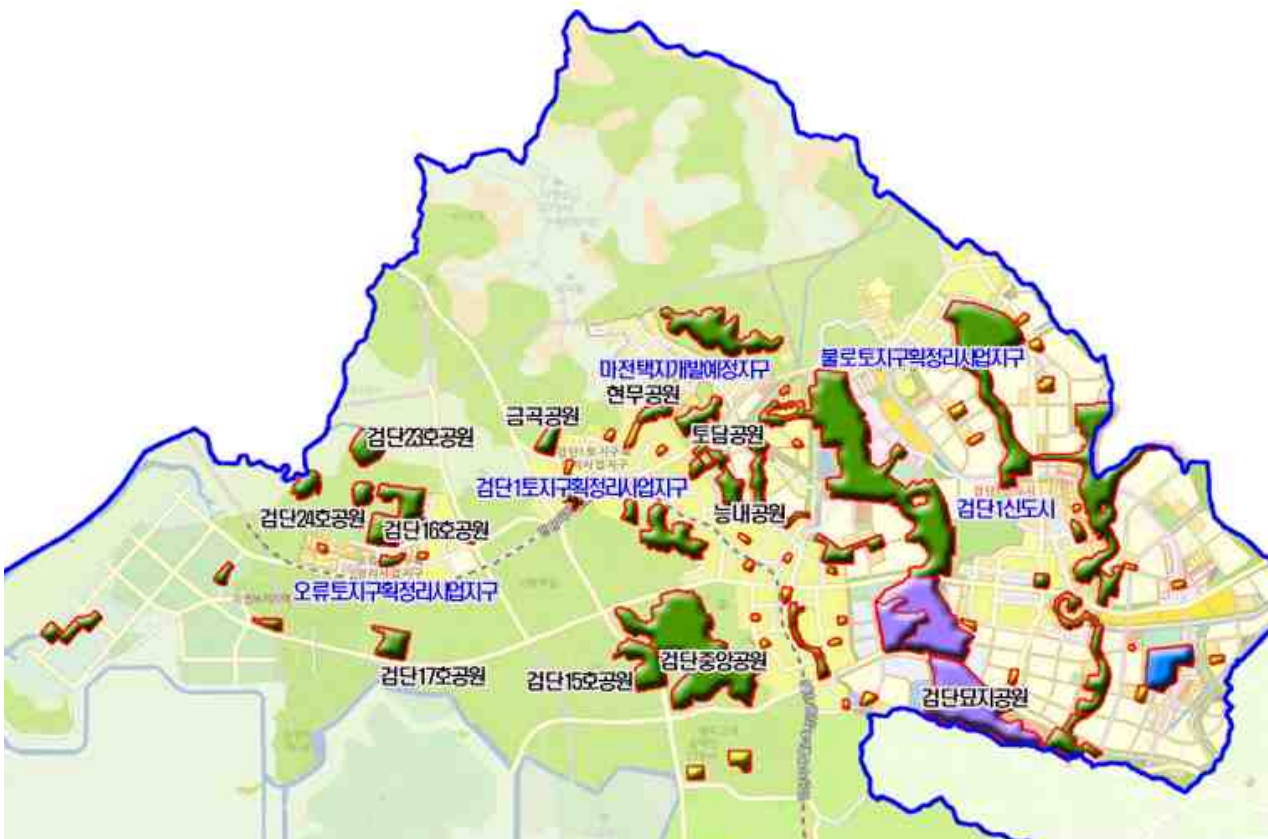
[표-348] 서구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구	242	8,637	1	606	19	27	125	463	84	6,624	1	71

구분	수변공원		모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구	4	74	1	627	5	995	2	5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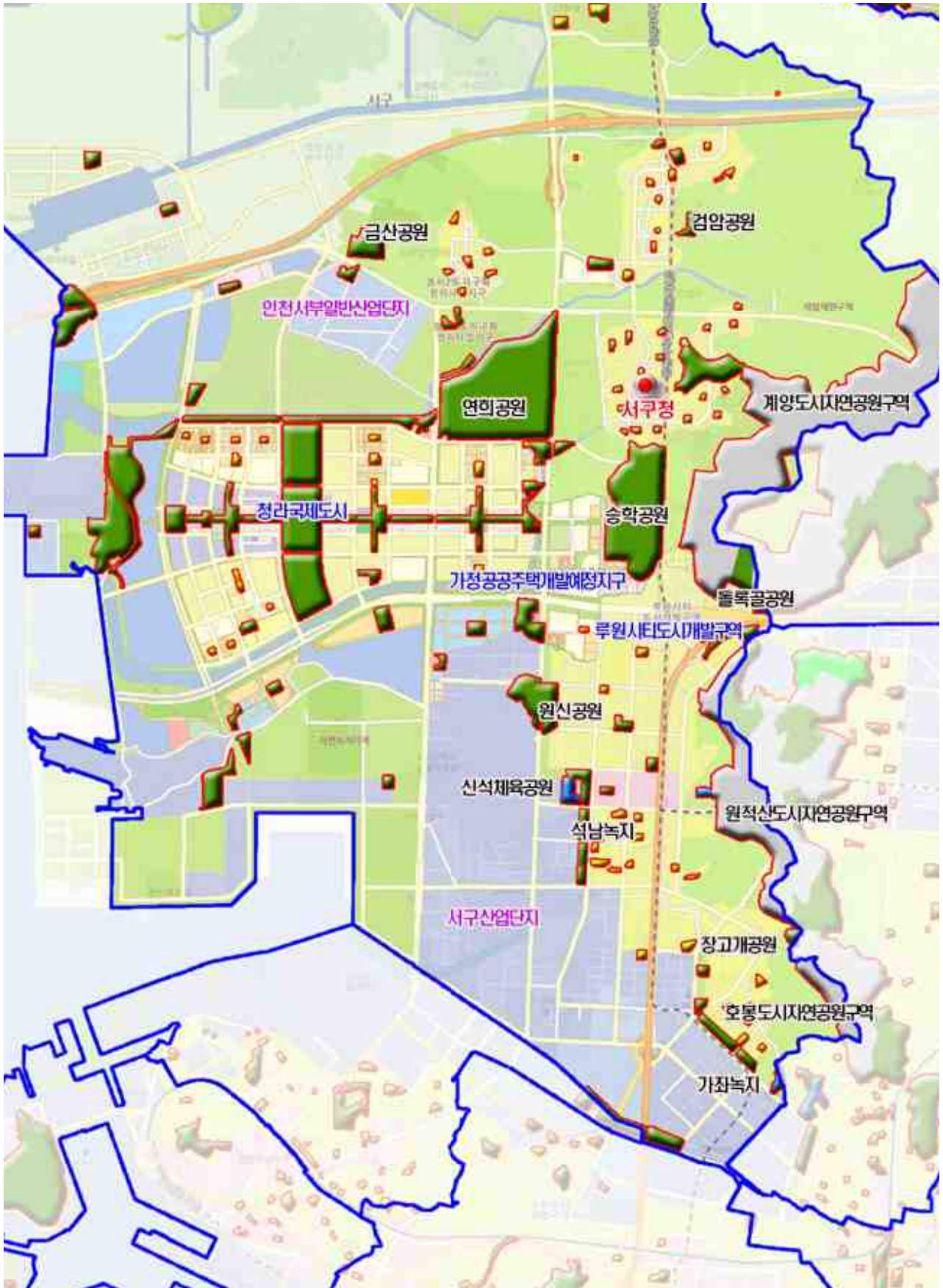
[표-349] 서구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구	290	1,878	210	1,628	75	195	8	54



[그림-517] 서구 공원녹지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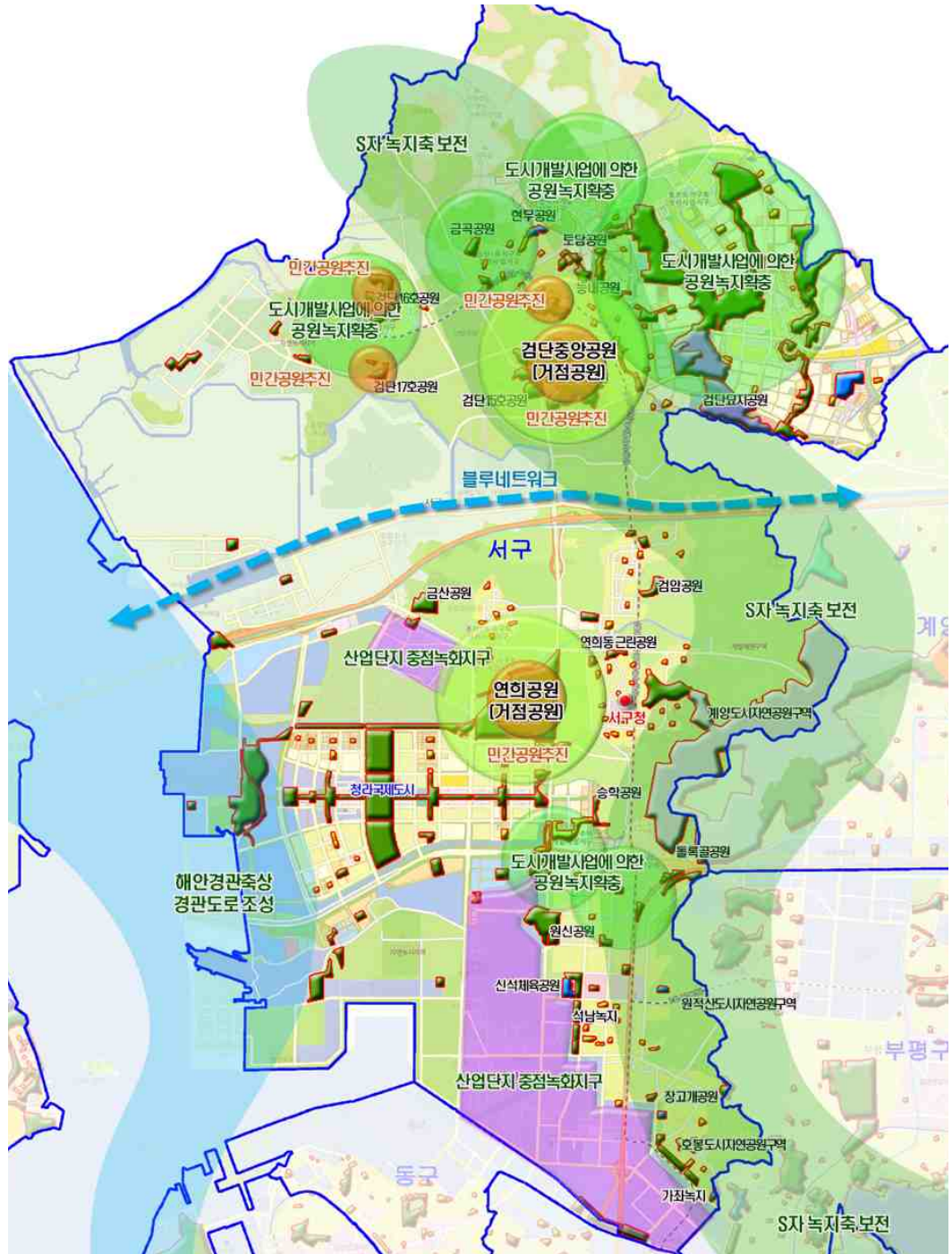
6장 부문별 계획



[그림-518] 서구 공원녹지현황2

2) 기본구상

- "해양자원과 산림자원의 공존"
- 거점공원 : 연희공원, 검단중앙공원
- 해양·하천경관 산림경관의 보전
- 도심의 도시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녹화 등에 의한 블루·그린네트워크
- 서부일반산업단지, 서구산업단지의 중점녹화지구 설정



[그림-519] 서구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검암공원, 장도공원, 승학공원, 토담공원, 검단14호공원, 검단23호공원, 검단24호공원, 검단25호공원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대상
- 계양, 원적산,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 →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
- 검단중앙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민간공원추진(비공원 시설(시가와예정지)해제)
- 검단배수지, 가좌유수지, 복향유수지, 석남배수지, 가좌배수지 등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공원)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공원확충 → 연희동 근린공원
- 쉼터, 소공원화 21개소 계획
- 도시여건에 적합한 각종 도시녹화계획 추진
- ब्ल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마전택지개발예정지구, 검단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검단1신도시,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가정공공주택개발예정지구, 루원시티도시개발구역 등에 의한 공원 및 녹지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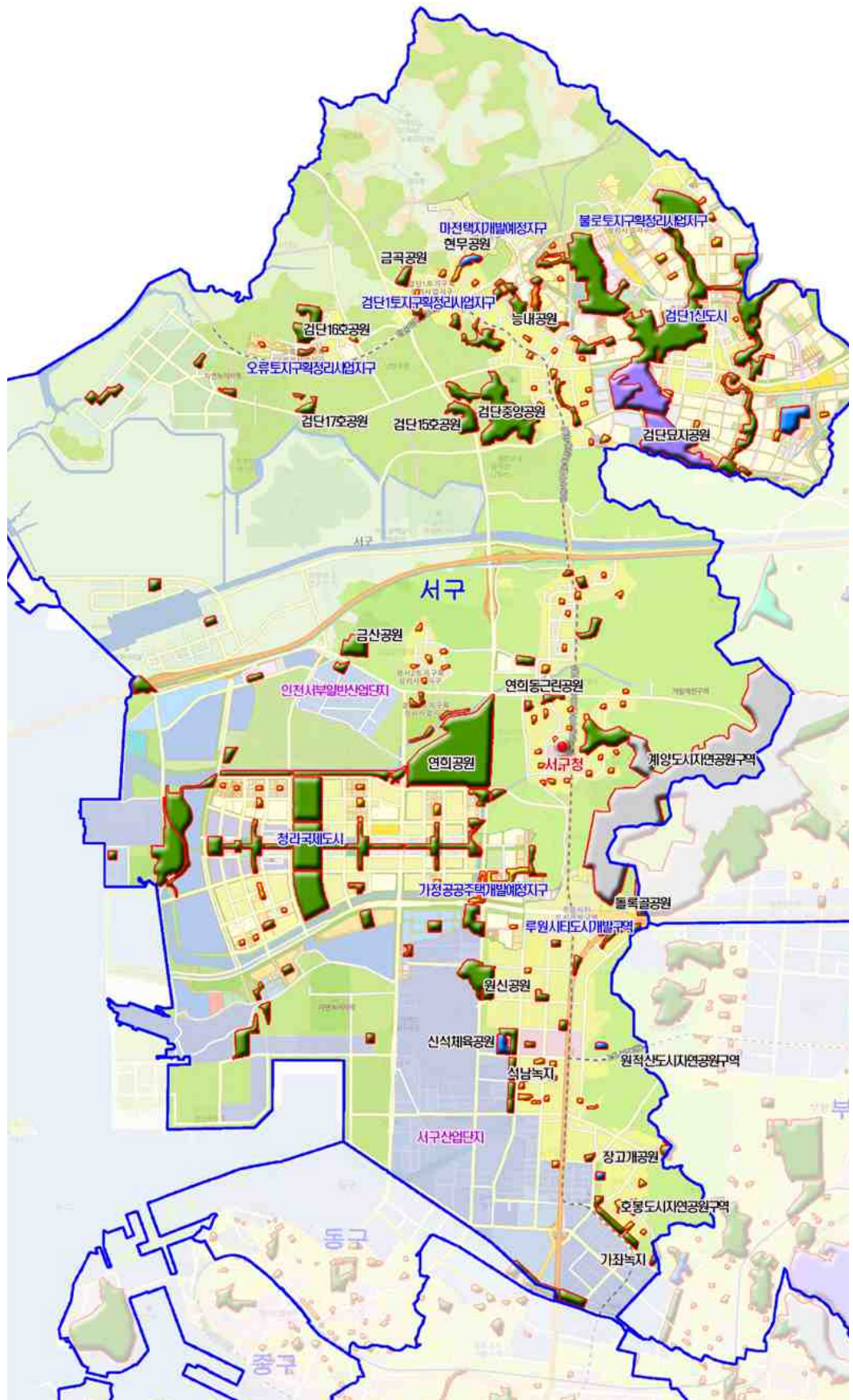
[표-350] 서구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구	262	7,817	-	-	33	48	125	463	81	5,973	1	72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구	4	74	1	627	8	125	2	50	-	-	2	385

[표-351] 서구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구	276	1,575	200	1,356	72	195	4	25



[그림-520] 서구 공원녹지기본계획

11. 강화군 공원녹지기본계획

1) 공원녹지 현황 (2015년)

□ 주요공원 : 북산공원, 전등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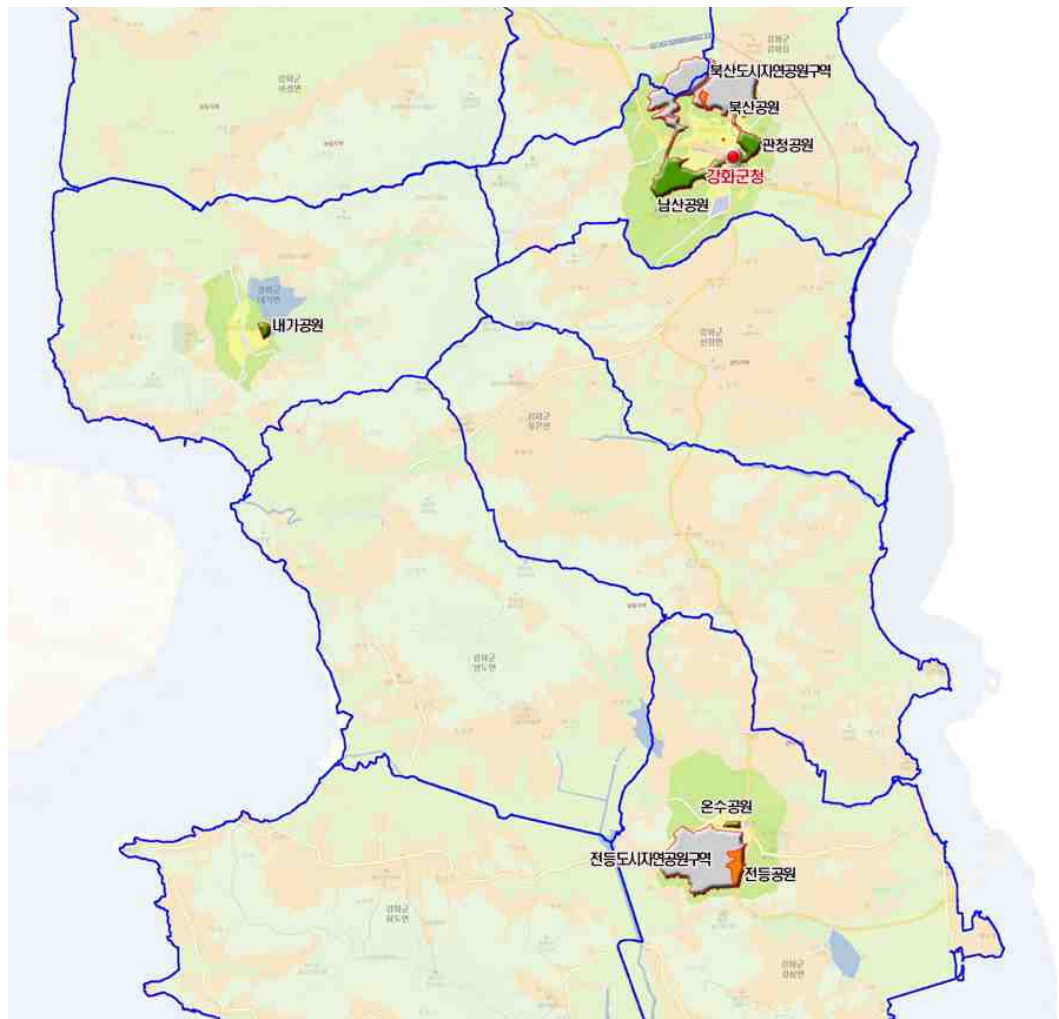
[표-352] 강화군 공원현황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강화군	16	886	-	-	-	-	3	6	5	700	-	-

구분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강화군	5	7	-	-	1	10	2	163	-	-	-	-

[표-353] 강화군 녹지현황 (단위:개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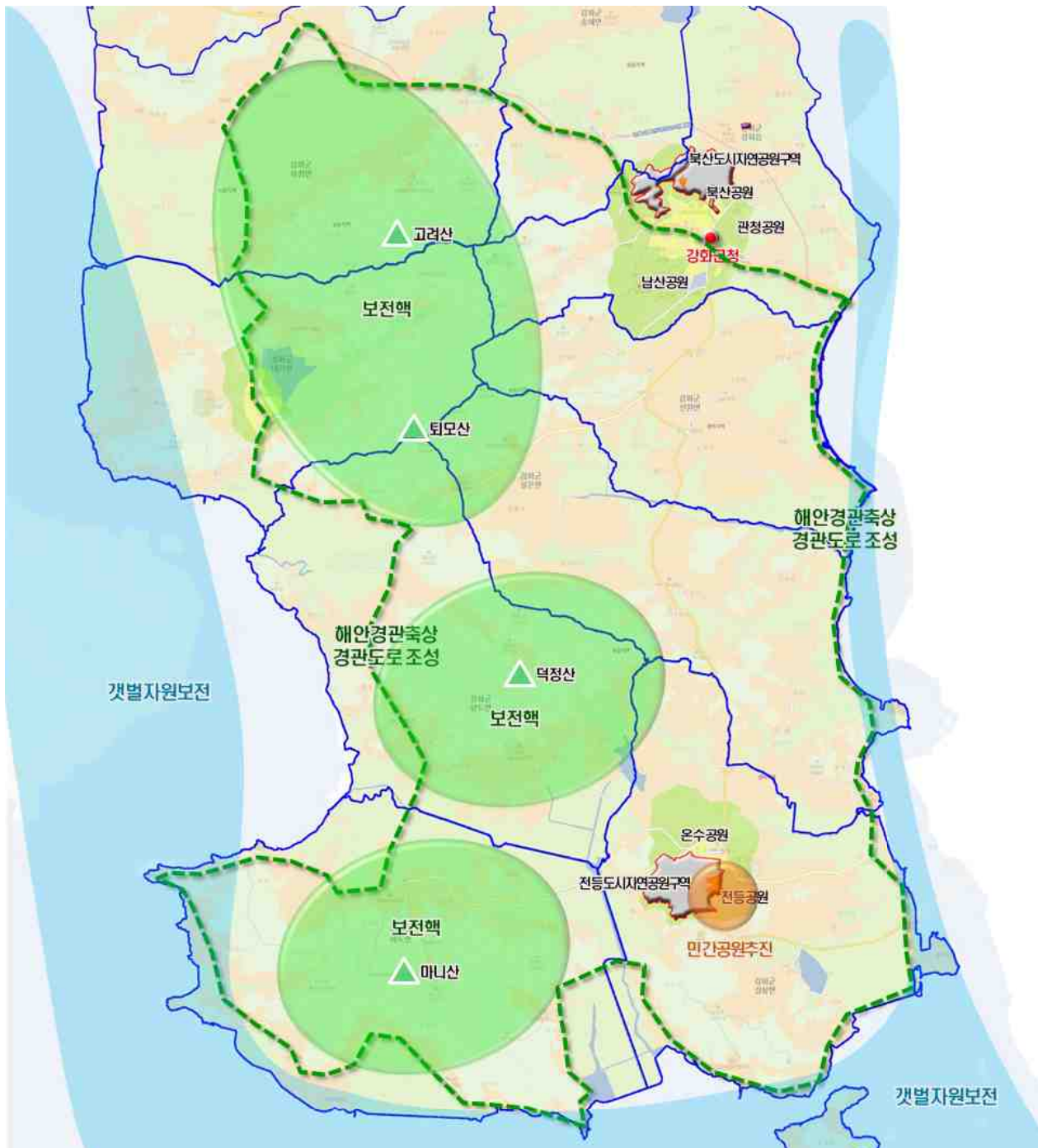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강화군	16	45	9	32	7	13	-	-



[그림-521] 강화군 공원현황

2) 기본구상

- "천연자원의 보전 및 역사자원의 보전"
- 거점공원 : 북산공원, 전등공원
- 산림자원, 갯벌자원(해양), 역사자원의 연계
- 해안변 경관도로, 자전거 순환도로 계획
- 북산, 전등공원은 역사를 소재로 한 주제공원 계획



[그림-522] 강화군 공원녹지기본구상

3)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년도 2030년)

□ 주요 계획내용

- 남산공원, 관천공원, 내가공원, 대룡공원, 온수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 대상
- 전등공원 민간공원 추진(비공원시설(시가화예정지)해제)
- 쉼터, 소공원화 27개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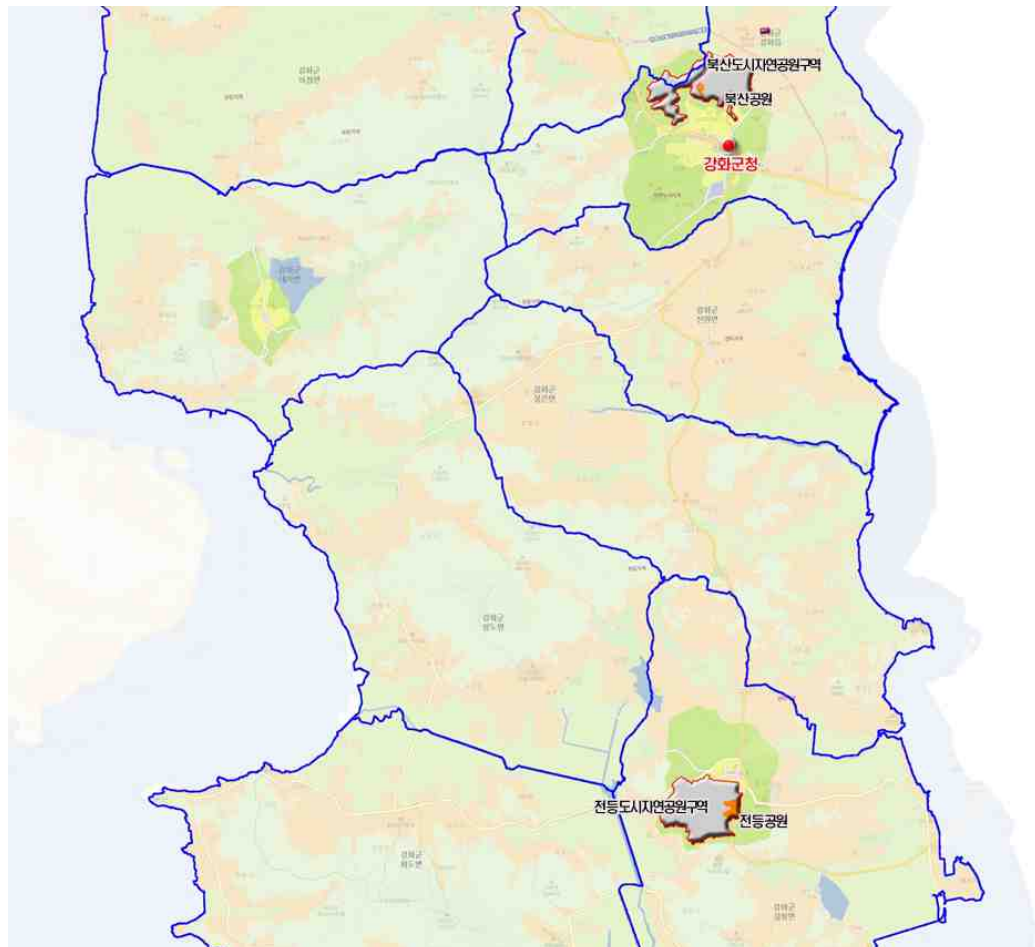
[표-354] 강화군 공원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강화군	35	212	-	-	27	32	-	-	-	-	-	-

구분	수변공원		모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산림휴양		도시생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강화군	5	7	-	-	1	10	2	163	-	-	-	-

[표-355] 강화군 녹지계획 (단위:개소,천㎡)

구분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강화군	14	34	7	21	7	13	-	-



[그림-523] 강화군 공원녹지기본계획

제7장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I. 공원녹지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II. 추진 및 투자계획



I. 공원녹지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1]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투자계획 내용



공원녹지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2] 공원녹지 관리계획

1. 관리계획

1) 기본방향

- 공원녹지 관리 · 이용계획 및 주민참여계획은 공원 · 녹지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기본방향을 정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계획으로 공원녹지 관리계획, 공원녹지 이용계획, 시민참여계획으로 나누어 수립
- 관리계획에서는 공원녹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과 공원녹지의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및 관리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 위생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계획 수립
- 이용계획에서는 공원녹지 이용시설물 및 공원녹지 이용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을 마련. 시민참여계획은 공원녹지의 계획 · 조성에서 부터 관리 · 이용에 까지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및 활성화방안을 수립
- 지자체에서 공원시설의 직접관리, 자연자원보호,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되, 지역주민 Green 일자리 창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입장료, 주차료 등의 일정수입을 유지, 관리비로 지출,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시민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복합휴양 도시로 조성

2)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인천시의 공원 · 녹지분야 예산은 조성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연간 130억원이며, 이는 2010~2015년 5년간 평균 공원녹지분야 예산 금액임
-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 현실화되고 있어, 관리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공원 기능의 복합화 · 다양화에 따른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업무 증대에 대응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 인천시 공원녹지 대부분이 인천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분석

- 공원 관리체계의 미흡 - 공원녹지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직접관리운영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각 공원의 특성이나 현황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특화되어 있지 않아 일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관리인력 부족 - 인천시에는 현재 494개 공원과 582개 녹지가 조성되어있고, 인천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소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미화 등 단순한 관리업무의 부족한 인력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

- 대부분 인천시 및 자치구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민간 협력을 통한 공원관리는 미흡
- 관리체계, 공공과의 역할 분담, 예산 배분, 관리 감독 등의 체계정비 필요
- 인천시의 사회전반의 여건변화 추이를 보면, 보건적 측면에서 2007년 대비 2014년 인천지역의 암환자 발생인원이 5,196명에서 10,721명으로 2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안 분야에서도 2006년 대비 2013년 인천시 범죄발생 건수는 2,141건에서 1,846건으로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세부항목별 범죄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출처:2007년,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 / 2006년, 2013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 이런 사회여건변화 추이를 통해 공원녹지의 양적·질적 감소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죄가 증가하고, 시민건강이 감퇴한다는 시각도 있음. 따라서 공원·녹지 조성 및 질적 유지관리가 선행되어야 시민의 치안과 건강향상에 밑거름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추세로 공원녹지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표-356] 공원녹지관리문제와 대책

구분	문제점	관리방안
주체	공공주도 공원관리로 인한 한계와 문제 대두	• 시민참여 및 함께하는 관리
예산	공원관리예산 부족	• 다양한 관리체계 마련
체계	관리체계 미흡, 인력부족	

3) 관리방안

□ 기본방향(제안)

- 공원녹지 관리의 문제점인 공공주도의 공원관리 체계 및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와 공원녹지 관리체계의 구축을 관리방안으로 제안
-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운영방식의 변화는 시민의식의 질적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는 방법이므로 기존의 방식과 병행운영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므로 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과 시민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

[표-357] 관리유형

관이 직접 관리 (현행)	민-관 파트너십 (제안)	민간위탁 / 지정관리자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 자치구 • 시설관리공단 • 공원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시범공원을 선정 • 3년간 운영 • 매년 관리평가 시행(모니터링) • 지속/확대시행 여부 결정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파트너십(영국의 도시 특별 위원회를 통한 공원녹지관리정책, 서울 숲사랑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시범공원을 선정 • 3년간 운영 • 매년 관리평가 시행(모니터링) • 지속/확대시행 여부 결정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서울 고덕수변생태공원) • 지정관리자(일본 동경도립공원 지정관리자 지정 시행)

4) 선진사례 검토

가. 영국 (파트너십 구축)

- 197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체계 미흡으로 공원은 쇠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
- 2001년 도시녹지특별위원회(Urban Green Spaces Task force)가 조직
- 도시녹지특별위원회는 공원녹지정책을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제언했고, 2002년 중앙정부는 공원녹지정책서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도시공원과 녹지의 정책적 변화와 조성, 이용, 관리계획이 추진

[표-358] 2002년 도시녹지특별위원회가 제시한 52개의 조언 중 「파트너십 구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① 파트너십의 이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원과 녹지 전략과 프로그램 제시	
② 도시녹지공간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 지역단체의 역할 촉진 • 지방정부는 녹지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과 관련 인력과 공무원 교육	
③ 실천적 커뮤니티 참여	• 이용 잠재력을 검토 • 주민, 지역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금을 제공 • 지역사회 참여의 지원	
④ 사적 영역의 개입	• 도시공원 · 녹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 참여 높일 것 • 해외 우수 사례 연구 수행	
⑤ 파트너십 지원금	• 기존의 잠재적 지원금 제공자와의 대화 창구 마련 • 주민, 제 3부문, 기업체 간의 파트너십 지원과 관련한 지원금의 흐름 및 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	

※자료 : 영국공원 녹지정책의 최근경향과 특성(한국조경학회지 40(2): 86~96, 2012. 4.)

나. 일본 (지정관리자 제도)

-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시설관리에 있어 민간의 아이디어나 기획을 도입하여 시민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제도
- 최종 관리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위탁제도보다는 지정관리자가 지자체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관리하며,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음
- 일본은 지정관리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제에서 의무적으로 지정관리자를 지정토록 법제화하여 시행
- 지역기업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마련필요
- 시설이용료를 지정관리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 외 이용허가 등 종래 민간위탁제도에서는 불가능한 행정적 권한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등 관리의 자유도가 한층 상향된 것이 특징

명칭	구분	내용	비고
지정관리자제도	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적 관리권한을 지역에 주고, 지정한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 구체적 사항은 협약을 체결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사용 허가 가능 질 높은 서비스 공급가능 경비절감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성과 이윤추구로 인한 서비스의 질, 계속성, 안전성이 약화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 고용이 불안정 전문인재 양성이 어려움 	
	사례	<< 동경도립공원 지정관리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부터 실시, 총 75개소의 도립공원에 지정관리자 위탁 실시 기간은 5년으로 매년 관리에 대한 평가 실시 	

※자료 :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2010)

5) 관리방안의 적용 (제안)

가. 인천시의 지정관리자제도

- 근린공원 이상 규모의 우선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 평가를 통해 타 공원에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
- 확대 시행 시 민간위탁제도와는 차별적 행정권한 수행 및 관리의 자유도에 대한 법제 및 정책의 개편이 수반된 후 시행

[표-359] 인천광역시 지정관리자제도 우선시범 제안사항

명칭	구분	내용	비고
인천의 지정관리자제도 우선시범(제안)	우선시범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공원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대공원 :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월미공원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매년 관리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지정관리자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공단체의 지정을 받은 수탁자가 관리를 대행 	
	관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관리자 선정위원회 설치 조례, 규칙에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의 능력, 경영상태, 관리운영수준, 관리운영효율화 등을 평가 	
	제도도입 여부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평가를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 	

[표-360] 지정관리자제도 우선시범의 평가항목

항목	세부항목	내용	비고
관리상태	적절한 관리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업무이행(청소, 순찰회수 등)은 적절한가 - 인원배치는 적절한가 - 협정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관리인가 	
	법령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보고 등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는 적절한가 - 정보공개는 적절한가 - 도에 대한 보고는 적절한가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나 - 시설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나 - 사업자가 책임질만한 사고가 발생하였나 	
	재산의 적절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물품 등)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건물이나 기구 파손 등 물품의 분실이 있는가 	
사업효과	이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 이용자수는 사업계획대로인가(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고려) 	
	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직원 대응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 민원상황은 어떠한가 - 종합이용자 만족도는 어떠한가 	
사업자의 건전성	재무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재무상황은 문제가 없는가 - 경영기반은 안정한가 - 사업이 계속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자료 :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2010)

나. 민-관 파트너십

-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분담
- 민간 -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홍보, 기금모금 등 소프트웨어적 공원관리
- 공공 - 시설물, 재산관리 및 하드웨어적 공원관리
- 실천적 커뮤니티 참여 : 주민, 지역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연과 지원금을 제공
- 파트너십 지원금 : 기존의 잠재적 지원금 제공자와의 대화 창구 마련,
- 주민, 제3부문, 기업체 간의 파트너십 지원과 관련한 지원금의 흐름 및 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

6) 관리 세부지침

- 관리방안에서는 장기적 플랜으로서 시민과 함께 관리 운영하는 제도 및 장치를 제시하였으나, 단기간에 운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재의 직접운영방식과 병행하여 점차적으로 변화 되어야함
-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 직접운영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자체에서 공원시설의 직접관리, 자연자원보호,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되, 지역주민 Green 일자리 창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입장료, 주차료 등의 일정수입을 유지, 관리비로 지출,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시민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복합휴양 도시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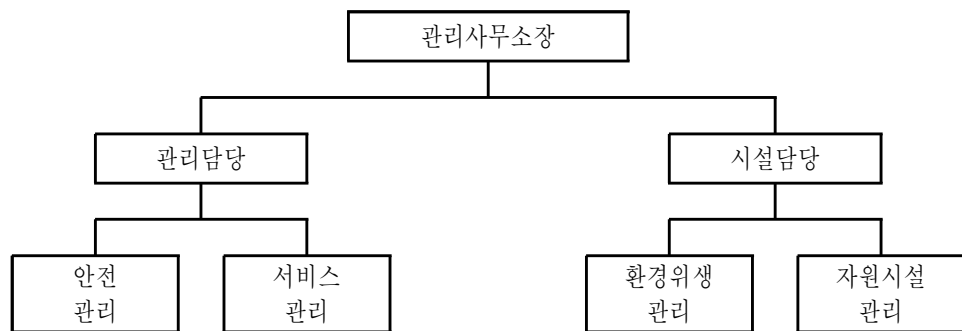
가. 관리기구 및 인원확보

- 관리요원의 전문교육 실시 및 근무사기 고양책 강구
- 주요 공원별 공원관리사무소의 신규설치 및 조직의 정비
- 주요지역 관리초소의 설치

나. 시민참여 유도

- 자연보호단체의 참여유도
- 명예 관리인제의 도입
- 자원봉사요원의 활용 및 시민참여방안 모색

다. 관리조직



라. 관리내용 및 인원

- 관리내용은 환경위생관리, 자원·시설관리, 안전관리, 서비스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관리소장 아래 1~2인 규모의 분야별 전담요원을 배치하되, 공원이용이 증가 또는 집중 시에는 추가 3인의 임시직을 고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토록 함

7)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행정조직 검토

- 2030년에 인구수 350만명을 육박하므로 효율적인 공원녹지 업무 및 관리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함

가.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현황

- 인천광역시는 환경녹지국 7개과 중 공원녹지과 1개과가 공원녹지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서·북부 공원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내에는 5개팀, 24명의 인원이 배치됨

나. 타시 행정조직 사례 검토

- 인천광역시 보다 인구수가 많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성격 및 규모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사 지자체의 공원 녹지 관련기구를 파악하여 보다 능률적인 기구조직을 제안함
- 인구수 300만명이 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공원녹지 행정조직을 검토함

□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사례

- 서울특별시는 푸른도시국내 5개과가 행정업무를 수행
- 서울특별시는 공원관련 팀만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361]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관련 행정조직도



□ 부산광역시 행정조직 사례

- 부산광역시는 기후환경국내 공원운영과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공원운영과 내에 4개 팀이 공원녹지를 행정업무, 운영·관리하고 있음

[표-362]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관련 행정조직도



다.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제안

- 기존의 업무진행 상황보다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위해서 기획·정책과 관련된 과를 세분화하여 인력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의 개편을 제안함
- 환경녹지국 산하 4개과 신설계획을 제안함. 푸른도시정책과는 환경녹지국의 정책 및 기획을 담당하는 과로 4개팀으로 구성하며, 공원조성과는 공원의 시설결정 및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6개 팀, 녹지조성과는 녹지의 시설결정 및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5개 팀, 자연생태과는 생태기획 및 복원을 담당하는 3개 팀, 산림과는 산림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4개 팀을 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가능케 하여 바람직한 공원녹지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표-363]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관련 행정조직도 제안



- 담당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원 및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
- 기존의 도시공원위원회 등은 주 업무였던 계획 자문과 더불어 행정 및 관리운영에 대한 자문으로 확대
-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조직신설로 전문 업무에 대한 자문 확대

[표-364] 행정조직의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푸른도시정책과	환경녹지국의 장기정책 및 기획을 담당 도시정책, 공원녹지기획, 공원녹지관리, 공원문화 4개 팀으로 구성 타부서와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
공원조성과	공원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공원, 유원지계획, 조성, 관리의 체계 각종 영향평가 검토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 시민, 단체의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및 기획 공원관련 자치법규 정비관리
녹지조성과	시설녹지의 장기계획 수립 시설녹지의 시설결정 및 개발관리 시설녹지 및 가로수, 조경수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립 및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등의 관리 및 현황관리 학교숲 및 그린웨이 조성 및 관리
자연생태과	생태기획 및 복원 담당 산림생태 및 도심지 생태경관 보호 및 복원사업
산림과	산림의 장기계획 및 정책수립 산림허가 및 관리 담당 산림 보호 및 복원 산림 휴양시설관리 전문화 및 방안제시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정책 등 타부서와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 내 세부팀의 개별 계획과 타부서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함
- 전문화된 업무의 세분화도 필요하지만 인천시 전체 도시정책, 교통, 환경, 기후 등과 연관된 종합적 계획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정책수립 협의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며 이업무의 담당부서로 푸른도시정책과를 제안함

8) 이용객관리

가. 안전관리

-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한국안전기준(KS)에 부합한 시설물을 설치함
-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다발지역엔 안내 SIGN을 설치하며 필요시에는 이용을 통제하도록 함

나. 이용관리

- 공원이용자들이 시설의 적정 이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공원 이용시 주의 사항 및 안내사항에 대해 사전홍보를 실시함
- 기조성된 공간에서 이용자의 행태와 선호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대와 사회에 맞는 적절한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여 이용에 대한 기회를 증진

[표-365] 공원녹지 관리계획

구분	관리항목	관리내용	관리방법
자원관리	생태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자원의 주기적 조사 및 실태파악 (모니터링) •보호대상자원의 지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단위 모니터링 시행 •월1회 자원 이상 유무 확인
	자연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감독 관찰활동(내부자원의 외부반출 등) •안내 SIGN을 통한 주요자원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관찰 •안내시설 도입 자율유도
시설관리	관리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시설 임대·관리 및 입장료의 징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 운영 •시설 이용사항 수시 관찰
	보호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탐방로변의 탐방객 보호시설 설치 •야생 동·식물 피해에 대한 응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자원의 주기적 관찰 •구난 및 이송체계 수립
	안전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기문란, 시설 과다이용에 대한 안내 SIGN •지속적 홍보교육 및 주의 단속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판 설치 및 관리감독 •상시 단속활동요원 배치
이용객관리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구난시스템 구축(상시 대기태세 유지) •안전사고 주요지점 안내 SIGN 및 이용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원 구난교육, 통신망 유지 •보호안전시설설치(안전웬스 등)
	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이용시의 주의사항, 안내사항에 대한 홍보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탐방객의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객의 안전교육 •상시 단속활동요원 배치

[표-366] 관리내용 및 소요인원

관 리 분 야	소 요 인 원(인)		관 리 내 용 (관 리 시 설)
	평상시	중원시	
환경위생관리	2	3	•오물 수거·처리, 병충해 구제, 응급조치 (휴지통, 쓰레기처리장, 화장실, 매점 등)
자원·시설관리	1	3	•시설보수, 식생관리, 이용자관리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건축, 조경시설물, 식생 등)
안전 관리	1	2	•교통통제, 안전사고방지, 화재방지 (주차장, 도로, 산책·탐방로, 건축물 등)
서비스 관리	1	3	•홍보·계도활동, 연간시설의 관리·운영 통제, 풍기단속, 미아보호 (관리사무소, 안내판, 표지판 등)

9) 부문별 관리·운영계획

가. 환경위생관리

미화청소업무의 조직화

- 공원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자연보호협의회, 각급 자연보호단체와 협조하여 미화반을 편성, 조직화를 기함
- 특히 춘계, 추계 대청소기간에는 일반단체나 자연보호회 등에 집단청소구역을 할당함

미화청소시설의 정비

- 쓰레기의 수거는 소각용, 매립용 및 재활용 등으로 분류를 철저히 시행하며 버리는 장소를 명확히 하여 환경미화 분위기를 조성함

위생관리

- 상업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위생적 설비, 분뇨 및 오물의 위생적 관리, 식물 등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함

홍보활동의 전개

- 공원이용자, 지역주민, 시설업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공원이용안내와 함께 미화 활동을 위한 제반활동과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 등 협조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함

나. 자연자원관리

- 생태계 관리는 부지, 식생, 동물, 경관관리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용자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생태계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병충해나 화재, 천재지변으로부터의 보호에도 유의

□ 지형보호

- 지형훼손의 근본적 원인은 고의적 훼손, 과잉이용 등에 의한 훼손 등으로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지형보호의 관리 모색
- 자연석과 토사 등의 채취, 이동행위 및 기타 파괴, 훼손행위는 일절 금지
- 특히, 탐방로 개설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가능성이 있으므로 훼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안식년제 등을 도입하여 식생(생태) 복원 관리

□ 동·식물 보호

- 공원내의 동·식물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수렵, 채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위반시 처벌제도를 강화하며, 해충구제의 경우에도 천적, 기생충 등 자연생태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하여 관리토록 함
- 병충해 방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정, 제초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수목생육환경을 조성
- 병충해가 발생한 수목은 초기에 약제 살포하여 조기구제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충해일 경우 전정이나 굴취하여 소각 처리

□ 재해예방

- 공원내의 자연자원은 화재, 붕괴, 유실 등의 재해로 인한 감실, 훼손에서 보호되도록 예방수칙을 마련토록 함
- 공원의 화재방지를 위해 비상소방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관내소방파출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 화재방지를 위해 지역 산악단체 및 지역주민의 협조하에 등산객 및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몽과 홍보활동을 전개

□ 수목 유지관리

- 수목유지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정, 수목시비, 줄기보호, 보식,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잡초관리 등이며, 시기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토록함

(1) 전정

-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함
-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냄

[표-367]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내용	비고
춘기전정(4~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계전정(6~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숙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9~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계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계전정(11~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숙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2) 수목시비

-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킴
-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줌

(3) 병충해 방제

- 식재된 조경식물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약제 살포를 해야함
-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함
-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 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 기준에 따름
-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수간주사는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 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함

[표-368] 조경식물관리

구분	공종	작업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목	전지, 전정(낙엽수)													여름, 겨울에 각 1회
	전지, 전정(상록수)													봄, 가을에 각 1회
	전지, 전정(관목)													다듬기, 생울타리 깎기
	시비													
	병충해방제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방풍·방한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제초													6~9월 집중실시
	관수													갈수기 등으로 필요시
	보식													
	고사목처리													연간 작업(수시)
	지주목재결속													강풍 대비 실시
초화류	지엽다듬기												봄, 가을 각 1회	
	시비													
	관수												갈수기 등으로 필요시	
	제초												6~9월 집중실시	
	방한												방풍막, 볏짚, 왕겨 등	
	병충해방제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꽃대제거												월동 전 숙근초화류	
	약제처리												화이분화와 관련 처리	
	교체식재												연간 4~5회	
잔디	메불농기													
	통기작업												기계 작업	
	배토작업													
	시비													
	병충해방제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제초													
	잔디깎기												연7~8회 적정초장유지	
	관수												갈수기 등으로 필요시	
자연림	제초													
	병충해방제													
	고사목처리												연간 작업	
	가지치기													

다. 공원시설관리

□ 이용측면

- 공원방문객의 이용측면에서는 시설의 적정이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시설의 최적 이용 허용량에 입각하여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고, 이용자를 계몽하는 등 시설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률을 극대화

□ 시설유지관리

-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보수 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와 개선을 실시
-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시행
- 파고라, 벤치 등의 휴양시설은 칠이나 파손상태를 점검하고, 칠은 2년에 1회 정도 시행하여 원색을 유지시키고, 파손시에는 즉각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 편익 및 운동시설은 교체, 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 설치하고, 파손시에는 교환작업을 시행
- 시설물의 손상은 이용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 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켜 미관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시행함

[표-369] 시설관리

구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정기관리	점검	순회점검												경미한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정기관리	일만수선	부분수선교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직후	
		재해복구공사											재해직후	

(1) 목재

-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함.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끝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킴
- 갈라졌을 경우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함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킴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마무리 함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함
- 교체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함
 - 교체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 함

(2) 철재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 장비나 연장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함
- 부식에 의한 손상
 -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함
 -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함

(3) 석재

-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함
-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함

□ 도로 및 산책로

- 도로 및 등산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위험지역에는 표지판, 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함
- 공원 내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구분하여 비상 차량이나 관리용 차량의 통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함

□ 화장실/음수대

- 화장실은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시설물의 파손방지에 주력하고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함
- 음수대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음료를 제공토록 함

라. 서비스 관리

□ 이용프로그램

- 공원관리의 개념은 단순히 시설 제공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여가수요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공원의 매력, 공원의 명소화, 다양한 이벤트 유지 등 적극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한 바, 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원을 지역문화의 거점내지는 지역사회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 시설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함
- 비정기적인 행사로 글짓기, 연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지하고 특수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행사, 청소년을 위한 행사 등을 별도로 개최하여 시민화합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증대시킴

□ 정보서비스

- 연극, 공연, 각종행사, 안내도 등 공원 내의 각종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공원 종합안내도 및 산책코스 안내도, 각종 시설표지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관리토록 함

□ 의료·위생관리

- 공원 내의 안전사고 및 불쾌감 유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구호체계 구축 및 장비, 요원을 확보
- 효율적인 의료/위생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와 인근 의원 및 보건소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10) 지역주민 고용계획 및 수익환원

- 공사완료후 운영시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운영, 유지관리로 지역 고용창출
- 공사기간 중,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주요 공원 약 111개소에 대하여 공원당 20인/일, 연간 100회 시행 시 222,000인/년으로 추정됨. 어린이공원 405개소 및 녹지 유지관리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총 50만명 이상의 지역 고용창출효과 발생 예상
- 공원 이용객은 인천광역시민이 연간 평균 7회 이용시 2,100만명으로 1인당 주차장 이용료, 입장료 등 평균 2,000원-3,000원 지출시 연간 420-630억원의 입장수입 발생, 이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역고용창출 및 시설보수, 수목복원 등에 재투자토록 함(시설이용료, 판매시설 수익별도 재투자)

2. 공원녹지관련 사업의 기대효과

□ 주민여가활동, 복지증진에 기여

- 해안경관, 공원·녹지를 이용한 주민 여가활동, 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운동, 휴식, 관찰, 체험학습 등 주민 편의 및 이용욕구 충족

□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기여

- 훼손지역, 보존지역 및 주거시설지 주변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선점,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 관리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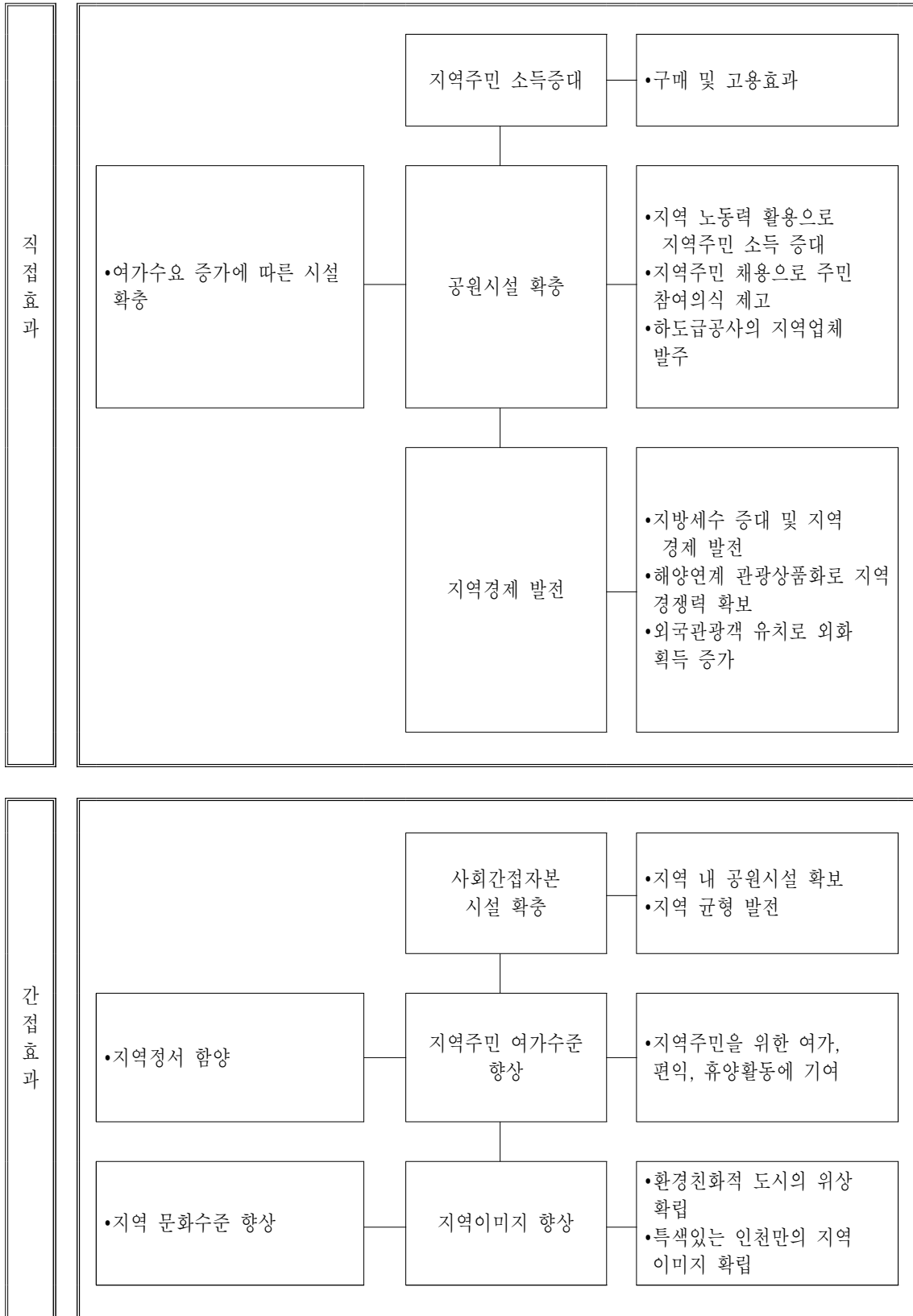
□ 환경친화적 공원·녹지 개발모델 제시

- 수려한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전하고 현 지형/지세를 최대한 이용한 공원·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녹지, 휴양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환경정비 및 생태복원 기능 제공

□ 수익성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지역사회 복지증진

- 근린공원 내 일부 수익시설에 의한 수익창출, 입장료 등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건설 및 운영시 지역 전문자재사용, 건설업체 우선참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요식업 등 주변관련 상업 활성화, 공사기간에 나타나는 건설제조, 산림분야 파급효과로 간접세수 발생
- 수려한 경관조성, 공원건설로 토지가치 증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 개발로 인한 입장료, 주차 이용료, 시설 이용료 등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각종 사회사업 시행 및 유지, 관리인원 고용 등으로 지역민 고용 창출효과와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

[표-370] 사업의 효과



3. 난개발 방지대책

1) 기본방향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해제되는 공원녹지 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이 되지 않더라도 양호한 산림의 보존 및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 비오톱규제, 용도지역지정, 개발행위제한, 국·공유지 해제 지양 등을 통해 공원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기존의 양호한 산림에 대한 보존을 대책 마련

2) 난개발 방지 대책

- 인천광역시의 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1등급 토지에 대한 자연자원의 절대적인 보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현재 서울시, 세종시, 춘천시, 경주시 등이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규제를 두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해제되는 공원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파악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통해 난개발방지
- 공원 해제 후 국·공유지에 대해 일반인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의 건의를 제안

난개발 방지대책	내용 및 사례
비오톱 규제도입 (법 개정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오톱 1등급 토지, 대상지 전체 절대적으로 보전 • 예)서울시, 세종시, 춘천시, 경주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규제도입
도시공원해제지역 관리 방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녹지지역,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제한
임야(산지) 공원해제 후 일정부분 개발행위 제한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 허용시설 축소
국·공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 제외 및 무상귀속 협의를 통한 공원녹지 우선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가 공원에서 실효되어 일반인에게 매각될 경우 난개발에 노출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상귀속 협의 법령 활용

3)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확대방안

무상귀속이란?

- 국·공유지의 경우 공공사업지구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
- 처분이 제한되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음

- 단, 공공기관 및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 그 외 무상귀속이 아닌 국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유상취득 대상이 됨

□ 무상귀속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명시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공공용시설

[표-371] 법적근거에 의한 무상귀속 대상

구분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법 제2조 제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1.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무상귀속 협의주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5조 3항에 의해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는 도로·하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협의

□ 무상귀속 협의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유재산법, 국토교통부 훈령 제491호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 30호(무상귀속 등 협의)
-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 경우, 위의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대상지가 국·공유지일 때 무상귀속 협의를 통해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도 공원·녹지 조성부지 이용가능
- 장기미집행시설(공원·녹지)의 해제 검토 시 국·공유지는 단계별조성 계획 시 1단계 대상으로 계획

4. 공원녹지현황과 사회여건과의 관련성 분석

□ 인천시의 범죄 발생

- 200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범죄 발생건은 90,314건/년
- 최근(2013년 대검찰청 범죄분석)년도 범죄 발생건은 93,723건/년 임
- 2006년 발생량과 2013년 발생량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3,409건이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별 현황은 총9개 범죄중 2개 항목에서는 감소하였고, 7개 항목 범죄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범죄 발생비교

- 2006년 대비 2013년 전국 범죄 발생 건은 약 10%가량 증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대 대도시의 범죄발생량을 비교하면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은 3번째로 높으며 총 발생률의 4.9~4.7%를 차지함

[표-372] 2006년대비 2013년 대도시 범죄 발생비교표

구분	2006년		2013년		비고
	건	%	건	%	
전국	1,829,211	100.0	2,006,682	100.0	
서울	342,343	18.7	368,566	18.4	
부산	119,353	6.5	133,624	6.7	
대구	84,581	4.6	96,186	4.8	
인천	90,314	4.9	93,723	4.7	
기타	1,192,620	65.2	1,314,583	65.5	

□ 인천시의 암환자 발생

- 인천시의 암환자는 200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5,196명/년 발생
- 최근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는 10,721명/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발생량과 2011년 발생량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암환자 5,525명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대도시 암환자 발생비교

- 2002년 대비 2011년 전국 암환자 발생 건수는 약 2배 증가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대 대도시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면,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은 4번째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편이며, 총 발생률의 4.5~4.9%를 차지함

[표-373] 2002년대비 2011년 대도시 암환자 발생비교표

구분	2002년		2011년		비고
	건	%	건	%	
전국	116,034	100.0	218,017	100.0	
서울	22,768	19.6	43,952	20.2	
부산	8,777	7.6	16,489	7.6	
대구	6,116	5.3	11,415	5.2	
인천	5,196	4.5	10,721	4.9	
기타	73,177	63.1	135,440	62.1	

□ 인천시 공원녹지 증감 현황

- 2008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면적은 9.51㎡/인, 2015년은 8.16㎡/인으로 나타나 7년 사이 1.35㎡/인 감소하였음
-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원 조성면적 감소

□ 공원녹지면적의 증감과 범죄, 암발생률과의 관련성 분석

- 7년 사이 공원녹지 조성면적은 1.35㎡/인이 감소하였고, 범죄발생 3,409건 증가, 암환자 발생은 5,525명 증가하였음
- 공원녹지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수목의 감소→대기정화능력의 감소』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한 인천시민의 육체적·정신적 보건여건에 영향을 미쳐 암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한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원녹지는 도시민에게 단순히 쾌적성과 여가선용의 장소 제공만의 의미가 아니라 도시민의 치안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요소 이므로 지속적인 조성·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공원녹지 조성을 해야 함
- 또한, 공원녹지의 증감이 범죄율, 암발생률 등에 미치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직접적 영향에 대한 별도의 검증 필요

5. 공개공지 이용 및 관리방안

□ 개념

- 공개공지란 ‘원래는 사유지였으나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시민대중이 항상 자유롭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토지 또는 공지’ 를 의미함

□ 이용 · 관리제도 문제점

-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공공간 조성방안 미비
- 공개공지사용의 비효율성
- 공개공지의 질 평가기준 부재

□ 위반행위

- 장애물 설치 : 출입방해목적으로 웬스, 울타리 등을 설치
- 시설훼손 : 파고라, 안내판, 미술장식품 등이 훼손되어 이용에 불편
- 무단점용 : 공개공간에 커피숍, 창고 등 타용도로 점용하여 이용



[그림-524] 영업장 사용(무단점용)



[그림-525] 천막 및 울타리 설치(이용제한)



[그림-526] 시설물(벤치) 훼손 후 분리수거함 설치



[그림-527] 상품판매장소로 사용

※ 출처 : 공개공지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왕승찬

□ 개선방안

- 공개공지 안내시설 설치 의무화
 -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식별성, 이용성을 높이고 타용도로 이용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
- 계획 · 조성 · 사후 관리를 위해 설치기준의 세부기준 마련
 - 공공옥외공간으로서 주변환경의 특성에 맞는 공개공지조성
 - 도시민의 휴식공간제공, 오픈스페이스 창출을 위한 의식 개선 · 제도개선과 지원필요
- 이용 · 관리의 지도점검과 위반 행위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마련
 - 공개공지의 불법점용, 시설훼손 등의 행위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일률적인 건축기준 완화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 보상방식의 용적률, 건폐율, 조세감면, 토지보상 등의 획일적인 기준적용은 공개공지의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임
 -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개선으로 부지에 적합한 공개공지의 조성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개선될 것임

[표-374] 국가별 공개공지 제도 및 관리기준 비교

구분	대한민국	미국	일본
관련 제도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제도,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조성 기준	인센티브 조닝제도에 의한 공개공지(POPS)제도	건축기준법에 근거한 총합설계 제도
규제 방식	의무적	선택적	선택적
적용 대상	건축연면적 5,000㎡ 이상	최소면적, 폭원 이상	유효공개공지율 최저한도, 부지면적 및 전면도로 폭원의 최저 제한
유형	없음	공공플라자, 블록통과 아케이드, 실내보행공간, 아케이드, 보도확장형, 건물입구 후퇴부, 코너 아케이드, 코너보행공간, 블록통과통로	보도상공지, 관통도로, 아트림 옴, 수변에 접한 공지, 광장상 공지, 필로티 및 인공지반
설치 기준	건축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 이내 (최저면적, 분할개수, 최소폭, 필로티 높이 제시)	유형별 설치기준 (최소면적, 분할개수, 폭원 및 길이, 필로티 높이 등)	유형별 설치기준(유형별 용도 지역에 따른 유효 공개공지율 최저한도와 최저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개공지 최소면적, 폭원 및 길이, 필로티 높이 등)
최소 면적	45㎡ 이상, 분할 2개소 이하	공공플라자의 경우 186㎡ 이상(실내보행공간, 블록통과통로는 그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100㎡ 이상 (주거지역 300㎡, 준공업지역은 200㎡ 이상)
보상 기준	공개공지 비율에 의한 획일적 보상(용적률, 높이제한)	유형별 차등보상 (공간면적당 기준)	유형별 차등보상 (공개공지 유형, 공개공지의 질, 부지규모, 녹화면적 등)

※ 출처 : 공개공지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양숙찬 2012)

3] 공원녹지 이용계획

1. 기본방향

- 공원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공원녹지의 활용상태 및 프로그램, 미래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이용프로그램을 수립함
- 공원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 및 참여 프로그램의 수립
-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자율적 프로그램의 개발 유도

[표-375] 공원녹지 이용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내 용
이용활성화계획	1.편리한 이동, 다양한 볼거리 시설 확충	•자전거 전용도로, Rail Bike, Cable Car, 모노레일
	2.다양한 편익시설 수준개선	•주요공원 정상부근에 전망대 공간 확충 •판매시설 수준향상 및 통일된 디자인, 깨끗한 환경 개선
	3.공원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공원 및 수목원 관람료 징수
자연생태교육	1.자연생태 교육 및 인천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성이 뛰어난 모든 공원 •자연해설, 식물분류, 숲 생태체험, 자연식물 공예 강연 등
	2.자원봉사 자연 해설가 육성 및 활동 지원	•모든 자연 생태 교육 공원 •인근 시민 자생활동 단체육성, 자연해설 전문 교육 실시 등
	3.해안생태 답사 코스	•왕산공원, 무의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 백령도 •해양 탐험 코스, 갯벌 생태 체험
축제개발	1.자연문화축제	•계양공원, 원적산공원, 호봉공원, 약사공원, 인천대공원 •자연문화체험, 자연과 하나되기, 자연문화 공연, 겨울 눈꽃 축제
	2.비류 전통 문화 축제	•문학공원, 청량공원 •인천 선사문화체험, 삼국시대 문화체험(의복문화) •여름(6~8월 중)
	3.근대 역사 문화 축제	•월미공원, 청량공원, 북산공원 •전통 근대문화체험, 근대문화공연 •가을(9~10월 중)
	4.IFEZ HURB 축제	•송도 신도시 공원 •첨단 IT산업 문화체험, 현대문화공연 •여름(8월 중)
상설공연문화 프로그램	1.음악 공연 프로그램	•도시공원 •현악기연주, 관현악기연주, LIVE노래공연, 전통악기공연, 통기타 연주 등
	2.미술 문화 체험 교실 운영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서예 체험, 노후된 공원시설 함께 색칠하기
	3.각종 연극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공원 •마임, 동물쇼, 토막연기, 야외 연극 등

2. 공원이용 프로그램 계획



[그림-528] 유형별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념도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과 하나되는 휴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함
- 참여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들과 차별화시키고 각공원의 지역성, 주민 선호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교육형, 체험형, 운동레저형, 공연문화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형에는 산림, 식물, 습지 등에 이루어 질수 있는 자연문화를 교육하며 자연식품공예, 곤충교실 등을 운영함. 체험형에는 숲, 습지, 전통서예, 한지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함. 운동레저형에는 숲속마라톤, 산악자전거, 해저탐험, 해안승마 등이 있으며 공연문화형에는 전통악기공연, 바다음악회, 야외연극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표-376] 유형별 프로그램

구분	프 로 그 램 내 용					
교육						
	산림생태교실	식물현장학습	습지생태 학습	자연식물공예	곤충교실	숲속문화여행
체험						
	숲생태체험	습지생태체험	환경교실운영	서예체험	노후된공원 색칠하기	한지체험
운동레저						
	숲속마라톤	산악자전거	해저탐험교실	해양관광코스	갯벌생태체험	해안승마체험
공연문화						
	전통악기공연	노래경연대회	바다음악회	마임, 토막연기	매직쇼	야외연극

2) 유형별 주요 이용프로그램

가. 교육형 프로그램

□ 산림생태교실

- 목적 :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자연생태교실을 운영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방학기간 중 직접 체험위주의 자연학습으로 자연사랑, 환경사랑 의식 고취 및 학습기회를 제공함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학습내용 : 숲속견학, 나무와 초화류 관찰, 습지식물 관찰 등

□ 곤충교실

- 목적 : 곤충에 대한 다양한 이론교육과 곤충표본 교육 및 숲속에서 곤충을 직접 체험학습 위주 교육으로 어린이의 곤충에 대한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함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학습내용 : 곤충에 대한 이론교육, 표본교육, 곤충 찾기 현장교육 등

□ 습지 생태학습

- 목적 : 호수, 하천 개울 등의 습지를 직접 관찰하면서 습지 내에 서식하는 식물과 물고기 등의 동물을 관찰하여 도시의 어린이에게 습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학습내용 : 습지에 대한 이론, 습지에 사는 식물, 습지 동물 등

□ 숲속 문화여행 프로그램

- 목적 :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숲속을 여행하면서 자연생태교육 및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자연사랑 지역사랑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
- 대상 : 어린이, 부모 등 가족
- 학습내용 : 숲 해설사와 함께 숲길여행, 식물알기, 역사문화알기 등

□ 식물현장학습

- 목적 : 숲속의 식물관찰, 곤충관찰, 조류관찰, 습지식물, 약초식물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교육을 함으로써 환경사랑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
- 대상 : 어린이와 가족
- 학습내용 : 나무, 꽃 등 식물관찰, 곤충교육, 조류교육 등 자연환경 교육

□ 그 밖의 학습 프로그램

- 유아 생태교실, 수목원 탐방교실, 녹색 꿈 교실, 허브교실, 공원자연탐사교실, 주말가족 생태교실, 수생식물관찰교실, 하늘교실, 휴양림탐사 교실 등

나. 체험형 프로그램

□ 환경교실운영

- 목적 :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나무에 대한 이론 및 수목원, 숲속에서 나무에 대한 현장 체험교육으로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사랑에 대한 인식 고취시킴
- 대상 : 유치원생, 어린이
- 체험내용 : 나무이름알기, 나무로 만들기 등

□ 우리꽃 알기 교실

- 목적 :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우리 꽃에 대한 이론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교육시키고 자연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체험내용 : 우리꽃에 대한 이론교육, 야생화원견학, 꽃 이름알기 등

□ 숲생태체험

- 목적 : 숲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식물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체험을 하여 나무의 용도를 알고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함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체험내용 : 나무나 식물 등의 소재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학습

□ 환경교실 운영

- 목적 :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숲속을 거닐면서 식물, 곤충, 조류 등 숲속에서 사는 동식물과 별자리 보기 등 체험교육으로 자연사랑 의식 고취시킴
- 대상 : 어린이와 가족 등
- 체험내용 : 숲속에 있는 식물과 동물 알기 및 별자리보기 등 자연체험학습

□ 전통문화체험

- 목적 : 서예,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통한 체험학습으로 우리민족의 옛 문화 체험교육을 시행함
- 대상 : 전 연령층
- 체험내용 : 서예, 한지공예 등 체험학습

□ 아토피 산림욕체험교실

- 목적 :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 아토피 및 각종 피부병 치료와 함께 삼림욕장 등 여가 활동을 제공함
- 대상 : 어린이와 가족 등
- 체험내용 : 아토피 삼림욕 체험(숙박, 찜질방, 취사시설 등)

□ 그 밖의 학습 프로그램

- 노후된 공원 색칠하기, 풀잎으로 곤충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식물인형 만들기, 숲속 공작교실, 식물표본 만들기, 식물재배체험교실 등

다. 운동·레저형 프로그램

□ 숲속 마라톤 대회

- 목적 : S자 녹지축을 이용하여 산악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최고의 산악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코스개발, 편익시설확충,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산악마라톤 대회를 추진함
- 대상 : 전 연령층
- 체험내용 : 시민건강 챙기기, 인천광역시 마라톤 코스의 상품화 등

□ 산악 자전거

- 목적 : 숲속의 나대지를 이용하여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여 숲속 테마운동을 운영함
- 대상 : 동호인 및 일반인(초급, 중급, 상급)
- 체험내용 :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직선로와 굴곡이 골고루 섞인 산악 능선을 자전거를 타고 질주함

□ 해저탐험교실

- 목적 : 용유관광단지·무의도 등 서해안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해저를 탐험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대상 : 동호인 및 일반인(초급, 중급, 상급)
- 체험내용 : 해저어류관찰, 스킨스쿠버 육성 교육 등

□ 해양관광코스

- 목적 : 모도, 시도, 선도 등 다양한 아름다운 섬들이 위치하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유람선 섬관광 일주 등 세계적인 명소·관광사업으로 유지함
- 대상 : 전국민, 외국인
- 체험내용 : 섬관광 일주, 관광여행 가이드 육성 등

□ 갯벌생태체험

- 목적 : 생태천연자원의 보고인 갯벌에서 생육하는 생물들을 직접 잡아보고 도시의 어린이에게 갯벌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가족 등
- 체험내용 : 갯벌 습지 내 생물 관찰 및 채취

□ 해안 승마 탐험

- 목적 : 일몰을 바라보며 해안가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레저 프로그램 개발
- 대상 : 동호인 및 일반인(초급, 중급, 상급)
- 체험내용 : 승마 체험교실

그 밖의 운동·레저 프로그램

- 인라인교실, 길거리 농구대회, 길거리 족구대회, 풋살대회 등

라. 공연문화형 프로그램

전통악기공연

- 목적 : 역사적 유물 및 장소가 많은 인천의 명소 및 공원에서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알리는 공연 프로그램 유지
- 대상 : 전 연령층

노래경연대회

- 목적 : 지역별 시민들의 유대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 구를 대표하는 공원에서 유지함
- 대상 : 전 연령층
- 체험내용 : 공원내 야외무대에서 무대 설치

바다음악회

- 목적 : 바다로 열려있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여러 장르의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음악회 개최
- 대상 : 전국민, 외국인
- 체험내용 : 송도지구 및 청라지구내 공원에서ダイナミック한 음악감상

매직쇼, 마임·토막연기, 야외연극

- 목적 : 소규모 공연장에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연행사를 개최
- 대상 : 전 연령층

역사탐방교실

- 목적 : 지역 역사자원의 탐방 및 체험으로 선조들의 얼을 계승하고 향토 애향심을 고취 시킴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 체험내용 : 궁중무용, 탈춤, 줄타기 등의 역사공연 및 한지공예, 엽전만들기 등의 전통 문화 체험 등

그 밖의 공연문화 프로그램

- 숲속의 백일장, 미술전시회, 마임·토막연기, 매직쇼, 야외연극 등

4 주민참여 계획

- 공원녹지 기능의 복합화·다양화에 따른 주민참여 기회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주민참여와 협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

1. 나무은행 활성화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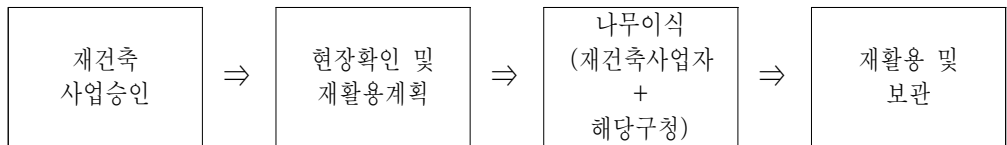
- 재건축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장수목 중 활용 가능한 나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각종 조경사업에 재활용
- 자연소재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나무 보호의식 고취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 수목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 유지관리의 민간지원 등

□ 추진방안

- 나무은행 운영절차



- 보호관리대상 수목

- 재건축, 각종건설공사 등으로 훼손되게 된 나무
- 공사기간 중으로 일시적 이식 후 재식 하여야 할 나무 등

- 운영방법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정 운영
- 시(군, 구)에 기증할 경우에는 시비(군, 구)부담 이식/복부공원사업소, 관할군·구
- 조경수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처분 유도 등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연중 지속 운영
- 운영주관 : 시(북부공원사업소), 군·구
- 해당구역내 건설공사 사업승인 신청이 있을 시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수목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굴취, 운반, 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 대상 : 재건축, 재개발, 각종 건설공사 등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

2. 시민의 숲 조성 관리

- 산림청에서 국민의 숲이라는 주제 아래 각종 숲조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 시민의 숲은 학교, 기관, 기업, 단체, 동호회 등이 참여하여 산림과 숲의 조성, 나무가꾸기 행사를 통해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 개인 또는 시민단체, 기업의 조성 · 관리 사업을 육성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안

[표-377] 시민의 숲 조성참여 유형

구분	내용	공공의 역할	비고
단체의 숲	학교, 기관, 기업 등 관할 내 단체와 국공유지 및 인천시, 자치구관할 유휴공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숲을 조성 숲의 관리, 청소, 비료주기 등 역할분담 이행 단체, 기업의 홍보를 위한 표지판 설치, 단체의 행사시 대상부지 임대활용 혜택부여	국·공유림 대상을 선별하여 관할 내 단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숲 조성 유치	
스타숲	팬클럽, 개인 등이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숲조성을 위한 대상지를 제공하는 방식 대상지는 기존의 공원 부지 일부나 나대지, 도심의 자투리땅, 산림지역 중 수목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제공	지자체 공유림 및 도시공원, 녹지 등을 선별하여 대상지 제공	
가족숲 동네숲	민간에서는 가족 단위, 동네주민 등이 수목기부, 기금조성 숲이 조성되면 관리 등의 역할분담도 이행	대상지(기존공원 내 녹지, 미조성 시설녹지, 공지 등 수목 식재나 식재보완이 필요한 지역 등)를 선별하여 제공	

3. Adopt-Greens 제도

- 시민과 기업이 입양하여 관리하는 ‘Adopt Greens’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참여로 가꾸어지는 가로환경 및 공원 관리
- 시민, 단체 등이 가로수 및 피녹지 수목 및 공원을 입양하여 관리. 참여시민, 단체 등에게 청소물품, 쓰레기봉투 등 지원, 노인일자리 임금 등
- 사례 : 서울시 가로수 돌보미(2012년), 공원 돌보미 시범사업(2013년)



4. 시민관리위원회

□ 개요

- 자치구 동단위 동네 시설녹지, 자투리녹지, 쌈지공원, 소공원 등 소규모 단위의 녹지를 시민이 직접관리
- 관리활동에 필요한 기술자문, 기본비용을 공공기관에서 지원
- 시민단체 중 수목식재, 전정, 텃밭가꾸기 등 기술지식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강좌, 상담 등의 프로그램 마련하여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관리계획 활성화 도모
- 유사사례 : 푸른인천가꾸기 운동본부에서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가드너 교육을 실시

□ 활동 아이템 제안

- 공동주택 커뮤니티 가든, 녹지화단 만들기
 - 시민단체 : 전문가 강좌
 - 공동주택 주민 : 활동 참여자
 - 공공기관 : 프로그램 마련, 홍보, 전문가 초빙, 참여자 모집 등
- 단독주택지 골목길 녹화
 - 시민단체 : 전문가 강좌, 전문업체와 연계로 시범조성, 정기적 관리기술 조언
 - 단독주택 주민 : 활동 참여자
 - 공공기관 : 프로그램 마련, 단체와 개인의 연결, 기술자문, 행정자문 등
-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 시민단체 : 전문가 강좌, 전문업체와 연계로 시범조성, 정기적 관리기술 조언
 - 주민 : 활동 참여자
 - 공공기관 : 유휴공지, 유휴농지, 옥상텃밭조성 가능 대상지 선별, 행정지원, 단체와 개인의 연결, 기술, 자본 지원 등

[그림-529] 시민관리위원회 활동아이템 제시



5. 녹지실명 관리

□ 기본방향

- 녹지대, 가로수, 공원 등을 각종단체, 회사, 학교 등에서 자발적으로 실명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재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녹지의 중요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유도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13조, 제14조
 - － 녹지 실명관리 및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보상 등

□ 추진방향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녹지관리 기반조성
- 녹지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대상 가로수, 공원, 녹지대 및 쉼터 선정
- 실명관리 대상 사업
- 군·구별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홍보지 등에 적극 홍보
- 관내 학교·기업·단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13조, 제14조 의한 비료 등 관리자재(기구, 쓰레기 봉투 등) 비용지원 및 학생봉사활동 시간인정
- 전년도 녹지실명관리에 참여한 단체 지속관리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참여내역, 활동사항 등 추진실적 11월 31일 까지 제출(서식별도)

6. 큰 나무 등록관리

□ 기본방향

-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의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크기·군락을 이루고 있는 수목의 등록관리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 －큰나무 등록관리 및 유지관리비의 지원 등

□ 추진방안

- 조사 및 유지관리
 - －조사대상 : 공원, 가로녹지, 쉼터와 개인소유 및 국·공유지의 흉고직경 50cm이상 수목 및 자생수목 군락지 200㎡ 이상
 - ※ 위 규격 이하의 나무도 수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종 조사·등록
 - －유지관리
 - 시비 : 년1회 이상(유기질비료 또는 산림용고형복비)
 - 병충해방제 : 수시 예찰로 적기 방제
- 관리대장 등록 : 반드시 내부방침을 득한 후 대장에 등록
- 큰나무로 등록된 나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비 등 지원

□ 큰나무 조사요령 및 군구별 등록현황

- 조사지역 및 대상 확대
 - －전통 있는 학교, 종교시설, 마을입구, 정자목 등
 - －흉고직경 50cm이하의 수목이라도 보전가치가 있거나 희귀성이 있는 0형 관·교목 및 자생군락지
 - －향토수종이 아니라도 도심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대형목
- 군·구별 큰나무등록 현황

(단위 :개소)

[표-378] 군·구별 큰나무등록 현황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개소	140	4	17	17	19	12	3	6	7	45	10

7. 시민녹화상담실

□ 기본방향

- 식수기간 중 녹화상담, 기술지원 및 민간단체의 나무심기 참가 안내를 통하여 범시민 식수운동의 내실 있는 지원
- 나무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유지원, 초·중·고교생 등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운영

□ 시민녹화 상담실 및 녹화교실

- ① 설치대상
 - 시민녹화상담실
 - 시(공원녹지과), 공원사업소(동부, 서부, 북부), 군·구
 - 녹화교실
 - 시민녹화교실 3개소 운영(동부, 서부, 북부 공원사업소)
- ② 설치기간 및 주요임무
 - 설치기간 : 1월~12월
 - 주요임무
 - 시민녹화 상담실
 - 나무심기 참여 홍보, 식재 장소 등을 안내
 - 녹화기술상담, 수종선택, 묘목 알선 및 지원 등
 - 녹화교실
 - 나무교실,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나무심기운동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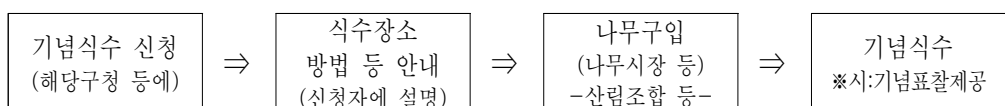
8. 시민 기념식수 활성화

□ 기본방향

- 나무심기 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생, 입학, 졸업, 결혼, 승진 등 기념일 등 식재를 적극 권장
- 기념 식수자에 대하여는 나무를 심은 뜻 깊은 사연을 표찰로 달아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진계획

- 시·군·구별로 기념식수 동산을 지정하여 운영함
- 시민이 기념식수를 원할 경우 시민녹화상담실에 문의하도록 사전 홍보하고 녹화상담실에서 식재장소, 수종 및 규격을 선정, 알선하여 시민 기념식수 절차를 안내함



9.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기존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담장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도심권의 공공성 녹지 확충
- 시민 자율 참여확산으로 이웃간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주민 화합 분위기 고양과 푸른 도시 창출에 기여함

□ 추진방향

-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
 -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경관 장애용 담장없애기”, “담장대신 나무심기”
- 담장철거 및 조경사업비 시비지원으로 자율참여 유도

□ 추진계획

- 다중성건축물, 개인주택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지원
- 전년도 신청 대상지중 현지 실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사업대상지별 신청 물량 등을 감안한 구별 균형 배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 상반기 중점사업으로 시행
 - ※ 2008 사업 신청자중 우선사업 대상지를 각 구별로 선정하고 대상지 확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31조
- 보조금 지원
 - 담장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 전액 지원
 - 조경사업비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 지원(자부담 30%)
 - 단독주택 : 1개소당 조경사업비 500만원 범위
 - 다중성 건물 : 1개소당 조경사업비 2,000만원 범위
 - ※ 사업물량에 따라 지원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을 주관 시행할 민간이 참여하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1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 · 녹지

□ 개요

- 공원 · 녹지의 계획, 조성, 이용 및 관리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시민참여 활성화 및 주인의식 고취를 통해 공원녹지의 자발적 이용 · 관리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가 가능

□ 기본방향

- 계획, 조성, 이용 · 관리 단계별 시민참여 방안 마련
- 시민참여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공원이용률 증대, 시설 내구성 증대 도모
- 학생, 기업, 고령자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유도
-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 부지선정 단계

- 시민기금조성운동 : 시민단체에서 (공유지, 공공시설 이전지 등을 공원화) 시민기금조성 운동을 개최하여 대상지를 홍보하고 기금 조성
- 생활권주변 틈마다 초록 녹지 시민공모 : 녹화 사업지를 공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상지에 녹지를 조성

□ 계획 단계

- 공원 · 녹지 명칭 및 주제 공모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계획에 반영, 공원조성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지역역사, 향토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활용
- 기업참여형 가든사업 : 기업이 직 · 간접으로 공원이나 녹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거나,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 스폰서는 자신의 회사광고를 시행할 수 있음. 기업에서는 재정지원으로 공원 · 녹지 조성에 참여. 시민또는 시민단체는 직접 녹화사업에 참여. 장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조성 단계

- 시민기념식수 : 시민기념식수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식수하는 수목으로 공원 · 녹지 조성하고, 기증자의 이름과 사연을 표찰로 달기

- 시민감리단 운영 : 공원·녹지 조성 중에 생기는 일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녹화상담실 : 시민녹화상담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원·녹지 조성시 녹화상담, 기술지원 및 민간단체 나무심기 참가 안내를 통해 시민기념식수의 내실 있는 지원하고, 유치원, 초·중·고교생 등에게 홍보 및 체험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이용 및 관리단계

- 우리마을 공원가꾸기 : 마을 공원 내 잡초제거, 수목관리, 가로화분관리 등을 직접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마을단위 기본적인 공원·녹지관리체계를 구축함
- 동호회·시민단체 활동전개 : 시민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역단체의 공원·녹지관리 리더역할을 수행토록 조직

시민, 자원봉사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공원·녹지관리 리더역할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

[표-379]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녹지의 시민참여 방안

구분	시민참여 방안	
부지선정 단계	시민기금조성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에서 시민기금조성운동개최로 공원·녹지 조성대상지 홍보, 기금조성
	틈마다 초록 녹지 시민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정하고 조성
계획단계	공원·녹지 명칭 및 주제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지역 시민의 아이디어, 지역역사, 향토성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공원·녹지 조성
	기업참여형 가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공원·녹지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공하거나 관리에 참여 • 기업은 자신의 회사광고를 시행
조성단계	시민기념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념식수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나무로 녹지조성하고 기증자의 이름과 사연을 표찰로 달기
	시민감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조성의 모니터링
	시민녹화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녹화상담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나무심기참가 및 기술지원, 학생들의 나무가꾸기 등 체험 및 홍보
이용 및 관리단계	우리마을 공원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원이나 녹지의 잡초제거, 수목관리, 가로화분관리 등을 직접운영. 최종적으로 마을단위 공원녹지관리체계 구축
	동호회·시민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자원봉사자(학생 등)를 대상으로 교육. 지역단체의 공원·녹지관리 리더역할을 수행토록 양성

11. 시민참여의 통합관리 (시민관리 통합 웹사이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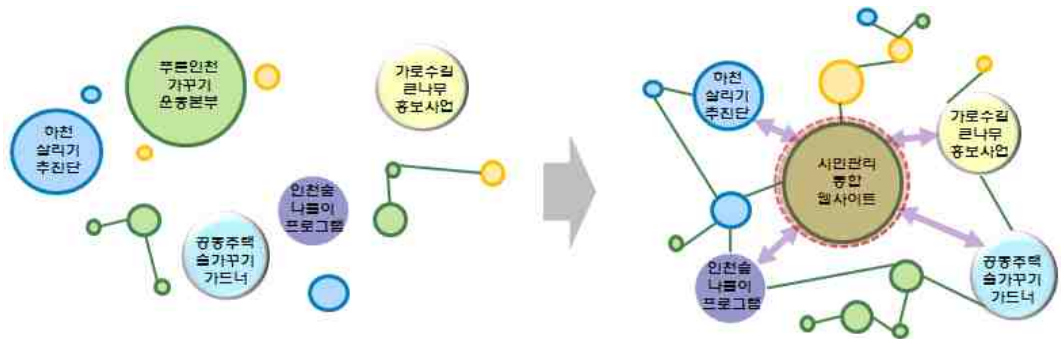
□ 개요

-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용관리제도, 공원별 이용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들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조직화 하여 정보교류, 각 세부업무의 전문화, 지역별 교류 문화행사 연계 등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방안

- 마을단위, 구 단위의 통합 웹사이트 운영으로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제, 계절별, 대상지별 이용·관리 메뉴얼 공유, 관리 실명제 운영
- 녹색연합, 하천살리기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시민단체와의 연동을 통해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으로 자원봉사 및 체험 활동인력의 질적 향상
- 공동주택 내 녹화관리 교육, 학생 자원봉사 대상지 찾기, 강습 및 교육, 체험과 같이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 관리와 이용 체계를 수립 추진

[그림-530] 시민관리 통합 웹사이트 운영



[표-380] 통합 웹사이트 운영내용

구분	내용
시민단체 네트워크 형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640개의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형성 • 자연보호, 주변환경개선, 하천살리기 등을 주제로 운영 중 • 활동내용은 숲가꾸기, 큰나무 홍보, 하천살리기운동 등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합·연계·운영하는 웹사이트 구축 • 개인 및 단체 간 정보교류, 교육, 체험, 일반자원봉사, 학생자원봉사, 공공근로 등 수요와 공급을 조절 • 지역축제, 마을공원 문화행사, 지역하천 문화이벤트, 가로수 열매채취 축제 등의 홍보, 참여, 관리이용 매뉴얼화 • 시민자치 관리이용체계 구축, 시민기금 조성 • 민관 공동운영체제에서 차츰 민간주도형으로 변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연계 및 자원봉사자 통합운용 프로그램 마련으로 부족한 인력의 합리적 활용 • 계절별, 시기별 선택적 관리운영, 기술지원 및 보급 교육 •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를 통해 시민요구도에 기여

II. 추진 및 투자계획

1] 단계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세부계획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함
- 공원녹지의 적정수량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분배함
- 목표연도 2030년까지 크게 4단계, 1단계(2016~2018), 2-1단계(2019~2020), 2-2단계(2021~2025), 2026년 이후로 나누어 시행함.
- 1단계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시키며 도시관리계획을 수행함
- 2단계에는 신규공원 및 녹지확충을 위한 제도적 행정절차를 수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우선시행하며 신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장기적으로 공원녹지 체계가 완성되도록 예산에 따른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주녹지축, 거점공원, 생활권 공원 연결, 녹지네트워크 골격을 완성해 나아감

[표-381] 단계별 공원녹지 추진계획

단 계	목 표	주 요 추 진 내 용
1단계 (2016~2018)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수립, 공원녹지 행정 및 제도정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의 이행완료 •도시공원녹지의 재편 및 균형 배치
2-1단계 (2019~2020)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에 따른 법정 공원 및 녹지의 정비 •신규공원 및 녹지의 조성 •세부계획 부서별 시행방안 수립
2-2단계 (2021~2025)	장기미집행 공원의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공원 및 녹지의 단계별 정비 •재정적 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우선순위 조성 •민간사업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2026년 이후	공원녹지 체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활용계획에 의한 공원녹지 조성 •민간공원의 활성화

2. 자원조달계획

- 적정 투자비의 산정과 단계별 개발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함
-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에 의한 투자를 선행하도록 함

1. 사업추진방식 검토

- 개발방식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개발방식(제1섹터 방식), 민간개발방식(제2섹터 방식),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제3섹터 방식), 공공과 주민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제4섹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개발 방식에는 전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 민간부분투자자와 사업자 선정 등과 같은 기획 기능과 공공투자 사업의 시행,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기반시설의 조성 등과 같은 집행 기능 계획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임
- 민간개발 방식에서는 공공부문 및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함
-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방식은 이들이 공동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써 초기 투자비의 부담과 개발어려움을 최소화 시켜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방식임
- 공공과 주민의 공동개발방식은 주로 녹화계획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주민을 참여하며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등 제도적 방안을 수행함

[표-382] 사업추진방식

구분	내용	합계
공공개발방식 (제1섹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도의 개발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주체) •국가·지자체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 	일반적 공원조성방식, 지자체 투자비 과다
민간개발방식 (제2섹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주도(기업 또는 개인)의 개발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 수익성 위주의 시설을 개발 •테마파크 등 	다남동 근린공원
공공+민간개발방식 (제3섹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공공공간이 민간주체와 공동투자(BTL, BTO 등) •초기 투자비의 부담과 개발어려움을 최소화 시켜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방식 •대규모 사업에서 장시간에 걸쳐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는 대형사업에 적합한 개발방식 	테마파크 등 신규공원 조성시
공공+주민개발방식 (제4섹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식 •개발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한 지주 공동 개발 방식에 유용 	일반녹화 사업추진 녹화계약, 녹지협정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표-383] 사업추진별 주요특성1

구분	공공개발(제1섹터)	민간개발(제2섹터)
개발주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복리증진 등 공공성 확보가 선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통제 가능 •국민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자연보호, 환경보존 및 공익성 등 공공적인 측면 강조 •재원발굴/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능 •공공재 및 준공공재에 대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및 운영관리에 민간기업의 축적된 기법 활용가능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독점 가능 •개발자금의 조달 및 투자방법을 수지타산에 맞추어 진행하거나 결정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규모가 클 경우, 투자재원 조달과 효율적인 경영의 어려움 •경영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 유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위한 자연보호 또는 환경보존과 같은 비영리적인 분야에 투자 소홀

[표-384] 사업추진별 주요특성2

구분	제 3 섹 터	
	공공법인(지방공사, 재단, 사단)	영리법인(주식회사)
개발주체	공공출자 50%이상, 민간출자 50% 미만	공공출자 50%미만, 민간출자 50% 이상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개발추진과 관리 운영을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개발 추진 및 관리 운영을 개발 독립법인이 주도하는 방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을 담로함으로써 민간부문 투자의 안정성 보장 •공공이 기반시설들의 우선개발을 통해 사업환경 여건을 개선한 후 민간사업자 유치 유도 •전체계획의 완성도 제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에 고수익성 중심시설을 개발하여 투자수익성 향상으로 투자의 안정성 확보 •민간의 경영자율권 보장 -급속히 변화하는 수요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소비자만족에 따른 수익성 향상 도모 •신속한 사업추진의 전개 •경영능력 및 전문성 확보 : 사업능력발휘의 극대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히 변화하는 수요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문제 :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영 추진의 어려움 내제 •경영능력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경영상의 문제점 : 인사(지방단체장의 권한) 및 예산편성(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사업자의 공공시설 투자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투자유치의 제약 내제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의 장기화

가.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방안

- 공원시설 중 그 시설의 이용내용이 공공성이 결여되는 상업 등의 영리목적사업인 경우, 민간사업과의 투자의향서에 의한 사업양해각서 체결 등 혹은 공공개발 후 임대운영 방식에 의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함
- 특히, 민간자본이 대규모 출자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역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공원사업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해 선 조치토록 하여, 지역사업의 지역내 환원이라는 경제논리와 부합되며 민원해소에 기여토록함
- 아울러, 지역내 상호단체 등이 조합 등을 통해 사업의 참여방안도 민간자본참여자의 결정에 의해 투자의향서 제출시 적극적으로 사업의 시행을 검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민간사업을 유도함

나. 토지보상 및 이주방안

-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약 70% 이상이 사유지로서 매입에 대하여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헌법상의 개인 재산권침해로 실제 토지주는 매년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세의 감면 등 아무런 혜택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토지의 연차적인 매입방안 수립과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특히 해당공원 관리청장의 매입의지가 중요할 것임
- 이에 본 공원계획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아래 년차별 사유지 매입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시설 도입지역의 사유지화 계획으로, 공원사업의 년차별 집행시 사유지의 매입을 선 추진하고, 도시공원법상의 매수청구시 적극적으로 매입토록함
- 하지만 이러한 개인사유지의 매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수립 등이 선시행됨이 타당하고, 매입자금의 부족시 계획목표에 부합되지 못할 수도 있음

2.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조달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비(인천광역시) 재원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예측하여 적극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함
- 공공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고 민간부분은 권역내·외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공부분 중 국가재원으로부터 재원조달은 국고보조금으로 조달하며, 지방재원으로부터의 조달은 시의 자체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함
- 민간부분은 권역내·외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으로 분류할 수 있음. 민간부분으로부터의 재원확보는 권역 내·외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단위사업 투자에 따른 기업의 편익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내 주민이 투자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재원확보의 효율성을 기함
- 아울러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등 제도를 마련함

[표-385] 재원조달방안

구 분		조 달 부 문	조 달 방 식
공공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정부투자기관의 직접투자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정부 투자기관 •관광진흥 개발기금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 -특별회계 -직영사업 활성화 -자체 공원조성 기금조성 -각종 기금과 연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적 일반재정 투자 -토지공개념 적용 -지방채 발행 -공영개발사업단 운영 -국민투자기금 융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내·외 민간기업의 수익환원, 홍보차원에서의 공원조성, 기부채납 •테마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지방기업
지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내 지역주민, 주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기부 •현물출자 •공동출자

1) 공공재원 조달

가. 공공재원 조달

- 중앙정부 예산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공공시설 등 수익성이 없는 공익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이 달라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원활한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교부금임

나. 지방재원

- 지방정부로부터 활용 가능한 재원은 자체기금조성,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음

[표-386] 공공재원 조달방안

구 분	내 용
시 재원 확대 및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통한 시 자체 재원의 활용	•투자심사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본 계획과 부합하는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투자 주체가 공공인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하여 수익금을 재투자함

2) 민간자본 조달

- 민간으로부터 자원조달은 지방공기업과 개인투자자 유치, 프로젝트 금융방식, 부동산투자신탁방식, 자산유동화 방식 등이 있음

[표-387] 민간자본 조달방안

구 분	내 용
지방공기업 유치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참여
개인투자자 유치	•대기업에서 사업 주도하여 분양
프로젝트 금융방식	•특정 프로젝트부터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부동산 투자신탁 방식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 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 등으로 운영
자산유동화 방식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 유동성 자산을 집합화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가. 민간부분 자원조달 방안

- 공원사업 민간개발시 또는 공원시설사업의 민간참여시 시행 가능
- 민간부분의 투자재원은 그 투자대상사업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행정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민간부분이 주도하여 투자해야 할 사업은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투자재원의 종류는 기업체의 자원, 소유자의 자원, 협회나 조합 등의 투자재원이 이에 해당함
- 금융 및 세제지원
-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세 중 지방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일정수준의 감면조치로 민간의 투자욕을 고취시키도록 함
- 투자준비금의 손익사업 및 사업용 재산의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토지매입, 시설자금융자, 신용보증, 융자금의 저금리화 등 용자조건외 완화로 통해 지원함

나. 내셔널 트러스트

-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 내셔널트러스트는 널리 국민으로부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이나 역사적 환경을 기증 받거나 또는 기부금 모집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보존·관리·공개하는 사회적 운동조직을 말함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토지소유권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금은 영국을 비롯하여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 24개국으로 확산됨
-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1907년 내셔널트러스트 법 제정,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 뿌리깊은 기부문화 등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
 -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연간예산은 약 3,000억원 정도로 이중 30%는 회원 1인당 15파운드인 연회비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소유지내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금과 기념품 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충당함
 -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내셔널트러스트의 회원들은 휴가철에 내셔널트러스트의 영지를 찾아가 여가를 보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콘도미니엄의 회원권과 유사하지만, 이 경우엔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고 회원들도 청명한 자연을 즐기는 수준이지 유흥을 즐기지는 않음
 - 또한 내셔널트러스트의 회원들은 환경보전정책 결정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회적 NGO의 역할을 담당함
-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도입되었으며 개별 운동조직의 연대조직으로 『내셔널트러스트를 추진하는 전국의 모임』이 결성됨으로써 활성화됨

- 세제개정을 통해 내셔널트러스트 법인으로 인정된 조직에 기부를 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고, 상속재산을 내셔널트러스트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를 비과세 처리하여 주는 세제혜택이 주어짐으로써 내셔널트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일반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전개되고 있는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와 달리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경우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간 문화적 차이에 의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도 다양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부동산 매입을 위한 기부금을 많이 모으더라도 그것으로 목표하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가깝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내셔널트러스트 단체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보존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고정자산비용 등에 걸 맞는 금액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기간 그 부동산의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함

○ 우리나라의 내셔널 트러스트

-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는 최근 들어서 그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됨
-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최근 들어서야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개발위주의 경제정책 운영, 자연환경 및 문화유적 보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부족, 기부문화의 미발달 등이 그 원인임
- 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신도시 난개발, 서해안 갯벌의 파괴, 영월 동강댐 건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면서 일부 환경단체와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전개됨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본부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보존자산은 없으나 강원 영월군 동강, 광주 무등산, 충남 천리포 수목원, 강화도 매화마을 군락지, 서해안 갯벌, 서울 둔촌동 습지 등을 대상후보지로 선정하고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함
-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국과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법과 제도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첫째,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법』 과 같이 내셔널트러스트를 법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제정이 검토되어야 하거나 현행 신탁법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기부금과 부동산 기증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셋째, 내셔널트러스트의 구체적 운영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영국의 경우 내셔널트러스트의 역사가 오래되어 사회제도로써 견고한 운영체계를 갖추었고 폭넓고 자발적인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소유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도 확보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도 일반국민 및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내셔널트러스트의 운영체계가 점차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내셔널트러스트가 일부 시민단체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나, 소유부동산의 관리·운영·공개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어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회사인 부동산 신탁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프로그램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투자계획

1. 투자계획의 기본방향

1) 적정투자계획의 수립

- 투자의 주체, 단계별 사업의 시행, 공간별 혹은 시설별 사업 집행 등 우선순위 및 개발 목표 등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객의 이용 효율을 도모하고, 편익성을 증대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 공공 및 민간에 대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함

2) 단계별 투자계획의 수립

- 공원시설, 집단시설지구 등 각각의 개별 사업의 상호 연관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단계별로 적정 투자규모를 파악, 계획을 수립함
- 민간유치가능시설로 계획된 사업의 조기 사업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부분의 사업을 조기에 투자하도록 하며, 연간 예산 범위내의 투자계획을 수립함

3) 공원개발의 역기능 최소화

- 사유지내 공원개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되고 지역민의 집단적인 반발 등이 우려 됨에 공원개발 및 재정비 등 주민보상대책과 단계별 보상방안 수립 등을 계획함
- 공원시설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 환경의 피해는 그 피해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토록 하면서, 친자연적 소재 등의 사용으로, 도시내 자연경관인 공원 및 녹지의 보전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4) 투자방식의 검토

- 투자의 방식에는 공영개발 방식과 민간투자방식, 그리고 기업 경영 방식인 제3섹타 개발 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단독개발 혹은 합동 개발 방식에 의한 분류임
- 단독개발 방식과 합동개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단독개발 방식은 개발과 경영의 일원화로 사업추진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반면 합동 개발방식은 상호 경험 및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고, 자금조달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익성이 저하될 수 있고, 경영의 다원화로 사후 경영이 경직될 소지가 있음

2. 단계별 투자계획

- 투자우선순위와 합리적 결정에 의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함
- 민간참여의 확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다원화함

[표-388] 단계별 투자계획

구분	개소	면적 (천㎡)	투자비 (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재원조달 방식	
				1단계	2-1 단계	2-2 단계	2026 년이후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78	11,370	7,180	946	405	5,829	-	공공개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3	1,588	495	-	-	171	324	공공개발
	텃밭 → 소공원	195	191	114	-	-	40	74	공공개발
	신규공원확충	4	605	1,101	-	-	201	900	공공개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확충	5	99	-	-	-	-	-	공공+민간개발
	녹지활용계약에 의한공원녹지조성	18	5,600	1,512	-	-	-	1,512	공공개발
	소계	313	19,453	10,402	946	405	6,241	2,810	
녹지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13	436	479	152	104	223	-	공공개발
	학교숲조성	261	130	156.6	54	36	36	30.6	국비지원+ 공공개발
	옥상녹화/가로변 수벽조성 등	-	-	-	-	-	-	-	공공+ 주민개발
소계	274	566	635.6	206	140	259	30.6		
합계	587	20,019	11,037.6	1,152	545	6,500	2,840.6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조성비 미포함

3. 시 예산 확보계획

○ 단계별 투자계획에서 산출된 금액 중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할 금액 (국비, 구비 제외)

[표-389] 시예산 확보계획

구분	개소	면적 (천㎡)	투자비 (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재원조달 방식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6 년이후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27	9,312	3,809	343	187	3,279	-	우선투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4	1,588	495	-	-	171	324	시에산에 따라 면적 조정 또는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집행
	텃터 → 소공원	195	191	114	-	-	40	74	
	신규공원확충	4	605	1,101	-	-	201	900	
	녹지활용계약에 의한공원녹지조성	16	5,600	1,512	-	-	-	1,512	시 예산에 따라 면적조정
합계	257	17,296	7,031	343	187	3,691	2,810		

4. 투자비 산출근거

- 토지매입비는 매입 대상 사유지의 대표지번 공시지가의 2.3배를 적용하여 산정함
- 조성공사비는 1㎡당 조성단가는 LH공사 공원별 조성비 단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조사설계비는 조성공사비의 3%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390] 투자비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토지 보상비	공원	•대상 : 미조성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적용 : 각 공원별 매입 대상 사유지 중 대표지번 공시지가 × 사유지면적
	녹지	•대상 : 미조성 시설녹지 내 사유지 •적용 : 사유지 대표지번 공시지가 × 사유지 면적
조성 공사비	공원 신규	•미조성 공원별 시설면적 × 조성단가(LH공사 공원별 조성비 단가기준 *1.45(원가비율))
	녹지 신규	•미조성 녹지의 부지면적 × 조성단가(LH공사 녹지별 조성비 단가기준 *1.45(원가비율))
조사설계비	•조성공사비*3%	

5. 자체재원 확보방안

1) 지방세제의 신축적 운영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사주권이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 세원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낮은 과표현실화 때문에 부동산가격이나 자산수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련과세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형편임. 과세평가율을 조금만 상향조정해도 평균세율이 상당부분 높아짐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과표현실화 수준을 설정하고, 신중한 현실화 정책을 추진
-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 - 지방간 재정관계에서 해결해야하는 선행 과제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지방재정 해결 방안들을 종합 검토한 후,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취해야 할 현실성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
- 가능한 경상비의 증대를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지출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

2) 신세원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세수를 가능케 한다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주민의 결정에 따라 독립세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자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된 신세원의 주요대상은 환경보전세, 광고세, 자원세, 관광세 등임. 이에 대한 과세 근거 및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391] 신세원의 주요 대상 및 과세 근거

세 목	필요성	과세종류 및 과세대상
환경보전세	- 지자체별로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	- (직접환경세) 해당오염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오염원과 오염원배출량 파악이 용이한 오염원 - (간접환경세) 오염원 파악이 곤란하거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오염원
광고세	- 광고활동은 광고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음을 감안할 때, 광고세의 도입은 정당함 또한 그 상품이 전국적으로 소비되므로 광고행위의 효과가 지방자치단체에 과급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로 제정됨이 마땅함	-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한 모든 선전 및 일체의 홍보행위 - 이때 광고세의 부과는 과세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차등부과
자원세	- 자원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사용물의 폐기 및 기타 외부 불경제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시정	- 지방자치단체에 부존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관광세	- 관광객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사회문화적·환경적 비용을 수입자인 관광객이 부담해야함	- 지역내 모든 관광편의시설업 - 과세의무자는 위락시설이용자·경영자

3) 지방세제의 신축적 운영

-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입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주재원임. 그러나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효율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당수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와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의 발굴을 통해 수수료 수입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함. 수수료징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징수가 어렵다면, 수수료징수조례나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수수료과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입증대를 도모해야 함.

4) 지방채발행 등 기타 세입 확보

- 개발재원으로 지방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기존의 소극적인 억제 방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행정 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방공기업의 체제정비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이 지니는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함. 동시에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주변도시로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광역행정체제를 모색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의 효율체계를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생산원가,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의 정도, 이용자부담능력, 유사서비스에 대한 지역간·종류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을 반영하고 원가보상적 효율체제로 개선해 나가야 함

5) 민간투자의 유치방안

- 점(point) 개발이 아닌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에 의거하여 민관공동 출자형태인 제3섹터 방식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입지적인 수월성을 살려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복합개발방식 및 사후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서비스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이 지닐 수 있는 비효율성과 경영부진을 예방

6) 국가재원 확보방안

- 국고보조비가 낮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부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보조금을 확대하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에 따른 중앙 지방간의 합리적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
-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노력하여 자체적으로 도시통계의 정확한 작성들을 통한 기준 재정수요를 제시하여 국고보조 증대를 적극적으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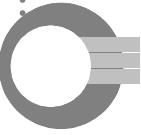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표-392] 자주재원 확충 정책화 및 실현 전략

정 책	내 용	정책화 및 실현 전략
지방세제의 신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 비과세 및 세 감면 축소 -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 법정외세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관리, 과표조정, 과세대상 확대가 세수 확보의 제1대안임 ·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함 - 비과세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자치단체 권한을 벗어남. 감면 축소도 법류에 의한 것은 불가능 - 탄력세율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단체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정치적 부담) · 조세누출의 가능성 높음 - 법정외세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 조세법률주의 · 정치적 부담 · 오랜 논란의 대상이나 현시점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신세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세 - 환경보전세 - 관광세 - 기타오락시설 사용세, 도로 사용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세원에 대해서는 논의는 왕성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국세와는 중복금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인천의 경우, 관광세를 제외하고(강화도), 마땅한 신세원이 없음 · 신세원에 대해서는 세수확충효과도 의문시됨
세외수입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용료 등 부과 - 공공시설 이용료 현실화 -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 증지수수료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가 가장 주요한 수단 - 도로사용료는 실효성이 없을 것임 - 공공시설 이용료 현실화에 노력 - 각종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 - 징수교부금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방채 발행 등 기타세입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영 개발 사업의 활성화 - 은닉재산의 색출 및 수익자분담금 등 징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감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어서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움 ·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 등 정치적 부담도 있음 · 인천도 도시철도 부채 문제로 인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화하기는 어려움 - 공기업은 경영개선이 매우 필요함 - 공영개발사업은 이제는 수익성을 정확히 따져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부담도 고려해야 함 - 은닉재산 확인 및 수익자 분담금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록

- 착수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 1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 2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 최종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관계기관의견 및 조치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 개최결과 의견 및 조치계획
- 공원녹지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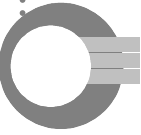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 착수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표-393] 착수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서부공원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도 녹지율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에 동의 않는다. 기본계획에서도 인천시의 녹지율이 낮은편이 아님을 강조 및 바로 잡아주기 바람 ○ 향후 민간개발확대방안 필요하며, 민간개발이 가능한 공원 발굴 및 제시 요망 - 기본계획 수립 시 권역별, 구역별 등 민간개발이 가능한 공원 발굴이 필요 ○ 국가차원의 재정적 도움 필요하며,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타시 용역사간의 공동적 의견 조율 및 공동대응(제안)을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특·광역시와 비교 하였을 때 1인당 공원녹지면적으로 따져보면 낮은 편에 속하나 인천광역시의 전체 조성면적 대비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편에 속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공원조성의 법적 기준 완화, 개발이 가능한 공원을 발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음 ○ 타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행 용역사와 교류하며 진행 중임 	반영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공동 검토 필요 - 용현동450-1(군부대부지) 일원 : 당초 공원부지가 보훈병원으로 확정(반영) - 논현동33번지 일원 : 25만평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할 듯 (인천초입부로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정 필요 / 공동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현공원 폐지반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현동 33번지 일원의 부지는 토지매입 등 막대한 재정 투입 및 이중규제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어 미반영 	미반영
환경녹지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에 의해 해제되는 시설이 있지만 신규지정이 필요한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반영이 필요함 ○ 군, 구별 공원의 지정, 실효 검토되어야하며, 각 구청 과에서도 검토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에서는 신규공원을 지양하고 미조성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계획에 중점을 둠 ○ 해체가이드라인 기준으로 1차적으로 시에서 검토 후 각 해당 자치구에 배포하여 2차 검토를 완료하여 반영 	미반영
		반영	
강화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 계획 빠져있는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자 녹지축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강화군을 제외한 것은 아님 	반영
동부공원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세분화되어 사업수행 중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많음(면밀한 검토 필요) ○ 부평 미군부대 부지,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의 변경사항들 반영필요(자료협조가능) ○ 필요시 자료 협조 충실히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치구 자료 수령하여 반영 ○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국가공원 추진 내용을 추가 반영 ○ 필요자료가 있을 시 자료요청토록 하겠음 	반영
계양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도시자연공원이 세분화되어 이촌공원(근린공원)으로 현재 개발사업 진행 중이나 제외된 부분의 계획이 없어 상당한 면적이 미조성 면적으로 남게 됨 - 제외부분에 대한 향후계획 검토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가이드라인 기준을 통해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2-2단계에 집행 	반영

[표-393 계속] 착수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와 같이, 민간개발 방안 등이 기존에 있어 왔으나 실질적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금회 공원녹지기본계획 시 민간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실천적 개선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많이 제시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 뿐만아니라 도시녹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 다양한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반영
용진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진군에는 제 기능하는 공원녹지 없으므로, 최소한1개소 정도 공원으로 지정을 요청(대상지는 영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흥도 공원 가용지 검토결과 토지보상, 이용율,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 지정이 어려움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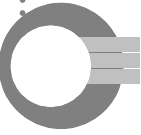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1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표-394] 1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인천시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민간공원 특례사업 별도 의견제시)	-	-
	○ 경계부 조정(해제) 대상지역인 농경지 및 훼손지(건축물, 시설 등)에 대한 구역 훼손 발생 경위, 생태 자연도 등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해제 여부 결정 필요 (※ 추가적인 구역 훼손 우려) ○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는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설정	○ 훼손지의 종류에 따라 그 경위가 다르고 훼손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임.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관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행정처분지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태자연도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성평가도, 임상도 등의 종합적인 검토 실시하겠음 ○ 훼손 범위에 따라 구역경계가 부정형이 될 수 있으나 되도록 정형화된 형태로 설정하겠음	반영
	○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의 경우 단계별 개발가능시기(5년 단위) 제시 ○ 군·구에서 검토중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 추가 제시 ○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제3종일반주거)에 따른 고밀도 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및 공원기능저하 등 우려	○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모 또는 제안에 의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발시기 단계별 계획수립은 어려움이 있음 ○ 최초 민간공원의 리스트를 각 군·구에 제시, 최종으로 검토된 리스트를 분석 제시 ○ 본 용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사항 보다는 대상지 발굴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추후 개발단계에 용도지역 협의가 되도록 하겠음	반영
인천시 시설계획과	○ 무의·왕산 도시자연공원은 경제자유구역 해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됨 ○ 왕산 조정 대상지 14,140㎡는 군부대로 제척의 의미가 없음. (도시지역공원구역으로 존치) ○ 무의 조정 대상지 8,892㎡에 대해서는 특혜시비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밀도 관리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 필요.	○ 무의·왕산은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인고-195호 2015.8.10.)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지는 양호한 산림의 보전이어서 기 훼손된 군부대나, 레이더 기지 등은 추후 관리계획단계에서 재검토 필요 ○ 조정대상지는 현재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임	부분 반영
	○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 12곳 중 향후 민간사업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자동실효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될 수 있음. ○ 민간공원사업이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선정 필요.	○ 자동실효제 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 대상지의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반영
	○ 1차 중간보고에서는 공원은 존치가 101곳, 녹지가 7곳임. ○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이내에 108곳에 대한 재정사업 시행여부가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5년 이내 집행가능 시설에 대해서만 존치하고 나머지 시설은 향후 해제 후 재지정 검토 등 보완 검토 필요.	○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1차 인천시, 2차 차치 구·군별의 재정 및 개발여건 고려하여 검토, 최종 반영된 재정적집행시설은 총 76개소로 향후 5년내 집행시설은 23개소이며,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해 재검토	반영

[표-394 계속] 1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동부공원 사업소	○ 해제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우선해제대상 공원별 기준자료가 현재로선 검토가 어려운바, 향후 공원별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필요함.	○ 해제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 외에 인천도시계획조례, 2020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검토 항목을 발췌하여 세부검토 실시, 이후 해당 자치 구·군에서 재검토하여 반영	반영
서부공원 사업소	○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 조정 - 관교공원 비공원시설 예정지는 경사지로 비공원시설 입지는 부적합.	○ 2차중간보고시 경사지등을 분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민간사업자가 대상지에 대한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반영
	○ 공원 경계 조정 - 장미공원 진입로는 (연수동 640-15)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도로, 공원)된 지역으로 현재 사용하는 용도(도로)에 맞게 조정	○ 본 용역은 해제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검토과업으로 중복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은 별도 검토 필요	미반영
	○ 공원 경계 조정 - 청학동 산59-4번지는 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민원 제기된 지역으로 전체 부지를 공원편입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조정	○ 민원제기 부지 산59-4번지는 청량도자연공원구역과 청능공원으로 지정된 필지로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이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무단점용행위 고발로 행정처분한 상태이며, ○ 공원편입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은 별도 검토필요	미반영
	○ 공원 경계 조정(원신공원) - 도로(광로)에 의해 공원이 분리, 단절된 지역으로 공원 경계 조정 또는 별개의 시설로 결정	○ 도로(광로)로 인해 단절된 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해제 또는 해제 검토 ○ 공원경계조정 및 분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은 별도 검토 필요	미반영
북부공원 사업소	○ 인천 녹지축 보전 방안 마련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에 따른 도시공원 파편화로 한남정맥과 인천 동서내륙, 남북 S자 녹지축 체계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인천광역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녹지축 보존 방안(녹지 체계확립) 마련 필요. ○ 인천시 바이오톱 지도 활용 방안 제시요망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바이오톱 지도(Biotope Map)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망.(서울시 활용사례 등을 조사한 후, 인천시에 가장 적합한 활용 방안 제시 요망)	○ S자 녹지축 체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녹지축 체계의 보전방향을 제시 ○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행위시, 생태자연도 갱신을 위한 기초자료,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기초자료, 공원·녹지 지정을 위한 대상지 선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반영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재검토 - 무단 훼손지 위주로 해제하는 방안은 형평성,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축 훼손 심화가 우려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역지정의 근거와 변경(해제) 기준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여 구역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더욱 면밀한 검토필요 ○ 훼손지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관리청의 행정 처분이 내려져 있어 행정처분 지역은 경제조정대상에서 검토 제외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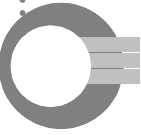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표-394 계속] 1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북부공원 사업소	○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 조정 -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예정지는 경사지 및 한남정맥 능선 통과지역으로서 비공원 시설 입지(179천㎡)는 부적합하오니 재검토 요망.	○ 검단중앙공원은 현재 사업 초기단계로 추후 사업진행 중 변경 가능성이 있음	반영
	○ 연희공원 민간 개발로 인한 생태 체계 교란 우려 - 기러기류 등 철새 도래 횡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부근이므로 민간 개발로 인한 환경 변화로 생태계 혼란 우려, 민간공원추진대상지로 선정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보완방안 제시 요망)	○ 민간개발지는 연희공원내의 고물상으로 인한 훼손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으로 고물상보다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조성하여 추후 공원조성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함	반영
	○ 공원 경계 조정(연희공원) - 공원 북측 경계를 공촌천 지형을 따라 변경 반영(2012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	○ 공촌천 경계를 따라 연희공원의 경계조정 반영	반영
	○ 도시공원 부분 해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함. - 도시공원 훼손지 위주의 해제는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한 이익을 주는 문제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 야기우려, 최대한 예산 확보 후 공원 조성 추진방안 검토	○ 다양한 민원발생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대한 예산 범위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반영
중구	○ 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정상부에 위치한 군사시설(군부대 및 레이다송신소)은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 곳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에 의미가 없음으로 해제를 적극 검토요망	○ 구역경계의 군 휴양시설 및 레이더기지, 도시계획도로, 군부대 등 훼손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연수구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61호로 결정 된 청량녹지(연수구 동춘동 950번지 일원)로 인해 대지가 맹지로 된 지역이 있음에 따라 이면도로의 계획 또는 녹지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적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며, 이면도로 계획 또는 녹지의 조정과 같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추진	미반영
	○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현장확인 결과 선학동 산46-3번지 등 일부지역이 조사결과와 상이함에 따라 용역수행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변경(해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 현장을 재확인하였으며 누락되는 훼손지가 없도록 반영하겠음	반영
	○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원·녹지계획에 따른 담당자 직무교육 및 직무연찬 필요	○ 시와 자치구간 수시 회의를 통하여 해제가이드라인의 직무 연찬 실시필요	추후 반영
부평구	○ 특례사업 제안시 적극 검토	○ 특례사업 제안시 적극 검토	반영
	○ 동수녹지 전체 6,924㎡ 중 3,368㎡ 조성, 3,556㎡ 미조성되어 있으며, 인천시 의회에서 예립원(장애인복지시설)측이 사용중인 1,791㎡에 대해 장기미집행 해제권고 시설로 해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녹지연결성, 도로확장으로인한 폭원감소 등 경관녹지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어 미조성부지 3,559㎡ 우선해제대상으로 검토 요청	○ 해제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해제기준에 미포함 대상이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판단이 필요함	미반영

[표-394 계속] 1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부평구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관리계획결정(변경)은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의 완료 후 구역조정 해제 절차를 이행	반영
남동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확보되는 공원 녹지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제외한 기타 목적의 개발사업의 경우 취락 주변에 녹지, 저수지, 하천, 임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이 충분한 경우 또는 취락 경계를 기준으로 250미터 이내 어린이공원 또는 500미터 이내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공원·녹지를 확보하지 아니 하게할 수 있으므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공원의 경우 존치가 아닌 해제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공원·녹지 해제 기준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고잔근린공원은 존치로 검토되었으나, 근린공원의 존치 및 폐지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인천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선 검토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 취락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지와 인접한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음 ○ 1차, 2차에 걸쳐 해제가이드라인 외 추가 검토사항을 토대로 우선해제, 재정적집행 시설을 분류 하였고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 2-1단계, 2-2단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	반영
서구	○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분석과 관련 현황을 반영한 추가 세부 지침 필요	○ 민간공원 분석에 대한 추가 세부지침을 제시	반영
	○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집행여부 구분시 현황을 반영한 추가 세부 지침 필요 ○ 누락된 녹지 부분 검토 요망	○ 해제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외에 추가 세부검토 항목을 마련하여 제시, ○ 누락시설에 대하여 구 확인후 반영	반영
강화군	○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경계부에 녹지가 훼손되어 농경지(전)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식생 등의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민의여가·휴식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92,526㎡에 한하여 도시자연 공원 구역 해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에 분포된 훼손지는 양호한 산림이 아니며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검토	반영
	○ 전등도시자연공원 구역 경계부에 녹지가 훼손되어 농경지(전)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식생 등의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49,137㎡에 한하여 도시자연 공원구역 해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전등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에 분포된 훼손지는 양호한 산림이 아니며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검토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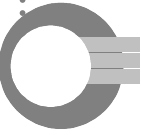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2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표-395] 2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계양구	○ 신규시설지양이라고 하는데, 어린이공원 3개소 신규시설로 지정 추진중임. 야기되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요망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신규지정은 시와 협의 후 진행	반영
	○ 이촌근린공원이 우선해제 검토대상 및 비재정적집행시설(민간개발대상)인데, 향후 계획방향이나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 이촌공원은 비재정적집행시설 분석 시 부적합으로 검토, 재정적집행시설(2-2단계)로 재분류	반영
	○ 갈개근린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으로 전체 면적 중 60%가 문화재로 인가면적에서 제척하려고 함. 우선해제 검토대상인지 검토요망	○ 갈개근린공원은 2차 검토 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적집행시설 중 1단계로 분류	반영
부평구	○ 백운공원은 1단계집행시설로 분류되었으나, 구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으니 재검토 바람	○ 백운공원은 2차 검토 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적집행시설 중 2-1단계로 분류	반영
	○ 십정공원은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3만㎡의 큰 면적으로 시와 업무적 협의 및 검토를 요청함	○ 비재정적집행시설 분석시 적합으로 분류, 추후 공모 또는 제안방식으로 사업추진	반영
	○ 십정취락지구 내 근린공원은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13천㎡가 산림청 공유지이므로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 요망	○ 십정취락지구공원은 2차 검토 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적집행시설 중 2-2단계로 분류	반영
	○ 회망공원은 비재정적 집행시설에서 우선해제시설로 변경 (1차보고→2차보고)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 바람	○ 최종으로 비재정적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추후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함	반영
	○ 한울공원은 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되어 국유지100%이나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음. 자치구의 판단으로는 130억의 재정이 필요(용도구역이 상업지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재검토 요망	○ 한울공원은 2차 검토시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2-2단계 집행시설로 분류	미반영
	○ 맑은내공원은 현재 나비공원으로 조성, 관리중이나 좀 더 확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해제대상에서 재검토 필요	○ 맑은내공원은 2차 검토 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적집행시설 중 1단계로 분류	반영
남동구	○ 공원조성시 예산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요망	○ 조성공사비 : 공원면적(공원별 시설면적)*LH공사공원별조성비단가기준*1.45(원가비율) ○ 조사설계비 : 조성공사비*3% ○ 토지보상비 : 사유지*공시지가*2.3배	반영
	○ 운연공원이 2-2단계 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내년에 공원 조성계획 중임. 재검토 요망	○ 운연공원은 1단계로 분류함	반영
	○ 주적체육공원은 금년에 공사완료예정인데 2-1단계 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요망	○ 주적체육공원은 금회 검토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반영

[표-395 계속] 2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연수구	○ 옥련녹지가 1단계 집행시설로 분류되어있고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검토되었으나, 100%사유지임. 재검토 요망	○ 확인결과 옥련녹지는 100%사유지로 1차 검토에서 분류된 1단계에서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	반영
	○ 선학어린이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예정이므로 현재 검토된바와 상이함. 재검토 요망	○ 향후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으로 2-1단계에 조성토록 계획 수립	반영
서구	○ 해제가이드라인의 검토항목을 좀 더 분류해주기 바람	○ 검토항목을 재검토하겠음	반영
북부공원 사업소	○ 부분적, 지엽적인 공원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개념과 대안(파편화 대안, 녹지축 보존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람	○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천시 녹지축의 훼손 및 파편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대체 및 보존 방안을 제시	반영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지를 부분 해제하는 것은 녹지축 훼손문제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요망	○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는 이미 구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나 추후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 구의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함. 대안 제시를 요망	○ 체크리스트자료를 토대로 시, 자치구별 담당자가 해당 재정부서와 협의 완료 후 반영	반영
서부공원 사업소	○ 중앙가로녹지, 벌말녹지 등이 도시림으로 미포함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면 녹지면적이 확충 될 것으로 보임	○ 중앙가로녹지, 벌말녹지는 녹지 확충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반영
	○ 햇골공원, 수리봉공원은 입지특성상 우선해제대상으로 검토 (무허가건물난립)	○ 햇골공원, 수리봉공원은 2차검토 시 사업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반영
동부공원 사업소	○ 소공원화 하는 계획 중 쉽터와 보호수주변이 있는데 두 개의 기준 면적이 상이함. 재검토 요망	○ 소공원은 면적제한이 없어 인천시 조례 및 조경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쉽터 소공원화는 유사한 시설의 설치면적 중 마을마당(25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 보호수 및 큰나무 소공원화는 유사한 시설의 설치면적 중 최소기준인 어귀마당(30㎡)를 적용	반영
	○ 하천변녹지는 있으나, 해안변 녹지나 녹도가 빠져있음. 추가검토요망	○ 하천, 해안변 녹지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반영
	○ 빗물이용, 저류관계가 추가 검토 되었으면 함	○ 배수지, 저류시설을 이용한 공원 확충 방안제시	반영
	○ 석촌공원, 도롱농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분류 재검토요망	○ 사업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석촌공원은 2-2단계, 도롱농공원은 재정적집행시설 중 1단계로 분류	반영
도시계획과 (광역 계획팀)	○ 고의 불법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답변요망	○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부 대상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려 관리하고 있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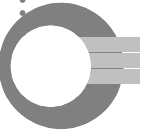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표-395 계속] 2차 중간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과 (광역 계획팀)	○ 계양구의 영광유치원 부지를 203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지역으로 검토 중인데, 계양구 공원팀에서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는지 검토요망	○ 시와 자치구의 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선 시와, 계양구 협의가 필요 ○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공원화 계획 없음 ※ 2030도시기본계획 미반영	미반영
	○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나 토지 주 입장과 남동구(공원화) 입장이 대치되고 있음. 공원녹지기본 계획 시 검토요망	○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신규공원을 지양하고 있어 해당토지의 공원화는 미반영 ※ 2030도시기본계획 미반영	미반영
시설계획과	○ 장기미집행시설 분류대로 집행가능한가?	○ 단계별 구분 시 집행중인 시설은 우선적으로 1단계에 계획하였으나 시와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타당성과 실현성에 대해 검토 필요	반영
	○ 실패되면 재지정 못하도록 되어있음, 부분집행 되더라도 미집행이면 자동 실패됨, 그 부분을 감안하고 검토되었는지 답변요망		
	○ 우선해제시설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요망	○ 본 계획에서는 해제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항목 이외에 경사도, 표고, 지정년도, 접근성,유치거리 등을 포함하여 검토	반영
	○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바람	○ 장기미집행 시설정비절차에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년내에 결정고시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어(관리방안 포함) 본 과업이후 시설계획과에서 발주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시 반영	반영
동구	○ 없음	○ 없음	-
남구	○ 용현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중이나 현재 보훈병원에서 부지사용중으로 향후 공원조성이 어려워 우선해제시설로 검토 요망	○ 2015.12.28. 공원에서 해제	반영
공원녹지 과장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지 해제는 민원이 많을듯하니 세부지침을 재차 확인해서 시행바람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검토	반영
	○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 시설정비절차에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년내에 결정고시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어(관리방안 포함) 본 과업이후 시설계획과에서 발주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시 반영	반영
	○ 보호수를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황을 면밀히 살펴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 소공원은 면적제한이 없어 인천시 조례 및 조경설계기준을 참조, 보호수 및 큰나무 소공원화는 유사한 시설의 설치면적 중 최소기준인 어귀마당(30㎡)를 적용	반영

■ 최종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표-396] 최종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중구청 도시관리 국장	○ 금번 영종, 용유 완충녹지 49km가 해제예정임, 토지주 및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도 우려됨. 이후 완충녹지 해제 시 도로경계와 건축물사이에 일정한 공개공지를 두어 제반사항을 완화토록 건축한계선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건축후퇴선등은 법적인 사항이며, 이후 시행되고 나면 민원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봄	추후 반영
남구청 지속가능 도시국장	○ 남구는 어린이 공원이 없는동이 총22개 동 중 8개동이 있음. 공원 확충 대상지도 없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 민간사업에 의해 공원이 만들어 질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번에 노원공원에 보훈병원이 들어서면서 공원이 해제될 예정임. 대안으로 철도변 녹지 등은 해제이후 재지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철도변의 녹지를 재지정해서 남구의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반영해 주기 바람	○ 남구의 극심한 구도심화로 인해 공원녹지 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보상비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나 본 계획에서 제시한 우선해제 시설 및 재정적 집행시설은 1차적으로 시에서 검토 후 2차 적으로 자치구별로 검토된 사항으로 요청한 공원녹지 확충은 자치구의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도시녹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녹지 국장	○ 공원이 해제되면 토지주들은 개발을 할 텐데, 녹지활용계약을 조례로 만들어서 녹지를 확보, 법적으로 가능한방법인지 답변요망 ○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나 단계별시행단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시재정이 안정권에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함 (P.410) ○ 공원이 해제 되면 다양한 개발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난개발 대책이 필요하고 단계별 시행단계는 우선적으로 향후 5년동안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현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후 단계별 계획을 재정비토록 함	반영
동부공원 사업소장	○ 학교 숲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숲을 조성하기능 어려운 점도 있고, 면적이 적음,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장을 천연잔디를 이용해 녹화하는 방법을 고려바람. 현재 서울시도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만들고 있고, 별도의 장기품종까지 개발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녹화가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함. ○ 부록 편에 신촌공원이 재정집행계획 2-2단계로 되어 있으나 1단계 또는 2-1단계로 조정바람	○ 현재 서울시는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통해 에코스쿨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심의 녹지량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인천시도 예산을 고려한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녹 확보 및 열린 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2차 검토시 신촌공원은 재정적집행시설 분류 중 2-2단계로 분류, 추후 해마다 타당성 및 실현성 검토에 따른 재분류 가능	반영
도시계획 과장	○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s자 녹지축의 개발을 지양하고 있음. 민간 개발사업 시 주변상황 및 제반여건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녹지축 훼손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검토 바람	○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S자 녹지축 훼손을 방지 하기위해 촉과 인접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성 시 면밀한 환경적 검토가 필요	추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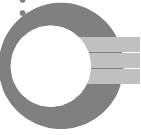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표-396 계속] 최종보고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공원녹지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의견주신 내용 중 완충녹지해제 및 건축후퇴선등은 법적인 사항이며, 이후 시행되고 나면 민원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봄 ○ 남구구도심의 공원녹지 부족 문제는 현재 시에서도 공장이전지등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나 재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문제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도심의 문제를 더욱 고려토록 하겠음 ○ 도시계획과장의 s자 녹지축 우려사항은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상 s자녹지축에 도로개설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변경사항에 대해 검토 하도록 함 ○ 극심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녹화 대책을 마련 ○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S자 녹지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축과 인접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성 시 면밀한 환경적 검토가 필요함 	부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림 비율이 낮아 보이는데 타시도 대비 실제로 낮은지? ○ 공원녹지 조성률이 35%인데 실제 조성률이 타 시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가? ○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성 있게 세워야지 목표는 높게 잡고 실제 추진률은 낮은 것이 문제임. 재정여건, 향후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대비비율이므로 서울, 부산다음으로 높은 편에 속함 ○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큰 격차는 없는 수준임 ○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가 실현가능한 공원조성으로 신규공원지정은 지양하고 장기집행공원의 단계별 집행으로 꾸준한 조성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별 여건이 다르므로 공원녹지의 특성이 필요해 보임. 가로수, 수목, 식재 등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가로수 특성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며, 별도계획이 수립되면 공원녹지에도 가미되도록 할 것 ○ 도서지역의 녹지를 단순 녹지가 아닌 생활공간 관광자원으로서 계획이 필요할 듯함 ○ 공원녹지 조성 시 재정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너무 과도한 계획은 배제하여 공원녹지 조성률이 적정하게 진행되어 신뢰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계획으로 추진되며, 가로수(시목)관련사항도 인발원에서 검토 중에 있음 ○ 가로 특화에 대한 대책 및 지역마다 특색이 담긴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도서지역을 자연형 해양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민간기업과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신규공원은 지양하고 실현가능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표-397]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서종국 교수 (인천대 도시행정학 과)	○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표설정관리가 중요하고 법적지침에 정해진 내용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지표 설정과 그에 따른 내실 있는 계획 관리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하여 본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타 용역으로 작성된 비오름지도에 대해 실질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본보고서에 별도의 비오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겠음	반영
	○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2030년 목표설정 시 과거 2020년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2020년 계획의 전반적이 사항을 검토하여 2030년 계획에서는 차별화된 계획과 전략을 도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계획 수립 시 기초에 충실해야함	○ 기초에 충실하여 계획하겠음	반영
	○ 장기미집행시설의 우선해제, 재정적, 비재정적 시설의 분류에서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화 하여 분류한 것은 추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공개적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함	○ 현재까지의 장기미집행시설의 분류는 해제가이드라인 이외에 법적, 환경적 사항을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분류하였고 해당 군·구·사업소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후 별도 발주 될 관리계획결정(변경)단계에서 한 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민간공원에 대해 시민이나 토지소유주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방안필요	○ 민간공원에 대해 시민이나 토지소유주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상지 분석 및 선정사유, 추후 진행방향,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 국가공원을 한다면 인천시 관내 국가공원의 대상지를 검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에 담아야 함	○ 재정적 집행공원 중 국가공원 가능 대상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계획을 본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김진한 교수 (인천대 도시환경 공학부)	○ 향후 15년 후 계획인데 금회 보고 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보고서와 같은 느낌 임. 공원녹지법에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이 되어야함	○ 보고자료에는 현재 이슈인 장기미집행 해제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크게 두었으나, 본보고서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는 전반적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 인천은 회색도시이다. 회색도시를 비전에서 제시한 새로운 녹색 도시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함. 산업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중심으로 가면 공원녹지는 보존,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있다. 보전과 복원, 특히 복원은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변할 수 있는 방법임. 비전에 걸 맞는 새로운 녹색 도시에 부합하는 복원방안 제시	○ 회색도시인 인천을 새로운 녹색도시로 바꾸기 위에 공원녹지 확충 및 도시녹화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복원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새로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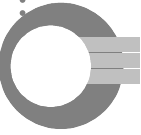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표-397 계속]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김진한 교수 (인천대 도시환경 공학부)	○ 재정분석을 보면 어떻게 민간자본을 유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얼마의 금액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 사업비 부분에 민간 자본의 대상 및 금액이 분류되어 작성 되어있음	반영
	○ 향후 15년 동안 목표를 적어도 5년 단위로 세분화된 목표를 세워 실질적으로 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들의 5년 동안의 타임스케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최초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단계를 거침 그에 따라 기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방향을 재수립하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임	기반영
	○ 현시장님 재임기간 중 목표치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제시한다면 모든이들이 공감할것임	○ 법적으로 정해진 외적인 사항으로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재수립 하는 것이 어렵고 법적인 재정비 기간과도 불일치	미반영
	○ 공원녹지법에 보면 축과 망을 같이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음. 축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망에 대한 계획은 언급되지 않음	○ 공원녹지 확충이나, 도시녹화 부분에서 망에 대해 계획 되어 있으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여 작성	반영
	○ 종합배치구상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되도록 3년 후, 2년 후, 5년 후, 그 다음 5년 후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 검토 필요	○ 종합배치구상에서 향후 단계별 계획에 의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	반영
	○ 장기미집행시설의 부분에 너무 초점이 두어지다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 보임. 보완 필요	○ 장기미집행시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본보고서에 담겨져 있지만 좀 더 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	반영
권전오 위원 (인천발전 연구원)	○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아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의 위상을 잘 잡고 가야함, 계획은 크게 3가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레벨은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이고 두 번째 레벨은 전략계획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계획이고, 마지막으로 핫이슈 중심으로 시행하는 시행단계가 있다. 지금보여는 계획은 시행계획인거 같고 이 계획을 종합계획, 전략계획의 위상으로 끌어 올려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환경, 도시농업 등 관련부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담기에는 어렵고 종합적인 성격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최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및 검토	부분 반영
	○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타부서와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 할 것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초기에서부터 관련부서의 의견을 묻고 사업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검토	반영
	○ 회색도시로 표현되고 있는 인천의 다양한 문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 후 실천방안을 도출해보는 종합적인 계획 내용이 필요	○ 회색 도시로 표현되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가 인천의 공원녹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나 자료가 되어 공원녹지분야에 계신 분들이 연찬회에서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내용을 도출하고 토론하고 아이템을 찾는 등 활용하였으면 함	○ 공원녹지분야의 정보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목표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표-397 계속]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권전오 위원 (인천발전 연구원)	○ 민간공원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서 전체를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전체 부지의 30%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70%에 대해 공원을 기부하는 방식인데 비공원시설30%에 어떻게 공간이 활용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난개발, 도시경관 저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의정부의 성과를 확인 후 신중한 진행 필요	○ 비공원시설은 인근지역의 이용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익이 높은 아파트가 주로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시의 선행사업 및 타당성 분석을 참고하여 인천시에 가장 적합한 추진 방식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그에 따라 민간이 공원을 관리하는 시대도 오지 않겠는가?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사례로 작은 공원이라도 시범삼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도시의 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건조화를 감소, 산소 발생, 생물 서식 공간 이지만 정확히 계획 분야가 애매모호해서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를 공원녹지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임	○ 도시의 논(경작지)에 대한 보존과 그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계획이나 전략을 파악한 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담을 것인지 검토하겠음	부분 반영
장정구 정책위원장 (인천녹색 연합)	○ 장기미집행공원은 1970년대 이전 결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요청해야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장기미집행공원에 토지매입 및 조성 등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 국·공유지를 지방정부에서 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적어도 국·공유지만큼 해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지방정부에 무상양도해서 중앙정부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의 기준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제안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 본보고 자료에 국가공원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 국가공원 가능 대상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계획을 본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인천시의 갯벌 및 하천에 대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계획 할 것이며 시민에게 인식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 타 부서와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의 여부 및 전략에 대해 파악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 옥상녹화를 예로 인천의 각 구청의 건물들, 공공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옥상녹화를 추진했다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함	○ 옥상녹화와 관련하여 본보고서 및 도시림 보고서에 계획이나 관리방향이 수록되어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건축조례 재·개정이 필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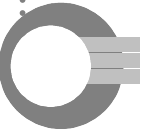


[표-397 계속]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장정구 정책위원장 (인천녹색 연합)	○ 영국은 도시녹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원에 대한 고민하고 서울시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의식을 깨워 민간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결국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는 틀에서 논의를 하고 서서히 오픈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인천의 행정과 시민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도록 하겠음 (P.153)	반영
	○ 종교 쪽이나 학교나 법인에서 쓸 수 있는 토지를 발굴 필요. 또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고 그 중 공공법인의 토지가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고민하기 좋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장기미집행시설의 국공유지 토지의 물량은 인천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시설의 분류에서 대상지의 국·공유지 비율을 검토 항목으로 반영하여 활용하였음	반영
	○ 민간공원에 대한 우려가 크다. 70%를 기부를 하고 30%를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것인데 대부분이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그에 따른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에 따라 대상지 선정에도 신중한 판단과 검토, 모니터링이 필요 함	○ 비공원시설은 인근지역의 이용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익이 높은 아파트가 주로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시의 선행사업 및 타당성 분석을 참고하여 인천시에 가장 적합한 추진 방식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한남정맥의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법을 개정하든 비오톱 조사에 나왔던 중요한 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이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한남정맥의 주요산은 이미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 보호지역 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행정만 움직여서는 공원녹지 조성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운영관리나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행정과 시민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시키고 직접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활동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관리체계구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이경제 교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 인천은 복잡한 도시이다. 구도심지역, 신시가지지역, 도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것을 합쳐 놓으니깐 인천이 양호하게 비춰지고 있다. 계획 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검토 바람	○ 인천은 9개 자치구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현황 및 향후 계획이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신시가지지역, 도서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에는 전차 2020과의 기준과도 상이하야 비교 분석하기 어려우나 강화, 옹진을 제외한 녹피울을 분석, 제시하겠음.	부분 반영
	○ 인천의 범죄율이 감소 했는가? 암환자는 감소했는가? 공원녹지 분야는 복지 분야이다. 범죄와 시민이 병이 나기 전에 나무를 심어 후 복지가 아닌 선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원조성과 대비하여 인천의 범죄율, 암환자 발생률의 증감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원녹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원녹지율을 양적으로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수목이 자랐으면 ha당 몇 입방, 체적계산으로 나와야 함.	○ 인천광역시 전역에 대한 수목의 입방 및 체적계산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그 물량과 범위가 방대함	미반영

[표-397 계속] 시민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 인천시도 각종 오염물질을 내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 보다는 사무를 심고 자르고 그 목재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재의 가치가 높은 수목을 찾고 심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산림내 수종갱신 및 경제림 식재 등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기본계획에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미반영
	○ 대기오염이나 토양에 관한 문제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현대의 중요한 이슈이고 인천은 그 영향권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 본보고서에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으며, 좀 더 구체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음	반영
	○ 앞에서 위원들이 언급한 해안을 공원화 하자, 논을 우리계획 바운더리로 끌어들이자, 옥상 녹화하자는 의견들은 반드시 실천해야한다. 국장님께서 실천계획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모두가 나서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실천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가 실천 가능하고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부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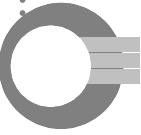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표-398]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박병상 위원	○ 인천의 첫 이미지는 나무가 없다는 인식을 주고,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녹지축을 훼손함.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만 언급해서는 안 되고 조례제정을 통한 개발 억제가 필요함	○ 인천의 풍부한 녹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훼손에 대한 규제 등을 검토 하도록 하겠음	반영
	○ S자 녹지축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단절구간에 대한 대안 필요	○ S자 녹지축의 단절에 대한 방안 및 갯벌 보호 대책은 본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반영
	○ 미약하게나마 남은 인천의 갯벌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		
	○ 나무등록제와 같은 사례를 통해 도시의 가로수에 대한 보호 및 시민의 의식 향상이 필요	○ 관리 운영방안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하겠음	
이풍 위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지에 대한 변경(해제)은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임	○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훼손지에 대한 분류 과정을 거쳤으며, 금회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 반영. 추후 훼손지에 대한 사항은 본 과업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	반영
	○ 인천의 공개공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 일본사례 참고로 하여 인천의 공개공지 보전대책 마련	○ 해외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의 공개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원 확충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필요	○ 실현가능한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등산로처럼 사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공원으로 반영하여 인천의 녹의 확보	○ 녹지활용계약 등 등산로를 공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수립함	반영
	○ 인천의 매립지 이전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는 녹지 띠를 설정하여 상징성 강화	○ 인천의 과거 해안선을 전반적으로 녹지 띠를 조성하기는 어려우나 송도가 매립되기 전 이전의 해안선을 도출하여 상징 녹지 띠 제안	반영

[표-398 계속]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정복현 위원	○ 본 계획에서 구체적인 공원 확충 방안이나 대상 마련 및 저 예산으로 공원 확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더 다양한 대책 및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음	반영
김석권 위원	○ 공원 확충에서 양적인 확충보다는 질적인 확충도 중요함	○ 공원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S자 녹지축뿐만 아니라 인천의 도시림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이 필요	○ 인천의 경관관리계획 및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박주희 위원	○ 전체적인 계획에서 실현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함	○ 계획에서 그치는 계획이 아닌 조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음	반영
	○ 공원녹지에서 인천만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 인천의 도시이미지를 파악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이상범 환경녹지 국장	○ S자 녹지축 연결계획은 시장님께 별도 보고가 된 사항임. 저비용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 필요	○ 저비용으로 실천 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하겠음	반영
	○ 갯벌 공원은 추진 중이나 행정에서의 일방적인 추진이 어려움 지역주민과 함께 가는 계획이 필요함	○ 주민과 함께 가는 계획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음	반영
	○ 구도심의 작은 공간부터 녹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 틈마다 초록의 개념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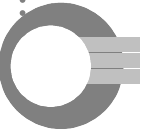
[표-399]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인천광역시 예산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조성계획은 상당한 재정투입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연차별의 투자계획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초기단계(2016~2018)는 비예산 위주의 사업 우선 추진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광역적인 계획으로 계획 수립 전 인천시,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검토 후 수립한 사항으로 해마다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 재검토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군·구의 보조대상 사업과 보조율 준수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시 누락된 재정적집행대상 공원 2개소(소래, 장도포대), 완충녹지 3개소(소래구역1,2,3녹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사항 재정적집행대상에 반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경인철도녹지 해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사항 해제 반영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 개최결과 의견 및 조치계획

[표-400] 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 개최결과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김진한 위원	○ 2030도시기본계획, 인천도시생태지도와의 관련성(적합성) 설명요망	○ 2030도시기본계획을 가반으로 금회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음 ○ 인천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원·녹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 생태환경 우수지역인 비오톱 평가 1등급지 등에 대하여는 우선대상지로, 비오톱 평가 2등급지 등에 대하여는 차선대상지로 녹지보전지구를 설정하였음 ○ 생태환경 우수지역인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비오톱 규제 도입제안 ※현재 서울시, 세종시, 춘천시, 경주시, 거제시 등이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규제를 도입	반영
문채 위원	○ P4 공원녹지 조성 현황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시가화지역의 경우 법적 용어가 아닌 바,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최종성과품 작성 시 법적 용어를 명확히 확인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시가화지역 → 시가화용도(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반영
이선옥 위원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산업단지)은 공원 확충뿐만 아니라 옥상과 벽면녹화, 생울타리조성 등 녹지 확충 계획과 기념수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도 동시에 검토 바람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하여는 중점녹화지구로 선정하여 서부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공원 5개소와 가로변 수벽녹화, 담장녹화 등의 녹화방안과 기법을 제시하였음 ○ 기념수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음	반영
양성환 위원	○ 경인선 도시철도 및 고속도로 상부 공원화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 포함내용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교통·물류분야 중점전략인 경인선도시철도·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복합화 계획을 ○ 2030년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철도부지 일부를 활용한 수인선 상부공간 녹지확충, 경인선 도시철도 덮개공원 설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 복합화계획 반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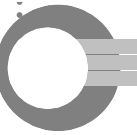
[표-400 계속] 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 개최결과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이장수 위원	○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시 난개발이나, 부적합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바람	○ 인천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생태자연도, 현장조사(훼손지), 사유지 분석 등을 통해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였고 ○ 민간특례사업 시행전 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제안자가 시행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결과	○ 상위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의 1인당 공원 면적, 소요예산 지표 등에 맞추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바람	○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지표에 적합하도록 본 계획을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원녹지 가이드라인 제시

[표-401] 공원녹지 가이드라인 제시

항 목	내 용
공원녹지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대통령주재2차규제개혁장관회의(‘14.9.3)이후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 배포(‘14.12.30)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설을 분류,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 하도록 하고 해제된 공원녹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틈마다초록)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특성화시켜 공원이용의 기회를 다양화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대중교통 정거장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 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2개 방향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한다. •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를 금하고 가급적 생울타리 식재 등으로 대체한다. • 생태등급, 임상도 등이 양호하여 보존이 필요한 녹지 보전지구 대상인 계양산, 천마산, 호봉산, 문학산 등에서는 보전지구를 설정하여 경계주변 30m내에서는 훼손방지를 위한 buffer zone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buffer zone 훼손시 훼손면적만큼의 대체녹지를 조성토록 권장한다. • 공원 조성시 우수, 중수를 이용하여 관개용수 등에 재사용토록 방안을 권장 한다. • 공원에는 위급시를 대비하여 소방시설과 위급전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구청 및 관할 부서는 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공원은 기본계획단계부터 적극 홍보 및 게시하여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각 구별로 재정 및 여건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민자연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원내 포장 및 시설물들은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포장은 잔디블럭, 투수성 포장재 등 친환경적 포장재를 사용하며 시설물은 가능한 목재를 사용토록 한다. 또한 부대시설 등 건축물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과 같이 친환경적 건축물계획과, 태양열을 이용하여 공해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기본시설(운동 및 체육시설, 픽트그램 종합안내도), 자전거 시설, 영유아 동반시설, 아동 고려시설(벤치, 음수전, 계단높이, 놀이시설), 화장실(여성 대변기수 확보, 남녀 화장실 아동배려시설), 주차장(확장형주차장, 여선전용, 장애인주차장 확보 등) • 아동, 고령자, 장애인, 유아동반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공간의 마련(보차분리, 보도폭 확보, 단차 제거 및 경사로 설치, 보행방해시설 방지, 휴게의자 등 휴게시설 설치) • 도시공원 시설의 안전 및 시설 이용자의 보호 등 범죄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구도심의 공원조성 시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고려가 필수적임.(진입로, 출입구 등 주요한 지점에 CCTV 설치, 주요이동공간의 조도확보, 식재, 설치물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방지,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설계(CPTED)적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무장애 동선을 반영하여 누구나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표-401 계속] 공원녹지 가이드라인 제시

항 목	내 용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공원내 시설은 단순놀이기구, 모험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및 소규모 운동장,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테마를 구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조경설계기준의 마을마당 규모를 적용 250㎡이상의 쉼터는 소공원으로 지정토록하고, 우수보호수 보호를 위해 조경설계기준의 어귀마당 규모를 적용 보호수 주변부 30㎡를 소공원 지정 권장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시 방음벽보다는 가급적 방음림으로 조성토록 유도, 방음벽 설치 시에도 반드시 벽면녹화가 가능토록 최소한의 녹지대를 조성하여 보행 및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주거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설치를 유도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 내의 공간에서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이상의 녹지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쉼터공간을 조성한다. •단지에는 지역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테라스 가든)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공원은 해당 지역의 거점공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을 설치 및 조성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개발사업시 법적인 공원·녹지 확보율을 준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체공원·녹지를 조성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한다.
테마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경관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주요지구 권역을 기준으로 권역당 테마가로를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의 기능을 겸하도록 한다. •테마가로별 주요 테마 및 식재여건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 하도록 한다 •주요국도변 녹지 조성 및 조경열주와 가로수의 업라이팅을 통하여 인천의 상징성을 부여 하고 명품, 매력도시 이미지구현을 위한 테마부여를 통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자전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도로의 평면 교차지점에는 자전거 횡단표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의 주요 목적지에는 자전거보관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요 자전거도로 결절부 및 노선 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는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자전거도로 포장은 투수성포장 등 일체적이고 빗물의 배수 및 투수가 원활한 소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럭을 도입할 수 있다.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한다. •public-bike도입에 적합토록 시행한다. •자전거도로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
도시자연공원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대상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별도의 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양호한 산림에 대한 관리가 되도록 한다.
경관녹지 City G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으로 진입하는 상징적 공간은 city gate역할을 할 수 있도록 landmark요소를 포함한 수준 높은 녹지 디자인, 상징물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가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계획 시 뿌리생장, 노출에 의한 기반시설에 지장이 없는 수종으로 식재계획토록 하고 겨울철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는 침엽수는 지양하되 테마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가로별 특색이 있는 수종으로 계획토록 한다. •보차도 구분이 있는 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표-401 계속] 공원녹지 가이드라인 제시

항 목	내 용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녹지는 공원녹지의 일부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blue network를 구성토록 친수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굴포천 등 하천계획안 수립시 주변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토록하고 주변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하천을 따라 저수로/고수부지/제방에 각각 친수공간/산책공간/휴게공간을 도입하여 이용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수생식물/관찰데크 등 어린이의 학습과 체험이 같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한다.
해안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변을 따라 해안경관도로를 조성하고 2~3km간격으로 해안을 조망하며 설 수 있는 쉼터 및 소공원 조성을 권장한다. •해안변에 조성되는 시설에는 가급적 주민의 해안 접근이 가능토록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녹도 (green 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내 공원녹지 단절구간에는 녹도(green way)설치에 의한 공원간, 주거지와 공원간 연결을 지속적으로 연계, 확장토록 권장하여 green network 및 공원이용체계를 확립한다. •큰 의미의 녹도뿐만아니라 작은 골목길도 하나의 소규모 녹도(green way)로 구분하여 인천시 녹의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중복결정, 활용토록 한다. 평면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적 포장재를 사용토록하고, 건물형의 경우 옥상, 벽면녹화를 실시한다. •주차장 포장은 가급적 친환경적인 포장재로, 잔디블럭포장 등 투수 및 생물서식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토록 한다.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은 인접지역에서의 접근에 제한이 없도록 보행의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형태가 되도록 한다. •광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광장과 보도가 접하는 부분은 접근시 무리가 없도록 평면 또는 경사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아울러 설치하도록 한다. •광장내부에는 낙엽교목에 의한 녹음식재와 화관목의 군식으로 경관식재로서 가로경관을 제고하고 이용객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허물기,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벽면녹화 등을 통한 학교녹화사업을 실시한다. •학교 이전시 우선적으로 공원·녹지로 조성토록 권장한다.
문화재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선 외곽으로 50m까지는 buffer zone으로 공원녹지를 우선 조성토록 한다.

* 특이사항은 각종보고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민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후 의사결정

참여기관 및 기술진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전성수			
	경제부시장	배국환	홍순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상범			
	공원녹지과장	김학렬				
	공원기획담당	김진탁				
	담당자	윤혜경	황현목	임상순		

사업총괄기술자	(주)도화	김철홍				
----------------	-------	-----	--	--	--	--

계획실무진행	(주)도화	강성철	김영식	이윤우	서영곤	김태유
	(주)장원	허미경	구소연	김혜진	김지아	김지원

분야별 기술자						
조경	(주)도화	문상규	최응식	마동욱	신현석	김진주
		김영출	정동진			
도시계획	(주)도화	민경렬	김주현	정현식	배상호	성익제
	(주)장원	이해균	우승면			
수자원개발	(주)도화	전세진				
	(주)장원	이용탁				
교통	(주)도화	김재현				
	(주)장원	문은영				
환경	(주)도화	박완섭				
	(주)장원	윤원상				

연락처	(주)도화엔지니어링	http://www.dohwa.co.kr TEL : 02-6323-3000 FAX : 02-553-8021
	(주)장원	http://www.jangwoneng.kr TEL : 02-472-0011 FAX : 02-472-0016

자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시민공청회	사회자	이경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명예교수)
	토론자	서종국(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권전오(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한(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